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267-10

통계청승인번호	117067

noinboho.or.kr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CONTENTS

Part 01 25

1. 발간목적 ····· 3
2. 법적근거 ····· 4
3. 자료수집과정 ····· 4
4. 자료분석 ····· 4
5. 주요내용 ····· 5

Part 02 노인학대 주요통계 7

1. 노인학대 신고접수 ····· 9
2.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 ····· 10
3. 노인학대 피해노인 현황 ····· 12
4. 노인학대 행위자 현황 ····· 13
5. 노인학대 유형 ····· 14
6. 노인학대 발생장소 및 특성 ····· 15
7. 경제적 학대 현황 ····· 17
8. 치매진단 노인학대 현황 ····· 19
9. 시설 노인학대 현황 ····· 21
10. 재학대 현황 ····· 22

Part 03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 (2012~2021년) 25

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 27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 28
3.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 30
4.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 31
5. 연도별 재학대 건수 ····· 32
6. 연도별 학대유형 건수 ····· 33
7.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 34
8.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 35
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 36
10.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 37
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38
1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39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CONTENTS

13.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41
14.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42
15.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 43

Part 04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45

1. 노인학대 신고접수 ····· 47
   1) 전체 신고접수 ····· 47
   2)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 49
   3) 시군구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 53
   4) 발생장소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 59
   5) 신고자 유형 ····· 59
   6) 신고접수 및 경로 인지 유형 ····· 62

Part 05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65

1. 현장조사 ····· 67
2. 사례판정 ····· 69

Part 06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79

1.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 81
   1) 노인학대 유형Ⅰ(학대피해노인 수) ····· 81
   2) 노인학대 유형Ⅱ(학대유형 건수) ····· 82
   3)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 90
   4)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연령 ····· 90
   5)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 91
   6)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91
   7) 학대발생장소 ····· 92
   8) 학대발생빈도 ····· 99
   9) 학대지속기간 ····· 100
   10) 학대발생원인(학대행위자 원인) ····· 101
   11) 학대발생원인(가족-환경원인) ····· 103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CONTENTS

Part 07 노인학대 상담 및 제공서비스 현황 105

1. 노인학대 상담 ··· 107
   1) 월별 상담횟수 ··· 107
   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 108
   3)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 110
   4) 지역 및 기관별 전체상담 횟수 ··· 112
   5) 지역 및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 횟수 ··· 114
2. 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서비스 ··· 116
   1)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 116
   2)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현황 ··· 117

Part 08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사례분석 결과 119

1. 학대피해노인 현황 ··· 121
   1) 65세 이상 인구 수 대비 학대피해노인 성별 ··· 121
   2)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 121
   3)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 122
   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 124
   5)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 125
   6)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 126
   7)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및 동거자 유형 ··· 126
   8)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127
   9)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 133
   10)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133
   11)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 ··· 134
   12)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 134
   13) 학대피해노인 건강상태 ··· 134
   14)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 정도 ··· 137
2. 학대행위자 현황 ··· 139
   1)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 139
   2) 지역 및 기관별 학대행위자 성별 ··· 139
   3)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141
   4) 학대행위자 결혼유형 ··· 150
   5)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150

CONTENTS

6)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 151
7)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 151
8) 학대행위자 건강상태 ····· 152

Part 09 노인학대 주요 사례 분석 결과 153

1. 경제적 학대 현황 ····· 155
1) 지역 및 기관별 경제적 학대 현황 ····· 155
2)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 157
3)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 158
4)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연령대 ····· 159
5)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장소 ····· 159
6)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빈도 ····· 160
7) 경제적 학대 학대지속기간 ····· 161
8) 경제적 학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161

2.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 162
1)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 162
2)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성별 및 연령대 ····· 164
3)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대상 학대행위자 유형 ····· 166
4)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유형 ····· 167
5)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 168
6)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 169
7)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 170
8)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가구형태 ····· 171

3. 시설학대 현황 ····· 172
1)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 ····· 172
2) 시설학대 신고자 유형 ····· 175
3)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 177
4) 시설학대 학대유형 ····· 178
5) 시설학대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 179
6)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 180
7)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 181
8)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182
9)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 183
10)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 184

CONTENTS

4. 재학대 현황 ····· 185
1) 지역 및 기관별 재학대 현황 ····· 185
2) 재학대 신고자 유형 ····· 187
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 188
4) 재학대 사례판정 ····· 189
5) 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 190
6)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 191
7) 재학대 학대발생장소 ····· 192
8) 재학대 학대발생빈도 ····· 193
9) 재학대 학대지속기간 ····· 194
10)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195
1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195
12)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 197
1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동거여부 ····· 197
14)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 198
15) 재학대 학대행위자 중독 유형 ····· 199

Part 10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 201
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실적 ····· 203
1) 보호노인 현황 ····· 203
2) 보호노인 결혼 유형 ····· 204
3)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 204
4) 보호노인 가구형태 ····· 205
5) 보호노인 주거형태 ····· 205
6) 보호노인 학대 유형 ····· 206
7) 보호노인 치매여부 ····· 207
8) 보호노인의 우울증 검사 ····· 207
9) 퇴소 후 거주 현황 ····· 207
10)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입소자) ····· 208
11)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 ····· 209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CONTENTS

Part 11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211

1.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업무량 ····· 213

Part 12 부 록 215

1.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 ····· 217
2.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 218

Table Contents

[표 3-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 27
[표 3-2]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 28
[표 3-3]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 30
[표 3-4]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 31
[표 3-5]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 32
[표 3-6] 연도별 학대유형 건수 ····· 33
[표 3-7]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 34
[표 3-8]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및 비율 ····· 35
[표 3-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 36
[표 3-10]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 37
[표 3-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38
[표 3-1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39
[표 3-13]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41
[표 3-14]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42
[표 3-15]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 43
[표 4-1]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 47
[표 4-2] 월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 48
[표 4-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 49
[표 4-4]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율 ····· 51
[표 4-5] 시군구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 53
[표 4-6] 발생장소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 59
[표 4-7] 신고자 유형Ⅰ ····· 59
[표 4-8] 신고자 유형Ⅱ(신고의무자) ····· 61
[표 4-9] 신고자 유형Ⅲ (비신고의무자) ····· 61
[표 4-10] 신고접수 경로 ····· 62
[표 4-11] 신고접수 유형 ····· 62
[표 4-12] 신고 경로 인지 유형별 신고자 구분 ····· 63
[표 5-1] 현장조사 ····· 67
[표 5-2] 지역 및 기관별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 67
[표 5-3]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 69
[표 5-4] 시군구별 사례판정 결과 ····· 71

Table Contents

[표 5-5] 사례판정 결과별 노인학대 유형 ····· 77
[표 5-6] 사례판정 결과별 신고자 유형 ····· 78
[표 6-1] 노인학대 유형Ⅰ(학대피해노인 수) ····· 81
[표 6-2] 노인학대 유형Ⅱ(학대유형 건수) ····· 82
[표 6-3] 시군구별 노인학대 유형Ⅱ(학대유형 건수) ····· 82
[표 6-4] 노인학대 유형별 구체적 행위 ····· 89
[표 6-5]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 90
[표 6-6]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연령 ····· 90
[표 6-7]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91
[표 6-8]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91
[표 6-9] 학대발생장소 ····· 92
[표 6-10] 시군구별 학대발생장소 ····· 92
[표 6-11] 학대발생장소별 학대유형 ····· 99
[표 6-12] 학대발생빈도 ····· 99
[표 6-13] 학대발생빈도별 노인학대 유형 ····· 100
[표 6-14] 학대지속기간 ····· 100
[표 6-15] 학대행위자 원인 ····· 101
[표 6-16]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유형 ····· 102
[표 6-17] 가족-환경 원인 ····· 103
[표 7-1] 월별 상담횟수 ····· 107
[표 7-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 108
[표 7-3]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 110
[표 7-4] 지역 및 기관별 전체상담 횟수 ····· 112
[표 7-5] 지역 및 기관별 한 사례당 평균 상담 횟수 ····· 114
[표 7-6]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 116
[표 7-7]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현황 ····· 117
[표 8-1] 65세 이상 인구 수 대비 학대피해노인 성별 분포 ····· 121
[표 8-2]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 분포 ····· 121
[표 8-3]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 122
[표 8-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 124
[표 8-5]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 125

Table Contents

[표 8-6]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 126
[표 8-7]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 126
[표 8-8] 학대피해노인 동거자 유형 ····· 126
[표 8-9]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127
[표 8-10] 시군구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127
[표 8-11]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 133
[표 8-12]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133
[표 8-13]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 ····· 134
[표 8-14]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 134
[표 8-15] 학대피해노인 질병유형 ····· 134
[표 8-16] 학대피해노인 장애 수 ····· 135
[표 8-17]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 ····· 136
[표 8-18]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 136
[표 8-19] 학대피해노인 중독 유형 ····· 136
[표 8-20]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 정도 ····· 137
[표 8-21] 학대행위자 성별 연령분포 ····· 139
[표 8-22] 지역 및 기관별 학대행위자 성별 ····· 139
[표 8-23]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141
[표 8-24] 시군구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141
[표 8-25] 학대행위자 연령별 학대행위자 유형 분포 ····· 147
[표 8-26]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행위자 유형 ····· 148
[표 8-27]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 148
[표 8-28]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 149
[표 8-29] 학대행위자 결혼유형 ····· 150
[표 8-30]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150
[표 8-31] 학대행위자 연령대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150
[표 8-32]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 151
[표 8-33]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 151
[표 8-34] 학대행위자 장애유형 ····· 152
[표 8-35] 학대행위자 중독유형 ····· 152
[표 9-1] 지역 및 기관별 경제적 학대 현황 ····· 155

Table Contents

[표 9-2]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 157
[표 9-3]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 158
[표 9-4]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연령대 ····· 159
[표 9-5]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장소 ····· 159
[표 9-6]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빈도 ····· 160
[표 9-7] 경제적 학대 학대지속기간 ····· 161
[표 9-8] 경제적 학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161
[표 9-9]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 162
[표 9-10]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성별 ····· 164
[표 9-11]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연령대 ····· 165
[표 9-12]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과 학대행위자 유형 ····· 166
[표 9-13]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유형 ····· 167
[표 9-14]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 168
[표 9-15]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 169
[표 9-16]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 170
[표 9-17]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가구형태 ····· 171
[표 9-18]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 ····· 172
[표 9-19] 시설학대 신고자 유형 ····· 175
[표 9-20]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 177
[표 9-21] 시설학대 학대유형 ····· 178
[표 9-22] 시설학대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 179
[표 9-23]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 180
[표 9-24]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 181
[표 9-25]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 ····· 182
[표 9-26]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182
[표 9-27]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 183
[표 9-28]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 184
[표 9-29] 지역 및 기관별 재학대 현황 ····· 185
[표 9-30] 신규-재학대 신고자 유형 ····· 187
[표 9-3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 188
[표 9-32] 신규-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사례판정 ····· 189

Table Contents

[표 9-33] 신규-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 190
[표 9-34]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 191
[표 9-35] 신규-재학대 학대발생장소 ····· 192
[표 9-36] 재학대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 193
[표 9-37] 신규-재학대 학대발생빈도 ····· 193
[표 9-38] 신규-재학대 학대지속기간 ····· 194
[표 9-39]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195
[표 9-40] 신규-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195
[표 9-4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 유형 건수 ····· 196
[표 9-42]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 197
[표 9-4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동거여부 ····· 198
[표 9-44]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 198
[표 9-45] 재학대 학대행위자 중독 유형 ····· 199
[표 10-1] 보호노인 현황 ····· 203
[표 10-2] 보호노인 성별 및 연령대 ····· 203
[표 10-3] 보호노인 결혼 유형 ····· 204
[표 10-4]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 204
[표 10-5] 보호노인 가구형태 ····· 205
[표 10-6] 보호노인 주거형태 ····· 205
[표 10-7] 보호노인 학대 유형 ····· 206
[표 10-8] 보호노인 치매여부 ····· 207
[표 10-9] 보호노인 우울증 검사결과 ····· 207
[표 10-10] 퇴소 후 거주 현황 ····· 207
[표 10-11]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입소자) ····· 208
[표 10-12]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 ····· 209
[표 11-1]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 213

Picture Contents

[그림 2-1] 노인학대 신고접수 ····· 9
[그림 2-2]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신고의무자) ····· 10
[그림 2-3]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비신고의무자) ····· 11
[그림 2-4] 학대피해노인 현황 ····· 12
[그림 2-5]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12
[그림 2-6] 학대행위자 현황 ····· 13
[그림 2-7] 학대행위자 유형 ····· 13
[그림 2-8] 노인학대유형 ····· 14
[그림 2-9] 장소별 노인학대유형 ····· 14
[그림 2-10] 학대발생장소 ····· 15
[그림 2-11] 학대발생빈도 및 지속기간 ····· 16
[그림 2-12] 경제적 학대 현황 ····· 17
[그림 2-13] 경제적 학대 발생장소 및 행위자 유형 ····· 18
[그림 2-14] 치매진단 노인학대 현황 ····· 19
[그림 2-15] 치매진단 노인학대 발생장소 및 행위자 유형 ····· 20
[그림 2-16] 시설 노인학대 현황 ····· 21
[그림 2-17] 시설 노인학대 신고자유형 ····· 21
[그림 2-18] 재학대 현황 ····· 22
[그림 2-19] 재학대 신고자유형 ····· 23
[그림 2-20] 재학대 발생장소 및 행위자 유형 ····· 24
[그림 3-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비율 추이 ····· 27
[그림 3-2]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 비율 추이 ····· 29
[그림 3-3] 연도별 현장조사 건수 및 비율 추이 ····· 30
[그림 3-4] 연도별 사례판정 비율 추이 ····· 31
[그림 3-5]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추이 ····· 32
[그림 3-6] 연도별 학대유형 비율 추이 ····· 33
[그림 3-7]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 34
[그림 3-8]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비율 추이 ····· 35
[그림 3-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비율 추이 ····· 36
[그림 3-10]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비율 추이 ····· 37
[그림 3-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비율 추이 ····· 38

Picture Contents

[그림 3-1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40
[그림 3-13] 연도별 학대행위자 본인 추이 ····· 40
[그림 3-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 41
[그림 3-15]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 42
[그림 3-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 추이 ····· 43
[그림 4-1] 전체 신고건수 비율 ····· 47
[그림 4-2] 학대사례 건수 대비 재학대 건수 비율 ····· 47
[그림 4-3] 월별 신고접수 건수 추이 ····· 48
[그림 4-4] 지역 기관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 50
[그림 4-5] 기관별 노인학대 신고접수율(노인인구 천명당) ····· 52
[그림 4-6] 신고자 유형Ⅰ ····· 59
[그림 4-7] 신고자 유형Ⅱ ····· 61
[그림 4-8] 신고접수 유형 ····· 62
[그림 4-9] 신고의무자의 신고 경로 인지 ····· 63
[그림 4-10]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경로 인지 ····· 63
[그림 5-1] 사례판정 결과 ····· 70
[그림 5-2] 사례판정 결과별 노인학대 유형 ····· 77
[그림 5-3] 사례판정 결과별 신고자 유형 ····· 78
[그림 6-1] 노인학대 유형Ⅰ(학대피해노인 수) ····· 81
[그림 6-2] 노인학대 유형Ⅱ(학대유형 건수) ····· 82
[그림 6-3] 학대발생장소 ····· 92
[그림 6-4] 학대발생빈도 ····· 99
[그림 6-5] 학대지속기간 ····· 100
[그림 6-6] 학대행위자 원인 ····· 101
[그림 6-7]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유형 ····· 102
[그림 6-8] 가족-환경 원인 ····· 103
[그림 7-1] 월별 상담횟수 ····· 107
[그림 7-2]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 109
[그림 7-3]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 111
[그림 7-4] 지역 및 기관별 전체상담 횟수 ····· 113
[그림 7-5]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 횟수 ····· 115

Picture Contents

[그림 8-1]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분포 ····· 122
[그림 8-2]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 124
[그림 8-3]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 125
[그림 8-4] 학대행위자 연령분포 ····· 139
[그림 8-5]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141
[그림 9-1] 지역 및 기관별 경제적 학대 현황 ····· 156
[그림 9-2]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 157
[그림 9-3]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 158
[그림 9-4] 경제적 학대 행위자 연령대 ····· 159
[그림 9-5]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장소 ····· 159
[그림 9-6]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빈도 ····· 160
[그림 9-7] 경제적 학대 학대지속기간 ····· 161
[그림 9-8]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 164
[그림 9-9]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성별 ····· 164
[그림 9-10]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연령대 ····· 165
[그림 9-11]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과 학대행위자 유형 ····· 166
[그림 9-12]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유형 ····· 167
[그림 9-13]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 168
[그림 9-14]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 169
[그림 9-15]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 170
[그림 9-16]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가구형태 ····· 171
[그림 9-17]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 177
[그림 9-18] 시설학대 학대유형 ····· 178
[그림 9-19]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 180
[그림 9-20]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 181
[그림 9-21]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 184
[그림 9-22] 기관별 재학대 접수 건수 및 비율 ····· 186
[그림 9-2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 188
[그림 9-24]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사례판정 비율 ····· 189
[그림 9-25] 신규-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 190
[그림 9-26]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 191

Picture Contents

[그림 9-27] 신규-재학대 학대발생장소 ····· 192
[그림 9-28] 재학대 학대발생빈도 ····· 194
[그림 9-29] 신규-재학대 학대지속기간 ····· 194
[그림 9-30]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196
[그림 9-3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 유형 ····· 197
[그림 9-32]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 198
[그림 10-1] 보호노인 성별 및 연령대 ····· 204
[그림 10-2] 보호노인 가구형태 ····· 205
[그림 10-3] 보호노인 주거형태 ····· 206
[그림 10-4] 보호노인 학대 유형 ····· 206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언,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접수, 조사 및 개입 등의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전문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 보호노인

보호노인이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입소자와 이용자의 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입소자는 쉼터에서 숙식과 함께 치유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대상을 말하는 것이며, 이용자는 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 치유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대상을 의미

노인학대 신고 접수

신고접수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신고 및 상담 목적의 모든 사례

- 재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사례

신고자 유형

-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 자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 등의 직군이 포함됨(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비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본 보고서에서는 친족, 타인, 경찰, 관련기관, 학대행위자 본인, 학대피해 노인 본인 등으로 분류됨

학대발생장소

가정내 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생활시설 학대

노인복지법 제31조의제1호, 제2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이용시설 학대

노인복지법 제31조의제3호, 제4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등)과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 같은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병원 학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공공장소 학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나 여럿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현장조사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 행위자로 신고된 자를 조사하기 위한 방문을 의미함

응급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당시 응급한 노인학대 상황으로 의심되며,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당시 노인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가운데 응급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이며, 신고접수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 실시

사례판정

현장조사 및 신고접수 당시 파악된 정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응급 사례, 비응급 사례, 잠재적 사례, 일반사례로 분류하는 과정

학대사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함

- 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됨. 또한 학대 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되며, 노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말함

- 비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이 아닌 경우,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됨

- 잠재적 사례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기술 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됨

일반사례

신고 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 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를 의미함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사용 등)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중복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중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상담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 학대상담

학대상담이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단한 사례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을 의미함

- 일반상담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로 유관기관 안내 및 복지서비스 등의 단순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을 의미함

- 접수상담

신고접수 시의 초기 상담을 의미함

- 진행상담

사례개입을 위해 진행되는 모든 상담을 의미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상담, 학대행위자 상담, 관련자 및 주변인 상담, 현장조사 및 방문 상담 등을 말함

- 종결상담

학대피해노인의 위험요인 제거 및 학대행위자 분리 등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종결을 앞두고 실시한 상담을 말함. 사례 종결여부는 종결지표를 통해 결정되며, 이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종결 이전에 확인하는 점검리스트의 기능을 함

사후관리

종결된 사례에 대해 학대피해노인이 안전한지 학대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을 말함

복지서비스연계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게 각종 사회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필요자원을 연계·제공하는 서비스

법률서비스연계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법적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에 대한 정보나 법률지원을 연계·제공하는 서비스

의료서비스연계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증진 및 학대행위자의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적 치료를 연계·제공하는 서비스

보호서비스

학대피해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킴이 연결 및 거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가구형태

노인독거가구

다른 가구원 없이 노인 혼자 거주하는 가구형태

노인부부 가구

학대피해노인과 배우자만으로 이루어진 가구형태

자녀동거 가구

학대피해노인과 자녀만 동거하는 가구형태

손자녀동거 가구

학대피해노인과 손자녀만 동거하는 가구형태

자녀·손자녀 동거 가구

학대피해노인과 자녀 및 손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가구형태

건강상태

치매

- 치매진단

의학적 검사를 통해 의사가 치매로 진단한 상태

- 치매의심

간이정신상태검사나 학대피해노인의 상황에 따라 치매로 의심되는 상태

ADL/IADL

- 일상생활수행능력: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몸단장하기, 집안일 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등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기타 용어정리

학대행위자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행하는 자

부양의무자

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할 의무가 있는 자로 노인의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노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해당됨

보호자

노인을 보호하는 자로 부양의무자 및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를 받는 사람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요약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요약

- 본 보고서는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상담사업 사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본 보고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및 상담이 진행된 사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하여 추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방향과 노인보호 정책마련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보고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된 19,391건의 사례를 분석하였음
- 신고접수 건수 19,391건에 대해 현장조사와 상담진행을 통하여 확인된 학대사례는 6,774건임
- 본 보고서 자료는 노인학대 신고접수, 상담, 학대 유형,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학대발생 원인, 서비스제공에 대한 각각의 현황을 정리하였음
-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2017. 6. 3.)에 따라 2018년 1월 이후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노인학대로 규정하였음. 단, 기존 개입한 노인학대 사례(만 65세 미만)를 중심으로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져 일부 항목의 경우 기존 사례를 포함한 수치임
- 지역별 현황의 경우, 각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처리현황을 단순 집계한 것으로서 각 유형별 현황의 숫자가 많지 않아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지 못하므로 단순비교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노인학대 신고접수

노인학대 신고접수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상담 및 신고목적의 모든 사례를 의미하며, 신고 당시 수집한 기초정보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각 기관은 자체사례회의 및 사례판정위원회 등을 거쳐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로 분류함

-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전체신고 건수는 19,391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16,973건 ➜ 19,391건) 하였음
  - **일반사례[1]는 12,617건(65.1%)**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10,714건 ➜ 12,617건)
  - **학대사례[2]는 6,774건(34.9%)**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6,259건 ➜ 6,774건)
- 학대사례 6,774건 중 신고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1,431건(21.1%), 서울특별시 736건(10.9%), 경상북도 599건(8.8%)의** 순으로 나타남

신고자 유형

노인학대 신고자의 유형은 크게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되며,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 자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의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 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 등으로 분류함. 비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본 보고서에서는 친족, 타인, 경찰 등 관련기관, 학대행위자 본인, 학대피해노인 본인 등으로 분류함

- 노인학대 사례 6,774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860건(12.7%)이며 비신고의무자는 5,914건(87.3%)으로 나타남**
  -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8.4% 감소(939건 ➜ 860건)
  -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11.2% 증가(5,320건 ➜ 5,914건)

---

1) 일반사례란, 신고 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를 의미함.

2) 학대사례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함.

▶ 신고접수 경로 및 접수유형, 경로 인지 유형

신고접수 경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사례의 응급성 정도, 현재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및 학대 지속성 여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대처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또는 112 신고 등으로 분류함

- **신고접수 경로 유형**을 살펴보면, **112이관을 통한 접수가 3,838건(56.7%)**으로 약 절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세부 유형으로 자체접수 2,365건(34.9%), 행정복지센터 173건(2.6%), 시청 152건(2.2%) 등이 있음

신고접수 유형은 신고접수 경로의 세부적인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를 통한 전화 신고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신고, 신고앱을 통한 신고, 신고자의 기관 내방 또는 상담원 방문 등의 대면신고 및 서신에 의한 신고로 분류함

- 신고접수 유형을 살펴보면, **서신[3]을 통한 접수가 4,147건(61.2%)**으로 과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세부 유형으로 전화 2,326건(34.3%), 대면 256건(3.8%), 온라인 45건(0.7%)이 있음

신고 경로 인지 유형은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알게 된 경로를 의미함

- 신고 경로 인지 **유형**을 살펴보면,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이 5,868건(86.6%)**으로 과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세부 유형으로는 "타 기관 안내"가 278건(4.1%), "이미 개입 경험이 있으며 직접 홍보의 경우"가 186건(2.7%)으로 나타남
  - **신고의무자의 신고 경로 인지(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 : 전년 대비 3.5% 감소 (823건 ➜ 794건)**
  -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경로 인지(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 : 전년 대비 18.3% 증가 (4,289건 ➜ 5,074건)**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현장조사란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를 조사하기 위한 방문을 의미하며, 학대사례의 경우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완강한 거부,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악화로 인한 병원 및 시설입소, 학대피해노인의 이사 및 이주 또는 학대피해노인이 현장조사를 원하지 않고, 제3의 장소나 기관 내방 등을 원하여 불가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3) 112 이관 시 이메일 및 팩스 등으로 접수된 경우 신고접수 유형 구분 시 서신으로 분류.

- 2021년 전체 학대사례 6,774건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6,696건(98.8%)임**
  ※ 현장조사 건수 : '17년(4,443건) – '18년(4,965건) – '19년(5,084건) – '20년(6,152건) – '21년(6,696건)

현장조사와 방문상담은 학대피해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되는 상담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주거환경 및 생활수준, 심리상태, 주변 자원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여부 및 생활상태 등을 확인하는데 용이함

- 전체 학대사례 6,774건에 대한 **방문상담 횟수는 37,889회**로 한 사례 당 방문상담 횟수는 5.6회로 나타남

▶ 사례판정

사례판정은 현장조사 실시 후 신고접수 당시 파악된 정보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학대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 2021년 전체 학대사례 6,774건 중 사례판정 비율은 응급 사례가 142건(2.1%), 비응급 사례가 4,445건(65.6%), 잠재적 사례가 2,187건(32.3%)으로 나타남
  - 응급 사례[4]의 경우 전년 대비 13.9% 감소(165건 ➜ 142건)
  - 비응급 사례[5]의 경우 전년 대비 13.3% 증가(3,923건 ➜ 4,445건)
  - 잠재적 사례[6]의 경우 전년 대비 0.7% 증가(2,171건 ➜ 2,187건)
- 응급 및 비응급 사례의 경우 "신체적 - 정서적 - 방임", 잠재적 사례의 학대 유형은 "정서적 - 신체적 - 방임"의 순으로 나타남

▶ 재학대

재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사례를 의미하며, 2021년 학대사례 6,774건 중 **재학대 건수는 739건(10.9%)**으로 여성피해노인이 597명(80.8%). 남성피해노인이 142명(19.2%)으로 나타남

※ 재학대 건수 : '17년(359건) – '18년(488건) – '19년(500건) – '20년(614건) –'21년(739건)

---

4) 응급사례는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5) 비응급사례는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이 아닌 경우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을 의미함.

6) 잠재적 사례는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간의 의사소통기술 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함.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근거하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등으로 분류하며, 2021년 학대 유형 건수는 10,624건[7]임

- **정서적 학대 4,627건(43.6%), 신체적 학대 4,390건(41.3%), 방임 691건(6.5%)**, 경제적 학대 406건(3.8%), 성적학대 260건(2.4%), 자기방임 204건(1.9%), 유기 46건(0.4%) 순으로 나타남
- 전체 학대유형 10,624건 중 성별에 따른 학대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정서적 학대 : 여성 3,656건(79.0%), 남성 971건(21.0%)
  - 신체적 학대 : 여성 3,453건(78.7%), 남성 937건(21.3%)
  - 방임 : 여성 470건(68.0%), 남성 221건(32.0%)
  - 경제적 학대 : 여성 296건(72.9%), 남성 110건(27.1%)
  - 성적 학대 : 여성 206건(79.2%), 남성 54건(20.8%)
  - 자기방임 : 여성 85명(41.7%), 남성 119명(58.3%)
  - 유기 : 여성 28명(60.9%), 남성 18명(39.1%)
- 학대 유형별로 학대피해노인의 연령대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자기방임 학대 유형의 경우 70대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반면, 성적과 방임, 유기 학대 유형은 80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유기의 경우 70대와 80대 모두 비슷한 비율로 발생함
-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의 학대행위자 유형은 "배우자 - 아들 - 딸" 이며, 방임의 경우는 "기관[8] - 아들 - 딸"** 순으로 나타남. 또한 방임의 경우, 자녀에 의한 방임과 노인복지시설 등의 기관을 이용하거나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을 방임하는 것을 모두 포함함
  - 기타 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유형 순위
    - 경제적 학대(아들 - 딸- 기관)
    - 성적 학대(기관 - 배우자 - 타인)
    - 유기(아들 - 딸 - 배우자)

7)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수치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수치는 차이가 있음. 즉, 학대피해노인 1명이 학대행위자로부터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우, 학대사례는 1건이나 학대유형 건수는 2건으로 집계됨.

8) 노인복지시설 등의 기관을 이용하거나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을 방임하는 경우를 의미함.

학대발생장소

학대발생장소

노인학대의 유형을 학대발생 공간에 따라 분류하면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등으로 분류함

- 전체 학대사례 6,774건 중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5,962건(88.0%)**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그 외 세부 유형으로는 생활시설 536건[9](7.9%), 이용시설 87건(1.3%), 기타 73건(1.1%), 병원 62건(0.9%), 공공장소 54건(0.8%) 순으로 나타남
  - 가정 내 학대의 경우 전년 대비 8.3% 증가(5,505건 ➜ 5,962건)
  - 병원의 경우 전년 대비 67.6% 증가(37건 ➜ 62건)

노인학대 상담

노인학대 상담

노인학대 상담은 일반상담과 학대상담으로 구분되며, 일반상담은 단순 정보제공 등의 일반사례에 대한 상담으로 보통 정보제공과 함께 상담이 종료되며, 학대상담의 경우 학대상담방법과 학대상담과정에 따라 분류함

- 전체 신고접수 건수 19,391건에 대한 **전체 상담횟수는 200,513회**임
  - **학대상담 횟수 159,446회**, 한 사례당 평균 상담 횟수 23.5회
  - **일반상담 횟수 41,067회**, 한 사례당 평균 상담 횟수 3.3회
- 전년 대비 상담 횟수는 **9.7% 증가**(182,849회 ➜ 200,513회)
  - 학대상담 횟수 경우 전년 대비 5.7% 증가(150,846회 ➜159,446회)
  - 일반상담 횟수 경우 전년 대비 28.3% 증가(32,003회 ➜ 41,067회)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구분

학대상담방법은 전체 학대상담 횟수 159,446회에 대한 구체적 상담방법에 따른 분류로 전화상담, 방문상담, 내방상담, 서신을 통한 상담, 온라인 상담, 기타 등이 있음

- **전화상담의 경우 108,919회(68.3%)**로 전년 대비 5.9% 증가(102,844회 ➜ 108,919회)
- **방문상담의 경우 37,889회(23.8%)**로 전년 대비 4.0% 증가(36,443회 ➜ 37,889회)

9) 2015년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에 한하여 생활시설 학대로 집계함.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구분

학대상담과정은 전체 학대상담 횟수 159,446회에 대한 상담과정에 따른 분류로 접수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로 분류함

- 상담과정에 따라 살펴보면 **진행상담 120,362회(75.5%)**, 사후관리 25,170회(15.8%), 종결상담 7,000회(4.4%), 접수상담 6,914회(4.3%) 순으로 나타남

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 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공 서비스는 크게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연계, 법률서비스연계, 의료서비스연계,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으로 분류함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학대피해노인 6,774명에 대해 **총 245,952회로 한 사례당 평균 36.3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음
  - 세부 유형으로 살펴보면, **상담서비스 132,044회(53.7%)**, **정보제공서비스 89,719회 (36.5%)**, 복지서비스연계 20,349(8.3%), 보호서비스 1,897회(0.8%), 의료서비스연계 1,449회(0.6%), 법률서비스연계 494회(0.2%)의 순으로 나타남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학대행위자 8,423명에 대해 **총 56,388회로 한 사례당 평균 6.7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음
  - 세부 유형으로 살펴보면, **상담서비스 28,565회(50.7%)**, **정보제공서비스 25,742회(45.7%)**, 복지서비스연계 1,845회(3.3%), 의료서비스연계 208회(0.4%)의 순으로 나타남

학대피해노인 현황

성별 및 연령

- 전체 학대피해노인은 6,774명으로 **여성이 5,143명(75.9%), 남성이 1,631명(24.1%)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약 3.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학대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 정서적 학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정서적 - 신체적 - 방임의 순**으로 학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남성 노인의 학대 피해 유형 : 정서적 971건(40.0%) - 신체적 937건(38.6%) - 방임 221건(9.1%)**
- **여성 노인의 학대 피해 유형 : 정서적 3,656건(44.6%) - 신체적 3,453건(42.1%) - 방임 470건(5.7%)**

- 연령대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70대 2,899명(42.8%), 80대 2,038명(30.1%), 60대 1,428명(2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결혼 및 동거가족

학대피해노인의 결혼 및 동거가족 형태는 노인 혼자 거주하는 노인독거가구, 노부부만 거주하는 노인부부가구와 노인과 손자녀만 거주하는 손자녀동거가구, 자녀와 손자녀까지 함께 거주하는 자녀·손자녀동거가구, 노인과 자녀만 동거하는 자녀동거 가구로 분류되며, 기타 가구형태로는 시설에 거주하거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형태 등을 의미함. 다만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가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실행하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동거, 비동거 어느 한쪽의 위험요인이 더 높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 학대피해노인의 **결혼유형**을 살펴보면 **배우자 있음이 4,000건(59.0%), 배우자 없음이 2,774건(41.0%)**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의 **동거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학대피해노인 6,774명 중 **학대행위자와 동거하는 경우는 4,820명(71.2%)**이며, 비동거는 1,954명(28.8%)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와 동거하는 4,820명에 대한 **동거 가족유형(중복)은 총 7,053명**이며,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3,190명(45.2%)으로 가장 높고, 아들이 1,979명(28.1%), 딸 585명(8.3%), 손자녀가 502명(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노인부부가구가 2,332명(34.4%), 자녀동거가구가 2,111명(31.2%), 노인독거가구가 1,195명(17.6%)등의 순으로 나타남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및 교육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생활이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급여 등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함

- 학대피해노인의 6,774명 중 **수급자는 1,165명(17.2%)**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의 교육정도는 초졸이 2,476명(36.6%)으로 가장 높았고 무학이 1,682명 (24.8%), 중졸이 1,231명(18.2%)의 순으로 나타나 초졸과 무학이 주를 이루고 있음

건강상태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항목은 질병 유형, 장애 수, 장애유형, 치매정도, 중독유형 등이 해당되며,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상태는 사례개입 시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 상담 시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항목임

- **질병유형**으로는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디스크, 골다공증, 신경통 등이 있으며,
  - 전체 학대피해노인 6,774명 중 하나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는 5,872명(86.7%)으로, 고혈압 1,372명(23.4%), 관절염 882명(15.0%), 당뇨병 781명(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로 구분되며, 신체장애는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등으로, 정신장애는 지적, 우울, 정신분열 등으로 분류함
  - 전체 학대피해노인 6,774명 중에서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대피해노인은 628명(9.3%)으로 **신체장애 379명(60.4%), 정신장애 249명(39.6%)**으로 나타남
  - 세부 유형으로는 **우울장애 178명(28.3%), 지체장애 141명(22.5%), 청각장애 100명(1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치매정도**는 크게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와 치매로 의심하는 치매의심으로 분류하며,
  -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가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는 1,699명(25.1%)**으로 **치매의심이 607명(9.0%), 치매로 병원진단을 받은 치매진단은 1,092명(16.1%)**으로 나타남
- **중독유형**은 중독성을 지닌 항목의 중독여부와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약물 사용 장애, 도박중독 등이 해당됨
  - 학대피해노인 6,774명 중 **98명(1.4%)이 하나 이상의 중독**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알코올 사용 장애가 94명(95.9%)**으로 나타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일상생활정도**는 학대피해노인의 기능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으로 분류됨
  -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은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타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등을 통해 파악함
  -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은 몸단장하기, 집안일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 사러가기, 금전 관리하기, 전화 사용하기, 약 챙겨먹기 등을 통해 파악함
-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일상생활정도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경우 각각의 항목은 72.3~74.7% 수준에서,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경우 67.2~73.1% 수준에서 "완전자립"이 가능한 상태로 나타남

▶ 직업유형

학대피해노인의 직업유형은 학대피해노인의 주 수입원인 직업의 유무와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업유형은 학대피해노인의 생활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학대피해노인의 **직업유형**을 살펴보면, **무직이 5,851명(86.4%)**으로 과반의 비율을 차지하며, 단순노무 종사자가 315명(4.7%), 농·어·축산업 종사자가 188명(2.8%)등의 순으로 나타남

학대행위자 현황

성별 및 연령

- 전체 학대행위자는 8,423명[10]으로 **남성이 5,413명(64.3%), 여성이 3,010명(35.7%)이며, 여성에 비해 남성의 수가 약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학대행위자 8,423명 중 **아들이 2,287명으로 27.2%에** 해당하였으며, 이는 남성 학대 행위자 5,413명 중 약 42.3%에 해당하는 수치임
-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가 **전체 학대행위자의 2,486명(29.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남성 학대행위자 연령대 : 70세 이상 2,050명(37.9%) - 50대 1,195명 (22.1%) - 40대 973명 (18.0%)**
  - **여성 학대행위자 연령대 : 50대 1,291명(42.9%) - 60대 773명(25.7%) - 40대 420명(14.0%)**
- 한편 65세 이상 학대행위자가 65세 이상 노인을 학대하는 **노(老)·노(老)학대는 총 3,133건**으로 전체 학대행위자 수의 37.2%에 해당됨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는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으로 분류하며, 친족은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등의 세부 항목으로, 타인은 동거인, 이웃 등으로, 기관은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됨

- 전체 학대행위자 8,423건에 대한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배우자 2,455명(29.1%), 아들 2,287명(27.2%), 기관 2,170명(25.8%)의 순으로 나타남. 2020년까지 노인학대의 최대 학대행위자는 지속적으로 아들이었으나 최초로 배우자-아들 순으로 역전되었음
  - 아들, 배우자,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등 **친족의 경우가 5,792명(68.8%)**으로 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학대행위자가 본인인 경우는 204명(2.4%)이며 **전년 대비 7.7% 감소**(221건 ➜ 204건)

결혼유형

- 학대행위자 결혼유형은 크게 배우자 있음과 배우자 없음으로 구분되며 **배우자 있음은 5,480명(65.1%), 배우자 없음은 2,943명(34.9%)**으로 나타남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초혼이 5,001명(59.4%)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미혼이 1,881명(22.3%)으로 가장 많았음

10)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의 수와 학대행위자의 수는 차이가 있음.

▶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및 교육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생활이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급여 등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함

- 학대행위자의 8,423명 중 **수급자는 799명(9.5%)**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4,075명(48.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대졸 이상이 1,732명(20.6%)으로 나타남

▶ 건강상태

학대행위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항목은 장애유형, 중독 유형 등이 있으며,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로 분류하고, 신체장애는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등으로 분류, 정신장애는 지적, 우울, 정신분열 등으로 분류함

- 학대행위자 8,423명 중에서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대행위자는 **총 1,049명(12.5%)**으로 **정신장애 754명(71.9%), 신체장애가 295명(28.1%)**으로 나타남
  - 세부 유형별로 보면 **정신분열 342명(32.6%), 우울장애 227명(2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중독 유형은 중독성을 지닌 항목의 중독여부와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약물 사용 장애, 도박중독 등이 해당됨
  - 학대행위자 중 **1,224명(14.5%)이 하나 이상의 중독**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중 **알코올 사용장애가 1,158명(94.6%)**, 약물 사용장애가 36명(2.9%), 도박중독이 30명(2.5%)으로 나타남

▶ 직업유형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은 학대행위자의 주 수입원인 직업의 유무와 종류를 의미하며, 학대행위자의 생활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학대피해노인의 경제적 부양부담과도 연결됨

-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을 살펴보면, **무직이 4,582명(54.4%)**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서비스·판매 종사자 1,499명(17.8%), 단순 노무 종사자 698명(8.3%), 전문직 600명 (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상담원 업무량

상담원 업무량

- 상담원의 업무량 분석지표로는 신고접수 건수, 상담 횟수, 현장조사 건수, 방문상담 횟수,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횟수,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횟수 등을 산정함
- 노인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은 신고접수 업무부터 현장조사, 서비스제공에 이르기까지 상담원 1인이 학대사례에 대한 모든 영역을 수행하는 업무구조로 상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됨

상담원 1인당 업무량

- 상담원 1인당 평균 업무량은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체 업무량을 **상담원 296명**(기관장 제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2021년 한 해 동안 상담원 1인당 신고접수 건수는 65.5건, 상담 횟수는 677.4회, 현장조사는 22.6건, 방문상담 횟수는 128.0회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 1인당 제공서비스는 830.9회, 학대행위자 1인당 제공서비스는 190.5회임

PART

01

서 론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1 서 론

1. 발간목적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제도적 발달이 늦은 것은 사실이나, 지난 10여년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활동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제고됨은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질적 성장을 거듭하였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1개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19개[1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학대피해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국의 노인학대 현황 추이를 분석하고 노인학대와 관련한 인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한국 사회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노인학대 예방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11) 이 중 전남서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으로 설치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음.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통계청 승인번호 117067)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제4호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근거에 따라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기록된 노인학대 사례 자료를 분석하였음

3. 자료수집과정

본 자료는 2021년 한 해 동안 진행된 노인학대 예방 사업실적을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집계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며, 해당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4. 자료분석

모든 항목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의미 있는 몇 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노인학대 현황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주요 학대사례에 대한 연도별 변화('12년~'21년) 추이를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각 항목의 합계가 100%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2017. 6. 3.)에 따라 2018년 1월 이후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노인학대로 규정하였다. 단, 기존 개입한 노인학대사례(만 65세 미만)를 중심으로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져 일부 항목의 경우 기존 사례를 포함한 수치이다.

5. 주요내용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집계된 노인학대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다음 항목에 대한 실적을 담고 있다.

분 류	내 용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	•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 연도별 신고자 유형 •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 연도별 재학대 건수 •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 •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 신고접수 건수 • 신고자 유형 • 신고접수 경로 및 경로 인지 유형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 현장조사 • 사례판정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 노인학대 유형Ⅰ(학대피해노인 수) • 노인학대 유형Ⅱ(학대 유형 건수) • 학대발생장소, 학대발생빈도, 학대지속기간, 학대발생원인	
노인학대 상담 및 제공서비스 현황	• 노인학대 상담 횟수 • 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서비스 현황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사례분석 결과	• 학대피해노인 현황 - 성별, 연령대, 학대유형, 결혼유형, 동거여부 및 동거자 유형 - 가구형태, 주거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교육정도, 직업유형 - 건강상태, 일상생활 정도	
	• 학대행위자 현황 - 성별, 연령대, 결혼유형 -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학대행위자 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교육정도, 직업유형 - 건강상태	
노인학대 주요 사례분석 결과	• 경제적 학대 현황 •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현황 • 시설학대 현황 • 재학대 현황	
기타실적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ART

02

노인학대 주요통계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 노인학대 주요통계

1. 노인학대 신고접수

- (학대사례) 6,774건, 전년대비 **8.2% 증가**('20년 6,259건 → '21년 6,774건)
- (일반사례) 12,617건, 전년대비 **17.8% 증가**('20년 10,714건 → '21년 12,617건)
- (전체사례) 19,391건, 전년대비 **14.2% 증가**('20년 16,973건 → '21년 19,39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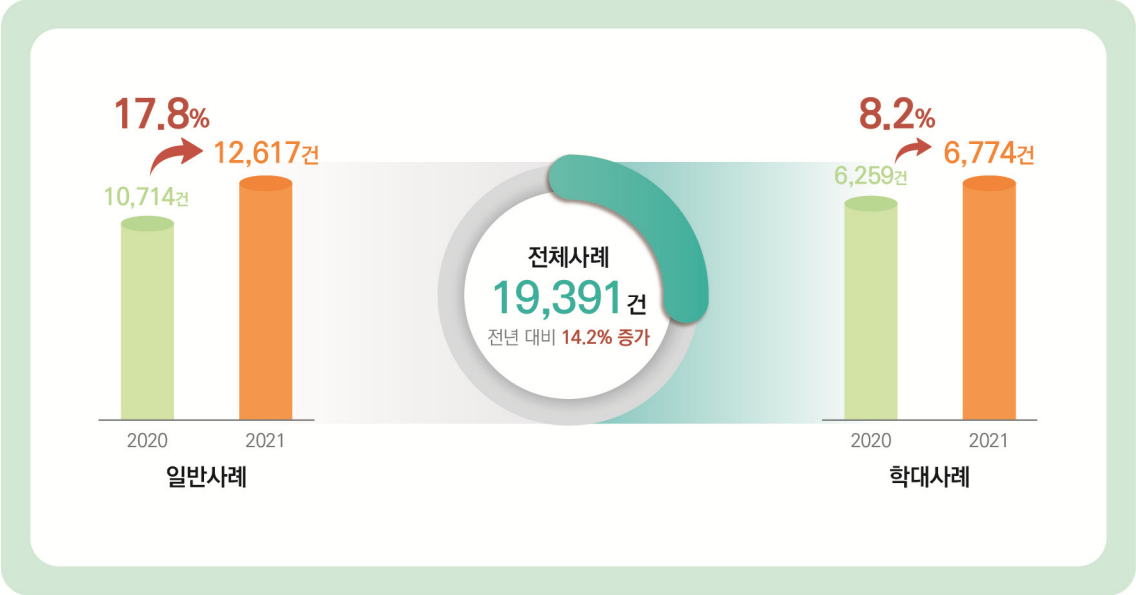

그림 2-1 노인학대 신고접수

2.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

▶ (신고의무자) 860명, 전년대비 **8.4% 감소**('20년 939명 → '21년 860명)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전년 대비 32.5% 증가('20년 246명 → '21년 326명)
- 노인복지시설 설치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전년 대비 219.2% 증가('20년 26명 → '21년 83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및 요양직 직원 전년 대비 71.9% 감소('20년 89명 → '21년 25명)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전년 대비 61.2% 감소('20년 116명 → '21년 45명)
-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전년 대비 60.0% 감소('20년 25명 → '21년 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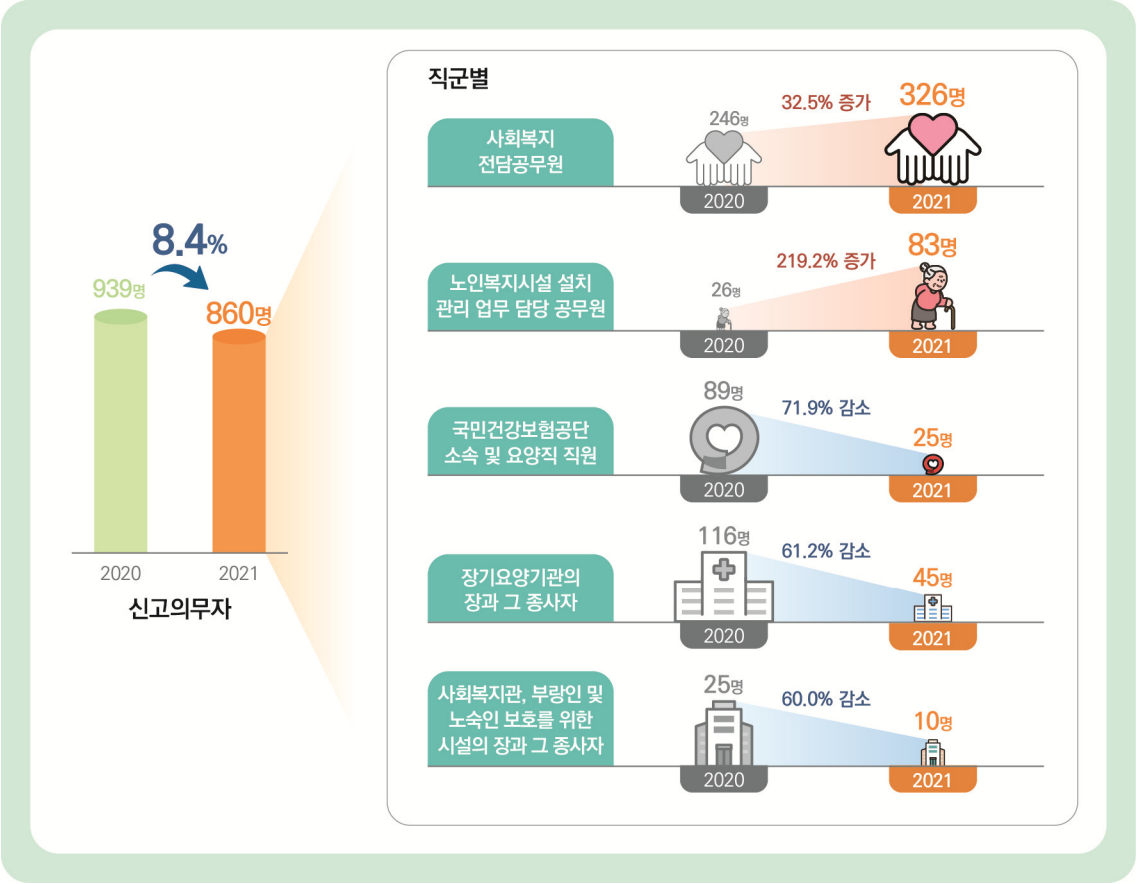

그림 2-2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신고의무자)

▶ (비신고의무자) 5,914명, 전년대비 **11.2% 증가**('20년 5,320명 → '21년 5,914명)

- 경찰 전년 대비 20.3% 증가('20년 3,455명 → '21년 4,155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년 대비 11.9% 증가('20년 252명 → '21년 282명)
- 학대피해노인 본인 전년 대비 19.8% 감소('20년 450명 → '21년 36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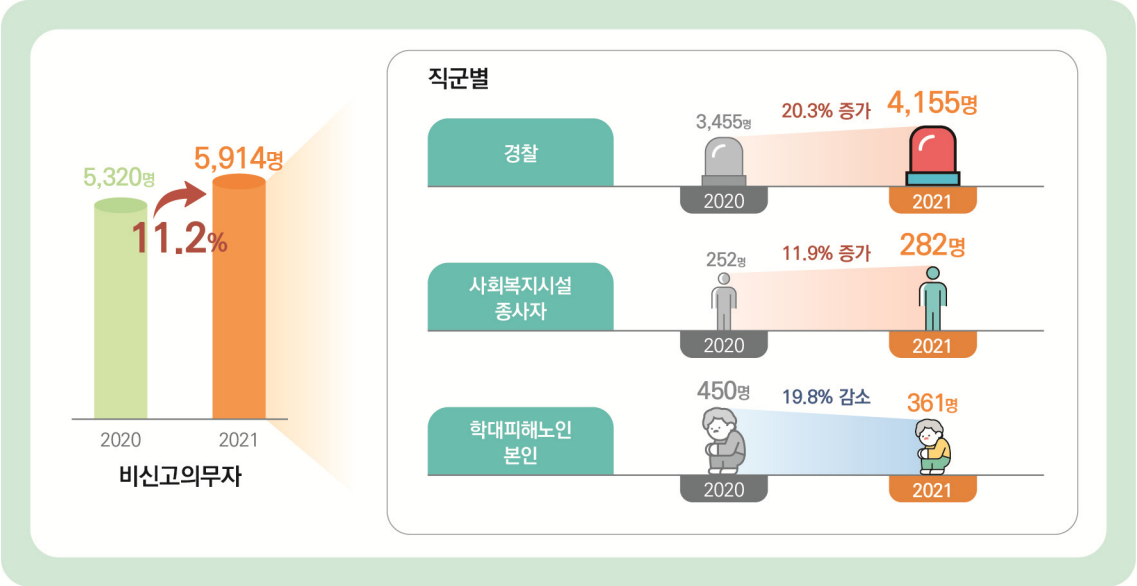

그림 2-3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비신고의무자)

3. 노인학대 피해노인 현황

▶ (학대피해노인) 6,774명, 전년대비 **8.2% 증가**('20년 6,259명 → '21년 6,774명)

- 남성: 1,631명(24.1%) / 여성: 5,143명(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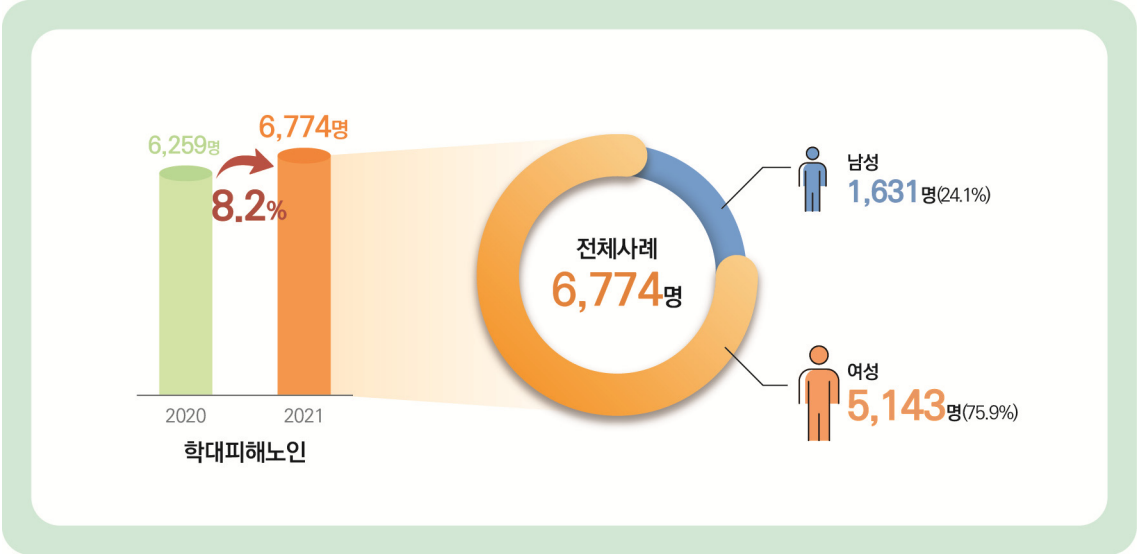

그림 2-4 학대피해노인 현황

▶ (가구형태) "자녀동거 - 노인부부" → "노인부부 - 자녀동거" 순으로 변동

- 자녀동거('20년 32.9% → '21년 31.2%)
- 노인부부('20년 32.7% → '21년 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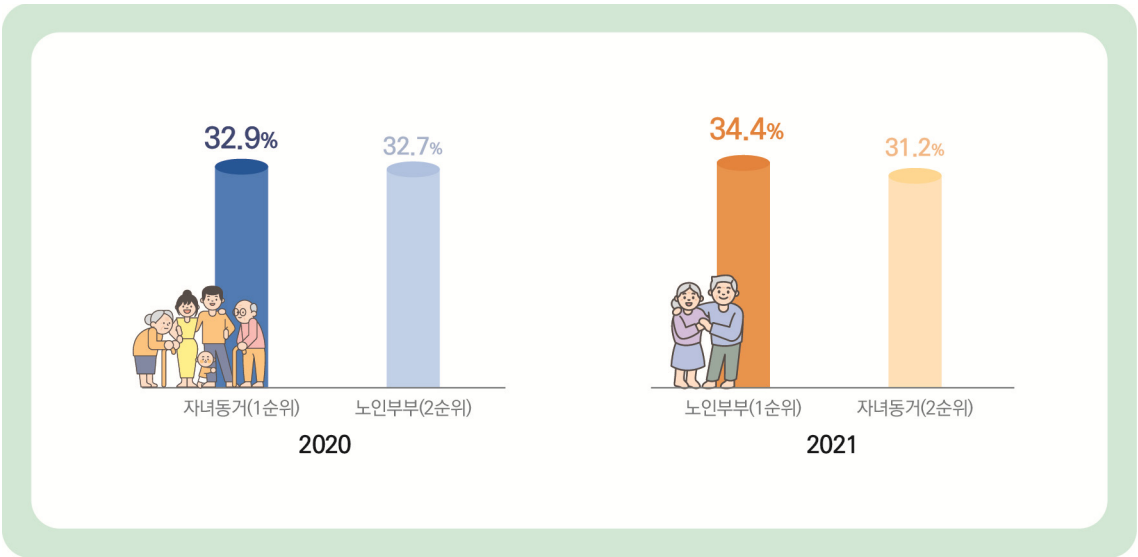

그림 2-5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4. 노인학대 행위자 현황

▶ (학대행위자) 8,423명, 전년대비 **25.8% 증가**('20년 6,698명 → '21년 8,423명)

- 남성: 5,413명(64.3%) / 여성: 3,010명(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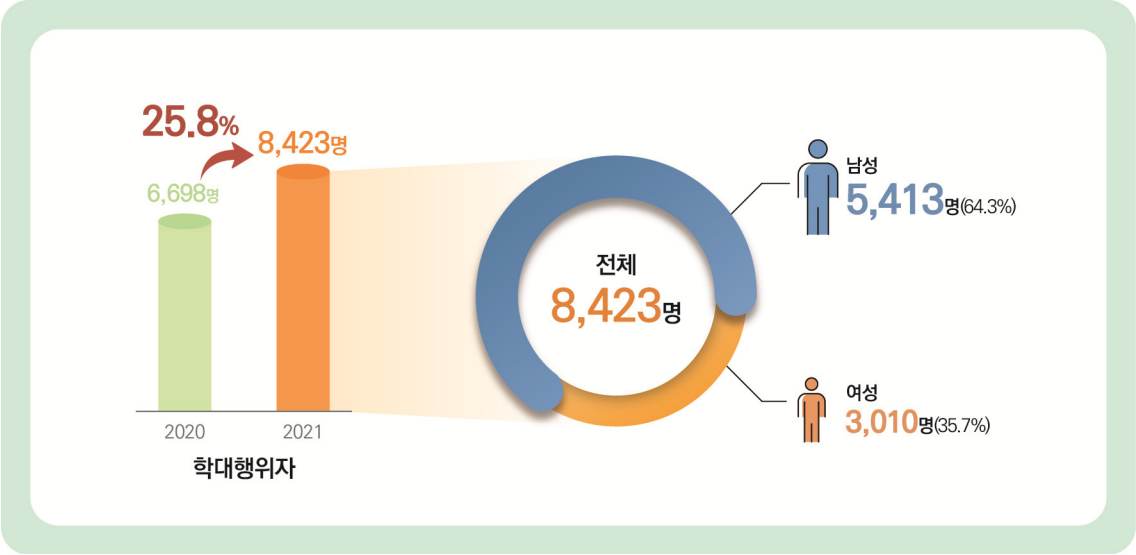

그림 2-6 학대행위자 현황

▶ (행위자 유형) "아들 - 배우자" → "배우자 - 아들" 순으로 변동

- 아들('20년 34.2% → '21년 27.2%)
- 배우자('20년 31.7% → '21년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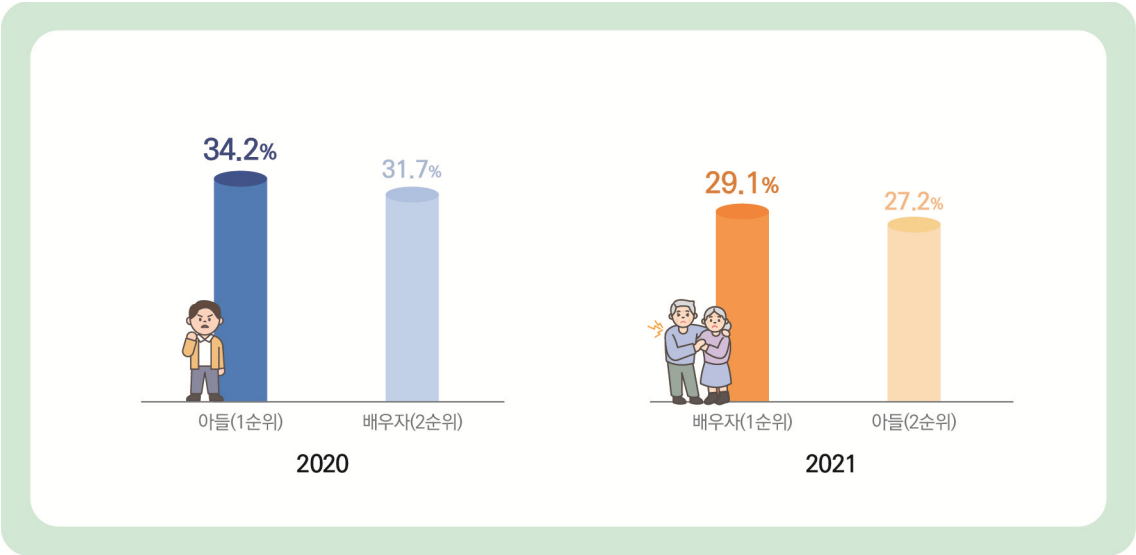

그림 2-7 학대행위자 유형

5. 노인학대 유형

▶ (노인학대유형) 10,624건, 전년대비 **8.4% 증가**('20년 9,803건 → '21년 10,624건)

- 정서적 학대(43.6%), 신체적 학대(41.3%),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 자기방임(1.9%), 유기(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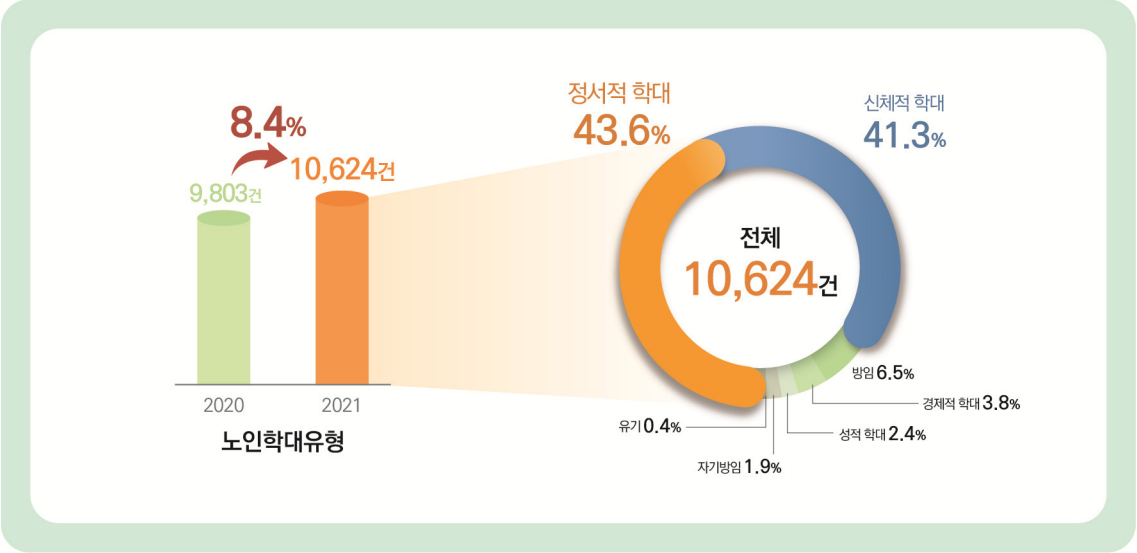

그림 2-8 노인학대유형

▶ (장소별 노인학대유형)

- (가정) 정서적 학대(46.8%), 신체적 학대(42.5%), 경제적 학대(3.9%), 방임(3.6%) 등
- (시설) 방임(35.6%), 신체적 학대(29.8%), 성적 학대(21.7%), 정서적 학대(10.3%)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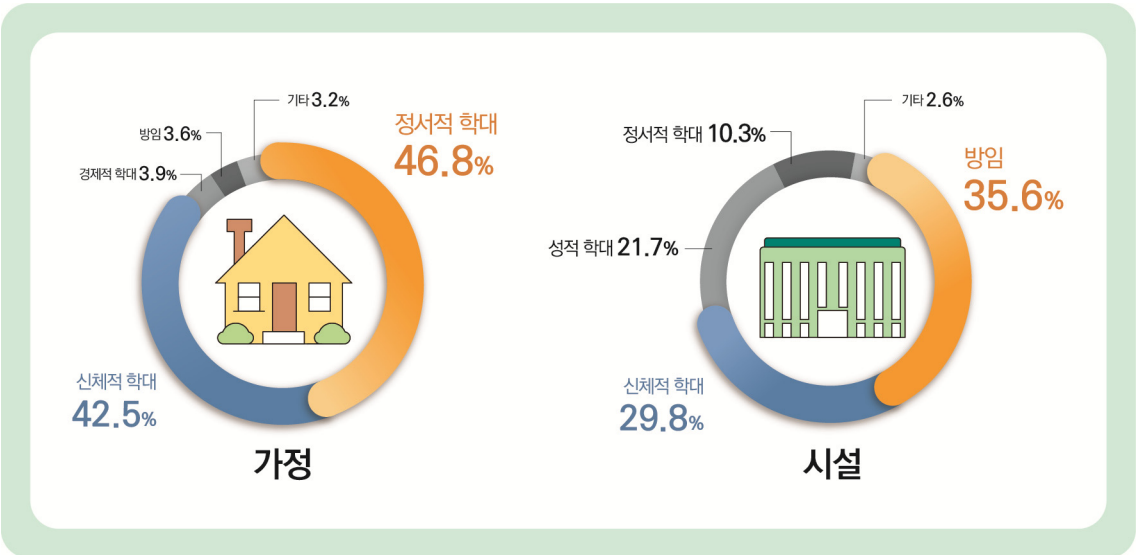

그림 2-9 장소별 노인학대유형

6. 노인학대 발생장소 및 특성

▶ (학대발생장소) 가정 5,962건(88.0%), 생활시설 536건(7.9%), 이용시설 87건(1.3%) 등

- 생활시설 전년대비 2.9% 증가('20년 521건 → '21년 536건)
- 이용시설 전년대비 5.4% 감소('20년 92건 → '21년 8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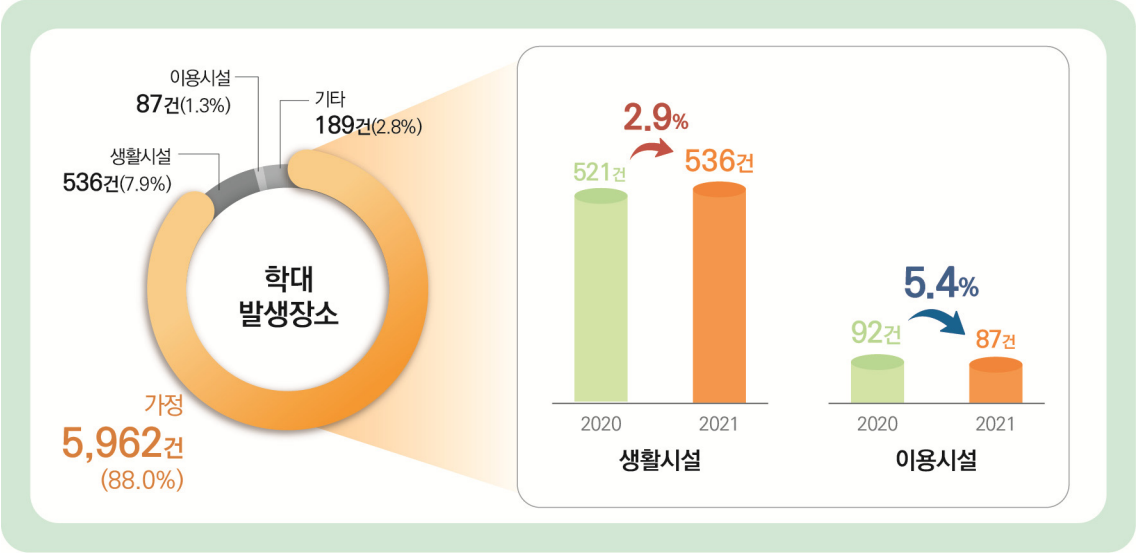

그림 2-10 학대발생장소

▶ (학대발생빈도)

- 3개월에 한 번 이상 전년대비 22.1% 증가('20년 614건 → '21년 750건)
- 일회성 전년대비 16.5% 증가('20년 1,002건 → '21년 1,167건)

▶ (학대지속기간)

- 일회성 전년대비 19.1% 증가('20년 930건 → '21년 1,108건)
- 1개월 이상 1년 미만 전년대비 9.6% 증가('20년 1,043건 → '21년 1,14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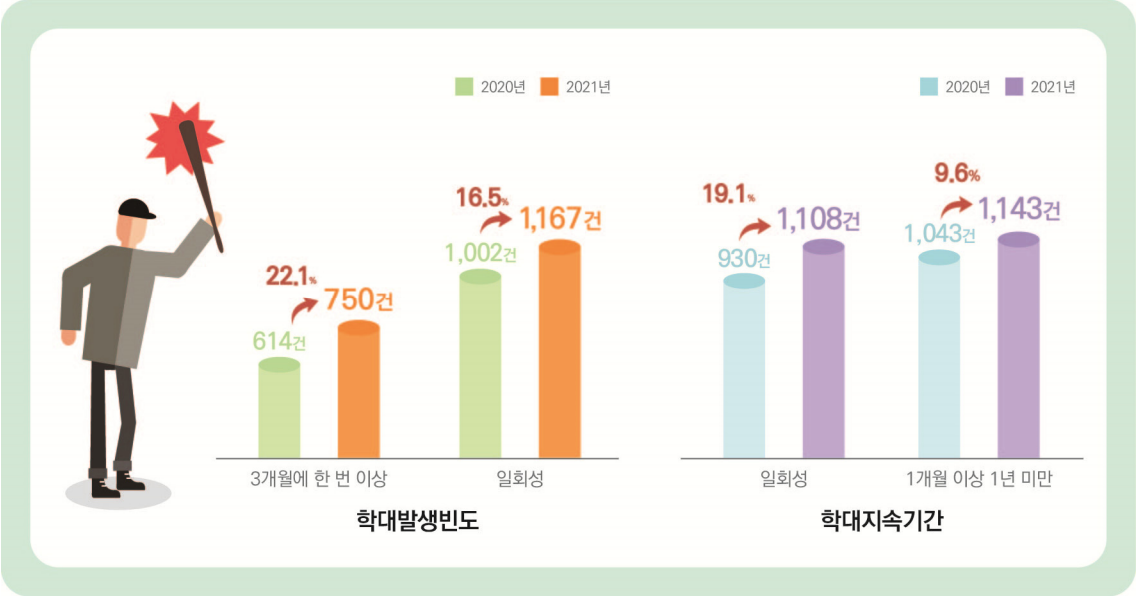

그림 2-11 학대발생빈도 및 지속기간

7. 경제적 학대 현황

▶ (경제적 학대) 406명, 전년대비 **5.8% 감소**('20년 431명 → '21년 406명)

- 남성: 110명(27.1%) / 여성: 296명(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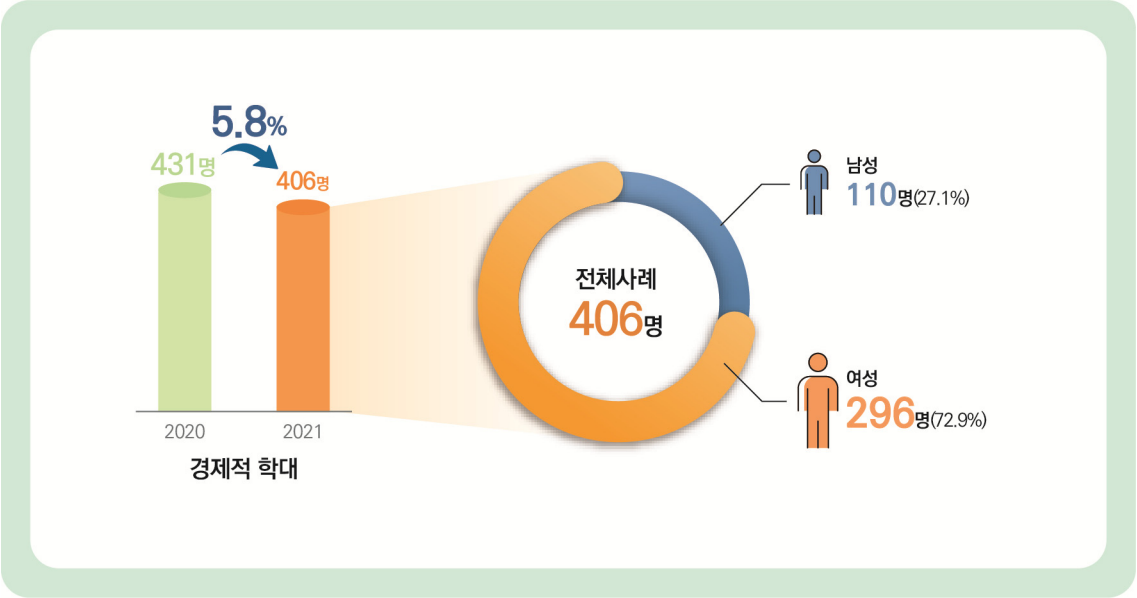

그림 2-12 경제적 학대 현황

▶ (학대발생장소)

- (가정) 전년대비 **3.6% 증가**('20년 363건(84.2%) → '21년 376건(92.6%))
- (시설) 전년대비 **59.3% 감소**('20년 54건(12.5%) → '21년 22건(5.4%))

▶ (장소별 학대행위자)

- (가정) 아들(47.7%), 딸(17.0%), 배우자(10.6%) 등
- (시설) 노인복지시설종사자(65.5%), 기타 타인(34.5%)*

  * 해당 노인복지시설 대표의 가족으로 시설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나 서류상으로는 관계가 없는 사람의 경우 기타 타인으로 등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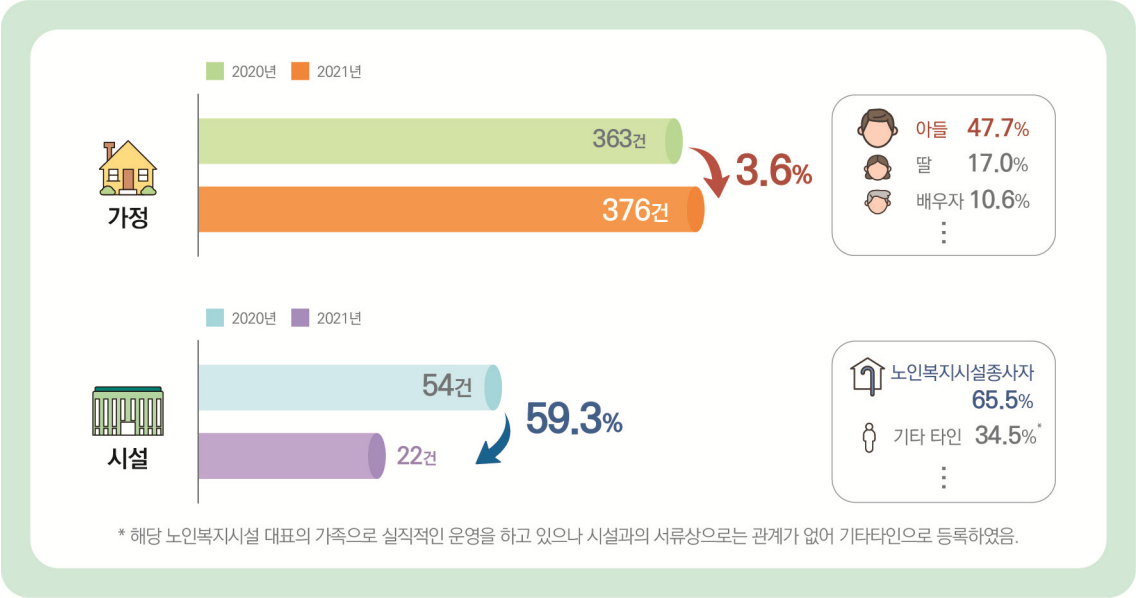

그림 2-13 경제적 학대 발생장소 및 행위자 유형

8. 치매진단 노인학대 현황

▶ (학대피해노인 中 치매진단) 1,092명, 전년대비 **17.8% 증가**('20년 927명 → '21년 1,092명)

- 남성: 280명(25.6%) / 여성: 812명(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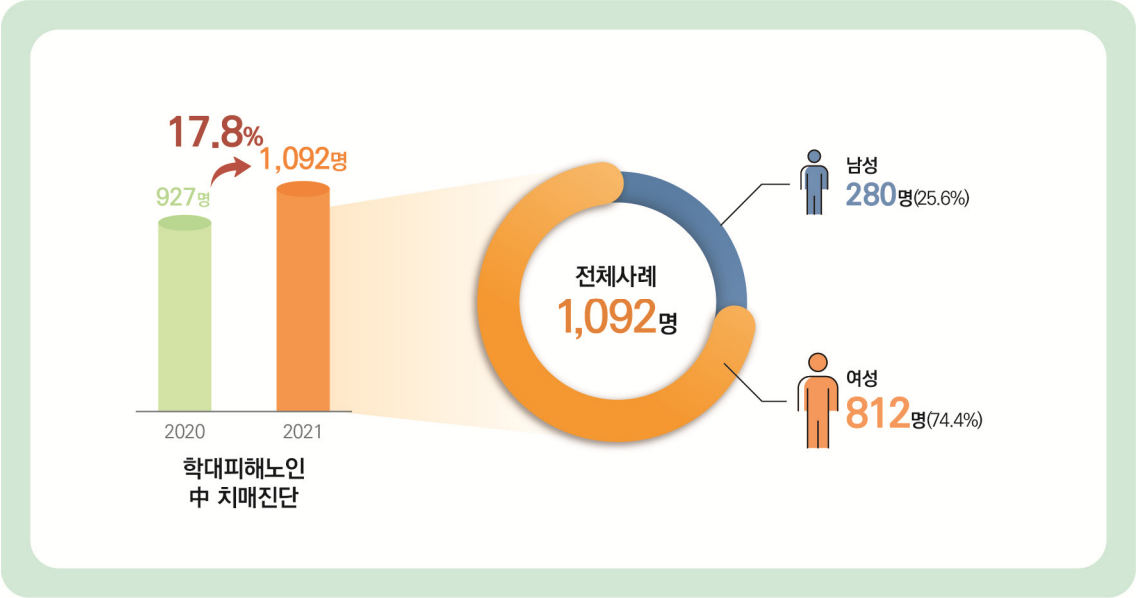

그림 2-14 치매진단 노인학대 현황

▶ (학대발생장소)

- (가정) 전년대비 **10.8% 증가**('20년 507건(52.2%) → '21년 562건(51.5%))
- (시설) 전년대비 **24.0% 증가**('20년 384건(39.5%) → '21년 476건(43.6%))

▶ (장소별 학대행위자)

- (가정) 아들(41.9%), 배우자(24.1%), 딸(15.3%) 등
- (시설) 노인복지시설종사자(98.7%)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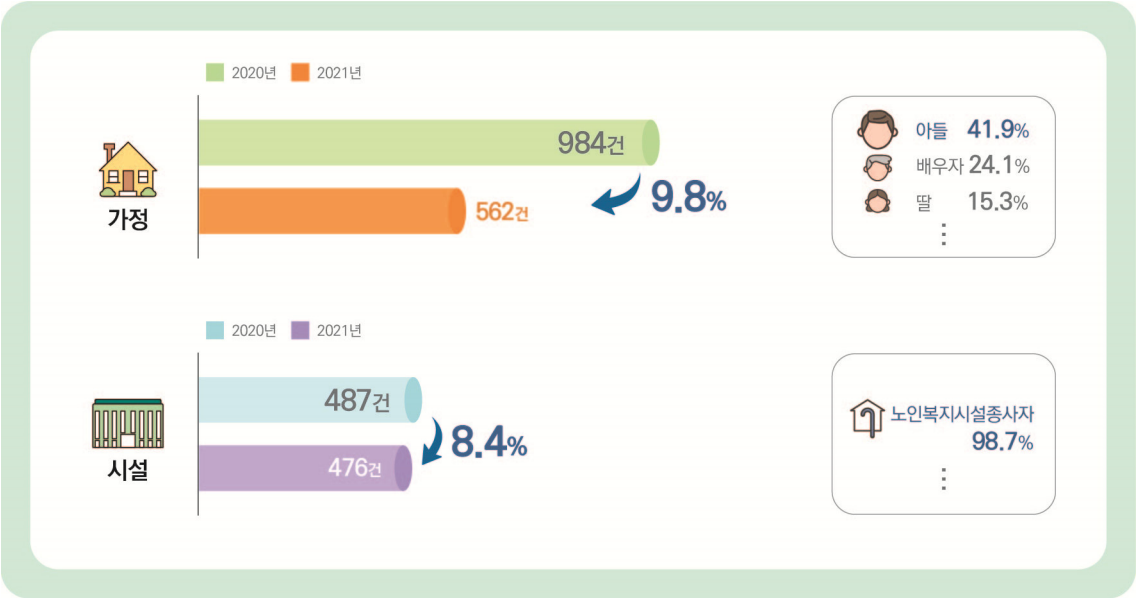

그림 2-15 치매진단 노인학대 발생장소 및 행위자 유형

9. 시설 노인학대 현황

▶ (시설학대) 623명, 전년대비 **1.6% 증가**('20년 613명 → '21년 623명)

- 남성: 166명(26.6%) / 여성: 457명(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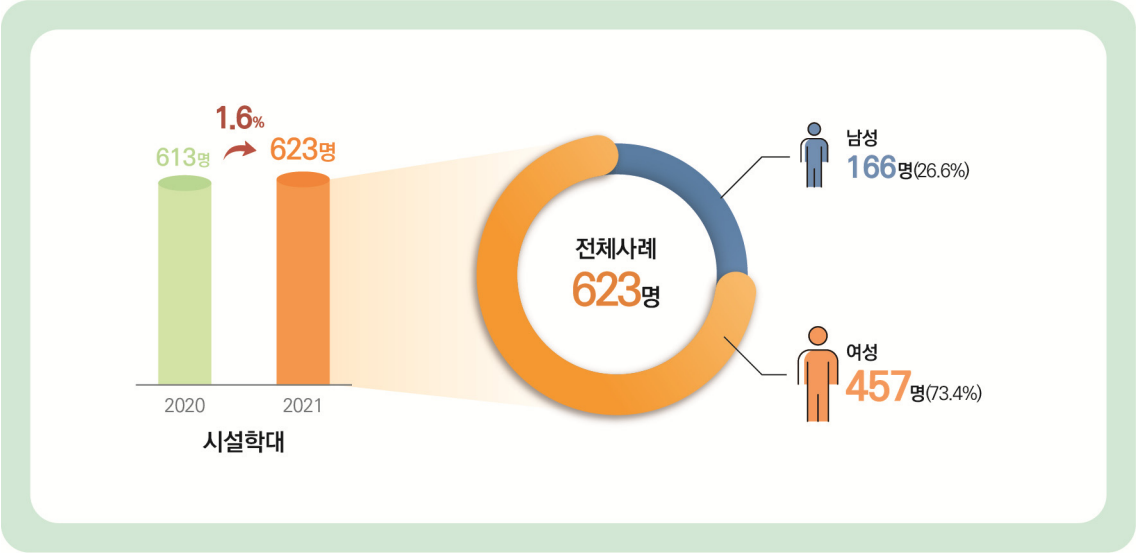

그림 2-16 시설 노인학대 현황

▶ (신고자유형) 신고의무자 274명(44.0%), 비신고의무자 349명(56.0%)

- (신고의무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20.4%),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12.7%) 등
- (비신고의무자) 친족(18.9%), 사회복지시설종사자(14.0%)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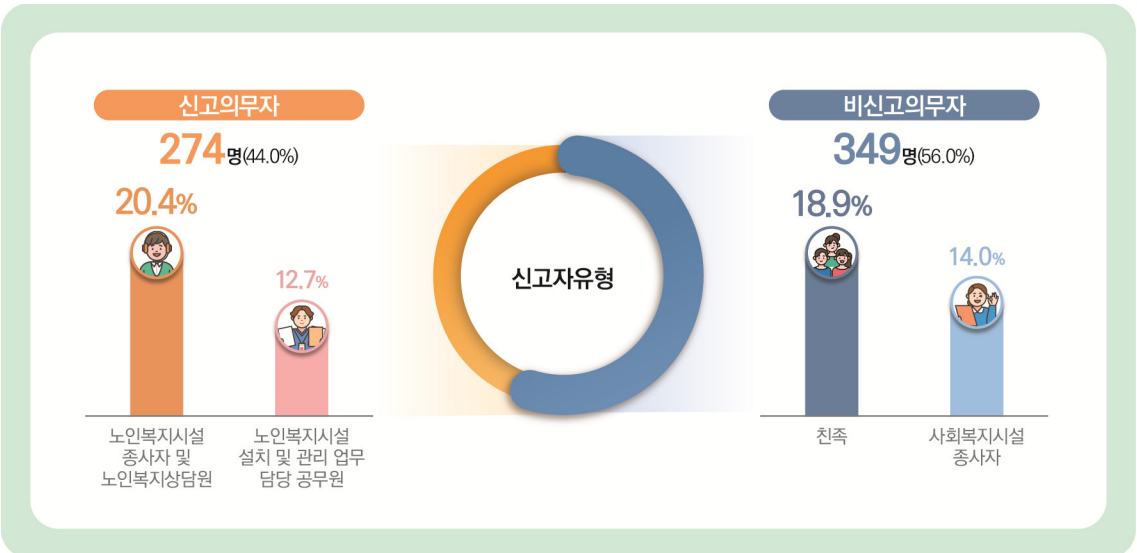

그림 2-17 시설 노인학대 신고자유형

10. 재학대 현황

▶ (재학대) 739건, 전년대비 **20.4% 증가**('20년 614건 → '21년 739건)

- 남성: 142명(19.2%) / 여성: 597명(80.8%)
- LCS 사업* 참여여부: 참여 297명(40.2%), 미참여 442명(59.8%)

* 학대피해노인 가정에 라이프케어서포터즈(LCS: Life Care Supporters)를 파견하여 정서안정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맞춤 서비스 연계를 통해 가정 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 가정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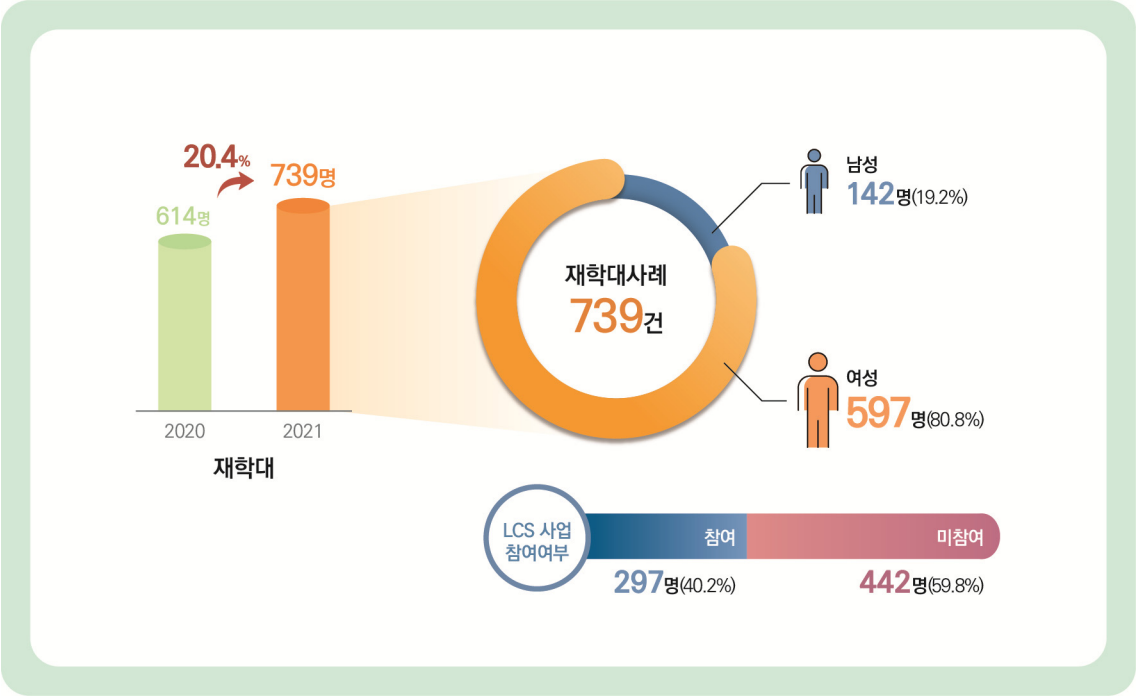

그림 2-18 재학대 현황

▶ (신고자 유형) 신고의무자 57명(7.7%), 비신고의무자 682명(92.3%)

- (비신고의무자) 경찰(68.3%), 피해자 본인(9.1%) 등
- (신고의무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2.7%),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2.0%)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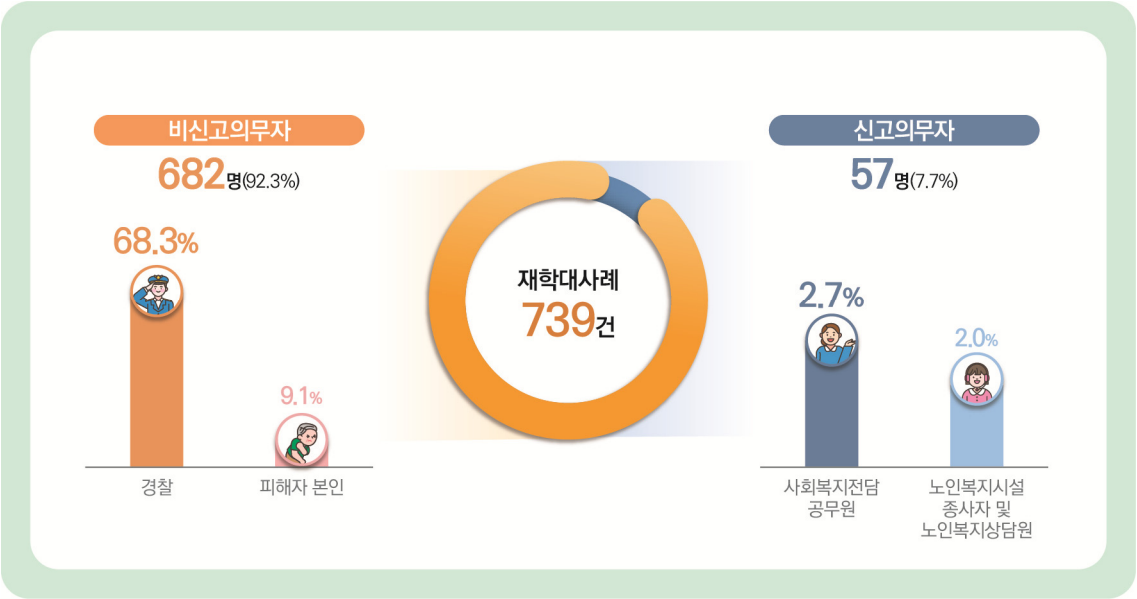

그림 2-19 재학대 신고자유형

▶ (학대발생장소)

- (가정) 전년대비 **19.5% 증가**('20년 599건(97.6%) → '21년 716건(96.9%))
- (시설) 전년대비 **71.4% 감소**('20년 7건(1.1%) → '21년 2건(0.3%))

▶ (학대행위자)

- (가정) 아들(46.4%), 배우자(37.6%), 딸(7.4%) 등
- (시설) 노인복지시설종사자(50.0%), 기타 타인*(50.0%)

  *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에 의해 발생한 사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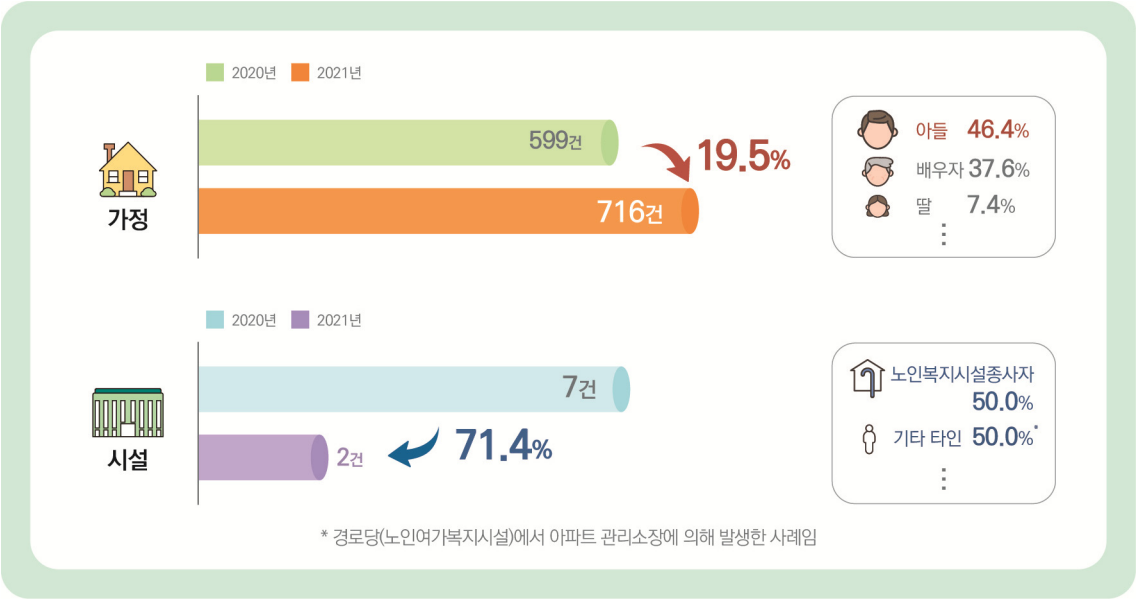

그림 2-20 재학대 발생장소 및 행위자 유형

PART

03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

(2012~2021년)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3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2012~2021년)

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표 3-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일반 사례	5,916	6,642	7,037	8,087	7,729	8,687	10,294	10,828	10,714	12,617
	63.3	65.4	66.6	67.9	64.4	65.3	66.5	67.4	63.1	65.1
증감률	14.6	12.3	5.9	14.9	-4.4	12.4	18.5	5.2	-1.1	17.8
학대 사례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36.7	34.6	33.4	32.1	35.6	34.7	33.5	32.6	36.9	34.9
증감률	-0.5	2.8	0.3	8.1	12.1	8.0	12.2	1.1	19.4	8.2
전체 사례	9,340	10,162	10,569	11,905	12,009	13,309	15,482	16,071	16,973	19,39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증감률	8.6	8.8	4.0	12.6	0.9	10.8	16.3	3.8	5.6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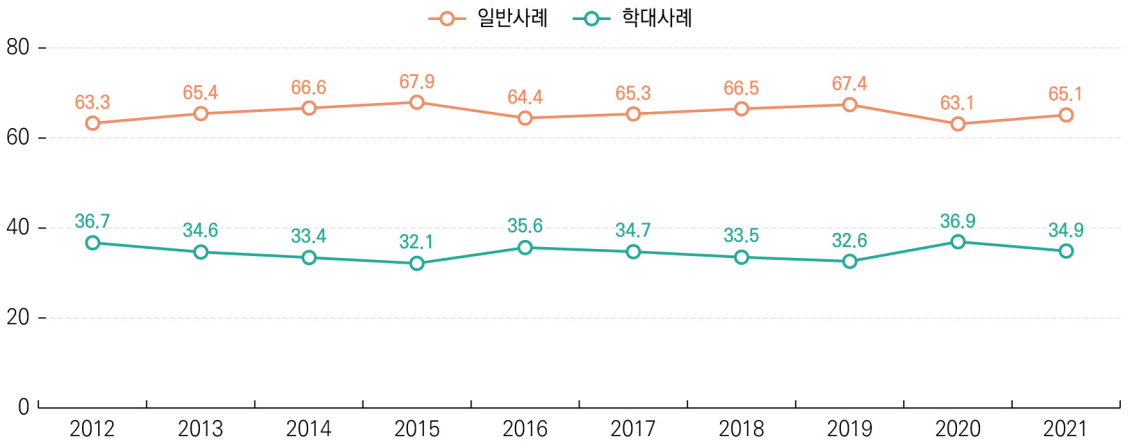

그림 3-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비율 추이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표 3-2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고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41	43	42	44	27	20	26	24	35	23
		1.2	1.2	1.2	1.2	0.6	0.4	0.5	0.5	0.6	0.3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	–	–	–	9	12	21	20	11
		–	–	–	–	–	0.2	0.2	0.4	0.3	0.2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167	207	182	178	168	153	194	225	267	246
		4.9	5.9	5.2	4.7	3.9	3.3	3.7	4.3	4.3	3.6
	장애 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	5	16	2	2	1	3	4	4
		0.1	–	0.1	0.4	0.0	0.0	0.0	0.1	0.1	0.1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53	66	85	101	79	105	72	83	92	70
		1.5	1.9	2.4	2.6	1.8	2.3	1.4	1.6	1.5	1.0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259	263	322	290	382	283	398	375	246	326
		7.6	7.5	9.1	7.6	8.9	6.1	7.7	7.2	3.9	4.8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16	24	17	31	44	18	12	17	25	10
		0.5	0.7	0.5	0.8	1.0	0.4	0.2	0.3	0.4	0.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0	36	46	38	45	34	29	24	116	45
		0.9	1.0	1.3	1.0	1.1	0.7	0.6	0.5	1.9	0.7
	119 구급대의 대원	5	6	8	9	3	5	2	2	5	1
		0.1	0.2	0.2	0.2	0.1	0.1	0.0	0.0	0.1	0.0
	건강가정지원 센터의 장과 종사자	–	–	2	–	1	2	–	–	–	1
		–	–	0.1	–	0.0	0.0	–	–	–	0.0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장과 종사자	–	–	–	–	–	–	1	1	–	–
		–	–	–	–	–	–	0.0	0.0	–	–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	–	–	–	4	5	9	5	7
		–	–	–	–	–	0.1	0.1	0.2	0.1	0.1
	응급구조사	–	–	–	–	–	–	–	–	1	–
		–	–	–	–	–	–	–	–	0.0	–
	의료기사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 공단 소속 및 요양직 직원	–	–	–	–	–	–	5	66	89	25
		–	–	–	–	–	–	0.1	1.3	1.4	0.4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	–	–	–	–	5	9	8	8
		–	–	–	–	–	–	0.1	0.2	0.1	0.1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	–	–	–	–	5	18	26	83
		–	–	–	–	–	–	0.1	0.3	0.4	1.2
	소계	573	645	709	707	751	635	767	877	939	860
		16.7	18.3	20.1	18.5	17.5	13.7	14.8	16.7	15.0	12.7
비신고의무자	학대피해노인 본인	825	842	777	722	582	431	387	358	450	361
		24.1	23.9	22.0	18.9	13.6	9.3	7.5	6.8	7.2	5.3
	학대행위자 본인	10	7	10	8	4	6	4	5	6	8
		0.3	0.2	0.3	0.2	0.1	0.1	0.1	0.1	0.1	0.1
	친족	606	592	519	567	500	407	472	386	531	549
		17.7	16.8	14.7	14.9	11.7	8.8	9.1	7.4	8.5	8.1
	타인	295	292	300	320	236	755	156	259	216	197
		8.6	8.3	8.5	8.4	5.5	16.3	3.0	4.9	3.5	2.9
	관련기관[12]	1,115	1,142	1,217	1,494	2,207	2,388	3,402	3,358	4,117	4,799
		32.6	32.4	34.5	39.1	51.6	51.7	65.6	64.0	65.8	70.8
	129연계*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소계	2,851	2,875	2,823	3,111	3,529	3,987	4,421	4,366	5,320	5,914
		83.3	81.7	79.9	81.5	82.5	86.3	85.2	83.3	85.0	87.3
계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129연계"의 경우 2008년부터 신고접수처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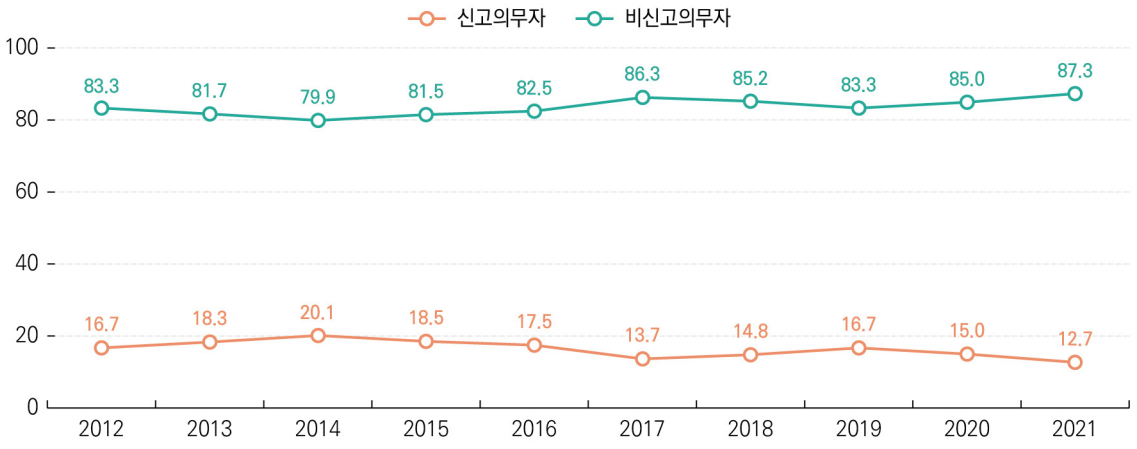

그림 3-2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 비율 추이

12) 관련기관에는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됨.

3.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표 3-3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현장조사 실시	3,158	3,189	3,302	3,659	3,971	4,443	4,965	5,084	6,152	6,696
	92.2	90.6	93.5	95.8	92.8	96.1	95.7	97.0	98.3	98.8
현장조사 미실시	266	331	230	159	476	179	223	159	107	78
	7.8	9.4	6.5	4.2	11.1	3.9	4.3	3.0	1.7	1.2
계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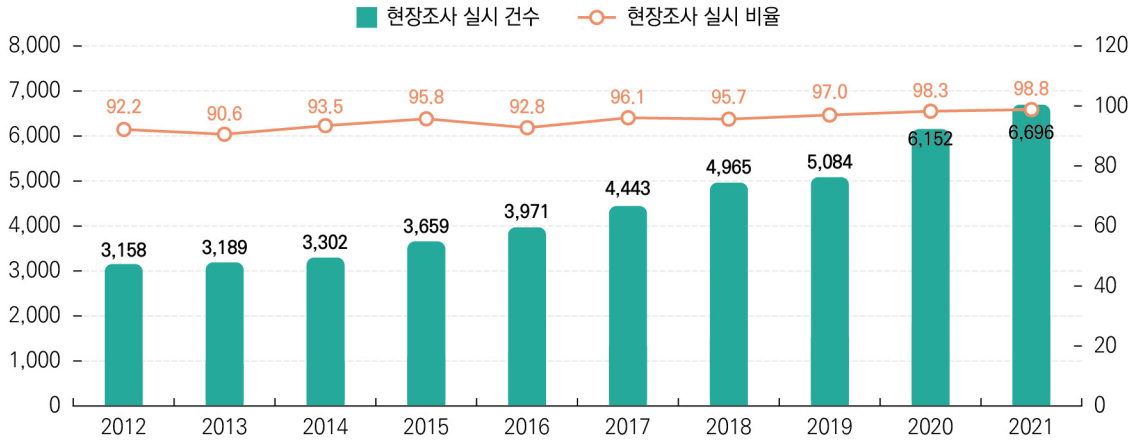

그림 3-3 연도별 현장조사 건수 및 비율 추이

4.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표 3-4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응급	291	258	184	251	159	165	105	104	165	142
	8.5	7.3	5.2	6.6	3.7	3.6	2.0	2.0	2.6	2.1
비응급	2,294	2,288	2,211	2,271	2,472	2,803	3,221	3,322	3,923	4,445
	67.0	65.0	62.6	59.5	57.8	60.6	62.1	63.4	62.7	65.6
잠재	839	974	1,137	1,296	1,649	1,654	1,862	1,817	2,171	2,187
	24.5	27.7	32.2	33.9	38.5	35.8	35.9	34.7	34.7	32.3
계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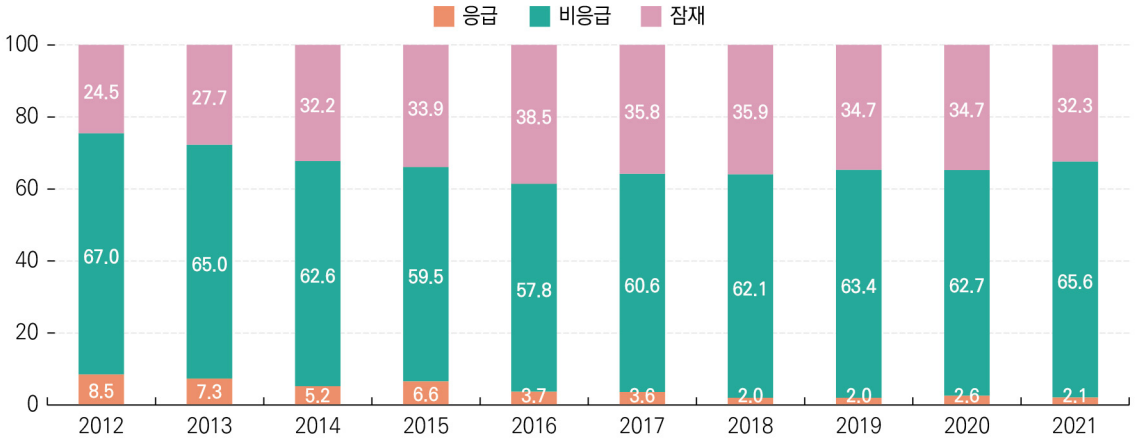

그림 3-4 연도별 사례판정 비율 추이

5. 연도별 재학대 건수

표 3-5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학대사례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재학대	건수	298	212	208	229	249	359	488	500	614	739
	비율	8.7	6.0	5.9	6.0	5.8	7.8	9.4	9.5	9.8	10.9
증감률		-11.8	-28.9	-1.9	10.1	8.7	44.2	35.9	2.5	22.8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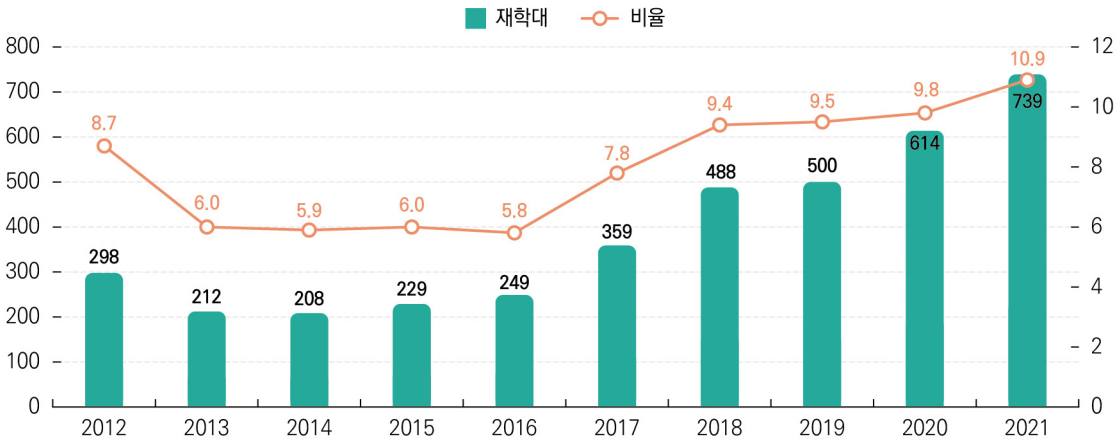

그림 3-5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추이

6. 연도별 학대유형 건수

표 3-6 연도별 학대유형 건수

(단위: 건,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체적 학대	1,326	1,430	1,426	1,591	2,132	2,651	3,046	3,138	3,917	4,390
	23.8	24.5	24.7	25.9	31.3	36.4	37.3	38.1	40.0	41.3
정서적 학대	2,134	2,235	2,169	2,330	2,730	3,064	3,508	3,465	4,188	4,627
	38.3	38.3	37.6	37.9	40.1	42.0	42.9	42.1	42.7	43.6
성적 학대	63	90	131	102	91	150	228	218	231	260
	1.1	1.5	2.3	1.7	1.3	2.1	2.8	2.6	2.4	2.4
경제적 학대	540	526	521	542	491	411	381	426	431	406
	9.7	9.0	9.0	8.8	7.2	5.6	4.7	5.2	4.4	3.8
방임	1,042	1,087	984	919	778	649	718	741	760	691
	18.7	18.6	17.0	14.9	11.4	8.9	8.8	9.0	7.8	6.5
자기 방임	394	375	463	622	523	291	240	200	223	204
	7.1	6.4	8.0	10.1	7.7	4.0	2.9	2.4	2.3	1.9
유기	71	89	78	48	66	71	55	41	53	46
	1.3	1.5	1.4	0.8	1.0	1.0	0.7	0.5	0.5	0.4
계	5,570	5,832	5,772	6,154	6,811	7,287	8,176	8,229	9,803	10,62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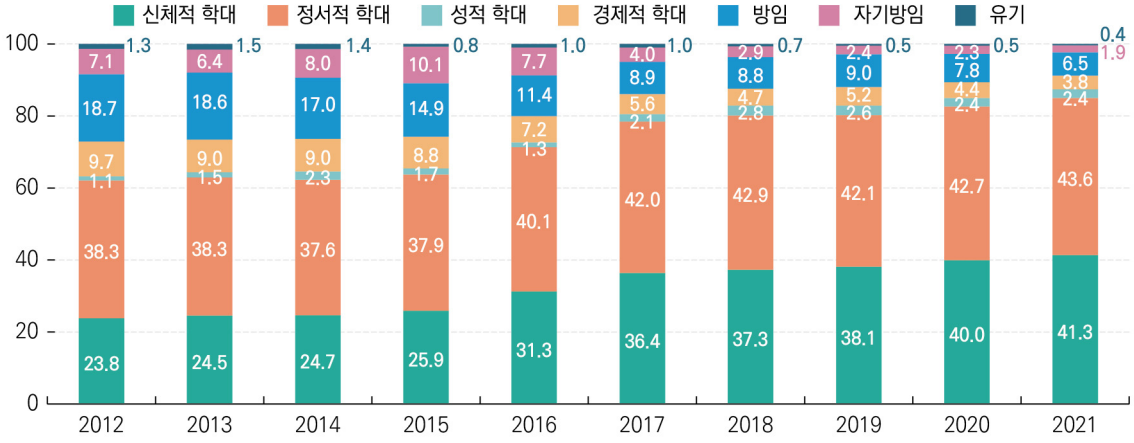

그림 3-6 연도별 학대유형 비율 추이

7.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표 3-7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가정내	2,909	2,925	2,983	3,276	3,799	4,129	4,616	4,450	5,505	5,962
	85.0	83.1	84.5	85.8	88.8	89.3	89.0	84.9	88.0	88.0
생활시설	216주1)	251주2)	246주3)	206주4)	238주4)	327주4)	380주4)	486주4)	521주4)	536주4)
	6.3	7.1	7.0	5.4	5.6	7.1	7.3	9.3	8.3	7.9
이용시설	35	42	44	57	16	16	41	131	92	87
	1.0	1.2	1.2	1.5	0.4	0.3	0.8	2.5	1.5	1.3
병원	83	107	100	88	24	27	65	45	37	62
	2.4	3.0	2.8	2.3	0.6	0.6	1.3	0.9	0.6	0.9
공공장소	86	86	74	80	94	58	42	60	39	54
	2.5	2.4	2.1	2.1	2.2	1.3	0.8	1.1	0.6	0.8
기타	95	109	85	111	109	65	44	71	65	73
	2.8	3.1	2.4	2.9	2.5	1.4	0.8	1.4	1.0	1.1
계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임(2012년)
2)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임. 동 경우를 가정 내 학대로 포함할 경우, 203건(5.7%)
3)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임. 동 경우를 가정 내 학대로 포함할 경우, 190건(5.4%)
4)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를 가정 내 학대에 포함한 수치임(2015년~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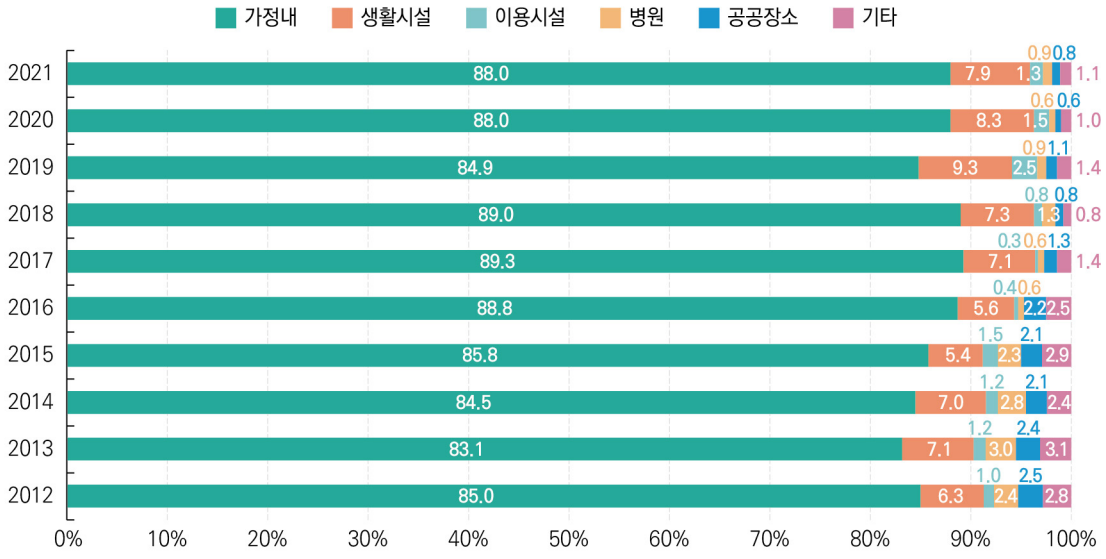

그림 3-7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8.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표 3-8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및 비율

(단위: 회,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일반 상담	10,378	11,177	10,860	13,462	16,464	22,326	25,793	30,128	32,003	41,067
	13.7	14.1	13.1	14.7	16.6	20.1	20.2	21.5	17.5	20.5
증감률	10.6	7.7	-2.8	24.0	22.3	35.6	15.5	16.8	6.2	28.3
학대 상담	65,294	68,280	71,889	78,368	82,468	88,919	102,172	110,226	150,846	159,446
	86.3	85.9	86.9	85.3	83.4	79.9	79.8	78.5	82.5	79.5
증감률	12.9	4.6	5.3	9.0	5.2	7.8	14.9	7.9	36.9	5.7
계	75,672	79,457	82,749	91,830	98,932	111,245	127,965	140,354	182,849	200,51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증감률	12.6	5.0	4.1	11.0	7.7	12.4	15.0	9.7	30.3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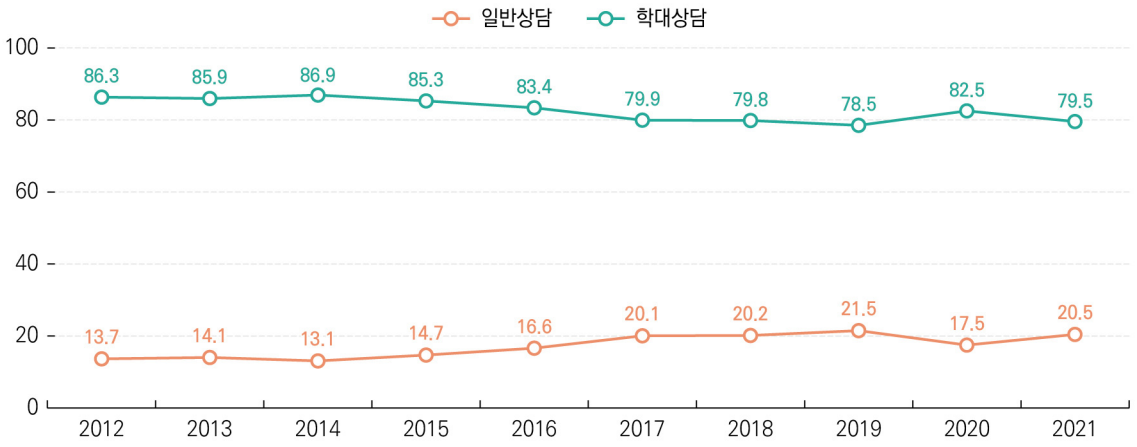

그림 3-8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비율 추이

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표 3-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9세 이하	8	12	9	3	5	4	-	-	-	-
	0.2	0.3	0.3	0.1	0.1	0.1	-	-	-	-
60~64세	188	189	191	204	213	141	-	-	-	-
	5.5	5.4	5.4	5.3	5.0	3.1	-	-	-	-
65~69세	443	462	452	524	589	740	819	919	1,240	1,428
	12.9	13.1	12.8	13.7	13.8	16.0	15.8	17.5	19.8	21.1
70~74세	726	728	654	771	852	969	1,193	1,189	1,385	1,505
	21.2	20.7	18.5	20.2	19.9	21.0	23.0	22.7	22.1	22.2
75~79세	755	753	846	865	978	1,071	1,250	1,157	1,339	1,394
	22.1	21.4	24.0	22.7	22.9	23.2	24.1	22.1	21.4	20.6
80~84세	701	712	716	770	881	900	1,020	1,031	1,218	1,269
	20.5	20.2	20.3	20.2	20.6	19.5	19.7	19.7	19.5	18.7
85~89세	399	420	421	456	499	525	588	586	690	769
	11.7	11.9	11.9	11.9	11.7	11.4	11.3	11.2	11.0	11.4
90~94세	165	193	191	163	206	204	245	289	283	308
	4.8	5.5	5.4	4.3	4.8	4.4	4.7	5.5	4.5	4.5
95~99세	31	42	46	56	53	58	61	63	92	92
	0.9	1.2	1.3	1.5	1.2	1.3	1.2	1.2	1.5	1.4
100세 이상	8	9	6	6	4	10	12	9	12	9
	0.2	0.3	0.2	0.2	0.1	0.2	0.2	0.2	0.2	0.1
계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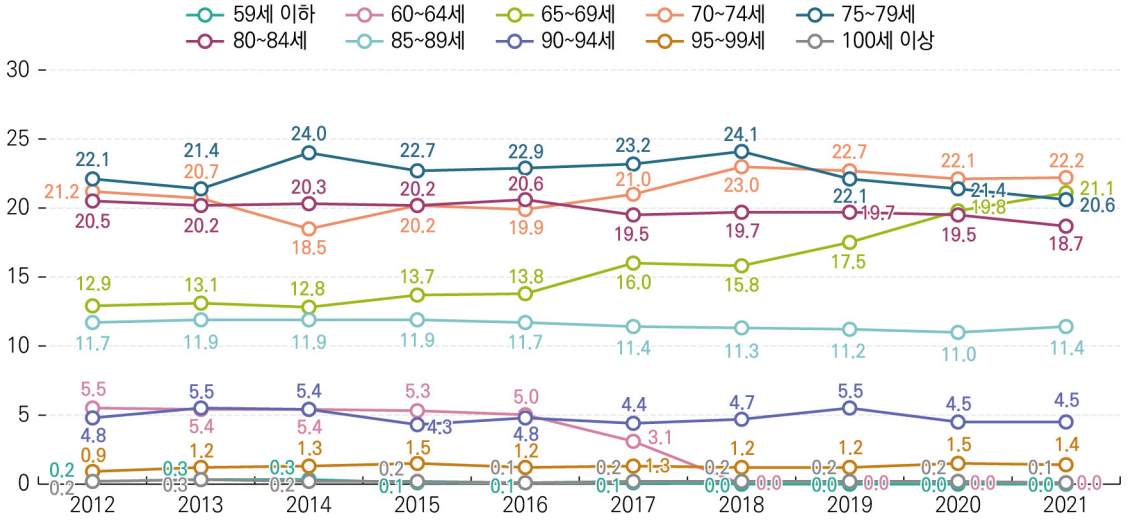

그림 3-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비율 추이

10.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표 3-10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0~19세	34	31	12	18	33	46	50	42	62	67
	0.9	0.8	0.3	0.4	0.7	0.9	0.9	0.7	0.9	0.8
20~29세	69	75	63	46	76	115	105	81	117	138
	1.8	1.9	1.6	1.1	1.6	2.3	1.9	1.4	1.7	1.6
30~39세	353	310	347	372	296	325	318	306	389	405
	9.2	7.7	9.0	8.8	6.4	6.4	5.6	5.3	5.8	4.8
40~49세	993	1,022	911	870	1,040	1,150	1,253	1,184	1,352	1,393
	25.8	25.5	23.5	20.6	22.4	22.5	22.1	20.5	20.2	16.5
50~59세	1,091	1,201	981	1,156	1,166	1,275	1,414	1,465	1,634	2,486
	28.3	29.9	25.3	27.4	25.1	25.0	25.0	25.4	24.4	29.5
60~69세	528	580	602	622	687	827	824	940	1,110	1,557
	13.7	14.5	15.5	14.7	14.8	16.2	14.5	16.3	16.6	18.5
70세 이상	786	794	960	1,140	1,339	1,363	1,701	1,759	2,034	2,377
	20.4	19.8	24.8	27.0	28.9	26.7	30.0	30.4	30.4	28.2
파악 안됨	-	-	-	-	-	-	-	-	-	-
	-	-	-	-	-	-	-	-	-	-
계	3,854	4,013	3,876	4,224	4,637	5,101	5,665	5,777	6,698	8,42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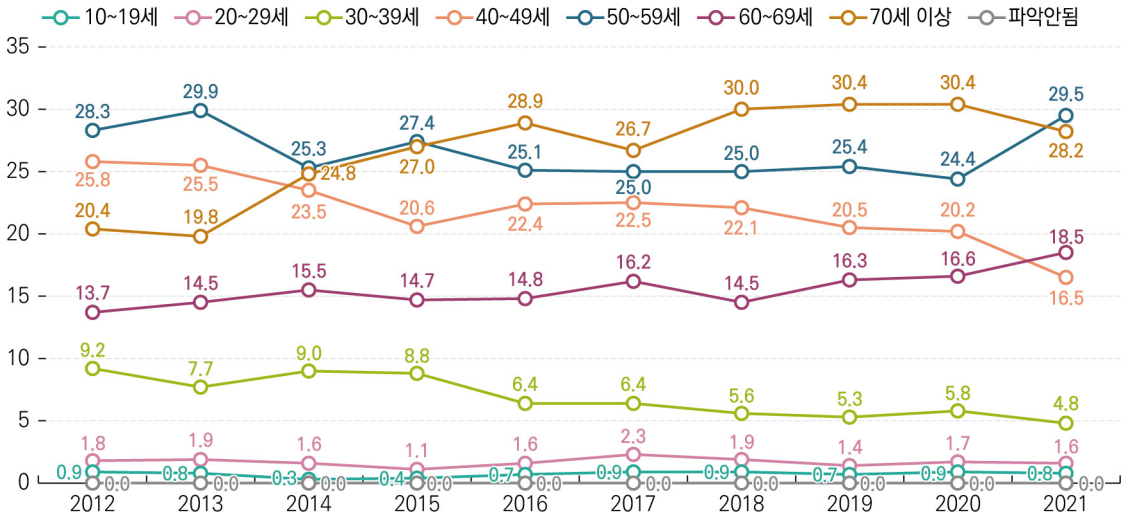

그림 3-10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비율 추이

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표 3-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건,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노인 독거	1,140	1,141	1,172	1,318	1,140	1,007	999	1,039	1,073	1,195
	33.3	32.4	33.2	34.5	26.6	21.8	19.3	19.8	17.1	17.6
노인 부부	618	635	701	808	1,023	1,216	1,512	1,669	2,046	2,332
	18.0	18.0	19.8	21.2	23.9	26.3	29.1	31.8	32.7	34.4
자녀 동거	909	937	932	1,021	1,328	1,536	1,738	1,588	2,060	2,111
	26.5	26.6	26.4	26.7	31.0	33.2	33.5	30.3	32.9	31.2
손자녀 동거	136	137	123	139	154	178	187	182	199	217
	4.0	3.9	3.5	3.6	3.6	3.9	3.6	3.5	3.2	3.2
자녀·손자녀 동거	312	291	244	185	234	245	252	195	253	235
	9.1	8.3	6.9	4.8	5.5	5.3	4.9	3.7	4.0	3.5
기타	309	379	360	347	401	440	500	570	628	684
	9.0	10.8	10.2	9.1	9.4	9.5	9.6	10.9	10.0	10.1
계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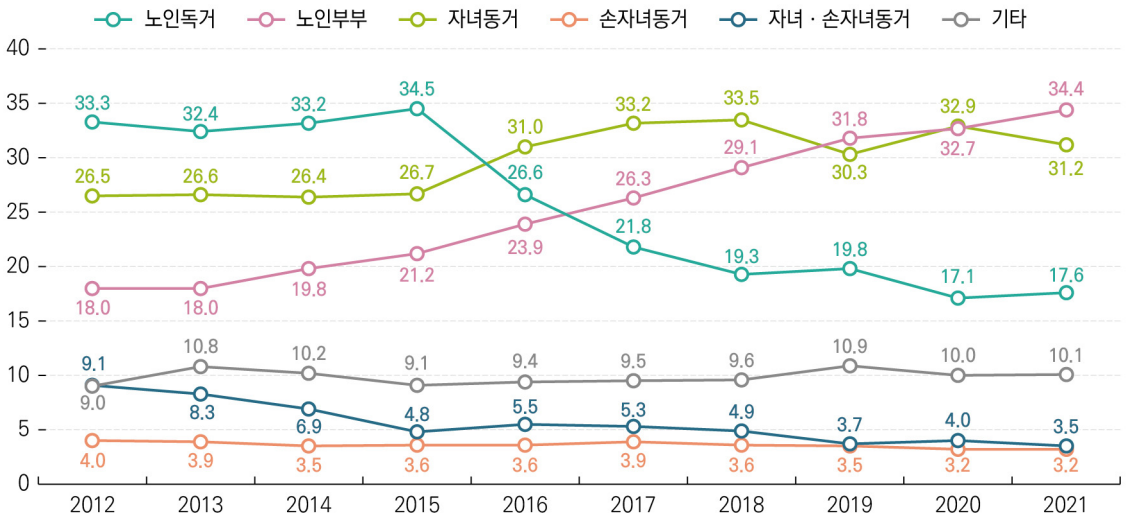

그림 3-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비율 추이

1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표 3-1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명,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본인	394	375	463	622	522	290	240	200	221	204
	10.2	9.3	11.9	14.7	11.3	5.7	4.2	3.5	3.3	2.4
배우자	494	551	588	652	952	1,263	1,557	1,749	2,120	2,455
	12.8	13.7	15.2	15.4	20.5	24.8	27.5	30.3	31.7	29.1
아들	1,586	1,619	1,504	1,523	1,729	1,913	2,106	1,803	2,288	2,287
	41.2	40.3	38.8	36.1	37.3	37.5	37.2	31.2	34.2	27.2
며느리	248	240	184	183	157	131	143	109	123	119
	6.4	6.0	4.7	4.3	3.4	2.6	2.5	1.9	1.8	1.4
딸	463	519	476	451	475	424	436	438	589	627
	12.0	12.9	12.3	10.7	10.2	8.3	7.7	7.6	8.8	7.4
사위	27	28	18	21	23	27	34	27	28	42
	0.7	0.7	0.5	0.5	0.5	0.5	0.6	0.5	0.4	0.5
손자녀	69	81	56	64	103	124	134	112	168	172
	1.8	2.0	1.4	1.5	2.2	2.4	2.4	1.9	2.5	2.0
친척	67	54	56	46	63	49	59	50	64	90
	1.7	1.3	1.4	1.1	1.4	1.0	1.0	0.9	1.0	1.1
타인	239	253	246	283	221	176	168	222	223	257
	6.2	6.3	6.3	6.7	4.8	3.5	3.0	3.8	3.3	3.1
기관	267	293	285	379	392	704	788	1,067	874	2,170
	6.9	7.3	7.4	9.0	8.5	13.8	13.9	18.5	13.0	25.8
파악 안됨	-	-	-	-	-	-	-	-	-	-
	-	-	-	-	-	-	-	-	-	-
계	3,854	4,013	3,876	4,224	4,637	5,101	5,665	5,777	6,698	8,42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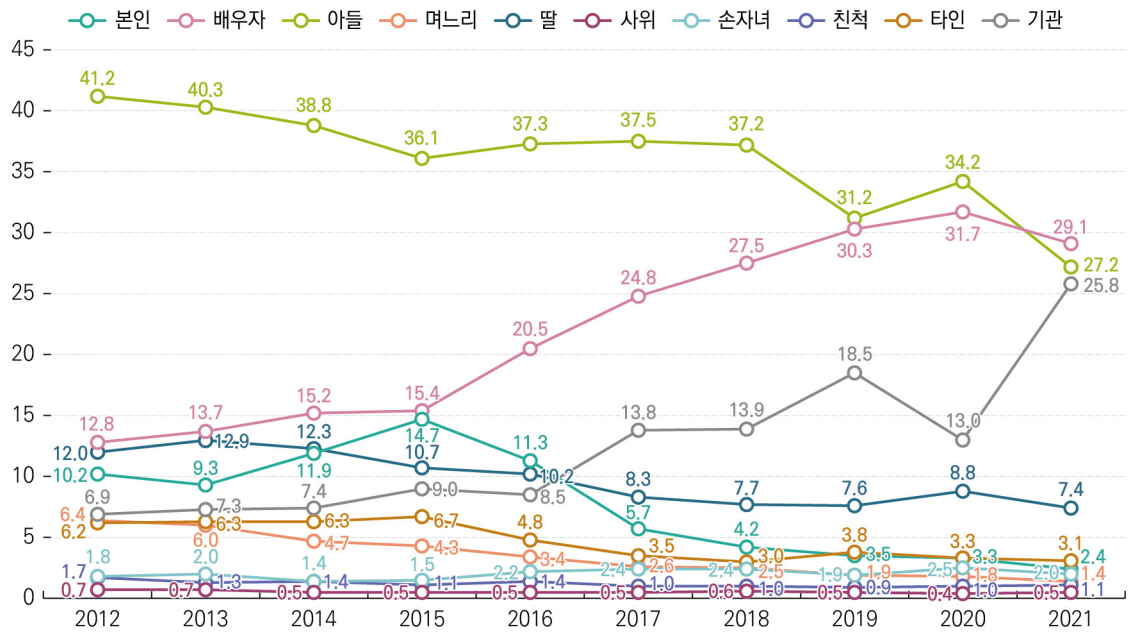

그림 3-1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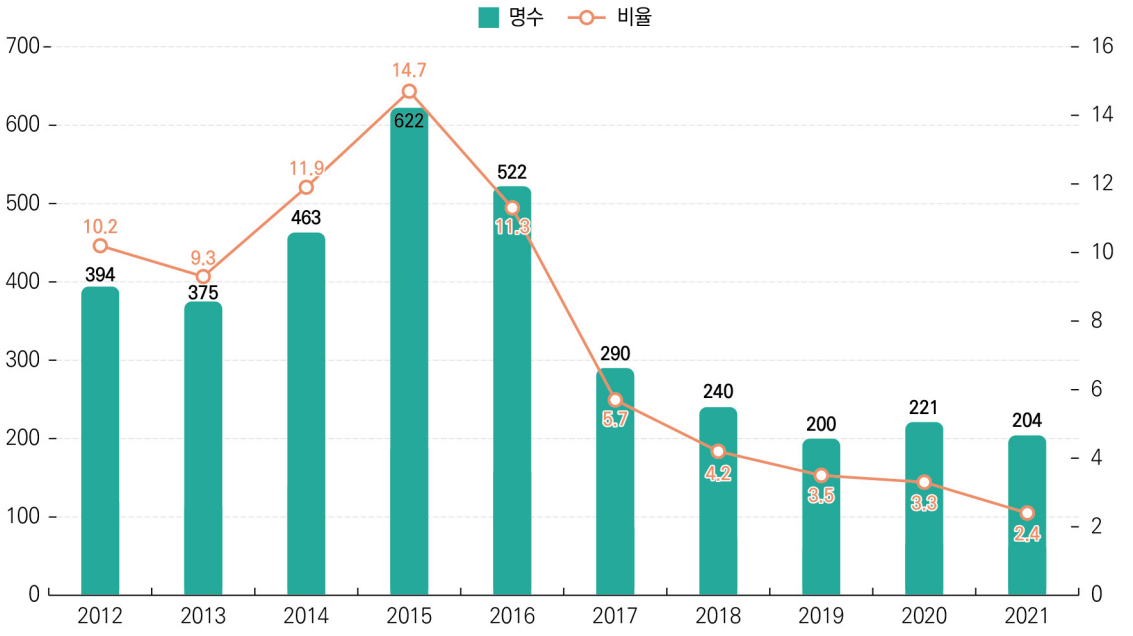

그림 3-13 연도별 학대행위자 본인 추이

13.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표 3-13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753	778	758	870	871	785	851	810	992	1,165
	22.0	22.1	21.5	22.8	20.4	17.0	16.4	15.4	15.8	17.2
전체 학대피해 노인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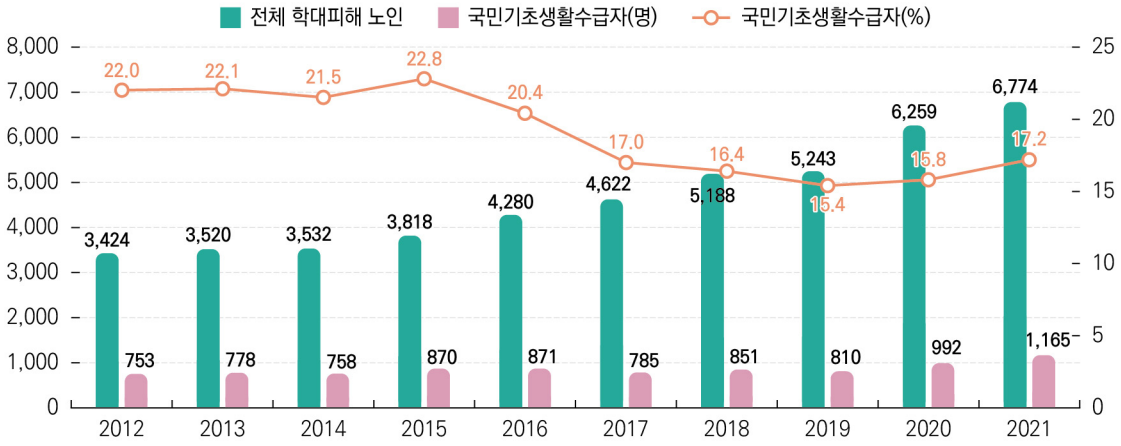

그림 3-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14.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표 3-14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429	449	445	546	947	575	591	544	719	799
	11.1	11.2	11.5	12.9	20.4	11.3	10.4	9.4	10.7	9.5
전체 학대 행위자	3,854	4,013	3,876	4,224	4,637	5,101	5,665	5,777	6,698	8,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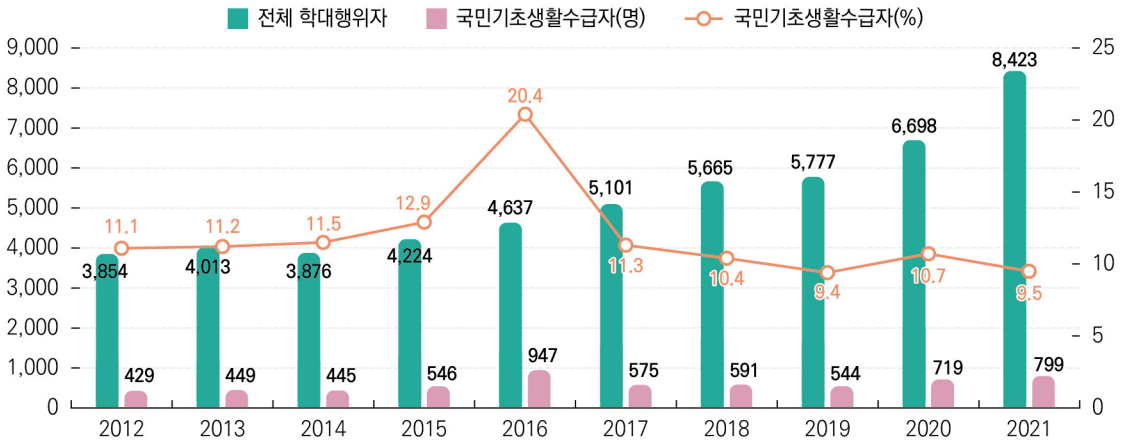

그림 3-15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15.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표 3-15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 건,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학대사례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치매 정도	치매 의심	452	459	488	561	593	488	507	550	608	607
	치매 진단	330	372	461	469	521	634	700	831	927	1,092
	계	782	831	949	1,030	1,114	1,122	1,207	1,381	1,535	1,699
학대사례 대비 치매의심 및 진단사례 비율		22.8	23.6	26.9	27.0	26.0	24.3	23.3	26.3	24.5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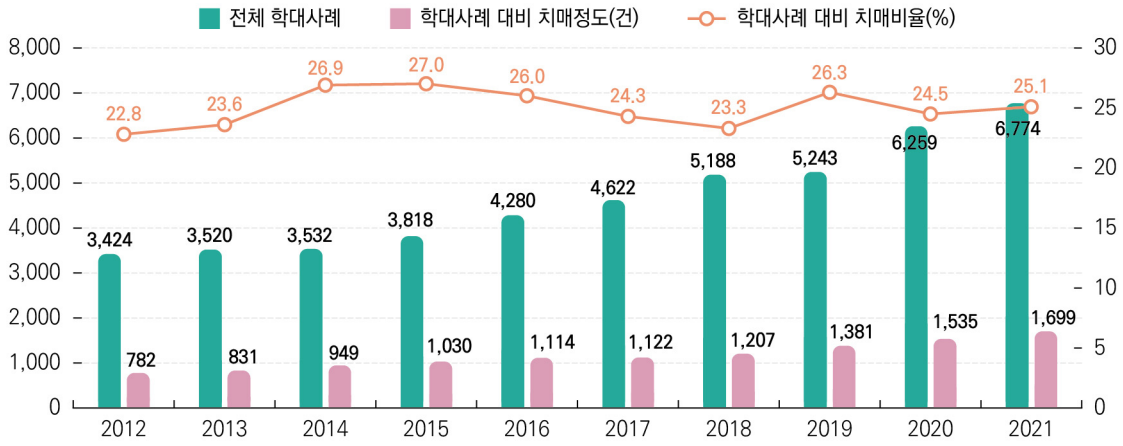

그림 3-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 추이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ART

04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4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1. 노인학대 신고접수

1) 전체 신고접수

표 4-1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전체 신고접수			학대사례 대비 재학대 사례
	학대사례	일반사례	전 체	
건 수	6,774	12,617	19,391	739
비 율	34.9	65.1	100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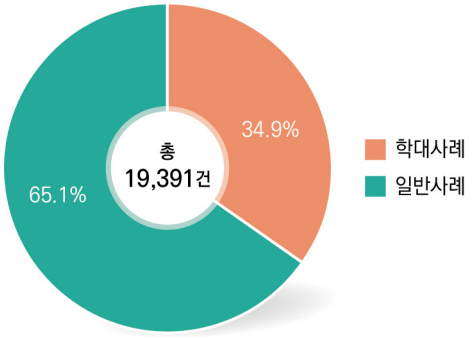

그림 4-1 전체 신고건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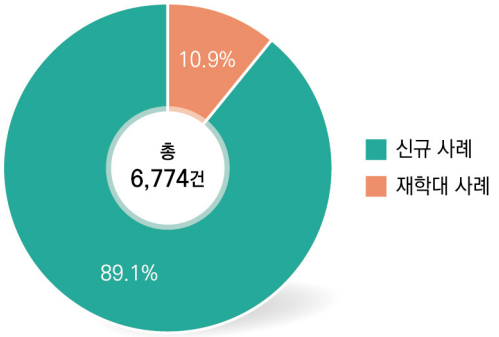

그림 4-2 학대사례 건수 대비 재학대 건수 비율

표 4-2 월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학대사례		일반사례		전체사례	
1월	552	8.1	652	5.2	1,204	6.2
2월	573	8.5	624	4.9	1,197	6.2
3월	658	9.7	811	6.4	1,469	7.6
4월	621	9.2	939	7.4	1,560	8.0
5월	539	8.0	1,416	11.2	1,955	10.1
6월	618	9.1	1,380	10.9	1,998	10.3
7월	601	8.9	1,090	8.6	1,691	8.7
8월	584	8.6	958	7.6	1,542	8.0
9월	543	8.0	1,130	9.0	1,673	8.6
10월	483	7.1	1,111	8.8	1,594	8.2
11월	552	8.1	1,483	11.8	2,035	10.5
12월	450	6.6	1,023	8.1	1,473	7.6
계	6,774	100	12,617	100	19,39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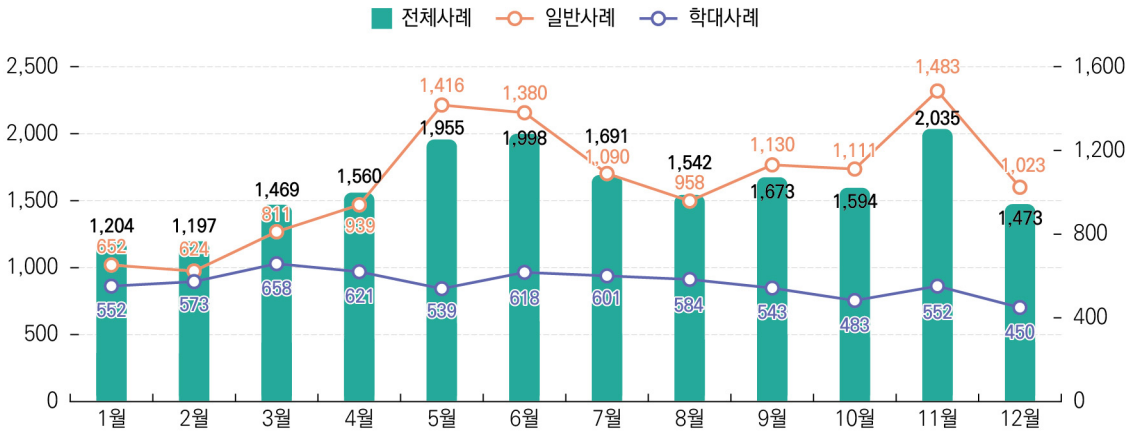

그림 4-3 월별 신고접수 건수 추이

2)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표 4-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학대사례		일반사례		계	
서울	서울남부	235	31.7	507	68.3	742	100
	서울북부	214	28.3	542	71.7	756	100
	서울서부	245	34.9	457	65.1	702	100
	서울동부	42	37.2	71	62.8	113	100
	소계	736	31.8	1,577	68.2	2,313	100
부산	부산동부	309	38.5	493	61.5	802	100
	부산서부	185	38.3	298	61.7	483	100
	소계	494	38.4	791	61.6	1,285	100
대구	대구남부	189	38.6	301	61.4	490	100
	대구북부	140	34.4	267	65.6	407	100
	소계	329	36.7	568	63.3	897	100
인천	인천	224	40.9	324	59.1	548	100
	인천서부	155	44.7	192	55.3	347	100
	소계	379	42.3	516	57.7	895	100
광주		219	46.4	253	53.6	472	100
대전		154	24.5	475	75.5	629	100
울산		178	35.7	320	64.3	498	100
경기	경기동부	271	40.8	393	59.2	664	100
	경기북부	547	53.8	469	46.2	1,016	100
	경기서부	314	63.2	183	36.8	497	100
	경기도	244	45.2	296	54.8	540	100
	경기북서부	55	33.5	109	66.5	164	100
	소계	1,431	49.7	1,450	50.3	2,881	100
강원	강원	157	35.4	286	64.6	443	100
	강원동부	85	21.3	315	78.8	400	100
	강원남부	131	29.5	313	70.5	444	100
	소계	373	29.0	914	71.0	1,287	100
충북	충북	118	9.4	1,132	90.6	1,250	100
	충북북부	82	23.8	263	76.2	345	100
	소계	200	12.5	1,395	87.5	1,595	100
충남	충남	223	68.4	103	31.6	326	100
	충남남부	132	59.2	91	40.8	223	100
	소계	355	64.7	194	35.3	549	100
전북	전북	184	43.4	240	56.6	424	100
	전북서부	136	30.1	316	69.9	452	100
	소계	320	36.5	556	63.5	876	100

지역	기관명	학대사례		일반사례		계	
전남	전남동부	152	37.3	255	62.7	407	100
	전남서부	215	42.3	293	57.7	508	100
	소계	367	40.1	548	59.9	915	100
경북	경북동부	176	39.8	266	60.2	442	100
	경북북부	132	16.1	690	83.9	822	100
	경북서부	207	32.3	433	67.7	640	100
	경북남부	84	35.6	152	64.4	236	100
	소계	599	28.0	1,541	72.0	2,140	100
경남	경남	335	38.2	543	61.8	878	100
	경남서부	157	30.5	358	69.5	515	100
	소계	492	35.3	901	64.7	1,393	100
제주	제주 특별자치도	84	14.0	514	86.0	598	100
	제주도 서귀포시	64	38.1	104	61.9	168	100
	소계	148	19.3	618	80.7	766	100
계		6,774	34.9	12,617	65.1	19,39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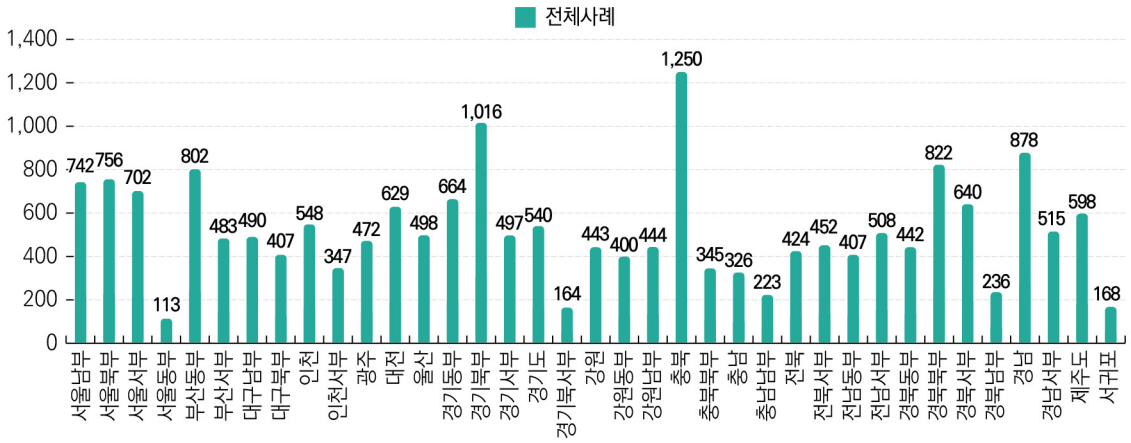

그림 4-4 지역 기관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표 4-4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율

(단위: 명, 건, %)

지역 및 기관명		총인구수 (A)	65세 이상 인구수 (B)	총인구수대비 65세 이상 인구수 (C=B/A×100)	신고접수 건수 (D)	지역별신고 접수율 (노인인구 천명당) (E=D/B×1000)
서울	서울남부	2,820,905	457,525	16.2	742	1.6
	서울북부	1,895,432	353,157	18.6	756	2.1
	서울서부	2,435,830	407,556	16.7	702	1.7
	서울동부*	2,357,291	379,209	16.1	113	0.3
	소계	9,509,458	1,597,447	16.8	2,313	1.4
부산	부산동부	1,546,504	323,369	20.9	802	2.5
	부산서부	1,803,876	358,516	19.9	483	1.3
	소계	3,350,380	681,885	20.4	1,285	1.9
대구	대구남부	1,367,649	224,101	16.4	490	2.2
	대구북부	1,017,763	192,959	19.0	407	2.1
	소계	2,385,412	417,060	17.5	897	2.2
인천	인천	1,540,841	231,144	15.0	548	2.4
	인천서부	1,407,534	204,287	14.5	347	1.7
	소계	2,948,375	435,431	14.8	895	2.1
광주		1,441,611	213,291	14.8	472	2.2
대전		1,452,251	221,207	15.2	629	2.8
울산		1,121,592	152,961	13.6	498	3.3
경기	경기동부	2,852,302	434,945	15.2	664	1.5
	경기북부	2,157,065	338,321	15.7	1,016	3.0
	경기서부	2,663,404	364,208	13.7	497	1.4
	경기도	3,707,260	426,252	11.5	540	1.3
	경기북서부*	2,185,419	317,738	14.5	164	0.5
	소계	13,565,450	1,881,464	13.9	2,881	1.5
강원	강원	474,407	99,878	21.1	443	4.4
	강원동부	504,428	116,821	23.2	400	3.4
	강원남부	559,657	116,477	20.8	444	3.8
	소계	1,538,492	333,176	21.7	1,287	3.9
충북	충북	1,097,828	183,458	16.7	1,250	6.8
	충북북부	499,599	118,058	23.6	345	2.9
	소계	1,597,427	301,516	18.9	1,595	5.3
충남	충남	1,936,349	294,511	15.2	326	1.1
	충남남부	554,803	162,931	29.4	223	1.4
	소계	2,491,152	457,442	18.4	549	1.2
전북	전북	951,857	192,911	20.3	424	2.2
	전북서부	834,998	204,708	24.5	452	2.2
	소계	1,786,855	397,619	22.3	876	2.2

지역 및 기관명		총인구수 (A)	65세 이상 인구수 (B)	총인구수대비 65세 이상 인구수 (C=B/A×100)	신고접수 건수 (D)	지역별신고 접수율 (노인인구 천명당) (E=D/B×1000)
전남	전남동부	1,052,352	243,292	23.1	407	1.7
	전남서부	780,451	201,906	25.9	508	2.5
	소계	1,832,803	445,198	24.3	915	2.1
경북	경북동부	872,319	192,898	22.1	442	2.3
	경북북부	412,367	126,416	30.7	822	6.5
	경북서부	762,382	144,122	18.9	640	4.4
	경북남부*	579,541	132,876	22.9	236	1.8
	소계	2,626,609	596,312	22.7	2,140	3.6
경남	경남	2,568,418	417,180	16.2	878	2.1
	경남서부	745,765	191,199	25.6	515	2.7
	소계	3,314,183	608,379	18.4	1,393	2.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493,096	73,797	15.0	598	8.1
	제주도서귀포시	183,663	36,848	20.1	168	4.6
	소계	676,759	110,645	16.3	766	6.9
계		51,638,809	8,851,033	17.1	19,391	2.2

주. 65세 이상 인구수 : 행정안전부 2021년 주민등록 인구통계(2021.12 기준)
* 2021년 신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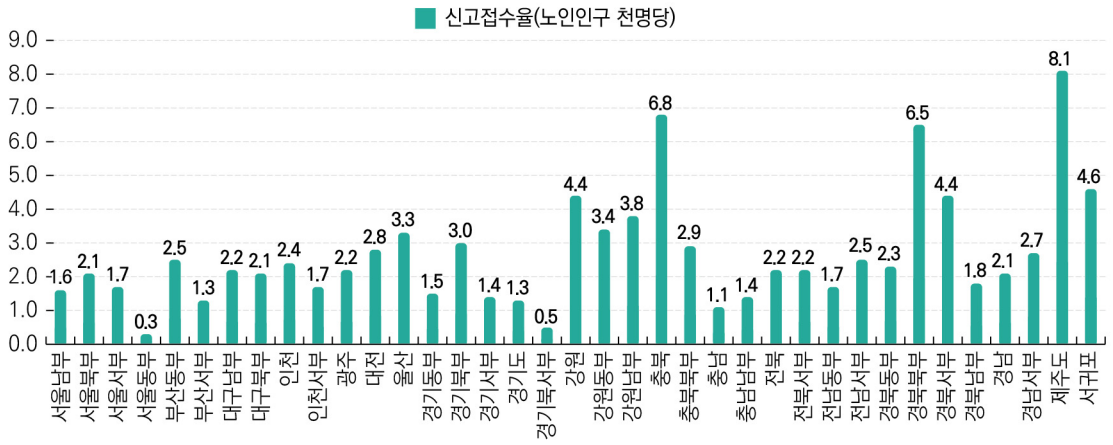

그림 4-5 기관별 노인학대 신고접수율(노인인구 천명당)

3) 시군구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표 4-5 시군구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건수	비율
서울	종로구	14	0.2
	중구	8	0.1
	용산구	27	0.4
	성동구	17	0.3
	광진구	17	0.3
	동대문구	35	0.5
	중랑구	31	0.5
	성북구	20	0.3
	강북구	36	0.5
	도봉구	31	0.5
	노원구	48	0.7
	은평구	36	0.5
	서대문구	25	0.4
	마포구	36	0.5
	양천구	26	0.4
	강서구	62	0.9
	구로구	45	0.7
	금천구	22	0.3
	영등포구	29	0.4
	동작구	32	0.5
	관악구	52	0.8
	서초구	10	0.1
	강남구	18	0.3
	송파구	38	0.6
	강동구	21	0.3
	소계	736	10.9
부산	중구	3	0.0
	서구	14	0.2
	동구	33	0.5
	영도구	55	0.8
	부산진구	49	0.7
	동래구	21	0.3
	남구	52	0.8
	북구	53	0.8
	해운대구	46	0.7
	사하구	46	0.7
	금정구	10	0.1
	강서구	10	0.1
	연제구	19	0.3

구 분		건수	비율
	수영구	21	0.3
	사상구	43	0.6
	기장군	19	0.3
	소계	494	7.3
대구	중구	19	0.3
	동구	51	0.8
	서구	31	0.5
	남구	26	0.4
	북구	39	0.6
	수성구	38	0.6
	달서구	93	1.4
	달성군	32	0.5
	소계	329	4.9
인천	중구	30	0.4
	동구	16	0.2
	미추홀구	69	1.0
	연수구	27	0.4
	남동구	82	1.2
	부평구	77	1.1
	계양구	16	0.2
	서구	48	0.7
	강화군	14	0.2
	옹진군	-	-
	소계	379	5.6
광주	동구	30	0.4
	서구	41	0.6
	남구	29	0.4
	북구	67	1.0
	광산구	50	0.7
	기타*	2	0.0
	소계	219	3.2
대전	동구	26	0.4
	중구	35	0.5
	서구	43	0.6
	유성구	11	0.2
	대덕구	39	0.6
	소계	154	2.3
울산	중구	58	0.9
	남구	36	0.5
	동구	21	0.3
	북구	28	0.4
	울주군	35	0.5
	소계	178	2.6

구 분		건수	비율
경기	수원시	96	1.4
	성남시	116	1.7
	의정부시	67	1.0
	안양시	40	0.6
	부천시	137	2.0
	광명시	28	0.4
	평택시	25	0.4
	동두천시	6	0.1
	안산시	68	1.0
	고양시	108	1.6
	과천시	9	0.1
	구리시	58	0.9
	남양주시	183	2.7
	오산시	14	0.2
	시흥시	54	0.8
	군포시	27	0.4
	의왕시	7	0.1
	하남시	16	0.2
	용인시	85	1.3
	파주시	50	0.7
	이천시	17	0.3
	안성시	11	0.2
	김포시	26	0.4
	화성시	30	0.4
	광주시	19	0.3
	양주시	36	0.5
	포천시	60	0.9
	여주시	4	0.1
	연천군	11	0.2
	가평군	9	0.1
	양평군	13	0.2
	기타*	1	0.0
	소계	1,431	21.1
강원	춘천시	97	1.4
	원주시	103	1.5
	강릉시	36	0.5
	동해시	9	0.1
	태백시	8	0.1
	속초시	15	0.2
	삼척시	13	0.2
	홍천군	12	0.2
	횡성군	8	0.1
	영월군	3	0.0

구 분		건수	비율
	평창군	6	0.1
	정선군	3	0.0
	철원군	6	0.1
	화천군	37	0.5
	양구군	4	0.1
	인제군	1	0.0
	고성군	3	0.0
	양양군	9	0.1
	소계	373	5.5
충북	청주시	98	1.4
	충주시	40	0.6
	제천시	16	0.2
	보은군	1	0.0
	옥천군	7	0.1
	영동군	2	0.0
	진천군	7	0.1
	괴산군	7	0.1
	음성군	17	0.3
	단양군	1	0.0
	증평군	3	0.0
	기타*	1	0.0
	소계	200	3.0
충남	천안시	50	0.7
	공주시	27	0.4
	보령시	19	0.3
	아산시	44	0.6
	서산시	47	0.7
	논산시	37	0.5
	계룡시	5	0.1
	당진시	20	0.3
	금산군	11	0.2
	부여군	19	0.3
	서천군	11	0.2
	청양군	2	0.0
	홍성군	11	0.2
	예산군	19	0.3
	태안군	8	0.1
	기타*	1	0.0
	소계	331	4.9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24	0.4
	소계	24	0.4
전북	전주시	141	2.1
	군산시	34	0.5

구 분		건수	비율
	익산시	49	0.7
	정읍시	18	0.3
	남원시	17	0.3
	김제시	23	0.3
	완주군	12	0.2
	진안군	-	-
	무주군	1	0.0
	장수군	4	0.1
	임실군	5	0.1
	순창군	4	0.1
	고창군	3	0.0
	부안군	9	0.1
	소계	320	4.7
전남	목포시	72	1.1
	여수시	49	0.7
	순천시	44	0.6
	나주시	17	0.3
	광양시	15	0.2
	담양군	9	0.1
	곡성군	8	0.1
	구례군	2	0.0
	고흥군	8	0.1
	보성군	5	0.1
	화순군	4	0.1
	장흥군	2	0.0
	강진군	12	0.2
	해남군	22	0.3
	영암군	12	0.2
	무안군	23	0.3
	함평군	15	0.2
	영광군	19	0.3
	장성군	6	0.1
	완도군	5	0.1
	진도군	4	0.1
	신안군	14	0.2
	소계	367	5.4
경북	포항시	84	1.2
	경주시	31	0.5
	김천시	42	0.6
	안동시	55	0.8
	구미시	92	1.4
	영주시	23	0.3
	영천시	37	0.5

구 분		건수	비율
	상주시	26	0.4
	문경시	20	0.3
	경산시	33	0.5
	군위군	2	0.0
	의성군	20	0.3
	청송군	17	0.3
	영양군	-	-
	영덕군	13	0.2
	청도군	12	0.2
	고령군	12	0.2
	성주군	13	0.2
	칠곡군	16	0.2
	예천군	16	0.2
	봉화군	8	0.1
	울진군	27	0.4
	울릉군	-	-
	소계	599	8.8
경남	창원시	128	1.9
	진주시	68	1.0
	통영시	16	0.2
	사천시	15	0.2
	김해시	67	1.0
	밀양시	12	0.2
	거제시	25	0.4
	양산시	82	1.2
	의령군	3	0.0
	함안군	1	0.0
	창녕군	2	0.0
	고성군	2	0.0
	남해군	8	0.1
	하동군	6	0.1
	산청군	14	0.2
	함양군	10	0.1
	거창군	23	0.3
	합천군	10	0.1
	소계	492	7.3
제주	제주시	84	1.2
	서귀포시	64	0.9
	소계	148	2.2
합계		6,774	100

*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가 아닌 타부양가족의 집에 머무르거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 등이 해당됨.

4) 발생장소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표 4-6 발생장소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일반병원			
응급	132	-	3	-	-	1	-	3	3	142
	93.0	-	2.1	-	-	0.7	-	2.1	2.1	100
비응급	3,947	18	312	1	58	35	2	29	43	4,445
	88.8	0.4	7.0	0.0	1.3	0.8	0.0	0.7	1.0	100
잠재적	1,883	21	182	-	28	23	1	22	27	2,187
	86.1	1.0	8.3	-	1.3	1.1	0.0	1.0	1.2	100
계	5,962	39	497	1	86	59	3	54	73	6,774
	88.0	0.6	7.3	0.0	1.3	0.9	0.0	0.8	1.1	100

5) 신고자 유형

표 4-7 신고자 유형 I

(단위: 건,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계
860	5,914	6,774
12.7	87.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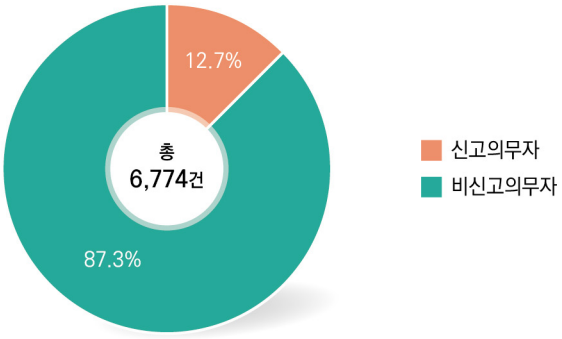

그림 4-6 신고자 유형 I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표 4-8 신고자 유형Ⅱ(신고의무자)

(단위: 건, %)

신고의무자																	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 요양과 돌봄이나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 복지 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 복지 상담원	장애 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 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기 요양 기관의 장과 종사자	119 구급대의 구급 대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의 장과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의 장과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 보건 의료 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 복지 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23	11	246	4	70	326	10	45	1	1	-	7	-	-	25	8	83	860
2.7	1.3	28.6	0.5	8.1	37.9	1.2	5.2	0.1	0.1	-	0.8	-	-	2.9	0.9	9.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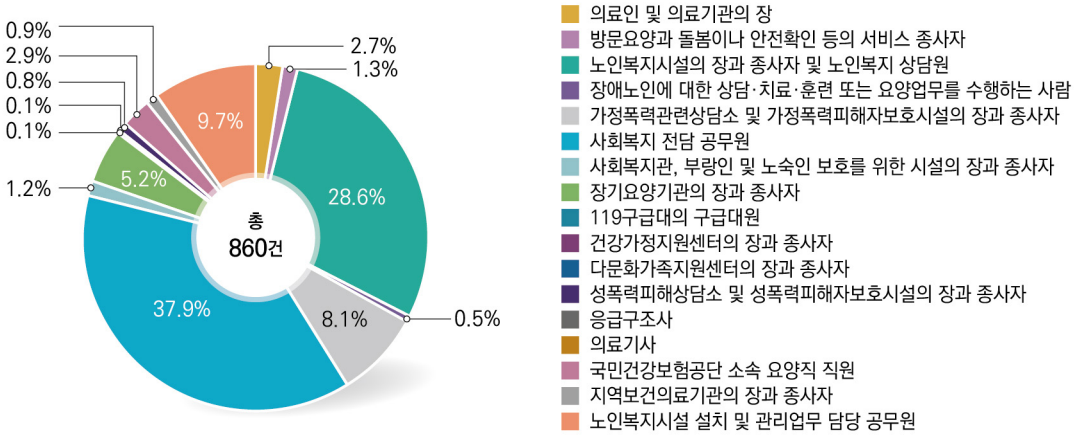

그림 4-7 신고자 유형Ⅱ

표 4-9 신고자 유형Ⅲ (비신고의무자)

(단위: 건, %)

비신고의무자					계
학대피해노인 본인	학대행위자 본인	친족[13]	타인[14]	관련기관[15]	
361	8	549	197	4,799	5,914
6.1	0.1	9.3	3.3	81.1	100

13) 친족에는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등이 해당됨.

14) 타인에는 동거인, 이웃, 익명, 친구 등이 해당됨.

15) 관련기관에는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됨.

6) 신고접수 및 경로 인지 유형

가. 신고접수 경로

표 4-10 신고접수 경로

(단위: 건,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 이관	보건 복지 콜센터 129 이관	여성 긴급 전화 1366	112 이관	건강 보험 공단	경로당	노인 돌봄 서비스 생활 관리사	노인 일자리 사업	시청	의료 기관	자체 접수	정신 건강 복지 센터	타지역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이관	행정 복지 센터	희망 복지 지원단	계
2	30	46	3,838	22	-	22	-	152	24	2,365	22	28	173	50	6,774
0.0	0.4	0.7	56.7	0.3	-	0.3	-	2.2	0.4	34.9	0.3	0.4	2.6	0.7	100

나. 신고접수 유형

표 4-11 신고접수 유형

(단위: 건, %)

대 면	서 신[16]	온라인	전 화	계
256	4,147	45	2,326	6,774
3.8	61.2	0.7	34.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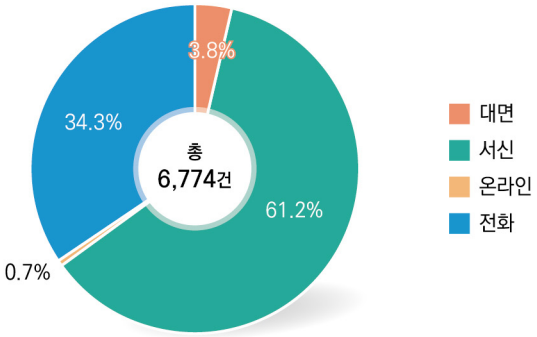

그림 4-8 신고접수 유형

16) 112 등 연계기관에서 의뢰한 '노인학대 의심 사례통보서' 등 문서로 신고된 유형이 서신 신고에 해당됨.

다. 신고 경로 인지 유형

표 4-12 신고 경로 인지 유형별 신고자 구분

(단위: 건, %)

구 분	대중매체	이미 개입 경험이 있으며 직접 홍보의 경우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	인터넷	주변인	직접홍보	타기관 안내	계
신고 의무자	4	28	794	7	4	11	12	860
	0.5	3.3	92.3	0.8	0.5	1.3	1.4	100
비신고 의무자	111	158	5,074	138	99	68	266	5,914
	1.9	2.7	85.8	2.3	1.7	1.1	4.5	100
계	115	186	5,868	145	103	79	278	6,774
	1.7	2.7	86.6	2.1	1.5	1.2	4.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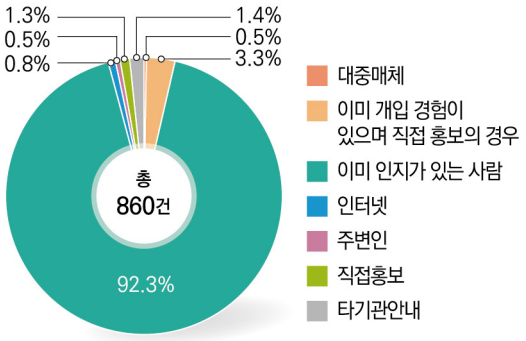

그림 4-9 신고의무자의 신고 경로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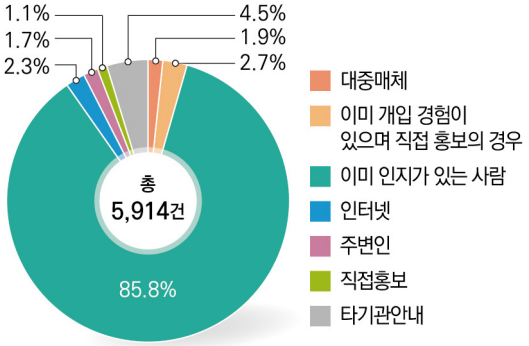

그림 4-10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경로 인지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ART

05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5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1. 현장조사

표 5-1 현장조사

(단위: 건, %)

학대사례	현장조사	실시비율
6,774	6,696	98.8

표 5-2 지역 및 기관별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단위: 건, 회, %)

지역	기관명	학대사례 (A)	현장조사 (B)	실시비율 (C)=B/A×100	방문상담 (D)	방문상담횟수 (E)=D/A
서울	서울남부	235	235	100.0	1,145	4.9
	서울북부	214	214	100.0	1,138	5.3
	서울서부	245	245	100.0	1,343	5.5
	서울동부*	42	39	92.9	75	1.8
	소계	736	733	99.6	3,701	5.0
부산	부산동부	309	309	100.0	2,323	7.5
	부산서부	185	185	100.0	674	3.6
	소계	494	494	100.0	2,997	6.1
대구	대구남부	189	189	100.0	1,164	6.2
	대구북부	140	137	97.9	554	4.0
	소계	329	326	99.1	1,718	5.2
인천	인천	224	224	100.0	758	3.4
	인천서부	155	155	100.0	296	1.9
	소계	379	379	100.0	1,054	2.8
광주		219	219	100.0	1,013	4.6
대전		154	154	100.0	1,173	7.6
울산		178	174	97.8	1,359	7.6
경기	경기동부	271	267	98.5	816	3.0
	경기북부	547	546	99.8	979	1.8
	경기서부	314	306	97.5	1,258	4.0
	경기도	244	220	90.2	383	1.6
	경기북서부*	55	55	100.0	180	3.3
	소계	1,431	1,394	97.4	3,616	2.5

지역	기관명	학대사례 (A)	현장조사 (B)	실시비율 (C)=B/A×100	방문상담 (D)	방문상담횟수 (E)=D/A
강원	강원	157	154	98.1	1,285	8.2
	강원동부	85	83	97.6	544	6.4
	강원남부	131	123	93.9	808	6.2
	소계	373	360	96.5	2,637	7.1
충북	충북	118	115	97.5	2,291	19.4
	충북북부	82	81	98.8	670	8.2
	소계	200	196	98.0	2,961	14.8
충남	충남	223	223	100.0	2,100	9.4
	충남남부	132	132	100.0	931	7.1
	소계	355	355	100.0	3,031	8.5
전북	전북	184	184	100.0	1,302	7.1
	전북서부	136	135	99.3	1,063	7.8
	소계	320	319	99.7	2,365	7.4
전남	전남동부	152	152	100.0	490	3.2
	전남서부	215	212	98.6	1,708	7.9
	소계	367	364	99.2	2,198	6.0
경북	경북동부	176	176	100.0	1,189	6.8
	경북북부	132	132	100.0	1,169	8.9
	경북서부	207	203	98.1	1,207	5.8
	경북남부*	84	84	100.0	311	3.7
	소계	599	595	99.3	3,876	6.5
경남	경남	335	331	98.8	1,214	3.6
	경남서부	157	156	99.4	1,414	9.0
	소계	492	487	99.0	2,628	5.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84	83	98.8	1,046	12.5
	제주도서귀포시	64	64	100.0	516	8.1
	소계	148	147	99.3	1,562	10.6
계		6,774	6,696	98.8	37,889	5.6

* 2021년 신규기관

2. 사례판정

표 5-3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서울	서울남부	1	0.4	206	87.7	28	11.9	235	100
	서울북부	1	0.5	146	68.2	67	31.3	214	100
	서울서부	1	0.4	150	61.2	94	38.4	245	100
	서울동부*	1	2.4	21	50.0	20	47.6	42	100
	소계	4	0.5	523	71.1	209	28.4	736	100
부산	부산동부	8	2.6	217	70.2	84	27.2	309	100
	부산서부	16	8.6	137	74.1	32	17.3	185	100
	소계	24	4.9	354	71.7	116	23.5	494	100
대구	대구남부	-	-	170	89.9	19	10.1	189	100
	대구북부	2	1.4	61	43.6	77	55.0	140	100
	소계	2	0.6	231	70.2	96	29.2	329	100
인천	인천	1	0.4	25	11.2	198	88.4	224	100
	인천서부	-	-	12	7.7	143	92.3	155	100
	소계	1	0.3	37	9.8	341	90.0	379	100
광주		6	2.7	210	95.9	3	1.4	219	100
대전		2	1.3	60	39.0	92	59.7	154	100
울산		6	3.4	144	80.9	28	15.7	178	100
경기	경기동부	1	0.4	227	83.8	43	15.9	271	100
	경기북부	18	3.3	387	70.7	142	26.0	547	100
	경기서부	13	4.1	191	60.8	110	35.0	314	100
	경기도	1	0.4	84	34.4	159	65.2	244	100
	경기북서부*	1	1.8	36	65.5	18	32.7	55	100
	소계	34	2.4	925	64.6	472	33.0	1,431	100
강원	강원	2	1.3	132	84.1	23	14.6	157	100
	강원동부	1	1.2	30	35.3	54	63.5	85	100
	강원남부	5	3.8	104	79.4	22	16.8	131	100
	소계	8	2.1	266	71.3	99	26.5	373	100
충북	충북	9	7.6	87	73.7	22	18.6	118	100
	충북북부	6	7.3	54	65.9	22	26.8	82	100
	소계	15	7.5	141	70.5	44	22.0	200	100
충남	충남	10	4.5	197	88.3	16	7.2	223	100
	충남남부	3	2.3	45	34.1	84	63.6	132	100
	소계	13	3.7	242	68.2	100	28.2	355	100

지역	기관명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전북	전북	1	0.5	163	88.6	20	10.9	184	100
	전북서부	1	0.7	62	45.6	73	53.7	136	100
	소계	2	0.6	225	70.3	93	29.1	320	100
전남	전남동부	8	5.3	144	94.7	-	-	152	100
	전남서부	8	3.7	151	70.2	56	26.0	215	100
	소계	16	4.4	295	80.4	56	15.3	367	100
경북	경북동부	1	0.6	21	11.9	154	87.5	176	100
	경북북부	4	3.0	111	84.1	17	12.9	132	100
	경북서부	2	1.0	159	76.8	46	22.2	207	100
	경북남부*	-	-	2	2.4	82	97.6	84	100
	소계	7	1.2	293	48.9	299	49.9	599	100
경남	경남	-	-	276	82.4	59	17.6	335	100
	경남서부	-	-	117	74.5	40	25.5	157	100
	소계	-	-	393	79.9	99	20.1	492	1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	2.4	49	58.3	33	39.3	84	100
	제주도서귀포시	-	-	57	89.1	7	10.9	64	100
	소계	2	1.4	106	71.6	40	27.0	148	100
계		142	2.1	4,445	65.6	2,187	32.3	6,774	100

* 2021년 신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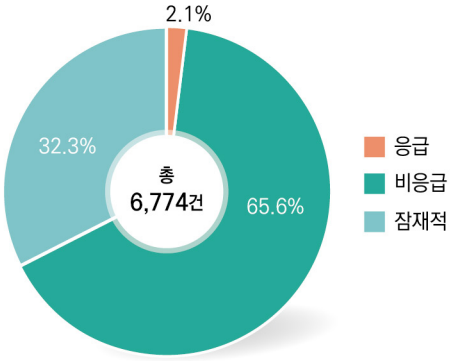

그림 5-1 사례판정 결과

표 5-4 시군구별 사례판정 결과

(단위: 건, %)

지역	시군구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서울	종로구	-	-	6	42.9	8	57.1	14	100
	중구	-	-	6	75.0	2	25.0	8	100
	용산구	-	-	23	85.2	4	14.8	27	100
	성동구	-	-	11	64.7	6	35.3	17	100
	광진구	-	-	14	82.4	3	17.6	17	100
	동대문구	-	-	28	80.0	7	20.0	35	100
	중랑구	1	3.2	12	38.7	18	58.1	31	100
	성북구	-	-	14	70.0	6	30.0	20	100
	강북구	-	-	27	75.0	9	25.0	36	100
	도봉구	-	-	15	48.4	16	51.6	31	100
	노원구	-	-	33	68.8	15	31.3	48	100
	은평구	1	2.8	22	61.1	13	36.1	36	100
	서대문구	-	-	14	56.0	11	44.0	25	100
	마포구	-	-	25	69.4	11	30.6	36	100
	양천구	-	-	13	50.0	13	50.0	26	100
	강서구	-	-	41	66.1	21	33.9	62	100
	구로구	-	-	27	60.0	18	40.0	45	100
	금천구	-	-	19	86.4	3	13.6	22	100
	영등포구	-	-	27	93.1	2	6.9	29	100
	동작구	1	3.1	28	87.5	3	9.4	32	100
	관악구	-	-	47	90.4	5	9.6	52	100
	서초구	-	-	9	90.0	1	10.0	10	100
	강남구	-	-	16	88.9	2	11.1	18	100
	송파구	-	-	31	81.6	7	18.4	38	100
	강동구	1	4.8	15	71.4	5	23.8	21	100
	소계	4	0.5	523	71.1	209	28.4	736	100
부산	중구	-	-	3	100.0	-	-	3	100
	서구	-	-	11	78.6	3	21.4	14	100
	동구	3	9.1	18	54.5	12	36.4	33	100
	영도구	1	1.8	36	65.5	18	32.7	55	100
	부산진구	6	12.2	39	79.6	4	8.2	49	100
	동래구	-	-	18	85.7	3	14.3	21	100
	남구	2	3.8	32	61.5	18	34.6	52	100
	북구	1	1.9	38	71.7	14	26.4	53	100
	해운대구	4	8.7	32	69.6	10	21.7	46	100
	사하구	1	2.2	36	78.3	9	19.6	46	100
	금정구	-	-	8	80.0	2	20.0	10	100
	강서구	-	-	7	70.0	3	30.0	10	100
	연제구	3	15.8	12	63.2	4	21.1	19	100
	수영구	2	9.5	16	76.2	3	14.3	21	100

지역	시군구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사상구	-	-	36	83.7	7	16.3	43	100
	기장군	1	5.3	12	63.2	6	31.6	19	100
	소계	24	4.9	354	71.7	116	23.5	494	100
대구	중구	-	-	9	47.4	10	52.6	19	100
	동구	2	3.9	22	43.1	27	52.9	51	100
	서구	-	-	13	41.9	18	58.1	31	100
	남구	-	-	25	96.2	1	3.8	26	100
	북구	-	-	17	43.6	22	56.4	39	100
	수성구	-	-	35	92.1	3	7.9	38	100
	달서구	-	-	82	88.2	11	11.8	93	100
	달성군	-	-	28	87.5	4	12.5	32	100
	소계	2	0.6	231	70.2	96	29.2	329	100
인천	중구	-	-	4	13.3	26	86.7	30	100
	동구	-	-	4	25.0	12	75.0	16	100
	미추홀구	-	-	5	7.2	64	92.8	69	100
	연수구	-	-	2	7.4	25	92.6	27	100
	남동구	1	1.2	10	12.2	71	86.6	82	100
	부평구	-	-	8	10.4	69	89.6	77	100
	계양구	-	-	-	-	16	100.0	16	100
	서구	-	-	2	4.2	46	95.8	48	100
	강화군	-	-	2	14.3	12	85.7	14	100
	옹진군	-	-	-	-	-	-	-	-
	소계	1	0.3	37	9.8	341	90.0	379	100
광주	동구	-	-	30	100.0	-	-	30	100
	서구	1	2.4	40	97.6	-	-	41	100
	남구	-	-	29	100.0	-	-	29	100
	북구	1	1.5	64	95.5	2	3.0	67	100
	광산구	3	6.0	47	94.0	-	-	50	100
	기타*	1	50.0	-	-	1	50.0	2	100
	소계	6	2.7	210	95.9	3	1.4	219	100
대전	동구	-	-	11	42.3	15	57.7	26	100
	중구	1	2.9	7	20.0	27	77.1	35	100
	서구	-	-	8	18.6	35	81.4	43	100
	유성구	-	-	3	27.3	8	72.7	11	100
	대덕구	1	2.6	31	79.5	7	17.9	39	100
	소계	2	1.3	60	39.0	92	59.7	154	100
울산	중구	3	5.2	46	79.3	9	15.5	58	100
	남구	1	2.8	28	77.8	7	19.4	36	100
	동구	1	4.8	15	71.4	5	23.8	21	100
	북구	1	3.6	24	85.7	3	10.7	28	100
	울주군	-	-	31	88.6	4	11.4	35	100
	소계	6	3.4	144	80.9	28	15.7	178	100

지역	시군구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경기	수원시	-	-	36	37.5	60	62.5	96	100
	성남시	-	-	99	85.3	17	14.7	116	100
	의정부시	5	7.5	47	70.1	15	22.4	67	100
	안양시	4	10.0	19	47.5	17	42.5	40	100
	부천시	7	5.1	85	62.0	45	32.8	137	100
	광명시	1	3.6	23	82.1	4	14.3	28	100
	평택시	1	4.0	11	44.0	13	52.0	25	100
	동두천시	1	16.7	3	50.0	2	33.3	6	100
	안산시	-	-	17	25.0	51	75.0	68	100
	고양시	1	0.9	69	63.9	38	35.2	108	100
	과천시	-	-	5	55.6	4	44.4	9	100
	구리시	2	3.4	39	67.2	17	29.3	58	100
	남양주시	2	1.1	146	79.8	35	19.1	183	100
	오산시	-	-	7	50.0	7	50.0	14	100
	시흥시	1	1.9	30	55.6	23	42.6	54	100
	군포시	-	-	17	63.0	10	37.0	27	100
	의왕시	-	-	4	57.1	3	42.9	7	100
	하남시	-	-	13	81.3	3	18.8	16	100
	용인시	1	1.2	67	78.8	17	20.0	85	100
	파주시	3	6.0	30	60.0	17	34.0	50	100
	이천시	-	-	16	94.1	1	5.9	17	100
	안성시	-	-	7	63.6	4	36.4	11	100
	김포시	-	-	20	76.9	6	23.1	26	100
	화성시	-	-	6	20.0	24	80.0	30	100
	광주시	-	-	15	78.9	4	21.1	19	100
	양주시	1	2.8	16	44.4	19	52.8	36	100
	포천시	1	1.7	49	81.7	10	16.7	60	100
	여주시	-	-	4	100.0	-	-	4	100
	연천군	-	-	10	90.9	1	9.1	11	100
	가평군	3	33.3	5	55.6	1	11.1	9	100
	양평군	-	-	10	76.9	3	23.1	13	100
	기타*	-	-	-	-	1	100.0	1	100
	소계	34	2.4	925	64.6	472	33.0	1431	100
강원	춘천시	2	2.1	77	79.4	18	18.6	97	100
	원주시	3	2.9	85	82.5	15	14.6	103	100
	강릉시	1	2.8	13	36.1	22	61.1	36	100
	동해시	-	-	4	44.4	5	55.6	9	100
	태백시	1	12.5	7	87.5	-	-	8	100
	속초시	-	-	4	26.7	11	73.3	15	100
	삼척시	-	-	4	30.8	9	69.2	13	100
	홍천군	-	-	10	83.3	2	16.7	12	100

지역	시군구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횡성군	-	-	4	50.0	4	50.0	8	100
	영월군	1	33.3	2	66.7	-	-	3	100
	평창군	-	-	5	83.3	1	16.7	6	100
	정선군	-	-	1	33.3	2	66.7	3	100
	철원군	-	-	5	83.3	1	16.7	6	100
	화천군	-	-	36	97.3	1	2.7	37	100
	양구군	-	-	3	75.0	1	25.0	4	100
	인제군	-	-	1	100.0	-	-	1	100
	고성군	-	-	2	66.7	1	33.3	3	100
	양양군	-	-	3	33.3	6	66.7	9	100
	소계	8	2.1	266	71.3	99	26.5	373	100
충북	청주시	6	6.1	74	75.5	18	18.4	98	100
	충주시	3	7.5	26	65.0	11	27.5	40	100
	제천시	-	-	15	93.8	1	6.3	16	100
	보은군	-	-	1	100.0	-	-	1	100
	옥천군	2	28.6	3	42.9	2	28.6	7	100
	영동군	1	50.0	1	50.0	-	-	2	100
	진천군	-	-	6	85.7	1	14.3	7	100
	괴산군	1	14.3	5	71.4	1	14.3	7	100
	음성군	2	11.8	7	41.2	8	47.1	17	100
	단양군	-	-	-	-	1	100.0	1	100
	증평군	-	-	2	66.7	1	33.3	3	100
	기타*	-	-	1	100.0	-	-	1	100
	소계	15	7.5	141	70.5	44	22.0	200	100
충남	천안시	4	8.0	42	84.0	4	8.0	50	100
	공주시	1	3.7	10	37.0	16	59.3	27	100
	보령시	-	-	9	47.4	10	52.6	19	100
	아산시	2	4.5	39	88.6	3	6.8	44	100
	서산시	1	2.1	41	87.2	5	10.6	47	100
	논산시	2	5.4	14	37.8	21	56.8	37	100
	계룡시	-	-	1	20.0	4	80.0	5	100
	당진시	-	-	19	95.0	1	5.0	20	100
	금산군	-	-	3	27.3	8	72.7	11	100
	부여군	-	-	4	21.1	15	78.9	19	100
	서천군	-	-	2	18.2	9	81.8	11	100
	청양군	-	-	1	50.0	1	50.0	2	100
	홍성군	-	-	10	90.9	1	9.1	11	100
	예산군	1	5.3	18	94.7	-	-	19	100
	태안군	-	-	7	87.5	1	12.5	8	100
	기타*	-	-	1	100.0	-	-	1	100
	소계	11	3.3	221	66.8	99	29.9	331	100

지역	시군구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2	8.3	21	87.5	1	4.2	24	100
	소계	2	8.3	21	87.5	1	4.2	24	100
전북	전주시	1	0.7	126	89.4	14	9.9	141	100
	군산시	-	-	15	44.1	19	55.9	34	100
	익산시	1	2.0	19	38.8	29	59.2	49	100
	정읍시	-	-	11	61.1	7	38.9	18	100
	남원시	-	-	14	82.4	3	17.6	17	100
	김제시	-	-	12	52.2	11	47.8	23	100
	완주군	-	-	12	100.0	-	-	12	100
	진안군	-	-	-	-	-	-	-	-
	무주군	-	-	-	-	1	100.0	1	100
	장수군	-	-	4	100.0	-	-	4	100
	임실군	-	-	3	60.0	2	40.0	5	100
	순창군	-	-	4	100.0	-	-	4	100
	고창군	-	-	1	33.3	2	66.7	3	100
	부안군	-	-	4	44.4	5	55.6	9	100
	소계	2	0.6	225	70.3	93	29.1	320	100
전남	목포시	1	1.4	54	75.0	17	23.6	72	100
	여수시	-	-	49	100.0	-	-	49	100
	순천시	3	6.8	41	93.2	-	-	44	100
	나주시	1	5.9	9	52.9	7	41.2	17	100
	광양시	1	6.7	14	93.3	-	-	15	100
	담양군	-	-	9	100.0	-	-	9	100
	곡성군	-	-	8	100.0	-	-	8	100
	구례군	-	-	2	100.0	-	-	2	100
	고흥군	2	25.0	6	75.0	-	-	8	100
	보성군	-	-	5	100.0	-	-	5	100
	화순군	-	-	4	100.0	-	-	4	100
	장흥군	-	-	2	100.0	-	-	2	100
	강진군	-	-	7	58.3	5	41.7	12	100
	해남군	-	-	16	72.7	6	27.3	22	100
	영암군	2	16.7	9	75.0	1	8.3	12	100
	무안군	2	8.7	13	56.5	8	34.8	23	100
	함평군	1	6.7	12	80.0	2	13.3	15	100
	영광군	-	-	15	78.9	4	21.1	19	100
	장성군	2	33.3	4	66.7	-	-	6	100
	완도군	-	-	3	60.0	2	40.0	5	100
	진도군	1	25.0	1	25.0	2	50.0	4	100
	신안군	-	-	12	85.7	2	14.3	14	100
	소계	16	4.4	295	80.4	56	15.3	367	100

지역	시군구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경북	포항시	1	1.2	8	9.5	75	89.3	84	100
	경주시	-	-	9	29.0	22	71.0	31	100
	김천시	-	-	27	64.3	15	35.7	42	100
	안동시	-	-	46	83.6	9	16.4	55	100
	구미시	1	1.1	76	82.6	15	16.3	92	100
	영주시	-	-	21	91.3	2	8.7	23	100
	영천시	-	-	1	2.7	36	97.3	37	100
	상주시	-	-	21	80.8	5	19.2	26	100
	문경시	-	-	17	85.0	3	15.0	20	100
	경산시	1	3.0	7	21.2	25	75.8	33	100
	군위군	-	-	2	100.0	-	-	2	100
	의성군	1	5.0	17	85.0	2	10.0	20	100
	청송군	-	-	-	-	17	100.0	17	100
	영양군	-	-	-	-	-	-	-	-
	영덕군	-	-	-	-	13	100.0	13	100
	청도군	-	-	-	-	12	100.0	12	100
	고령군	-	-	1	8.3	11	91.7	12	100
	성주군	-	-	11	84.6	2	15.4	13	100
	칠곡군	-	-	8	50.0	8	50.0	16	100
	예천군	3	18.8	10	62.5	3	18.8	16	100
	봉화군	-	-	8	100.0	-	-	8	100
	울진군	-	-	3	11.1	24	88.9	27	100
	울릉군	-	-	-	-	-	-	-	-
	소계	7	1.2	293	48.9	299	49.9	599	100
경남	창원시	-	-	101	78.9	27	21.1	128	100
	진주시	-	-	43	63.2	25	36.8	68	100
	통영시	-	-	13	81.3	3	18.8	16	100
	사천시	-	-	12	80.0	3	20.0	15	100
	김해시	-	-	58	86.6	9	13.4	67	100
	밀양시	-	-	11	91.7	1	8.3	12	100
	거제시	-	-	21	84.0	4	16.0	25	100
	양산시	-	-	68	82.9	14	17.1	82	100
	의령군	-	-	3	100.0	-	-	3	100
	함안군	-	-	1	100.0	-	-	1	100
	창녕군	-	-	1	50.0	1	50.0	2	100
	고성군	-	-	2	100.0	-	-	2	100
	남해군	-	-	4	50.0	4	50.0	8	100
	하동군	-	-	4	66.7	2	33.3	6	100
	산청군	-	-	13	92.9	1	7.1	14	100
	함양군	-	-	8	80.0	2	20.0	10	100
	거창군	-	-	22	95.7	1	4.3	23	100

지역	시군구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합천군	-	-	8	80.0	2	20.0	10	100
	소계	-	-	393	79.9	99	20.1	492	100
제주	제주시	2	2.4	49	58.3	33	39.3	84	100
	서귀포시	-	-	57	89.1	7	10.9	64	100
	소계	2	1.4	106	71.6	40	27.0	148	100
합계		142	2.1	4,445	65.6	2,187	32.3	6,774	100

*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가 아닌 타부양가족의 집에 머무르거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 등이 해당됨.

표 5-5 사례판정 결과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 분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신체적 학대	103	42.4	3,252	44.5	1,035	33.7	4,390	41.3
정서적 학대	90	37.0	3,121	42.7	1,416	46.0	4,627	43.6
성적 학대	4	1.6	219	3.0	37	1.2	260	2.4
경제적 학대	10	4.1	240	3.3	156	5.1	406	3.8
방임	20	8.2	339	4.6	332	10.8	691	6.5
자기방임	10	4.1	110	1.5	84	2.7	204	1.9
유기	6	2.5	25	0.3	15	0.5	46	0.4
계	243	100	7,306	100	3,075	100	10,624*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774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624건)에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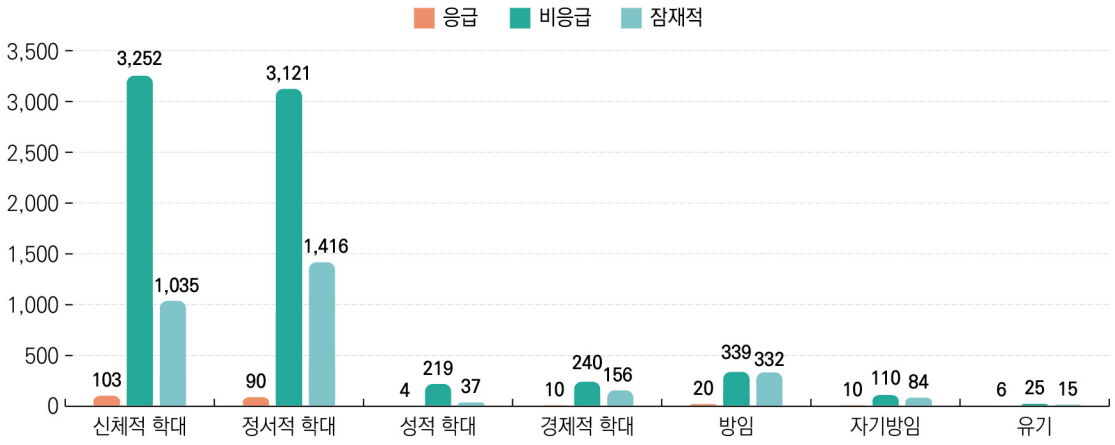

그림 5-2 사례판정 결과별 노인학대 유형

표 5-6 사례판정 결과별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신고자 유형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피해자 본인	10	7.0	218	4.9	133	6.1	361	5.3
학대행위자	-	-	3	0.1	5	0.2	8	0.1
친족[17]	13	9.2	305	6.9	231	10.6	549	8.1
타인[18]	2	1.4	122	2.7	73	3.3	197	2.9
관련기관[19]	92	64.8	3,299	74.2	1,408	64.4	4,799	70.8
신고의무자	25	17.6	498	11.2	337	15.4	860	12.7
계	142	100	4,445	100	2,187	100	6,77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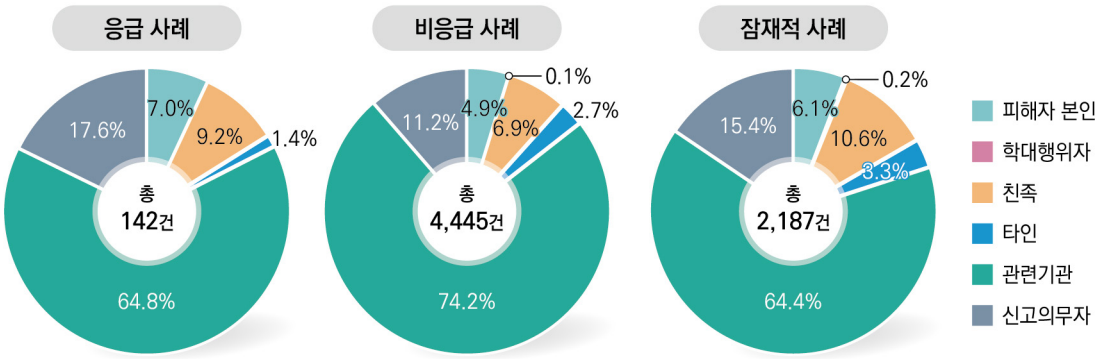

그림 5-3 사례판정 결과별 신고자 유형

17) 친족에는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이 해당됨.
18) 타인에는 동거인, 이웃, 익명, 친구 등이 해당됨.
19) 관련기관에는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됨.

PART

06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6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1.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1)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표 6-1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단위: 건,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중복학대	계
670	620	65	37	244	85	22	5,031	6,774
9.9	9.2	1.0	0.5	3.6	1.3	0.3	74.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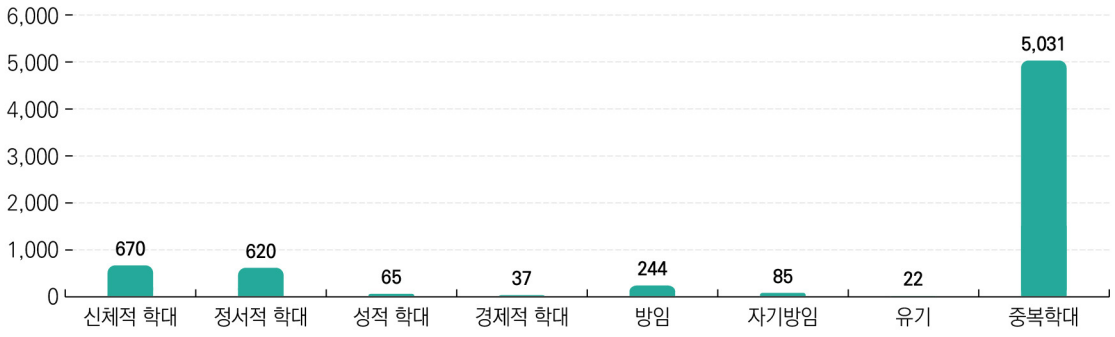

그림 6-1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2) 노인학대 유형II(학대유형 건수)

표 6-2 노인학대 유형II(학대유형 건수)

(단위: 건,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4,390	4,627	260	406	691	204	46	10,624*
41.3	43.6	2.4	3.8	6.5	1.9	0.4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774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624건)에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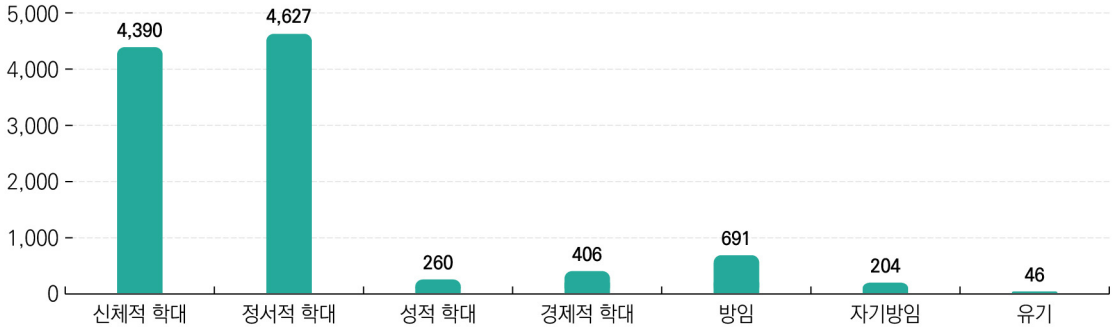

그림 6-2 노인학대 유형II(학대유형 건수)

표 6-3 시군구별 노인학대 유형II(학대유형 건수)

(단위: 건, %)

지역	시군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서울	종로구	7	33.3	11	52.4	-	-	1	4.8	2	9.5	-	-	-	-	21	100
	중구	6	42.9	7	50.0	-	-	-	-	-	-	1	7.1	-	-	14	100
	용산구	17	42.5	22	55.0	-	-	-	-	1	2.5	-	-	-	-	40	100
	성동구	14	45.2	14	45.2	-	-	1	3.2	1	3.2	-	-	1	3.2	31	100
	광진구	16	43.2	15	40.5	-	-	4	10.8	2	5.4	-	-	-	-	37	100
	동대문구	32	48.5	31	47.0	1	1.5	1	1.5	1	1.5	-	-	-	-	66	100
	중랑구	22	42.3	24	46.2	-	-	3	5.8	2	3.8	1	1.9	-	-	52	100
	성북구	18	43.9	19	46.3	-	-	3	7.3	1	2.4	-	-	-	-	41	100
	강북구	35	48.6	33	45.8	1	1.4	1	1.4	2	2.8	-	-	-	-	72	100
	도봉구	21	39.6	26	49.1	1	1.9	2	3.8	1	1.9	2	3.8	-	-	53	100
	노원구	41	44.6	42	45.7	-	-	8	8.7	1	1.1	-	-	-	-	92	100
	은평구	26	43.3	33	55.0	-	-	-	-	1	1.7	-	-	-	-	60	100
	서대문구	18	43.9	20	48.8	1	2.4	-	-	1	2.4	1	2.4	-	-	41	100
	마포구	26	41.3	34	54.0	2	3.2	-	-	1	1.6	-	-	-	-	63	100
	양천구	18	41.9	21	48.8	-	-	1	2.3	3	7.0	-	-	-	-	43	100
	강서구	46	45.5	47	46.5	2	2.0	1	1.0	5	5.0	-	-	-	-	101	100
	구로구	34	47.9	33	46.5	1	1.4	-	-	3	4.2	-	-	-	-	71	100

지역	시군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금천구	13	36.1	15	41.7	2	5.6	2	5.6	4	11.1	-	-	-	-	36	100
	영등포구	18	39.1	22	47.8	1	2.2	1	2.2	2	4.3	2	4.3	-	-	46	100
	동작구	25	41.7	26	43.3	1	1.7	4	6.7	4	6.7	-	-	-	-	60	100
	관악구	40	45.5	44	50.0	1	1.1	1	1.1	2	2.3	-	-	-	-	88	100
	서초구	6	33.3	8	44.4	-	-	3	16.7	1	5.6	-	-	-	-	18	100
	강남구	12	40.0	13	43.3	-	-	1	3.3	4	13.3	-	-	-	-	30	100
	송파구	26	40.0	34	52.3	-	-	1	1.5	4	6.2	-	-	-	-	65	100
	강동구	19	50.0	17	44.7	-	-	1	2.6	1	2.6	-	-	-	-	38	100
	총합계	556	43.5	611	47.8	14	1.1	40	3.1	50	3.9	7	0.5	1	0.1	1279	100
부산	중구	2	40.0	2	40.0	-	-	1	20.0	-	-	-	-	-	-	5	100
	서구	9	39.1	13	56.5	-	-	1	4.3	-	-	-	-	-	-	23	100
	동구	20	37.7	28	52.8	1	1.9	2	3.8	2	3.8	-	-	-	-	53	100
	영도구	42	44.7	46	48.9	-	-	2	2.1	3	3.2	-	-	1	1.1	94	100
	부산진구	38	42.7	41	46.1	1	1.1	2	2.2	6	6.7	1	1.1	-	-	89	100
	동래구	11	32.4	18	52.9	-	-	4	11.8	1	2.9	-	-	-	-	34	100
	남구	37	40.7	45	49.5	1	1.1	3	3.3	3	3.3	2	2.2	-	-	91	100
	북구	44	45.4	48	49.5	-	-	3	3.1	2	2.1	-	-	-	-	97	100
	해운대구	33	39.8	39	47.0	1	1.2	2	2.4	5	6.0	3	3.6	-	-	83	100
	사하구	37	44.0	41	48.8	-	-	4	4.8	2	2.4	-	-	-	-	84	100
	금정구	7	43.8	8	50.0	-	-	-	-	1	6.3	-	-	-	-	16	100
	강서구	6	42.9	4	28.6	-	-	1	7.1	3	21.4	-	-	-	-	14	100
	연제구	15	40.5	15	40.5	-	-	2	5.4	4	10.8	1	2.7	-	-	37	100
	수영구	15	42.9	16	45.7	-	-	1	2.9	3	8.6	-	-	-	-	35	100
	사상구	32	42.7	35	46.7	-	-	3	4.0	2	2.7	3	4.0	-	-	75	100
	기장군	12	37.5	13	40.6	-	-	2	6.3	3	9.4	-	-	2	6.3	32	100
	총합계	360	41.8	412	47.8	4	0.5	33	3.8	40	4.6	10	1.2	3	0.3	862	100
대구	중구	13	38.2	16	47.1	-	-	2	5.9	-	-	2	5.9	1	2.9	34	100
	동구	34	39.1	41	47.1	-	-	4	4.6	3	3.4	5	5.7	-	-	87	100
	서구	25	46.3	24	44.4	-	-	1	1.9	1	1.9	3	5.6	-	-	54	100
	남구	22	48.9	20	44.4	-	-	2	4.4	-	-	1	2.2	-	-	45	100
	북구	25	39.7	32	50.8	-	-	2	3.2	1	1.6	2	3.2	1	1.6	63	100
	수성구	34	47.9	35	49.3	-	-	1	1.4	1	1.4	-	-	-	-	71	100
	달서구	71	43.6	79	48.5	-	-	7	4.3	4	2.5	1	0.6	1	0.6	163	100
	달성군	21	42.0	25	50.0	1	2.0	1	2.0	2	4.0	-	-	-	-	50	100
	총합계	245	43.2	272	48.0	1	0.2	20	3.5	12	2.1	14	2.5	3	0.5	567	100
인천	중구	16	34.0	26	55.3	-	-	4	8.5	1	2.1	-	-	-	-	47	100
	동구	11	42.3	13	50.0	1	3.8	-	-	1	3.8	-	-	-	-	26	100
	미추홀구	45	42.5	51	48.1	-	-	3	2.8	7	6.6	-	-	-	-	106	100
	연수구	15	35.7	21	50.0	-	-	2	4.8	4	9.5	-	-	-	-	42	100
	남동구	48	39.7	57	47.1	1	0.8	3	2.5	10	8.3	-	-	2	1.7	121	100
	부평구	42	37.5	38	33.9	12	10.7	2	1.8	16	14.3	2	1.8	-	-	112	100

지역	시군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계양구	13	54.2	8	33.3	-	-	-	-	3	12.5	-	-	-	-	24	100
	서구	27	39.7	29	42.6	4	5.9	1	1.5	6	8.8	1	1.5	-	-	68	100
	강화군	7	28.0	10	40.0	1	4.0	3	12.0	4	16.0	-	-	-	-	25	100
	옹진군	-	-	-	-	-	-	-	-	-	-	-	-	-	-	-	-
	총합계	224	39.2	253	44.3	19	3.3	18	3.2	52	9.1	3	0.5	2	0.4	571	100
광주	동구	19	50.0	14	36.8	-	-	1	2.6	2	5.3	2	5.3	-	-	38	100
	서구	29	56.9	17	33.3	-	-	-	-	2	3.9	3	5.9	-	-	51	100
	남구	16	42.1	12	31.6	-	-	5	13.2	2	5.3	3	7.9	-	-	38	100
	북구	30	40.5	33	44.6	-	-	1	1.4	8	10.8	2	2.7	-	-	74	100
	광산구	29	42.0	30	43.5	2	2.9	3	4.3	1	1.4	3	4.3	1	1.4	69	100
	기타*	2	66.7	1	33.3	-	-	-	-	-	-	-	-	-	-	3	100
	총합계	125	45.8	107	39.2	2	0.7	10	3.7	15	5.5	13	4.8	1	0.4	273	100
대전	동구	16	33.3	18	37.5	-	-	5	10.4	5	10.4	4	8.3	-	-	48	100
	중구	18	31.0	24	41.4	1	1.7	12	20.7	3	5.2	-	-	-	-	58	100
	서구	16	26.2	35	57.4	1	1.6	2	3.3	4	6.6	3	4.9	-	-	61	100
	유성구	4	22.2	8	44.4	-	-	3	16.7	3	16.7	-	-	-	-	18	100
	대덕구	7	14.9	9	19.1	-	-	-	-	30	63.8	1	2.1	-	-	47	100
	총합계	61	26.3	94	40.5	2	0.9	22	9.5	45	19.4	8	3.4	-	-	232	100
울산	중구	41	45.6	37	41.1	1	1.1	-	-	7	7.8	3	3.3	1	1.1	90	100
	남구	20	37.0	22	40.7	-	-	2	3.7	6	11.1	3	5.6	1	1.9	54	100
	동구	17	56.7	12	40.0	-	-	1	3.3	-	-	-	-	-	-	30	100
	북구	18	39.1	22	47.8	-	-	3	6.5	-	-	2	4.3	1	2.2	46	100
	울주군	21	38.2	27	49.1	-	-	-	-	4	7.3	2	3.6	1	1.8	55	100
	총합계	117	42.5	120	43.6	1	0.4	6	2.2	17	6.2	10	3.6	4	1.5	275	100
경기	수원시	70	45.2	78	50.3	-	-	3	1.9	2	1.3	-	-	2	1.3	155	100
	성남시	83	47.7	79	45.4	3	1.7	-	-	8	4.6	1	0.6	-	-	174	100
	의정부시	39	47.6	33	40.2	-	-	2	2.4	7	8.5	1	1.2	-	-	82	100
	안양시	28	43.1	30	46.2	-	-	-	-	4	6.2	2	3.1	1	1.5	65	100
	부천시	90	40.4	114	51.1	1	0.4	7	3.1	8	3.6	3	1.3	-	-	223	100
	광명시	22	44.9	23	46.9	-	-	1	2.0	1	2.0	2	4.1	-	-	49	100
	평택시	19	55.9	15	44.1	-	-	-	-	-	-	-	-	-	-	34	100
	동두천시	4	33.3	5	41.7	1	8.3	1	8.3	1	8.3	-	-	-	-	12	100
	안산시	46	43.0	55	51.4	1	0.9	5	4.7	-	-	-	-	-	-	107	100
	고양시	67	46.5	49	34.0	3	2.1	2	1.4	22	15.3	-	-	1	0.7	144	100
	과천시	6	50.0	6	50.0	-	-	-	-	-	-	-	-	-	-	12	100
	구리시	43	54.4	27	34.2	-	-	3	3.8	6	7.6	-	-	-	-	79	100
	남양주시	122	54.7	69	30.9	2	0.9	7	3.1	18	8.1	1	0.4	4	1.8	223	100
	오산시	12	48.0	11	44.0	1	4.0	1	4.0	-	-	-	-	-	-	25	100
	시흥시	35	40.2	40	46.0	2	2.3	2	2.3	5	5.7	1	1.1	2	2.3	87	100
	군포시	20	39.2	22	43.1	1	2.0	3	5.9	4	7.8	1	2.0	-	-	51	100
	의왕시	3	37.5	3	37.5	-	-	-	-	-	-	2	25.0	-	-	8	100

지역	시군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하남시	12	50.0	7	29.2	1	4.2	-	-	3	12.5	-	-	1	4.2	24	100
	용인시	55	47.4	47	40.5	1	0.9	1	0.9	11	9.5	-	-	1	0.9	116	100
	파주시	35	50.7	28	40.6	-	-	2	2.9	4	5.8	-	-	-	-	69	100
	이천시	15	50.0	15	50.0	-	-	-	-	-	-	-	-	-	-	30	100
	안성시	9	45.0	7	35.0	-	-	2	10.0	2	10.0	-	-	-	-	20	100
	김포시	18	43.9	22	53.7	-	-	1	2.4	-	-	-	-	-	-	41	100
	화성시	23	53.5	16	37.2	-	-	-	-	3	7.0	1	2.3	-	-	43	100
	광주시	16	53.3	10	33.3	-	-	1	3.3	2	6.7	1	3.3	-	-	30	100
	양주시	15	32.6	9	19.6	1	2.2	1	2.2	18	39.1	1	2.2	1	2.2	46	100
	포천시	44	57.1	21	27.3	3	3.9	2	2.6	6	7.8	-	-	1	1.3	77	100
	여주시	3	60.0	1	20.0	-	-	-	-	-	-	1	20.0	-	-	5	100
	연천군	9	56.3	7	43.8	-	-	-	-	-	-	-	-	-	-	16	100
	가평군	6	42.9	6	42.9	-	-	-	-	1	7.1	-	-	1	7.1	14	100
	양평군	10	66.7	2	13.3	1	6.7	-	-	2	13.3	-	-	-	-	15	100
	기타*	-	-	-	-	-	-	-	-	1	100.0	-	-	-	-	1	100
	총합계	979	47.1	857	41.3	22	1.1	47	2.3	139	6.7	18	0.9	15	0.7	2077	100
강원	춘천시	67	35.3	57	30.0	22	11.6	8	4.2	24	12.6	12	6.3	-	-	190	100
	원주시	41	29.9	31	22.6	44	32.1	3	2.2	12	8.8	4	2.9	2	1.5	137	100
	강릉시	27	51.9	17	32.7	-	-	-	-	5	9.6	3	5.8	-	-	52	100
	동해시	4	36.4	5	45.5	-	-	1	9.1	-	-	1	9.1	-	-	11	100
	태백시	5	31.3	6	37.5	1	6.3	3	18.8	1	6.3	-	-	-	-	16	100
	속초시	13	65.0	7	35.0	-	-	-	-	-	-	-	-	-	-	20	100
	삼척시	6	28.6	11	52.4	-	-	2	9.5	1	4.8	1	4.8	-	-	21	100
	홍천군	7	35.0	7	35.0	1	5.0	3	15.0	2	10.0	-	-	-	-	20	100
	횡성군	3	25.0	5	41.7	-	-	1	8.3	3	25.0	-	-	-	-	12	100
	영월군	3	42.9	3	42.9	-	-	1	14.3	-	-	-	-	-	-	7	100
	평창군	1	14.3	4	57.1	-	-	2	28.6	-	-	-	-	-	-	7	100
	정선군	1	25.0	3	75.0	-	-	-	-	-	-	-	-	-	-	4	100
	철원군	4	40.0	5	50.0	-	-	-	-	1	10.0	-	-	-	-	10	100
	화천군	37	49.3	2	2.7	34	45.3	1	1.3	1	1.3	-	-	-	-	75	100
	양구군	3	42.9	4	57.1	-	-	-	-	-	-	-	-	-	-	7	100
	인제군	-	-	1	100.0	-	-	-	-	-	-	-	-	-	-	1	100
	고성군	3	50.0	2	33.3	-	-	1	16.7	-	-	-	-	-	-	6	100
	양양군	2	16.7	4	33.3	1	8.3	-	-	3	25.0	2	16.7	-	-	12	100
	총합계	227	37.3	174	28.6	103	16.9	26	4.3	53	8.7	23	3.8	2	0.3	608	100
충북	청주시	68	40.2	47	27.8	20	11.8	8	4.7	25	14.8	1	0.6	-	-	169	100
	충주시	23	37.7	28	45.9	-	-	1	1.6	2	3.3	6	9.8	1	1.6	61	100
	제천시	10	37.0	10	37.0	-	-	1	3.7	2	7.4	4	14.8	-	-	27	100
	보은군	1	50.0	1	50.0	-	-	-	-	-	-	-	-	-	-	2	100
	옥천군	4	36.4	6	54.5	-	-	-	-	1	9.1	-	-	-	-	11	100
	영동군	1	16.7	2	33.3	-	-	2	33.3	1	16.7	-	-	-	-	6	100

지역	시군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진천군	5	41.7	5	41.7	-	-	1	8.3	1	8.3	-	-	-	-	12	100
	괴산군	3	21.4	4	28.6	1	7.1	-	-	6	42.9	-	-	-	-	14	100
	음성군	6	25.0	10	41.7	-	-	1	4.2	1	4.2	6	25.0	-	-	24	100
	단양군	-	-	1	100.0	-	-	-	-	-	-	-	-	-	-	1	100
	증평군	2	40.0	3	60.0	-	-	-	-	-	-	-	-	-	-	5	100
	기타*	1	50.0	1	50.0	-	-	-	-	-	-	-	-	-	-	2	100
	총합계	124	37.1	118	35.3	21	6.3	14	4.2	39	11.7	17	5.1	1	0.3	334	100
충남	천안시	34	38.2	28	31.5	2	2.2	12	13.5	9	10.1	1	1.1	3	3.4	89	100
	공주시	20	45.5	22	50.0	-	-	-	-	1	2.3	1	2.3	-	-	44	100
	보령시	13	41.9	16	51.6	-	-	1	3.2	1	3.2	-	-	-	-	31	100
	아산시	32	43.2	35	47.3	1	1.4	1	1.4	1	1.4	4	5.4	-	-	74	100
	서산시	30	42.3	38	53.5	-	-	-	-	3	4.2	-	-	-	-	71	100
	논산시	23	45.1	24	47.1	-	-	3	5.9	-	-	1	2.0	-	-	51	100
	계룡시	4	66.7	1	16.7	-	-	1	16.7	-	-	-	-	-	-	6	100
	당진시	14	42.4	14	42.4	-	-	-	-	4	12.1	1	3.0	-	-	33	100
	금산군	8	50.0	7	43.8	-	-	1	6.3	-	-	-	-	-	-	16	100
	부여군	10	34.5	17	58.6	1	3.4	1	3.4	-	-	-	-	-	-	29	100
	서천군	5	31.3	8	50.0	-	-	1	6.3	1	6.3	-	-	1	6.3	16	100
	청양군	2	50.0	2	50.0	-	-	-	-	-	-	-	-	-	-	4	100
	홍성군	10	52.6	9	47.4	-	-	-	-	-	-	-	-	-	-	19	100
	예산군	14	41.2	15	44.1	2	5.9	1	2.9	2	5.9					34	100
	태안군	7	53.8	5	38.5	1	7.7	-	-	-	-	-	-	-	-	13	100
	기타*	-	-	-	-	-	-	-	-	1	100.0	-	-	-	-	1	100
	총합계	226	42.6	241	45.4	7	1.3	22	4.1	23	4.3	8	1.5	4	0.8	531	10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19	46.3	19	46.3	-	-	-	-	1	2.4	-	-	2	4.9	41	100
	총합계	19	46.3	19	46.3	-	-	-	-	1	2.4	-	-	2	4.9	41	100
전북	전주시	69	31.7	83	38.1	4	1.8	8	3.7	46	21.1	7	3.2	1	0.5	218	100
	군산시	20	38.5	25	48.1	1	1.9	3	5.8	2	3.8	1	1.9	-	-	52	100
	익산시	23	34.3	32	47.8	-	-	4	6.0	6	9.0	1	1.5	1	1.5	67	100
	정읍시	9	32.1	12	42.9	-	-	3	10.7	4	14.3	-	-	-	-	28	100
	남원시	13	43.3	14	46.7	-	-	1	3.3	1	3.3	1	3.3	-	-	30	100
	김제시	14	37.8	19	51.4	1	2.7	2	5.4	1	2.7	-	-	-	-	37	100
	완주군	7	35.0	6	30.0	1	5.0	-	-	4	20.0	2	10.0	-	-	20	100
	진안군	-	-	-	-	-	-	-	-	-	-	-	-	-	-	-	-
	무주군	1	50.0	1	50.0	-	-	-	-	-	-	-	-	-	-	2	100
	장수군	4	44.4	4	44.4	-	-	1	11.1	-	-	-	-	-	-	9	100
	임실군	2	25.0	5	62.5	-	-	1	12.5	-	-	-	-	-	-	8	100
	순창군	3	50.0	3	50.0	-	-	-	-	-	-	-	-	-	-	6	100
	고창군	-	-	-	-	-	-	3	75.0	1	25.0	-	-	-	-	4	100
	부안군	3	25.0	3	25.0	-	-	5	41.7	1	8.3	-	-	-	-	12	100

지역	시군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총합계	168	34.1	207	42.0	7	1.4	31	6.3	66	13.4	12	2.4	2	0.4	493	100
전남	목포시	46	48.9	30	31.9	1	1.1	3	3.2	9	9.6	5	5.3	-	-	94	100
	여수시	29	43.3	37	55.2	-	-	-	-	-	-	1	1.5	-	-	67	100
	순천시	28	40.0	35	50.0	1	1.4	-	-	1	1.4	5	7.1	-	-	70	100
	나주시	12	52.2	9	39.1	-	-	1	4.3	1	4.3	-	-	-	-	23	100
	광양시	8	38.1	12	57.1	-	-	-	-	1	4.8	-	-	-	-	21	100
	담양군	9	56.3	4	25.0	-	-	3	18.8	-	-	-	-	-	-	16	100
	곡성군	8	50.0	8	50.0	-	-	-	-	-	-	-	-	-	-	16	100
	구례군	1	33.3	2	66.7	-	-	-	-	-	-	-	-	-	-	3	100
	고흥군	3	27.3	7	63.6	1	9.1	-	-	-	-	-	-	-	-	11	100
	보성군	3	37.5	3	37.5	-	-	1	12.5	1	12.5	-	-	-	-	8	100
	화순군		0.0	2	50.0	-	-	-	-	2	50.0	-	-	-	-	4	100
	장흥군	2	66.7	1	33.3	-	-	-	-	-	-	-	-	-	-	3	100
	강진군	6	42.9	5	35.7	-	-	-	-	3	21.4	-	-	-	-	14	100
	해남군	18	62.1	9	31.0	-	-	1	3.4	1	3.4	-	-	-	-	29	100
	영암군	10	55.6	4	22.2	2	11.1	-	-	2	11.1	-	-	-	-	18	100
	무안군	18	64.3	6	21.4	-	-	2	7.1	1	3.6	1	3.6	-	-	28	100
	함평군	8	42.1	8	42.1	-	-	1	5.3	2	10.5	-	-	-	-	19	100
	영광군	13	56.5	8	34.8	2	8.7	-	-	-	-	-	-	-	-	23	100
	장성군	3	33.3	4	44.4	2	22.2	-	-	-	-	-	-	-	-	9	100
	완도군	4	66.7	1	16.7	-	-	-	-	1	16.7	-	-	-	-	6	100
	진도군	4	80.0	1	20.0	-	-	-	-	-	-	-	-	-	-	5	100
	신안군	9	47.4	9	47.4	-	-	-	-	1	5.3	-	-	-	-	19	100
	총합계	242	47.8	205	40.5	9	1.8	12	2.4	26	5.1	12	2.4	-	-	506	100
경북	포항시	39	29.5	73	55.3	1	0.8	8	6.1	11	8.3	-	-	-	-	132	100
	경주시	25	42.4	27	45.8	-	-	5	8.5	2	3.4	-	-	-	-	59	100
	김천시	19	31.7	35	58.3	1	1.7	-	-	1	1.7	4	6.7	-	-	60	100
	안동시	30	35.3	41	48.2	-	-	6	7.1	3	3.5	4	4.7	1	1.2	85	100
	구미시	60	39.0	82	53.2	3	1.9	3	1.9	3	1.9	3	1.9	-	-	154	100
	영주시	14	37.8	16	43.2	2	5.4	3	8.1	-	-	2	5.4	-	-	37	100
	영천시	18	30.5	25	42.4	1	1.7	3	5.1	10	16.9	2	3.4	-	-	59	100
	상주시	15	31.9	19	40.4	1	2.1	3	6.4	5	10.6	3	6.4	1	2.1	47	100
	문경시	9	26.5	18	52.9	2	5.9	3	8.8	1	2.9	1	2.9	-	-	34	100
	경산시	19	33.3	28	49.1	1	1.8	3	5.3	3	5.3	3	5.3	-	-	57	100
	군위군	2	66.7	1	33.3	-	-	-	-	-	-	-	-	-	-	3	100
	의성군	14	45.2	13	41.9	-	-	2	6.5	1	3.2	1	3.2	-	-	31	100
	청송군	2	9.1	17	77.3	-	-	3	13.6	-	-	-	-	-	-	22	100
	영양군	-	-	-	-	-	-	-	-	-	-	-	-	-	-	-	-
	영덕군	4	22.2	13	72.2	-	-	-	-	1	5.6	-	-	-	-	18	100
	청도군	1	6.7	6	40.0	-	-	-	-	7	46.7	1	6.7	-	-	15	100
	고령군	2	12.5	12	75.0	-	-	-	-	2	12.5	-	-	-	-	16	100

지역	시군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성주군	5	27.8	11	61.1	-	-	-	-	1	5.6	1	5.6	-	-	18	100
	칠곡군	10	37.0	15	55.6	-	-	-	-	1	3.7	1	3.7	-	-	27	100
	예천군	6	27.3	8	36.4	-	-	-	-	-	-	8	36.4	-	-	22	100
	봉화군	5	41.7	6	50.0	1	8.3	-	-	-	-	-	0.0	-	-	12	100
	울진군	8	20.5	24	61.5	-	-	2	5.1	4	10.3	1	2.6	-	-	39	100
	총합계	307	32.4	490	51.7	13	1.4	44	4.6	56	5.9	35	3.7	2	0.2	947	100
경남	창원시	79	39.5	93	46.5	2	1.0	11	5.5	14	7.0	1	0.5	-	-	200	100
	진주시	45	45.9	37	37.8	3	3.1	7	7.1	3	3.1	2	2.0	1	1.0	98	100
	통영시	6	22.2	13	48.1	2	7.4	4	14.8	2	7.4	-	-	-	-	27	100
	사천시	12	57.1	8	38.1	-	-	-	-	-	-	1	4.8	-	-	21	100
	김해시	38	35.2	53	49.1	-	-	7	6.5	9	8.3	-	-	1	0.9	108	100
	밀양시	7	35.0	8	40.0	-	-	2	10.0	3	15.0	-	-	-	-	20	100
	거제시	21	48.8	18	41.9	-	-	2	4.7	-	-	2	4.7	-	-	43	100
	양산시	56	42.1	63	47.4	1	0.8	9	6.8	4	3.0	-	-	-	-	133	100
	의령군	3	37.5	3	37.5	-	-	1	12.5	1	12.5	-	-	-	-	8	100
	함안군	1	50.0	1	50.0	-	-	-	-	-	-	-	-	-	-	2	100
	창녕군	2	50.0	2	50.0	-	-	-	-	-	-	-	-	-	-	4	100
	고성군	1	33.3	2	66.7	-	-	-	-	-	-	-	-	-	-	3	100
	남해군	7	58.3	4	33.3	-	-	1	8.3	-	-	-	-	-	-	12	100
	하동군	4	57.1	2	28.6	-	-	-	-	1	14.3	-	-	-	-	7	100
	산청군	2	10.5	3	15.8	8	42.1	-	-	5	26.3	1	5.3	-	-	19	100
	함양군	8	53.3	5	33.3	1	6.7	-	-	1	6.7	-	-	-	-	15	100
	거창군	6	20.7	7	24.1	16	55.2	-	-	-	-	-	-	-	-	29	100
	합천군	6	35.3	6	35.3	-	-	1	5.9	3	17.6	-	-	1	5.9	17	100
	총합계	304	39.7	328	42.8	33	4.3	45	5.9	46	6.0	7	0.9	3	0.4	766	100
제주	제주시	57	40.4	67	47.5	2	1.4	5	3.5	5	3.5	4	2.8	1	0.7	141	100
	서귀포시	49	40.5	52	43.0	-	-	11	9.1	6	5.0	3	2.5	-	-	121	100
	총합계	106	40.5	119	45.4	2	0.8	16	6.1	11	4.2	7	2.7	1	0.4	262	100
합계		4,390	41.3	4,627	43.6	260	2.4	406	3.8	691	6.5	204	1.9	46	0.4	10,624**	100

*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가 아닌 타부양가족의 집에 머무르거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 등이 해당됨.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774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624건)에는 차이가 있음

표 6-4 노인학대 유형별 구체적 행위

(단위: 건, %)

구 분	학대 유형별 구체적 행위	건 수	비 율
신체적 학대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제한한다.	116	1.1
	노인을 폭행한다.	3,252	30.6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4	0.0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	124	1.2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20	0.2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12	0.1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857	8.1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5	0.0
	소계	4,390	41.3
정서적 학대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24	0.2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266	2.5
	노인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다.	34	0.3
	노인을 무시하거나 기피한다.	11	0.1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4,034	38.0
	노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한다.	42	0.4
	노인의 사생활과 입·퇴소와 관련한 의사결정권을 제한한다.	11	0.1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205	1.9
	소계	4,627	43.6
성적 학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205	1.9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55	0.5
	소계	260	2.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281	2.6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96	0.9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29	0.3
	소계	406	3.8
방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생생활 관련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225	2.1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57	0.5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한다.	98	0.9
	노인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다.	150	1.4
	노인의 일상생활 관련 보호 및 서비스를 방치한다.	70	0.7
	의료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82	0.8
	자기방임 노인을 방치한다.	1	0.0
	학대사례를 방치하거나 신고하지 않는다.	8	0.1
	소계	691	6.5
자기 방임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	204	1.9
	소계	204	1.9
유기	노인을 유기한다.	46	0.4
	소계	46	0.4
계		10,624*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774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624건)에는 차이가 있음

3)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표 6-5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단위: 건, %)

구 분	남 성	여 성	계
신체적 학대	937	3,453	4,390
	21.3	78.7	100
정서적 학대	971	3,656	4,627
	21.0	79.0	100
성적 학대	54	206	260
	20.8	79.2	100
경제적 학대	110	296	406
	27.1	72.9	100
방임	221	470	691
	32.0	68.0	100
자기방임	119	85	204
	58.3	41.7	100
유기	18	28	46
	39.1	60.9	100
계	2,430	8,194	10,624*
	22.9	77.1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774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624건)에는 차이가 있음

4)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연령

표 6-6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연령

(단위: 건, %)

구 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신체적 학대	1,067	1,042	930	754	410	151	32	4	4,390
	24.3	23.7	21.2	17.2	9.3	3.4	0.7	0.1	100
정서적 학대	1,069	1,104	1,000	830	431	155	35	3	4,627
	23.1	23.9	21.6	17.9	9.3	3.3	0.8	0.1	100
성적 학대	23	35	35	58	57	30	18	4	260
	8.8	13.5	13.5	22.3	21.9	11.5	6.9	1.5	100
경제적 학대	71	73	90	77	62	27	5	1	406
	17.5	18.0	22.2	19.0	15.3	6.7	1.2	0.2	100
방 임	40	67	118	189	152	84	39	2	691
	5.8	9.7	17.1	27.4	22.0	12.2	5.6	0.3	100
자기방임	34	46	39	42	31	10	2	-	204
	16.7	22.5	19.1	20.6	15.2	4.9	1.0	-	100
유 기	7	9	8	12	6	1	3	-	46
	15.2	19.6	17.4	26.1	13.0	2.2	6.5	-	100
계	2,311	2,376	2,220	1,962	1,149	458	134	14	10,624*
	21.8	22.4	20.9	18.5	10.8	4.3	1.3	0.1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774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624건)에는 차이가 있음

5)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표 6-7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구 분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신체적 학대	1	1,982	1,424	57	338	29	116	35	89	319	4,390
	0.0	45.1	32.4	1.3	7.7	0.7	2.6	0.8	2.0	7.3	100
정서적 학대	1	1,936	1,728	76	422	28	126	50	103	157	4,627
	0.0	41.8	37.3	1.6	9.1	0.6	2.7	1.1	2.2	3.4	100
성적 학대	-	33	7	-	1	-	-	3	18	198	260
	-	12.7	2.7	-	0.4	-	-	1.2	6.9	76.2	100
경제적 학대	-	43	194	6	58	4	20	18	14	49	406
	-	10.6	47.8	1.5	14.3	1.0	4.9	4.4	3.4	12.1	100
방임	12	41	198	10	71	2	3	10	21	323	691
	1.7	5.9	28.7	1.4	10.3	0.3	0.4	1.4	3.0	46.7	100
자기방임	192	4	5	1	2	-	-	-	-	-	204
	94.1	2.0	2.5	0.5	1.0	-	-	-	-	-	100
유기	-	3	29	-	10	-	2	-	1	1	46
	-	6.5	63.0	-	21.7	-	4.3	-	2.2	2.2	100
계	206	4,042	3,585	150	902	63	267	116	246	1,047	10,624*
	1.9	38.0	33.7	1.4	8.5	0.6	2.5	1.1	2.3	9.9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774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624건)에는 차이가 있음

6)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표 6-8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노인 독거	452	621	33	136	258	159	22	1,681
	10.3	13.4	12.7	33.5	37.3	77.9	47.8	15.8
노인 부부	1,826	1,798	34	68	55	15	1	3,797
	41.6	38.9	13.1	16.7	8.0	7.4	2.2	35.7
손자녀 동거	154	177	-	18	6	-	3	358
	3.5	3.8	-	4.4	0.9	-	6.5	3.4
자녀·손자녀동거	165	189	2	13	14	2	-	385
	3.8	4.1	0.8	3.2	2.0	1.0	-	3.6
자녀 동거	1,468	1,673	15	133	109	21	11	3,430
	33.4	36.2	5.8	32.8	15.8	10.3	23.9	32.3
기타	325	169	176	38	249	7	9	973
	7.4	3.7	67.7	9.4	36.0	3.4	19.6	9.2
계	4,390	4,627	260	406	691	204	46	10,62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774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624건)에는 차이가 있음

7) 학대발생장소

표 6-9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요양병원	일반병원			
5,962	497	39	1	86	59	3	54	73	6,774
88.0	7.3	0.6	0.0	1.3	0.9	0.0	0.8	1.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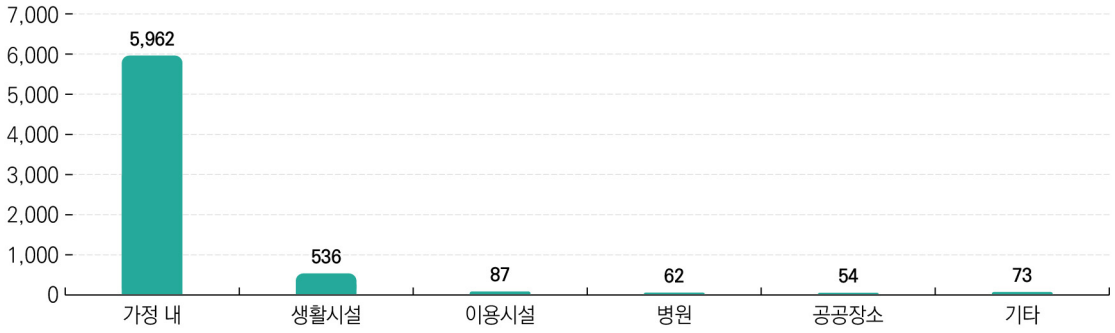

그림 6-3 학대발생장소

표 6-10 시군구별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지역	시군구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서울	종로구	10	71.4	3	21.4	-	-	-	-	1	7.1	-	-	14	100
	중구	8	100.0	-	-	-	-	-	-	-	-	-	-	8	100
	용산구	27	100.0	-	-	-	-	-	-	-	-	-	-	27	100
	성동구	16	94.1	-	-	-	-	-	-	-	-	1	5.9	17	100
	광진구	16	94.1	-	-	-	-	1	5.9	-	-	-	-	17	100
	동대문구	34	97.1	1	2.9	-	-	-	-	-	-	-	-	35	100
	중랑구	31	100.0	-	-	-	-	-	-	-	-	-	-	31	100
	성북구	20	100.0	-	-	-	-	-	-	-	-	-	-	20	100
	강북구	35	97.2	-	-	1	2.8	-	-	-	-	-	-	36	100
	도봉구	30	96.8	1	3.2	-	-	-	-	-	-	-	-	31	100
	노원구	44	91.7	3	6.3	1	2.1	-	-	-	-	-	-	48	100
	은평구	33	91.7	2	5.6	1	2.8	-	-	-	-	-	-	36	100
	서대문구	24	96.0	1	4.0	-	-	-	-	-	-	-	-	25	100
	마포구	36	100.0	-	-	-	-	-	-	-	-	-	-	36	100
	양천구	25	96.2	1	3.8	-	-	-	-	-	-	-	-	26	100
	강서구	59	95.2	1	1.6	2	3.2	-	-	-	-	-	-	62	100
	구로구	43	95.6	-	-	-	-	2	4.4	-	-	-	-	45	100

지역	시군구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금천구	20	90.9	1	4.5	1	4.5	-	-	-	-	-	-	22	100
	영등포구	29	100.0	-	-	-	-	-	-	-	-	-	-	29	100
	동작구	30	93.8	-	-	2	6.3	-	-	-	-	-	-	32	100
	관악구	50	96.2	1	1.9	-	-	-	-	1	1.9	-	-	52	100
	서초구	10	100.0	-	-	-	-	-	-	-	-	-	-	10	100
	강남구	17	94.4	-	-	-	-	1	5.6	-	-	-	-	18	100
	송파구	33	86.8	4	10.5	1	2.6	-	-	-	-	-	-	38	100
	강동구	20	95.2	-	-	1	4.8	-	-	-	-	-	-	21	100
	소계	700	95.1	19	2.6	10	1.4	4	0.5	2	0.3	1	0.1	736	100
부산	중구	3	100.0	-	-	-	-	-	-	-	-	-	-	3	100
	서구	14	100.0	-	-	-	-	-	-	-	-	-	-	14	100
	동구	32	97.0	-	-	-	-	-	-	1	3.0	-	-	33	100
	영도구	55	100.0	-	-	-	-	-	-	-	-	-	--	55	100
	부산진구	47	95.9	-	-	-	-	-	-	1	2.0	1	2.0	49	100
	동래구	19	90.5	1	4.8	-	-	-	-	-	-	1	4.8	21	100
	남구	52	100.0	-	-	-	-	-	-	-	-	-	-	52	100
	북구	52	98.1	1	1.9	-	-	-	-	-	-	-	-	53	100
	해운대구	45	97.8	-	-	-	-	-	-	1	2.2	-	-	46	100
	사하구	46	100.0	-	-	-	-	-	-	-	-	-	-	46	100
	금정구	10	100.0	-	-	-	-	-	-	-	-	-	-	10	100
	강서구	10	100.0	-	-	-	-	-	-	-	-	-	-	10	100
	연제구	19	100.0	-	-	-	-	-	-	-	-	-	-	19	100
	수영구	20	95.2	-	-	1	4.8	-	-	-	-	-	-	21	100
	사상구	43	100.0	-	-	-	-	-	-	-	-	-	-	43	100
	기장군	19	100.0	-	-	-	-	-	-	-	-	-	-	19	100
	소계	486	98.4	2	0.4	1	0.2	-	-	3	0.6	2	0.4	494	100
대구	중구	18	94.7	-	-	-	-	-	-	1	5.3	-	-	19	100
	동구	48	94.1	2	3.9	-	-	-	-	-	-	1	2.0	51	100
	서구	30	96.8	-	-	1	3.2	-	-	-	-	-	-	31	100
	남구	26	100.0	-	-	-	-	-	-	-	-	-	-	26	100
	북구	37	94.9	1	2.6	-	-	-	-	-	-	1	2.6	39	100
	수성구	36	94.7	-	-	1	2.6	-	-	1	2.6	-	-	38	100
	달서구	86	92.5	3	3.2	-	-	1	1.1	1	1.1	2	2.2	93	100
	달성군	26	81.3	3	9.4	-	-	1	3.1	-	-	2	6.3	32	100
	소계	307	93.3	9	2.7	2	0.6	2	0.6	3	0.9	6	1.8	329	100
인천	중구	28	93.3	1	3.3	-	-	-	-	1	3.3	-	-	30	100
	동구	16	100.0	-	-	-	-	-	-	-	-	-	-	16	100
	미추홀구	57	82.6	8	11.6	2	2.9	1	1.4	1	1.4	-	-	69	100
	연수구	22	81.5	2	7.4	2	7.4	-	-	1	3.7	-	-	27	100
	남동구	66	80.5	13	15.9	2	2.4	1	1.2	-	-	-	-	82	100
	부평구	60	77.9	15	19.5	1	1.3	1	1.3	-	-	-	-	77	100

지역	시군구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계양구	12	75.0	3	18.8	1	6.3	-	-	-	-	-	-	16	100
	서구	42	87.5	5	10.4	-	-	1	2.1	-	-	-	-	48	100
	강화군	11	78.6	3	21.4	-	-	-	-	-	-	-	-	14	100
	옹진군	-	-	-	-	-	-	-	-	-	-	-	-	-	-
	소계	314	82.8	50	13.2	8	2.1	4	1.1	3	0.8	-	-	379	100
광주	동구	28	93.3	-	-	-	-	-	-	-	-	2	6.7	30	100
	서구	40	97.6	-	-	-	-	1	2.4	-	-	-	-	41	100
	남구	27	93.1	1	3.4	-	-	-	-	-	-	1	3.4	29	100
	북구	57	85.1	4	6.0	-	-	5	7.5	-	-	1	1.5	67	100
	광산구	44	88.0	1	2.0	-	-	2	4.0	-	-	3	6.0	50	100
	기타*	2	100.0	-	-	-	-	-	-	-	-	-	-	2	100
	소계	198	90.4	6	2.7	-	-	8	3.7	-	-	7	3.2	219	100
대전	동구	21	80.8	5	19.2	-	-	-	-	-	-	-	-	26	100
	중구	25	71.4	10	28.6	-	-	-	-	-	-	-	-	35	100
	서구	28	65.1	13	30.2	1	2.3	-	-	1	2.3	-	-	43	100
	유성구	9	81.8	1	9.1	1	9.1	-	-	-	-	-	-	11	100
	대덕구	11	28.2	-	-	28	71.8	-	-	-	-	-	-	39	100
	소계	94	61.0	29	18.8	30	19.5	-	-	1	0.6	-	-	154	100
울산	중구	54	93.1	2	3.4	-	-	-	-	-	-	2	3.4	58	100
	남구	36	100.0	-	-	-	-	-	-	-	-	-	-	36	100
	동구	21	100.0	-	-	-	-	-	-	-	-	-	-	21	100
	북구	27	96.4	1	3.6	-	-	-	-	-	-	-	-	28	100
	울주군	33	94.3	2	5.7	-	-	-	-	-	-	-	-	35	100
	소계	171	96.1	5	2.8	-	-	-	-	-	-	2	1.1	178	100
경기	수원시	87	90.6	3	3.1	-	-	-	-	1	1.0	5	5.2	96	100
	성남시	107	92.2	5	4.3	-	-	4	3.4	-	-	-	-	116	100
	의정부시	57	85.1	4	6.0	2	3.0	4	6.0	-	-	-	-	67	100
	안양시	31	77.5	8	20.0	-	-	1	2.5	-	-	-	-	40	100
	부천시	130	94.9	3	2.2	1	0.7	2	1.5	-	-	1	0.7	137	100
	광명시	26	92.9	1	3.6	-	-	-	-	1	3.6	-	-	28	100
	평택시	25	100.0	-	-	-	-	-	-	-	-	-	-	25	100
	동두천시	5	83.3	1	16.7	-	-	-	-	-	-	-	-	6	100
	안산시	66	97.1	-	-	-	-	-	-	2	2.9	-	-	68	100
	고양시	83	76.9	21	19.4	2	1.9	2	1.9	-	-	-	-	108	100
	과천시	9	100.0	-	-	-	-	-	-	-	-	-	-	9	100
	구리시	44	75.9	12	20.7	1	1.7	1	1.7	-	-	-	-	58	100
	남양주시	164	89.6	16	8.7	1	0.5	2	1.1	-	-	-	-	183	100
	오산시	14	100.0	-	-	-	-	-	-	-	-	-	-	14	100
	시흥시	49	90.7	3	5.6	-	-	1	1.9	1	1.9	-	-	54	100
	군포시	25	92.6	1	3.7	-	-	-	-	1	3.7	-	-	27	100
	의왕시	7	100.0	-	-	-	-	-	-	-	-	-	-	7	100

지역	시군구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하남시	12	75.0	4	25.0	-	-	-	-	-	-	-	-	16	100
	용인시	68	80.0	13	15.3	1	1.2	1	1.2	1	1.2	1	1.2	85	100
	파주시	42	84.0	6	12.0	-	-	2	4.0	-	-	-	-	50	100
	이천시	17	100.0	-	-	-	-	-	-	-	-	-	-	17	100
	안성시	11	100.0	-	-	-	-	-	-	-	-	-	-	11	100
	김포시	25	96.2	-	-	-	-	1	3.8	-	-	-	-	26	100
	화성시	27	90.0	2	6.7	-	-	-	-	1	3.3	-	-	30	100
	광주시	19	100.0	-	-	-	-	-	-	-	-	-	-	19	100
	양주시	17	47.2	19	52.8	-	-	-	-	-	-	-	-	36	100
	포천시	51	85.0	8	13.3	-	-	-	-	-	-	1	1.7	60	100
	여주시	3	75.0	1	25.0	-	-	-	-	-	-	-	-	4	100
	연천군	11	100.0	-	-	-	-	-	-	-	-	-	-	11	100
	가평군	9	100.0	-	-	-	-	-	-	-	-	-	-	9	100
	양평군	2	15.4	10	76.9	1	7.7	-	-	-	-	-	-	13	100
	기타*	-	-	1	100.0	-	-	-	-	-	-	-	-	1	100
	소계	1,243	86.9	142	9.9	9	0.6	21	1.5	8	0.6	8	0.6	1,431	100
강원	춘천시	68	70.1	18	18.6	-	-	5	5.2	2	2.1	4	4.1	97	100
	원주시	48	46.6	54	52.4	-	-	-	-	-	-	1	1.0	103	100
	강릉시	31	86.1	4	11.1	1	2.8	-	-	-	-	-	-	36	100
	동해시	8	88.9	-	-	-	-	-	-	-	-	1	11.1	9	100
	태백시	7	87.5	1	12.5	-	-	-	-	-	-	-	-	8	100
	속초시	7	46.7	8	53.3	-	-	-	-	-	-	-	-	15	100
	삼척시	13	100.0	-	□	-	-	-	-	-	-	-	-	13	100
	홍천군	8	66.7	2	16.7	-	-	-	-	-	-	2	16.7	12	100
	횡성군	7	87.5	1	12.5	-	-	-	-	-	-	-	-	8	100
	영월군	3	100.0	-	-	-	-	-	-	-	-	-	-	3	100
	평창군	6	100.0	-	-	-	-	-	-	-	-	-	-	6	100
	정선군	3	100.0	-	-	-	-	-	-	-	-	-	-	3	100
	철원군	5	83.3	-	-	-	-	-	-	1	16.7	-	-	6	100
	화천군	3	8.1	34	91.9	-	-	-	-	-	-	-	-	37	100
	양구군	4	100.0	-	-	-	-	-	-	-	-	-	-	4	100
	인제군	1	100.0	-	-	-	-	-	-	-	-	-	-	1	100
	고성군	3	100.0	-	-	-	-	-	-	-	-	-	-	3	100
	양양군	6	66.7	3	33.3	-	-	-	-	-	-	-	-	9	100
	소계	231	61.9	125	33.5	1	0.3	5	1.3	3	0.8	8	2.1	373	100
충북	청주시	55	56.1	37	37.8	-	-	4	4.1	-	-	2	2.0	98	100
	충주시	40	100.0	-	-	-	-	-	-	-	-	-	-	40	100
	제천시	15	93.8	-	-	1	6.3	-	-	-	-	-	-	16	100
	보은군	1	100.0	-	-	-	-	-	-	-	-	-	-	1	100
	옥천군	6	85.7	-	-	-	-	-	-	1	14.3	-	-	7	100
	영동군	1	50.0	-	-	-	-	-	-	-	-	1	50.0	2	100

지역	시군구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진천군	7	100.0	-	-	-	-	-	-	-	-	-	-	7	100
	괴산군	4	57.1	3	42.9	-	-	-	-	-	-	-	-	7	100
	음성군	17	100.0	-	-	-	-	-	-	-	-	-	-	17	100
	단양군	1	100.0	-	-	-	-	-	-	-	-	-	-	1	100
	증평군	3	100.0	-	-	-	-	-	-	-	-	-	-	3	100
	기타*	1	100.0	-	-	-	-	-	-	-	-	-	-	1	100
	소계	151	75.5	40	20.0	1	0.5	4	2.0	1	0.5	3	1.5	200	100
충남	천안시	43	86.0	3	6.0	-	-	1	2.0	3	6.0	-	-	50	100
	공주시	26	96.3	-	-	-	-	-	-	1	3.7	-	-	27	100
	보령시	18	94.7	1	5.3	-	-	-	-	-	-	-	-	19	100
	아산시	43	97.7	1	2.3	-	-	-	-	-	-	-	-	44	100
	서산시	44	93.6	2	4.3	-	-	-	-	1	2.1	-	-	47	100
	논산시	33	89.2	-	-	-	-	2	5.4	1	2.7	1	2.7	37	100
	계룡시	4	80.0	-	-	-	-	-	-	1	20.0	-	-	5	100
	당진시	19	95.0	-	-	-	-	1	5.0	-	-	-	-	20	100
	금산군	11	100.0	-	-	-	-	-	-	-	-	-	-	11	100
	부여군	17	89.5	2	10.5	-	-	-	-	-	-	-	-	19	100
	서천군	11	100.0	-	-	-	-	-	-	-	-	-	-	11	100
	청양군	1	50.0	1	50.0	-	-	-	-	-	-	-	-	2	100
	홍성군	11	100.0	-	-	-	-	-	-	-	-	-	-	11	100
	예산군	18	94.7	1	5.3	-	-	-	-	-	-	-	-	19	100
	태안군	7	87.5	1	12.5	-	-	-	-	-	-	-	-	8	100
	기타*	-	-	-	-	-	-	-	-	1	100.0	-	-	1	100
	소계	306	92.4	12	3.6	-	-	4	1.2	8	2.4	1	0.3	331	10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22	91.7	-	-	-	-	-	-	1	4.2	1	4.2	24	100
	소계	22	91.7	-	-	-	-	-	-	1	4.2	1	4.2	24	100
전북	전주시	99	70.2	21	14.9	19	13.5	2	1.4	-	-	-	-	141	100
	군산시	33	97.1	1	2.9	-	-	-	-	-	-	-	-	34	100
	익산시	41	83.7	3	6.1	-	-	-	-	4	8.2	1	2.0	49	100
	정읍시	15	83.3	2	11.1	-	-	-	-	-	-	1	5.6	18	100
	남원시	16	94.1	-	-	-	-	-	-	-	-	1	5.9	17	100
	김제시	22	95.7	1	4.3	-	-	-	-	-	-	-	-	23	100
	완주군	10	83.3	1	8.3	1	8.3	-	-	-	-	-	-	12	100
	진안군	-	-	-	-	-	-	-	-	-	-	-	-	-	-
	무주군	1	100.0	-	-	-	-	-	-	-	-	-	-	1	100
	장수군	4	100.0	-	-	-	-	-	-	-	-	-	-	4	100
	임실군	5	100.0	-	-	-	-	-	-	-	-	-	-	5	100
	순창군	4	100.0	-	-	-	-	-	-	-	-	-	-	4	100
	고창군	3	100.0	-	-	-	-	-	-	-	-	-	-	3	100
	부안군	9	100.0	-	-	-	-	-	-	-	-	-	-	9	100
	소계	262	81.9	29	9.1	20	6.3	2	0.6	4	1.3	3	0.9	320	100

지역	시군구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전남	목포시	65	90.3	1	1.4	1	1.4	2	2.8	1	1.4	2	2.8	72	100
	여수시	46	93.9	-	-	-	-	-	-	1	2.0	2	4.1	49	100
	순천시	39	88.6	1	2.3	-	-	-	-	1	2.3	3	6.8	44	100
	나주시	16	94.1	-	-	-	-	-	-	-	-	1	5.9	17	100
	광양시	15	100.0	-	-	-	-	-	-	-	-	-	-	15	100
	담양군	8	88.9	-	-	-	-	-	-	-	-	1	11.1	9	100
	곡성군	8	100.0	-	-	-	-	-	-	-	-	-	-	8	100
	구례군	2	100.0	-	-	-	-	-	-	-	-	-	-	2	100
	고흥군	8	100.0	-	-	-	-	-	-	-	-	-	-	8	100
	보성군	5	100.0	-	-	-	-	-	-	-	-	-	-	5	100
	화순군	3	75.0	-	-	-	-	-	-	-	-	1	25.0	4	100
	장흥군	2	100.0	-	-	-	-	-	-	-	-	-	-	2	100
	강진군	9	75.0	1	8.3	-	-	-	-	1	8.3	1	8.3	12	100
	해남군	21	95.5	-	-	-	-	-	-	1	4.5	-	-	22	100
	영암군	9	75.0	2	16.7	-	-	-	-	-	-	1	8.3	12	100
	무안군	22	95.7	1	4.3	-	-	-	-	-	-	-	-	23	100
	함평군	11	73.3	3	20.0	-	-	1	6.7	-	-	-	-	15	100
	영광군	18	94.7	1	5.3	-	-	-	-	-	-	-	-	19	100
	장성군	6	100.0	-	-	-	-	-	-	-	-	-	-	6	100
	완도군	4	80.0	-	-	-	-	-	-	-	-	1	20.0	5	100
	진도군	4	100.0	-	-	-	-	-	-	-	-	-	-	4	100
	신안군	12	85.7	-	-	-	-	-	-	1	7.1	1	7.1	14	100
	소계	333	90.7	10	2.7	1	0.3	3	0.8	6	1.6	14	3.8	367	100
경북	포항시	83	98.8	1	1.2	-	-	-	-	-	-	-	-	84	100
	경주시	31	100.0	-	-	-	-	-	-	-	-	-	-	31	100
	김천시	36	85.7	-	-	1	2.4	1	2.4	-	-	4	9.5	42	100
	안동시	46	83.6	2	3.6	1	1.8	1	1.8	1	1.8	4	7.3	55	100
	구미시	83	90.2	5	5.4	-	-	1	1.1	1	1.1	2	2.2	92	100
	영주시	20	87.0	2	8.7	-	-	-	-	-	-	1	4.3	23	100
	영천시	37	100.0	-	-	-	-	-	-	-	-	-	-	37	100
	상주시	26	100.0	-	-	-	-	-	-	-	-	-	-	26	100
	문경시	19	95.0	1	5.0	-	-	-	-	-	-	-	-	20	100
	경산시	32	97.0	-	-	-	-	-	-	1	3.0	-	-	33	100
	군위군	2	100.0	-	-	-	-	-	-	-	-	-	-	2	100
	의성군	19	95.0	-	-	-	-	-	-	-	-	1	5.0	20	100
	청송군	17	100.0	-	-	-	-	-	-	-	-	-	-	17	100
	영양군	-	-	-	-	-	-	-	-	-	-	-	-	-	-
	영덕군	13	100.0	-	-	-	-	-	-	-	-	-	-	13	100
	청도군	12	100.0	-	-	-	-	-	-	-	-	-	-	12	100
	고령군	12	100.0	-	-	-	-	-	-	-	-	-	-	12	100
	성주군	13	100.0	-	-	-	-	-	-	-	-	-	-	13	100

지역	시군구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칠곡군	16	100.0	-	-	-	-	-	-	-	-	-	-	16	100
	예천군	16	100.0	-	-	-	-	-	-	-	-	-	-	16	100
	봉화군	8	100.0	-	-	-	-	-	-	-	-	-	-	8	100
	울진군	27	100.0	-	-	-	-	-	-	-	-	-	-	27	100
	울릉군	-	-	-	-	-	-	-	-	-	-	-	-	-	-
	소계	568	94.8	11	1.8	2	0.3	3	0.5	3	0.5	12	2.0	599	100
경남	창원시	124	96.9	-	-	2	1.6	1	0.8	1	0.8	-	-	128	100
	진주시	59	86.8	4	5.9	-	-	-	-	3	4.4	2	2.9	68	100
	통영시	14	87.5	2	12.5	-	-	-	-	-	-	-	-	16	100
	사천시	15	100.0	-	-	-	-	-	-	-	-	-	-	15	100
	김해시	66	98.5	-	-	-	-	-	-	-	-	1	1.5	67	100
	밀양시	9	75.0	2	16.7	-	-	1	8.3	-	-	-	-	12	100
	거제시	25	100.0	-	-	-	-	-	-	-	-	-	-	25	100
	양산시	77	93.9	2	2.4	-	-	-	-	2	2.4	1	1.2	82	100
	의령군	3	100.0	-	-	-	-	-	-	-	-	-	-	3	100
	함안군	1	100.0	-	-	-	-	-	-	-	-	-	-	1	100
	창녕군	2	100.0	-	-	-	-	-	-	-	-	-	-	2	100
	고성군	2	100.0	-	-	-	-	-	-	-	-	-	-	2	100
	남해군	7	87.5	-	-	-	-	-	-	1	12.5	-	-	8	100
	하동군	6	100.0	-	-	-	-	-	-	-	-	-	-	6	100
	산청군	4	28.6	10	71.4	-	-	-	-	-	-	-	-	14	100
	함양군	7	70.0	3	30.0	-	-	-	-	-	-	-	-	10	100
	거창군	7	30.4	16	69.6	-	-	-	-	-	-	-	-	23	100
	합천군	9	90.0	-	-	-	-	-	-	-	-	1	10.0	10	100
	소계	437	88.8	39	7.9	2	0.4	2	0.4	7	1.4	5	1.0	492	100
제주	제주시	78	92.9	5	6.0	-	-	-	-	1	1.2	-	-	84	100
	서귀포시	61	95.3	3	4.7	-	-	-	-	-	-	-	-	64	100
	소계	139	93.9	8	5.4	-	-	-	-	1	0.7	-	-	148	100
합계		5,962	88.0	536	7.9	87	1.3	62	0.9	54	0.8	73	1.1	6,774	100

*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가 아닌 타부양가족의 집에 머무르거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 등이 해당됨.

표 6-11 학대발생장소별 학대유형

(단위: 건, %)

구 분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일반병원			
신체적 학대	4,047	20	217	-	13	30	2	28	33	4,390
	42.5	35.1	31.8	-	13.4	34.9	66.7	38.9	31.4	41.3
정서적 학대	4,456	9	65	1	11	17	-	27	41	4,627
	46.8	15.8	9.5	100.0	11.3	19.8	-	37.5	39.0	43.6
성적 학대	63	10	171	-	1	9	-	1	5	260
	0.7	17.5	25	-	1.0	10.5	-	1.4	4.8	2.4
경제적 학대	376	2	19	-	1	1	-	1	6	406
	3.9	3.5	2.8	-	1.0	1.2	-	1.4	5.7	3.8
방임	346	16	211	-	71	28	1	8	10	691
	3.6	28.1	30.9	-	73.2	32.6	33.3	11.1	9.5	6.5
자기방임	197	-	-	-	-	-	-	4	3	204
	2.1	-	-	-	-	-	-	5.6	2.9	1.9
유기	35	-	-	-	-	1	-	3	7	46
	0.4	-	-	-	-	1.2	-	4.2	6.7	0.4
계	9,520	57	683	1	97	86	3	72	105	10,62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774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624건)에는 차이가 있음

8) 학대발생빈도

표 6-12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일회성	6개월에 한번 이상	3개월에 한번 이상	1개월에 한번 이상	1주일에 한번 이상	매일	계
1,167	543	750	1,883	1,701	730	6,774
17.2	8	11.1	27.8	25.1	10.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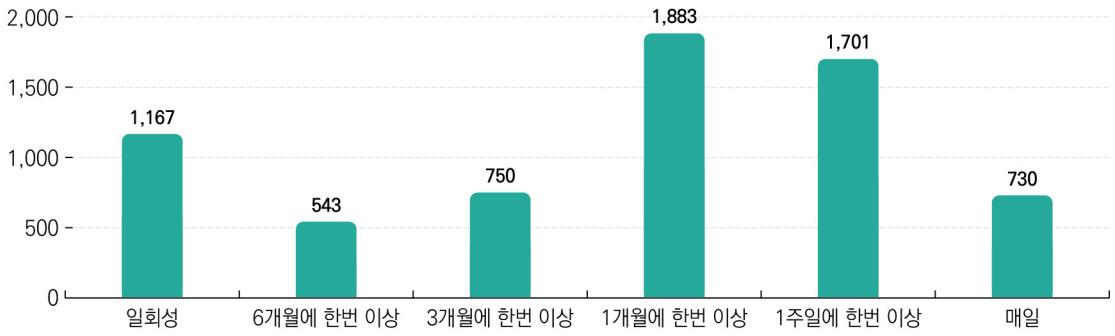

그림 6-4 학대발생빈도

표 6-13 학대발생빈도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 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일회성	759	492	23	37	174	13	18	1,516
	50.1	32.5	1.5	2.4	11.5	0.9	1.2	100
6개월에 한 번 이상	396	379	6	26	32	8	2	849
	46.6	44.6	0.7	3.1	3.8	0.9	0.2	100
3개월에 한 번 이상	539	575	5	43	41	4	3	1,210
	44.5	47.5	0.4	3.6	3.4	0.3	0.2	100
1개월에 한 번 이상	1,257	1,516	25	145	114	20	5	3,082
	40.8	49.2	0.8	4.7	3.7	0.6	0.2	100
1주일에 한 번 이상	1,122	1,380	92	116	126	35	6	2,877
	39	48	3.2	4	4.4	1.2	0.2	100
매일	317	285	109	39	204	124	12	1,090
	29.1	26.1	10	3.6	18.7	11.4	1.1	100
계	4,390	4,627	260	406	691	204	46	10,624*
	41.3	43.6	2.4	3.8	6.5	1.9	0.4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774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624건)에는 차이가 있음

9) 학대지속기간

표 6-14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일회성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계
1,108	216	1,143	2,025	2,282	6,774
16.4	3.2	16.9	29.9	33.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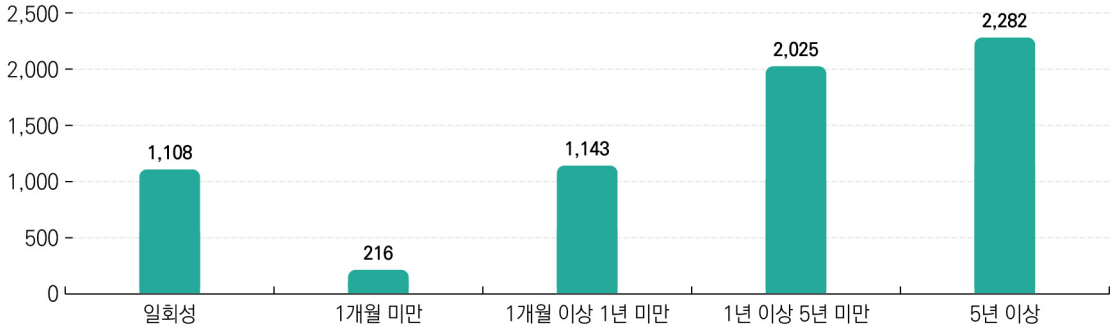

그림 6-5 학대지속기간

10) 학대발생원인(학대행위자 원인)

표 6-15 학대행위자 원인

(단위: 건, %)

학대행위자 원인	건 수	비 율
개인의 내적문제[20]	4,620	36.1
개인의 외적문제[21]	2,340	18.3
경제적 의존성	1,254	9.8
과거 학대 받은 경험	175	1.4
신체적 의존성	681	5.3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	1,632	12.8
정신적 의존성	1,537	12.0
피해자 부양부담	545	4.3
계	12,78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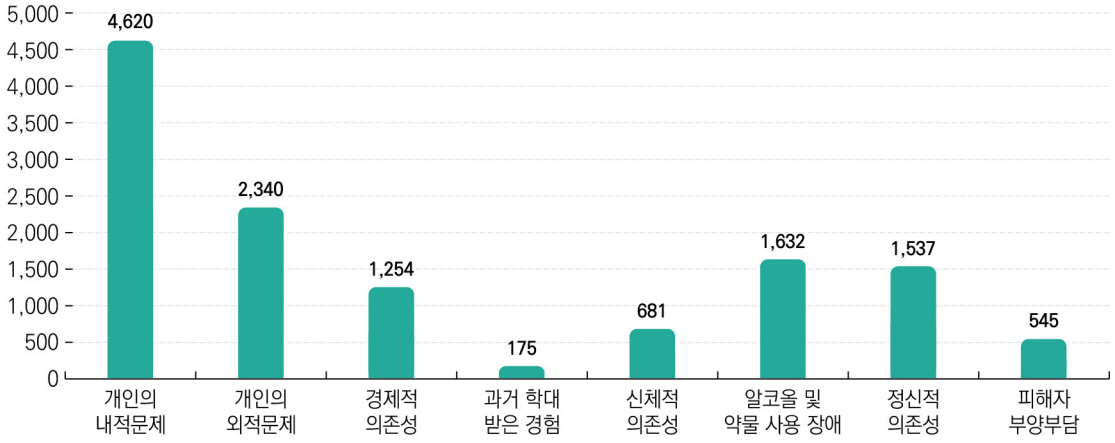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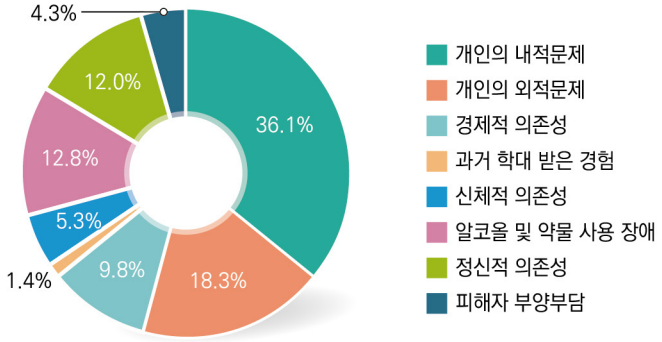

그림 6-6 학대행위자 원인

20) 개인의 내적인 문제는 성격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노, 고집스러운 성격, 자신감 결여, 지나친 경계, 사회적 반응의 결핍, 적대적 행위, 충동적 성격, 폭력적 성격, 사회적 고립, 정서적 욕구불만 등이 포함됨.

21) 개인의 외적인 문제는 학대행위자의 이혼, 재혼, 부부갈등, 스트레스, 실직 등이 해당됨.

표 6-16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학대발생원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방임	유 기	계
개인의 내적문제	3,132	982	41	55	267	125	18	4,620
	67.8	21.3	0.9	1.2	5.8	2.7	0.4	100
개인의 외적문제	1,558	516	36	20	148	56	6	2,340
	66.6	22.1	1.5	0.9	6.3	2.4	0.3	100
경제적 의존성	883	297	1	28	27	15	3	1,254
	70.4	23.7	0.1	2.2	2.2	1.2	0.2	100
과거 학대 받은 경험	125	31	-	1	16	2	-	175
	71.4	17.7	-	0.6	9.1	1.1	-	100
신체적 의존성	494	128	-	10	28	21	-	681
	72.5	18.8	-	1.5	4.1	3.1	-	100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	1,231	372	5	1	4	19	-	1,632
	75.4	22.8	0.3	0.1	0.2	1.2	-	100
정신적 의존성	1,163	279	2	17	39	36	1	1,537
	75.7	18.2	0.1	1.1	2.5	2.3	0.1	100
피해자 부양부담	248	141	2	11	126	3	14	545
	45.5	25.9	0.4	2.0	23.1	0.6	2.6	100
계	8,834	2,746	87	143	655	277	42	12,784
	69.1	21.5	0.7	1.1	5.1	2.2	0.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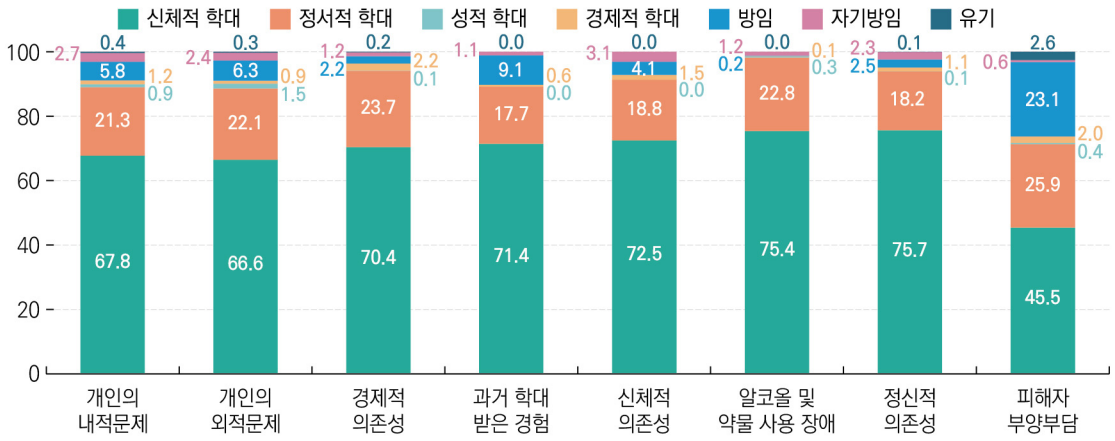

그림 6-7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유형

11) 학대발생원인(가족 – 환경원인)

표 6-17 가족 – 환경 원인

(단위: 건, %)

가족구성원과의 갈등 (자녀간, 형제간, 친족간)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피해자-학대행위자 갈등	계
1,616	737	4,645	6,998
23.1	10.5	66.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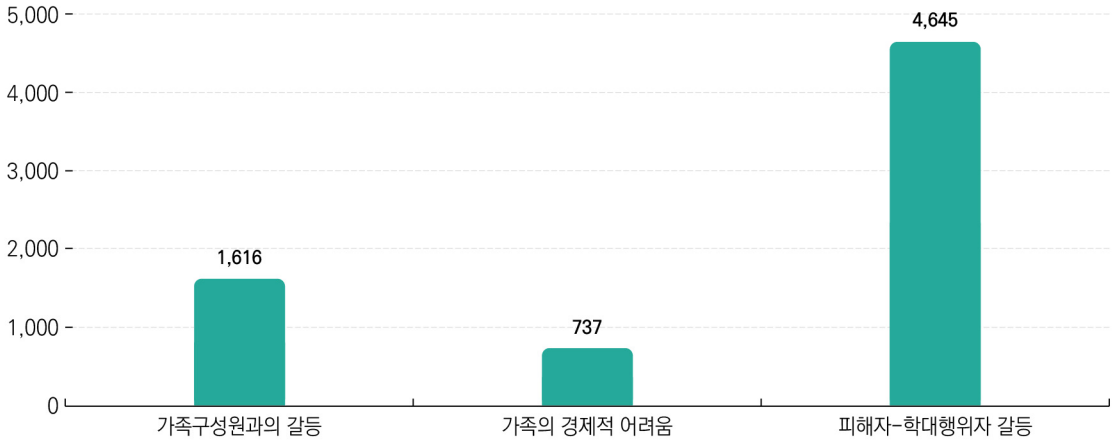

그림 6-8 가족 – 환경 원인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ART

07

노인학대 상담 및 제공서비스 현황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7 노인학대 상담 및 제공서비스 현황

1. 노인학대 상담

1) 월별 상담횟수

표 7-1 월별 상담횟수

(단위: 회, %)

구 분	학대상담		일반상담		전체상담	
1월	12,255	7.7	2,499	6.1	14,754	7.4
2월	11,474	7.2	2,447	6.0	13,921	6.9
3월	14,682	9.2	2,864	7.0	17,546	8.8
4월	13,430	8.4	3,181	7.7	16,611	8.3
5월	12,918	8.1	3,373	8.2	16,291	8.1
6월	13,825	8.7	3,883	9.5	17,708	8.8
7월	14,923	9.4	3,683	9.0	18,606	9.3
8월	14,230	8.9	3,460	8.4	17,690	8.8
9월	13,826	8.7	3,930	9.6	17,756	8.9
10월	12,864	8.1	4,182	10.2	17,046	8.5
11월	12,338	7.7	4,035	9.8	16,373	8.2
12월	12,681	8.0	3,530	8.6	16,211	8.1
계	159,446	100	41,067	100	200,51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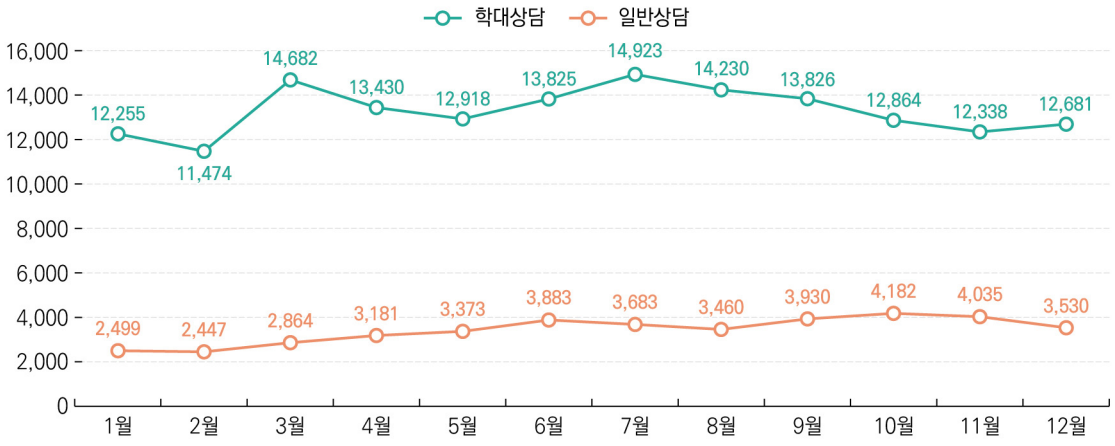

그림 7-1 월별 상담횟수

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방법[22]에 따른 상담 구분

표 7-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단위: 건, %)

지역	지역기관	전 화		방 문		내 방		서 신		온라인		기 타		계	
서울	서울남부	4,507	4.1	1,145	3.0	20	1.2	301	3.7	76	6.1	763	47.5	6,812	4.3
	서울북부	4,339	4.0	1,138	3.0	21	1.3	292	3.6	20	1.6	118	7.3	5,928	3.7
	서울서부	4,095	3.8	1,343	3.5	2	0.1	283	3.5	128	10.2	134	8.3	5,985	3.8
	서울동부*	282	0.3	75	0.2	5	0.3	54	0.7	1	0.1	15	0.9	432	0.3
	소계	13,223	12.1	3,701	9.8	48	2.9	930	11.4	225	17.9	1,030	64.1	19,157	12.0
부산	부산동부	5,456	5.0	2,323	6.1	52	3.2	485	6.0	11	0.9	156	9.7	8,483	5.3
	부산서부	3,562	3.3	674	1.8	31	1.9	173	2.1	15	1.2	58	3.6	4,513	2.8
	소계	9,018	8.3	2,997	7.9	83	5.0	658	8.1	26	2.1	214	13.3	12,996	8.2
대구	대구남부	4,005	3.7	1,164	3.1	45	2.7	212	2.6	10	0.8	10	0.6	5,446	3.4
	대구북부	3,797	3.5	554	1.5	51	3.1	284	3.5	34	2.7	56	3.5	4,776	3.0
	소계	7,802	7.2	1,718	4.5	96	5.8	496	6.1	44	3.5	66	4.1	10,222	6.4
인천	인천	1,866	1.7	758	2.0	33	2.0	648	8.0	12	1.0	–	–	3,317	2.1
	인천서부	2,456	2.3	296	0.8	52	3.2	92	1.1	27	2.2	20	1.2	2,943	1.8
	소계	4,322	4.0	1,054	2.8	85	5.2	740	9.1	39	3.1	20	1.2	6,260	3.9
광주		3,703	3.4	1,013	2.7	132	8.0	194	2.4	16	1.3	12	0.7	5,070	3.2
대전		2,208	2.0	1,173	3.1	134	8.1	322	4.0	1	0.1	–	–	3,838	2.4
울산		3,141	2.9	1,359	3.6	26	1.6	169	2.1	–	–	1	0.1	4,696	2.9
경기	경기동부	2,334	2.1	816	2.2	15	0.9	483	5.9	12	1.0	4	0.2	3,664	2.3
	경기북부	4,400	4.0	979	2.6	19	1.2	545	6.7	1	0.1	3	0.2	5,947	3.7
	경기서부	5,205	4.8	1,258	3.3	54	3.3	502	6.2	77	6.1	14	0.9	7,110	4.5
	경기도	3,140	2.9	383	1.0	5	0.3	252	3.1	8	0.6	14	0.9	3,802	2.4
	경기북서부*	664	0.6	180	0.5	3	0.2	70	0.9	7	0.6	9	0.6	933	0.6
	소계	15,743	14.5	3,616	9.5	96	5.8	1,852	22.8	105	8.4	44	2.7	21,456	13.5
강원	강원	2,550	2.3	1,285	3.4	69	4.2	236	2.9	288	23.0	17	1.1	4,445	2.8
	강원동부	1,412	1.3	544	1.4	7	0.4	116	1.4	58	4.6	4	0.2	2,141	1.3
	강원남부	1,836	1.7	808	2.1	64	3.9	126	1.5	166	13.2	41	2.6	3,041	1.9
	소계	5,798	5.3	2,637	7.0	140	8.5	478	5.9	512	40.8	62	3.9	9,627	6.0

22) 학대피해노인(6,7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 횟수는 159,446회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방법으로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내방상담, 서신을 통한 상담, 온라인 상담, 기타 등이 있음.

지역	지역기관	전 화		방 문		내 방		서 신		온라인		기 타		계	
충북	충북	1,899	1.7	2,291	6.0	189	11.5	121	1.5	4	0.3	5	0.3	4,509	2.8
	충북북부	1,425	1.3	670	1.8	25	1.5	147	1.8	2	0.2	–	–	2,269	1.4
	소계	3,324	3.1	2,961	7.8	214	13.0	268	3.3	6	0.5	5	0.3	6,778	4.3
충남	충남	3,894	3.6	2,100	5.5	57	3.5	304	3.7	66	5.3	4	0.2	6,425	4.0
	충남남부	1,778	1.6	931	2.5	20	1.2	121	1.5	7	0.6	5	0.3	2,862	1.8
	소계	5,672	5.2	3,031	8.0	77	4.7	425	5.2	73	5.8	9	0.6	9,287	5.8
전북	전북	2,520	2.3	1,302	3.4	77	4.7	67	0.8	20	1.6	51	3.2	4,037	2.5
	전북서부	2,176	2.0	1,063	2.8	36	2.2	124	1.5	5	0.4	10	0.6	3,414	2.1
	소계	4,696	4.3	2,365	6.2	113	6.9	191	2.3	25	2.0	61	3.8	7,451	4.7
전남	전남동부	2,683	2.5	490	1.3	67	4.1	106	1.3	4	0.3	2	0.1	3,352	2.1
	전남서부	3,604	3.3	1,708	4.5	44	2.7	128	1.6	5	0.4	16	1.0	5,505	3.5
	소계	6,287	5.8	2,198	5.8	111	6.7	234	2.9	9	0.7	18	1.1	8,857	5.6
경북	경북동부	2,716	2.5	1,189	3.1	24	1.5	153	1.9	2	0.2	5	0.3	4,089	2.6
	경북북부	3,110	2.9	1,169	3.1	27	1.6	161	2.0	13	1.0	9	0.6	4,489	2.8
	경북서부	4,910	4.5	1,207	3.2	31	1.9	241	3.0	66	5.3	6	0.4	6,461	4.1
	경북남부*	1,036	1.0	311	0.8	5	0.3	87	1.1	–	–	3	0.2	1,442	0.9
	소계	11,772	10.8	3,876	10.2	87	5.3	642	7.9	81	6.5	23	1.4	16,481	10.3
경남	경남	5,713	5.2	1,214	3.2	24	1.5	175	2.2	2	0.2	10	0.6	7,138	4.5
	경남서부	3,174	2.9	1,414	3.7	49	3.0	150	1.8	42	3.3	14	0.9	4,843	3.0
	소계	8,887	8.2	2,628	6.9	73	4.4	325	4.0	44	3.5	24	1.5	11,981	7.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536	2.3	1,046	2.8	102	6.2	125	1.5	7	0.6	17	1.1	3,833	2.4
	제주도 서귀포시	787	0.7	516	1.4	30	1.8	82	1.0	41	3.3	–	–	1,456	0.9
	소계	3,323	3.1	1,562	4.1	132	8.0	207	2.5	48	3.8	17	1.1	5,289	3.3
계		108,919	100	37,889	100	1,647	100	8,131	100	1,254	100	1,606	100	159,446	100

* 2021년 신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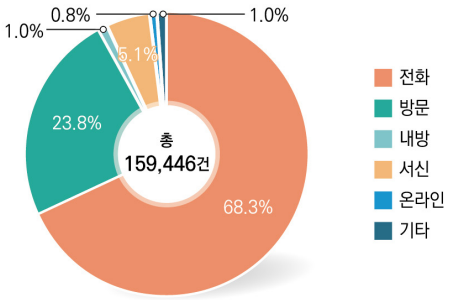

그림 7-2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3)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과정[23]에 따른 상담 구분

표 7-3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접수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		계	
서울	서울남부	235	3.4	4,188	3.5	269	3.8	2,120	8.4	6,812	4.3
	서울북부	217	3.1	4,980	4.1	225	3.2	506	2.0	5,928	3.7
	서울서부	245	3.5	4,910	4.1	216	3.1	614	2.4	5,985	3.8
	서울동부*	42	0.6	384	0.3	6	0.1	-	-	432	0.3
	소계	739	10.7	14,462	12.0	716	10.2	3,240	12.9	19,157	12.0
부산	부산동부	309	4.5	6,007	5.0	328	4.7	1,839	7.3	8,483	5.3
	부산서부	187	2.7	3,947	3.3	153	2.2	226	0.9	4,513	2.8
	소계	496	7.2	9,954	8.3	481	6.9	2,065	8.2	12,996	8.2
대구	대구남부	187	2.7	4,043	3.4	136	1.9	1,080	4.3	5,446	3.4
	대구북부	265	3.8	3,412	2.8	221	3.2	878	3.5	4,776	3.0
	소계	452	6.5	7,455	6.2	357	5.1	1,958	7.8	10,222	6.4
인천	인천	224	3.2	2,085	1.7	164	2.3	844	3.4	3,317	2.1
	인천서부	155	2.2	2,068	1.7	216	3.1	504	2.0	2,943	1.8
	소계	379	5.5	4,153	3.5	380	5.4	1,348	5.4	6,260	3.9
광주		219	3.2	3,105	2.6	260	3.7	1,486	5.9	5,070	3.2
대전		154	2.2	2,808	2.3	103	1.5	773	3.1	3,838	2.4
울산		178	2.6	3,834	3.2	174	2.5	510	2.0	4,696	2.9
경기	경기동부	271	3.9	2,508	2.1	261	3.7	624	2.5	3,664	2.3
	경기북부	519	7.5	4,123	3.4	521	7.4	784	3.1	5,947	3.7
	경기서부	316	4.6	4,934	4.1	307	4.4	1,553	6.2	7,110	4.5
	경기도	244	3.5	3,083	2.6	256	3.7	219	0.9	3,802	2.4
	경기북서부*	55	0.8	787	0.7	47	0.7	44	0.2	933	0.6
	소계	1,405	20.3	15,435	12.8	1,392	19.9	3,224	12.8	21,456	13.5
강원	강원	160	2.3	3,442	2.9	165	2.4	678	2.7	4,445	2.8
	강원동부	85	1.2	1,751	1.5	89	1.3	216	0.9	2,141	1.3
	강원남부	140	2.0	2,354	2.0	146	2.1	401	1.6	3,041	1.9
	소계	385	5.6	7,547	6.3	400	5.7	1,295	5.1	9,627	6.0
충북	충북	121	1.8	3,949	3.3	141	2.0	298	1.2	4,509	2.8
	충북북부	83	1.2	1,880	1.6	111	1.6	195	0.8	2,269	1.4
	소계	204	3.0	5,829	4.8	252	3.6	493	2.0	6,778	4.3

23) 학대피해노인(6,7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 횟수는 159,446회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과정으로는 접수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로 분류함.

지역	기관명	접수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		계	
충남	충남	223	3.2	5,149	4.3	242	3.5	811	3.2	6,425	4.0
	충남남부	134	1.9	1,838	1.5	193	2.8	697	2.8	2,862	1.8
	소계	357	5.2	6,987	5.8	435	6.2	1,508	6.0	9,287	5.8
전북	전북	185	2.7	3,377	2.8	184	2.6	291	1.2	4,037	2.5
	전북서부	134	1.9	2,519	2.1	152	2.2	609	2.4	3,414	2.1
	소계	319	4.6	5,896	4.9	336	4.8	900	3.6	7,451	4.7
전남	전남동부	152	2.2	2,679	2.2	167	2.4	354	1.4	3,352	2.1
	전남서부	218	3.2	4,118	3.4	238	3.4	931	3.7	5,505	3.5
	소계	370	5.4	6,797	5.6	405	5.8	1,285	5.1	8,857	5.6
경북	경북동부	176	2.5	2,937	2.4	178	2.5	798	3.2	4,089	2.6
	경북북부	141	2.0	3,792	3.2	158	2.3	398	1.6	4,489	2.8
	경북서부	209	3.0	5,222	4.3	236	3.4	794	3.2	6,461	4.1
	경북남부*	84	1.2	1,125	0.9	84	1.2	149	0.6	1,442	0.9
	소계	610	8.8	13,076	10.9	656	9.4	2,139	8.5	16,481	10.3
경남	경남	335	4.8	4,638	3.9	341	4.9	1,824	7.2	7,138	4.5
	경남서부	159	2.3	3,898	3.2	168	2.4	618	2.5	4,843	3.0
	소계	494	7.1	8,536	7.1	509	7.3	2,442	9.7	11,981	7.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87	1.3	3,434	2.9	85	1.2	227	0.9	3,833	2.4
	제주도 서귀포시	66	1.0	1,054	0.9	59	0.8	277	1.1	1,456	0.9
	소계	153	2.2	4,488	3.7	144	2.1	504	2.0	5,289	3.3
계		6,914	100	120,362	100	7,000	100	25,170	100	159,446	100

* 2021년 신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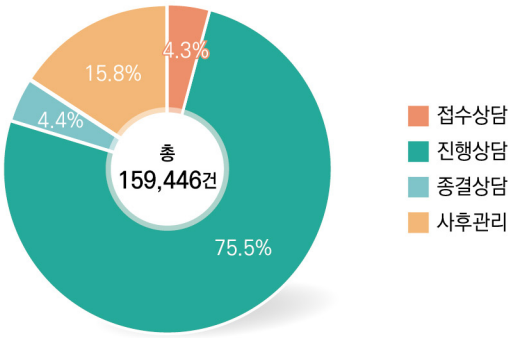

그림 7-3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4) 지역 및 기관별 전체상담 횟수

표 7-4 지역 및 기관별 전체상담 횟수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학대상담		일반상담		계	
서울	서울남부	6,812	4.3	1,720	4.2	8,532	4.3
	서울북부	5,928	3.7	2,528	6.2	8,456	4.2
	서울서부	5,985	3.8	1,871	4.6	7,856	3.9
	서울동부*	432	0.3	274	0.7	706	0.4
	소계	19,157	12.0	6,393	15.6	25,550	12.7
부산	부산동부	8,483	5.3	1,674	4.1	10,157	5.1
	부산서부	4,513	2.8	670	1.6	5,183	2.6
	소계	12,996	8.2	2,344	5.7	15,340	7.7
대구	대구남부	5,446	3.4	1,273	3.1	6,719	3.4
	대구북부	4,776	3.0	535	1.3	5,311	2.6
	소계	10,222	6.4	1,808	4.4	12,030	6.0
인천	인천	3,317	2.1	863	2.1	4,180	2.1
	인천서부	2,943	1.8	2,146	5.2	5,089	2.5
	소계	6,260	3.9	3,009	7.3	9,269	4.6
광주		5,070	3.2	1,087	2.6	6,157	3.1
대전		3,838	2.4	2,623	6.4	6,461	3.2
울산		4,696	2.9	665	1.6	5,361	2.7
경기	경기동부	3,664	2.3	1,344	3.3	5,008	2.5
	경기북부	5,947	3.7	1,025	2.5	6,972	3.5
	경기서부	7,110	4.5	1,683	4.1	8,793	4.4
	경기도	3,802	2.4	1,851	4.5	5,653	2.8
	경기북서부*	933	0.6	354	0.9	1,287	0.6
	소계	21,456	13.5	6,257	15.2	27,713	13.8
강원	강원	4,445	2.8	800	1.9	5,245	2.6
	강원동부	2,141	1.3	687	1.7	2,828	1.4
	강원남부	3,041	1.9	606	1.5	3,647	1.8
	소계	9,627	6.0	2,093	5.1	11,720	5.8
충북	충북	4,509	2.8	2,419	5.9	6,928	3.5
	충북북부	2,269	1.4	692	1.7	2,961	1.5
	소계	6,778	4.3	3,111	7.6	9,889	4.9

지역	기관명	학대상담		일반상담		계	
충남	충남	6,425	4.0	911	2.2	7,336	3.7
	충남남부	2,862	1.8	398	1.0	3,260	1.6
	소계	9,287	5.8	1,309	3.2	10,596	5.3
전북	전북	4,037	2.5	614	1.5	4,651	2.3
	전북서부	3,414	2.1	700	1.7	4,114	2.1
	소계	7,451	4.7	1,314	3.2	8,765	4.4
전남	전남동부	3,352	2.1	535	1.3	3,887	1.9
	전남서부	5,505	3.5	670	1.6	6,175	3.1
	소계	8,857	5.6	1,205	2.9	10,062	5.0
경북	경북동부	4,089	2.6	697	1.7	4,786	2.4
	경북북부	4,489	2.8	1,178	2.9	5,667	2.8
	경북서부	6,461	4.1	890	2.2	7,351	3.7
	경북남부*	1,442	0.9	714	1.7	2,156	1.1
	소계	16,481	10.3	3,479	8.5	19,960	10.0
경남	경남	7,138	4.5	645	1.6	7,783	3.9
	경남서부	4,843	3.0	920	2.2	5,763	2.9
	소계	11,981	7.5	1,565	3.8	13,546	6.8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3,833	2.4	2,559	6.2	6,392	3.2
	제주도 서귀포시	1,456	0.9	246	0.6	1,702	0.8
	소계	5,289	3.3	2,805	6.8	8,094	4.0
계		159,446	100	41,067	100	200,513	100

* 2021년 신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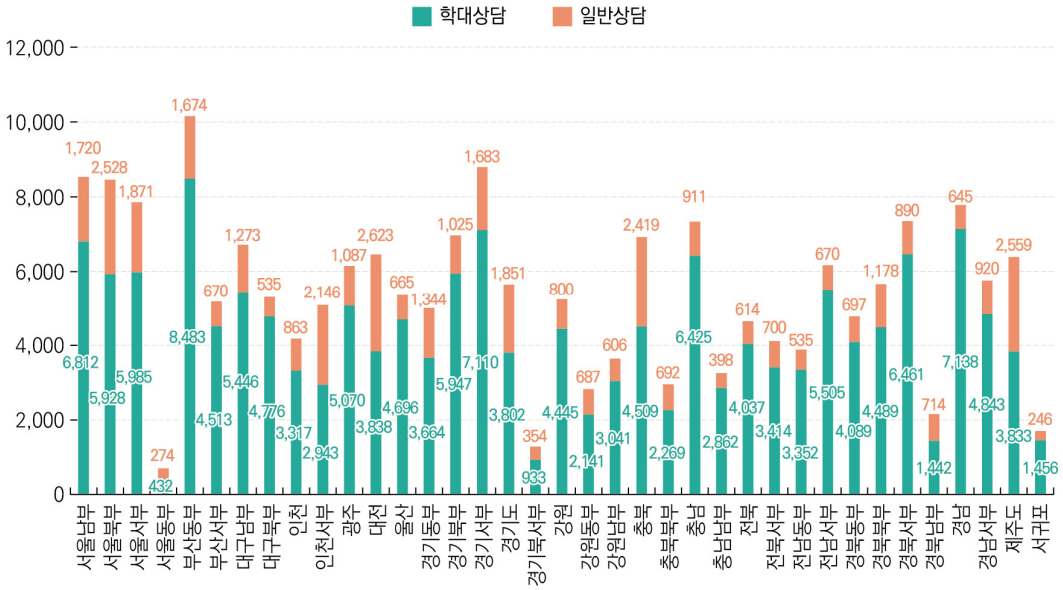

그림 7-4 지역 및 기관별 전체상담 횟수

5) 지역 및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 횟수

표 7-5 지역 및 기관별 한 사례당 평균 상담 횟수

(단위: 회, 건, %)

지역	기관명	학대상담 횟수	학대사례 건수	한 사례당 학대상담 횟수	일반상담 횟수	일반사례 건수	한 사례당 일반상담 횟수
서울	서울남부	6,812	235	29.0	1,720	507	3.4
	서울북부	5,928	214	27.7	2,528	542	4.7
	서울서부	5,985	245	24.4	1,871	457	4.1
	서울동부*	432	42	10.3	274	71	3.9
	소계	19,157	736	26.0	6,393	1,577	4.1
부산	부산동부	8,483	309	27.5	1,674	493	3.4
	부산서부	4,513	185	24.4	670	298	2.2
	소계	12,996	494	26.3	2,344	791	3.0
대구	대구남부	5,446	189	28.8	1,273	301	4.2
	대구북부	4,776	140	34.1	535	267	2.0
	소계	10,222	329	31.1	1,808	568	3.2
인천	인천	3,317	224	14.8	863	324	2.7
	인천서부	2,943	155	19.0	2,146	192	11.2
	소계	6,260	379	16.5	3,009	516	5.8
광주		5,070	219	23.2	1,087	253	4.3
대전		3,838	154	24.9	2,623	475	5.5
울산		4,696	178	26.4	665	320	2.1
경기	경기동부	3,664	271	13.5	1,344	393	3.4
	경기북부	5,947	547	10.9	1,025	469	2.2
	경기서부	7,110	314	22.6	1,683	183	9.2
	경기도	3,802	244	15.6	1,851	296	6.3
	경기북서부*	933	55	17.0	354	109	3.2
	소계	21,456	1,431	15.0	6,257	1,450	4.3
강원	강원	4,445	157	28.3	800	286	2.8
	강원동부	2,141	85	25.2	687	315	2.2
	강원남부	3,041	131	23.2	606	313	1.9
	소계	9,627	373	25.8	2,093	914	2.3
충북	충북	4,509	118	38.2	2,419	1,132	2.1
	충북북부	2,269	82	27.7	692	263	2.6
	소계	6,778	200	33.9	3,111	1,395	2.2
충남	충남	6,425	223	28.8	911	103	8.8
	충남남부	2,862	132	21.7	398	91	4.4
	소계	9,287	355	26.2	1,309	194	6.7

지역	기관명	학대상담 횟수	학대사례 건수	한 사례당 학대상담 횟수	일반상담 횟수	일반사례 건수	한 사례당 일반상담 횟수
전북	전북	4,037	184	21.9	614	240	2.6
	전북서부	3,414	136	25.1	700	316	2.2
	소계	7,451	320	23.3	1,314	556	2.4
전남	전남동부	3,352	152	22.1	535	255	2.1
	전남서부	5,505	215	25.6	670	293	2.3
	소계	8,857	367	24.1	1,205	548	2.2
경북	경북동부	4,089	176	23.2	697	266	2.6
	경북북부	4,489	132	34.0	1,178	690	1.7
	경북서부	6,461	207	31.2	890	433	2.1
	경북남부*	1,442	84	17.2	714	152	4.7
	소계	16,481	599	27.5	3,479	1,541	2.3
경남	경남	7,138	335	21.3	645	543	1.2
	경남서부	4,843	157	30.8	920	358	2.6
	소계	11,981	492	24.4	1,565	901	1.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3,833	84	45.6	2,559	514	5.0
	제주도 서귀포시	1,456	64	22.8	246	104	2.4
	소계	5,289	148	35.7	2,805	618	4.5
계		159,446	6,774	23.5	41,067	12,617	3.3

* 2021년 신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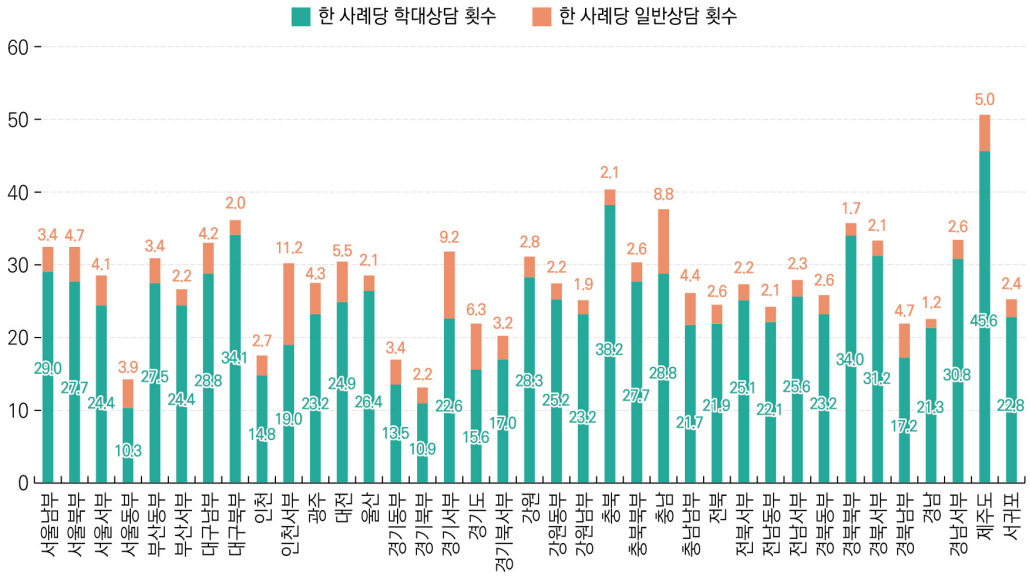

그림 7-5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 횟수

2. 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서비스

1)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표 7-6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단위: 회, %)

구 분		횟 수	비 율
상담서비스	학대피해노인 개별상담	64,295	26.1
	학대피해노인 집단상담	252	0.1
	가족상담	17,949	7.3
	관련자 상담	48,284	19.6
	심리 및 기타검사	1,259	0.5
	위기개입 기술	3	0.0
	강점관점 개입 기술	2	0.0
	소계	132,044	53.7
복지서비스 연계	국민기초수급권 연결	111	0.0
	긴급복지지원 연결	41	0.0
	가족지원서비스 연결	533	0.2
	재가서비스 연결	261	0.1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5,312	2.2
	기타자원 연결	9,129	3.7
	후원 연결	1,038	0.4
	직접 후원	3,924	1.6
	소계	20,349	8.3
법률서비스 연계	법률상담 연결	344	0.1
	법률소송 지원	84	0.0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66	0.0
	소계	494	0.2
의료서비스 연계	연계(이송)	106	0.0
	연계(의료기관 서비스 제공)	421	0.2
	연계(방문간호)	26	0.0
	지원(이송 및 동행)	737	0.3
	지원(의료비 지급)	159	0.1
	소계	1,449	0.6
보호서비스	지킴이 연결	569	0.2
	시설보호	76	0.0
	일시보호	1,252	0.5
	소계	1,897	0.8
정보제공 서비스	정보제공	79,690	32.4
	재학대 예방교육	10,029	4.1
	소계	89,719	36.5
계		245,952	100

2)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현황

표 7-7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현황

(단위: 회, %)

구분		횟수	비율
상담서비스	학대행위자 개별상담	19,103	33.9
	학대행위자 집단상담	501	0.9
	가족상담	2,345	4.2
	관련자 상담	6,355	11.3
	심리 및 기타검사	261	0.5
	소계	28,565	50.7
복지서비스 연계	국민기초수급권 연결	23	0.0
	긴급복지지원 연결	3	0.0
	가족지원서비스 연결	182	0.3
	재가서비스 연결	106	0.2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643	1.1
	기타자원 연결	508	0.9
	직접 후원	380	0.7
	소계	1,845	3.3
법률서비스 연계	법률상담 연결	22	0.0
	법률소송 지원	6	0.0
	소계	28	0.0
의료서비스 연계	연계(이송)	22	0.0
	연계(의료기관서비스제공)	70	0.1
	연계(방문간호)	3	0.0
	지원(이송 및 동행)	86	0.2
	지원(의료비지급)	27	0.0
	소계	208	0.4
정보제공 서비스	재학대예방교육	7,895	14.0
	정보제공	17,847	31.7
	소계	25,742	45.7
계		56,388	100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ART

08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사례분석 결과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8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사례분석 결과

1. 학대피해노인 현황

1) 65세 이상 인구 수 대비 학대피해노인 성별

표 8-1 65세 이상 인구 수 대비 학대피해노인 성별 분포

(단위: 명, %)

구 분	65세 이상 인구 수	비 율	학대피해노인 수	비 율
남	3,860,508	43.6	1,631	24.1
여	4,990,525	56.4	5,143	75.9
계	8,851,033	100	6,774	100

주. 65세 이상 인구수 : 행정안전부 2021년 주민등록 인구통계(2021.12. 기준)

2)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표 8-2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 분포

(단위: 명, %)

피해노인 성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남성	303	347	350	342	206	69	13	1	1,631
	18.6	21.3	21.5	21.0	12.6	4.2	0.8	0.1	100
여성	1,125	1,158	1,044	927	563	239	79	8	5,143
	21.9	22.5	20.3	18.0	10.9	4.6	1.5	0.2	100
계	1,428	1,505	1,394	1,269	769	308	92	9	6,774
	21.1	22.2	20.6	18.7	11.4	4.5	1.4	0.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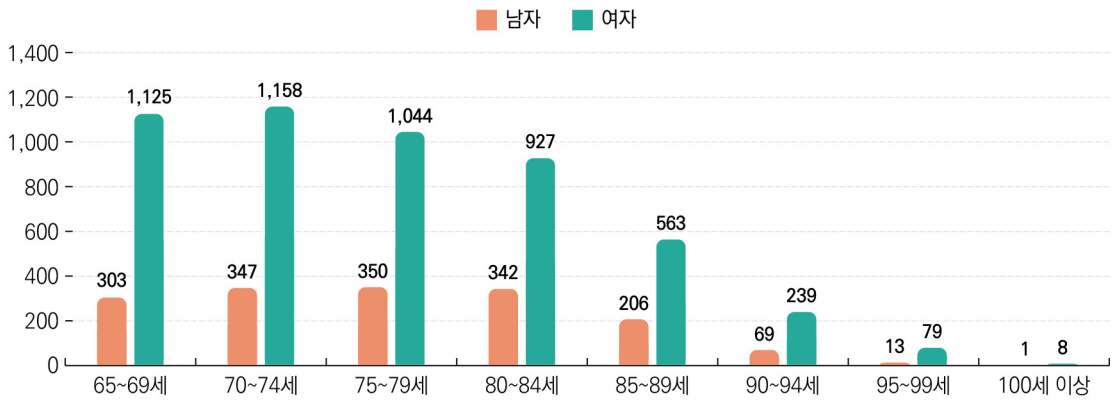

그림 8-1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분포

3)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표 8-3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단위: 명, %)

지역	기관명	남 성		여 성		계	
서울	서울남부	40	17.0	195	83.0	235	100
	서울북부	42	19.6	172	80.4	214	100
	서울서부	49	20.0	196	80.0	245	100
	서울동부*	9	21.4	33	78.6	42	100
	소계	140	19.0	596	81.0	736	100
부산	부산동부	71	23.0	238	77.0	309	100
	부산서부	40	21.6	145	78.4	185	100
	소계	111	22.5	383	77.5	494	100
대구	대구남부	39	20.6	150	79.4	189	100
	대구북부	25	17.9	115	82.1	140	100
	소계	64	19.5	265	80.5	329	100
인천	인천	48	21.4	176	78.6	224	100
	인천서부	35	22.6	120	77.4	155	100
	소계	83	21.9	296	78.1	379	100
광주		60	27.4	159	72.6	219	100
대전		38	24.7	116	75.3	154	100
울산		38	21.3	140	78.7	178	100
경기	경기동부	60	22.1	211	77.9	271	100
	경기북부	150	27.4	397	72.6	547	100
	경기서부	66	21.0	248	79.0	314	100
	경기도	58	23.8	186	76.2	244	100
	경기북서부*	15	27.3	40	72.7	55	100
	소계	349	24.4	1,082	75.6	1,431	100

지역	기관명	남 성		여 성		계	
강원	강원	41	26.1	116	73.9	157	100
	강원동부	22	25.9	63	74.1	85	100
	강원남부	44	33.6	87	66.4	131	100
	소계	107	28.7	266	71.3	373	100
충북	충북	45	38.1	73	61.9	118	100
	충북북부	29	35.4	53	64.6	82	100
	소계	74	37.0	126	63.0	200	100
충남	충남	66	29.6	157	70.4	223	100
	충남남부	38	28.8	94	71.2	132	100
	소계	104	29.3	251	70.7	355	100
전북	전북	52	28.3	132	71.7	184	100
	전북서부	23	16.9	113	83.1	136	100
	소계	75	23.4	245	76.6	320	100
전남	전남동부	28	18.4	124	81.6	152	100
	전남서부	46	21.4	169	78.6	215	100
	소계	74	20.2	293	79.8	367	100
경북	경북동부	54	30.7	122	69.3	176	100
	경북북부	39	29.5	93	70.5	132	100
	경북서부	62	30.0	145	70.0	207	100
	경북남부*	22	26.2	62	73.8	84	100
	소계	177	29.5	422	70.5	599	100
경남	경남	80	23.9	255	76.1	335	100
	경남서부	27	17.2	130	82.8	157	100
	소계	107	21.7	385	78.3	492	1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0	23.8	64	76.2	84	100
	제주도서귀포시	10	15.6	54	84.4	64	100
	소계	30	20.3	118	79.7	148	100
계		1,631	24.1	5,143	75.9	6,774	100

* 2021년 신규기관

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표 8-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피해자 성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 방임	유 기	계
남성	937	971	54	110	221	119	18	2,430
	38.6	40.0	2.2	4.5	9.1	4.9	0.7	100
여성	3,453	3,656	206	296	470	85	28	8,194
	42.1	44.6	2.5	3.6	5.7	1.0	0.3	100
계	4,390	4,627	260	406	691	204	46	10,624*
	41.3	43.6	2.4	3.8	6.5	1.9	0.4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774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624건)에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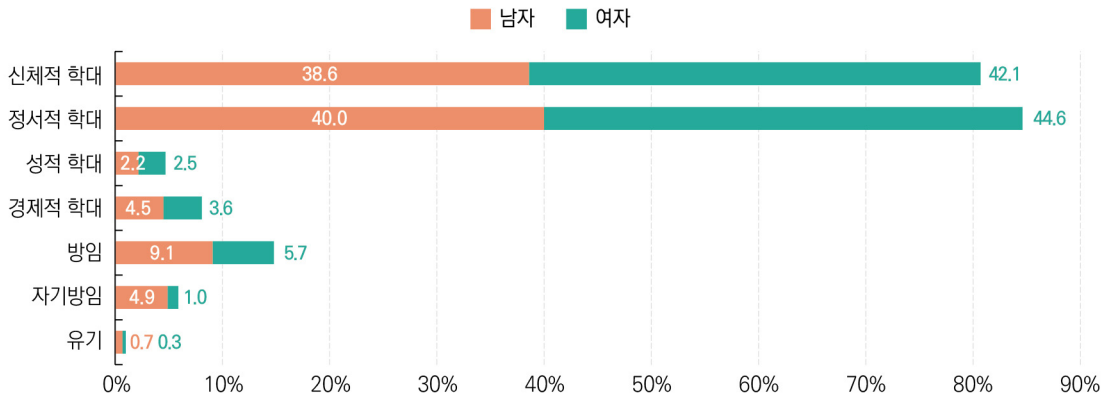

그림 8-2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5)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표 8-5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피해자 연령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 방임	유 기	계
65~69세	1,067	1,069	23	71	40	34	7	2,311
	46.2	46.3	1.0	3.1	1.7	1.5	0.3	100
70~74세	1,042	1,104	35	73	67	46	9	2,376
	43.9	46.5	1.5	3.1	2.8	1.9	0.4	100
75~79세	930	1,000	35	90	118	39	8	2,220
	41.9	45.0	1.6	4.1	5.3	1.8	0.4	100
80~84세	754	830	58	77	189	42	12	1,962
	38.4	42.3	3.0	3.9	9.6	2.1	0.6	100
85~89세	410	431	57	62	152	31	6	1,149
	35.7	37.5	5.0	5.4	13.2	2.7	0.5	100
90~94세	151	155	30	27	84	10	1	458
	33.0	33.8	6.6	5.9	18.3	2.2	0.2	100
95~99세	32	35	18	5	39	2	3	134
	23.9	26.1	13.4	3.7	29.1	1.5	2.2	100
100세 이상	4	3	4	1	2	-	-	14
	28.6	21.4	28.6	7.1	14.3	-	-	100
계	4,390	4,627	260	406	691	204	46	10,624*
	41.3	43.6	2.4	3.8	6.5	1.9	0.4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774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624건)에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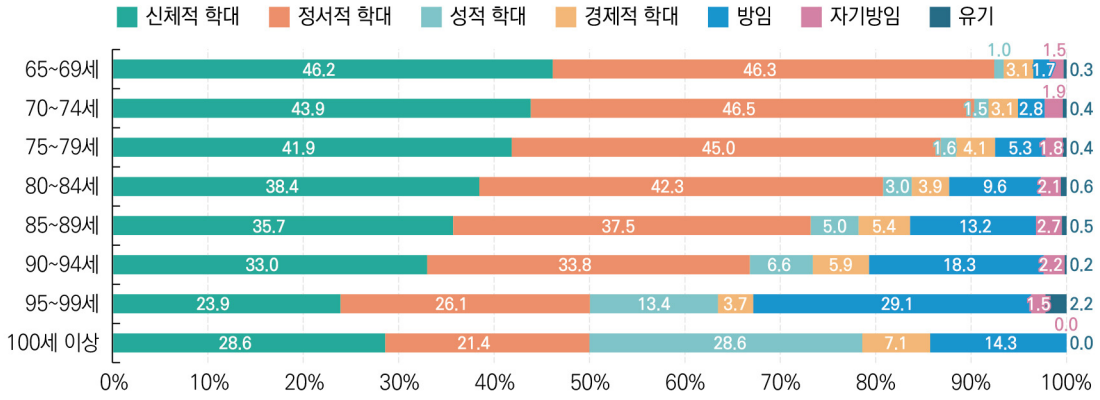

그림 8-3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6)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표 8-6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단위: 명, %)

구 분		명 수	비 율
배우자 있음	초혼	3,569	52.7
	재혼	251	3.7
	사실혼	180	2.7
	소계	4,000	59.0
배우자 없음	사별	2,182	32.2
	이혼	383	5.7
	별거	92	1.4
	가출	10	0.1
	미혼	107	1.6
	소계	2,774	41.0
계		6,774	100

7)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및 동거자 유형

표 8-7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단위: 명, %)

동거	비동거	계
4,820	1,954	6,774
71.2	28.8	100

표 8-8 학대피해노인 동거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명 수	비 율
배우자	3,190	45.2
아 들	1,979	28.1
딸	585	8.3
손자녀	502	7.1
시설	349	4.9
며느리	177	2.5
기타 동거인	98	1.4
병원	56	0.8
기타 친·인척	64	0.9
사위	53	0.8
계	7,053*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동거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6,774명)와 동거자 유형(7,053명)은 차이가 있음

8)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표 8-9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명, %)

피해자가구형태	명 수	비 율
노인독거	1,195	17.6
노인부부	2,332	34.4
자녀동거	2,111	31.2
손자녀동거	217	3.2
자녀·손자녀동거	235	3.5
기 타	684	10.1
계	6,774	100

표 8-10 시군구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명, %)

지역	시군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동거		기타		계	
서울	종로구	2	14.3	4	28.6	5	35.7	-	-	-	-	3	21.4	14	100
	중구	-	-	2	25.0	4	50.0	2	25.0	-	-	-	-	8	100
	용산구	2	7.4	13	48.1	10	37.0	-	-	1	3.7	1	3.7	27	100
	성동구	1	5.9	3	17.6	10	58.8	-	-	1	5.9	2	11.8	17	100
	광진구	3	17.6	7	41.2	5	29.4	-	-	1	5.9	1	5.9	17	100
	동대문구	6	17.1	13	37.1	12	34.3	2	5.7	1	2.9	1	2.9	35	100
	중랑구	7	22.6	14	45.2	8	25.8	-	-	-	-	2	6.5	31	100
	성북구	1	5.0	11	55.0	7	35.0	-	-	-	-	1	5.0	20	100
	강북구	-	-	16	44.4	15	41.7	1	2.8	2	5.6	2	5.6	36	100
	도봉구	-	-	14	45.2	13	41.9	1	3.2	-	-	3	9.7	31	100
	노원구	1	2.1	11	22.9	28	58.3	2	4.2	2	4.2	4	8.3	48	100
	은평구	3	8.3	13	36.1	16	44.4	1	2.8	1	2.8	2	5.6	36	100
	서대문구	2	8.0	9	36.0	9	36.0	3	12.0	-	-	2	8.0	25	100
	마포구	1	2.8	13	36.1	14	38.9	4	11.1	2	5.6	2	5.6	36	100
	양천구	3	11.5	8	30.8	9	34.6	1	3.8	4	15.4	1	3.8	26	100
	강서구	10	16.1	20	32.3	25	40.3	4	6.5	1	1.6	2	3.2	62	100
	구로구	3	6.7	18	40.0	18	40.0	2	4.4	1	2.2	3	6.7	45	100
	금천구	3	13.6	9	40.9	7	31.8	-	-	1	4.5	2	9.1	22	100
	영등포구	4	13.8	11	37.9	12	41.4	1	3.4	-	-	1	3.4	29	100
	동작구	6	18.8	8	25.0	17	53.1	-	-	-	-	1	3.1	32	100
	관악구	5	9.6	29	55.8	12	23.1	1	1.9	1	1.9	4	7.7	52	100
	서초구	3	30.0	2	20.0	5	50.0	-	-	-	-	-	-	10	100
	강남구	1	5.6	3	16.7	12	66.7	1	5.6	1	5.6	-	-	18	100
	송파구	1	2.6	11	28.9	18	47.4	1	2.6	2	5.3	5	13.2	38	100
	강동구	4	19.0	8	38.1	9	42.9	-	-	-	-	-	-	21	100
	소계	72	9.8	270	36.7	300	40.8	27	3.7	22	3.0	45	6.1	736	100

지역	시군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동거		기타		계	
부산	중구	1	33.3	-	-	2	66.7	-	-	-	-	-	-	3	100
	서구	2	14.3	4	28.6	5	35.7	3	21.4	-	-	-	-	14	100
	동구	6	18.2	19	57.6	6	18.2	-	-	1	3.0	1	3.0	33	100
	영도구	8	14.5	25	45.5	20	36.4	-	-	1	1.8	1	1.8	55	100
	부산진구	11	22.4	26	53.1	10	20.4	1	2.0	1	2.0	-	-	49	100
	동래구	4	19.0	10	47.6	5	23.8	1	4.8	1	4.8	-	-	21	100
	남구	8	15.4	25	48.1	18	34.6	1	1.9	-	-	-	-	52	100
	북구	5	9.4	31	58.5	13	24.5	-	-	3	5.7	1	1.9	53	100
	해운대구	11	23.9	20	43.5	11	23.9	3	6.5	1	2.2	-	-	46	100
	사하구	3	6.5	16	34.8	23	50.0	2	4.3	1	2.2	1	2.2	46	100
	금정구	2	20.0	1	10.0	5	50.0	1	10.0	-	-	1	10.0	10	100
	강서구	4	40.0	2	20.0	3	30.0	1	10.0	-	-	-	-	10	100
	연제구	3	15.8	7	36.8	7	36.8	-	-	1	5.3	1	5.3	19	100
	수영구	3	14.3	7	33.3	10	47.6	-	-	1	4.8	-	-	21	100
	사상구	7	16.3	20	46.5	13	30.2	2	4.7	-	-	1	2.3	43	100
	기장군	5	26.3	7	36.8	7	36.8	-	-	-	-	-	-	19	100
	소계	83	16.8	220	44.5	158	32.0	15	3.0	11	2.2	7	1.4	494	100
대구	중구	6	31.6	6	31.6	5	26.3	-	-	-	-	2	10.5	19	100
	동구	11	21.6	18	35.3	12	23.5	2	3.9	4	7.8	4	7.8	51	100
	서구	5	16.1	8	25.8	14	45.2	-	-	1	3.2	3	9.7	31	100
	남구	4	15.4	11	42.3	8	30.8	1	3.8	-	-	2	7.7	26	100
	북구	6	15.4	12	30.8	17	43.6	-	-	2	5.1	2	5.1	39	100
	수성구	2	5.3	22	57.9	9	23.7	2	5.3	-	-	3	7.9	38	100
	달서구	16	17.2	37	39.8	24	25.8	2	2.2	5	5.4	9	9.7	93	100
	달성군	4	12.5	17	53.1	5	15.6	2	6.3	1	3.1	3	9.4	32	100
	소계	54	16.4	131	39.8	94	28.6	9	2.7	13	4.0	28	8.5	329	100
인천	중구	6	20.0	12	40.0	10	33.3	-	-	-	-	2	6.7	30	100
	동구	1	6.3	10	62.5	4	25.0	-	-	1	6.3	-	-	16	100
	미추홀구	6	8.7	25	36.2	22	31.9	4	5.8	3	4.3	9	13.0	69	100
	연수구	8	29.6	7	25.9	11	40.7	-	-	-	-	1	3.7	27	100
	남동구	11	13.4	28	34.1	22	26.8	3	3.7	6	7.3	12	14.6	82	100
	부평구	14	18.2	24	31.2	14	18.2	7	9.1	2	2.6	16	20.8	77	100
	계양구	1	6.3	6	37.5	6	37.5	1	6.3	-	-	2	12.5	16	100
	서구	7	14.6	10	20.8	18	37.5	4	8.3	4	8.3	5	10.4	48	100
	강화군	1	7.1	2	14.3	7	50.0	-	-	1	7.1	3	21.4	14	100
	옹진군	-	-	-	-	-	-	-	-	-	-	-	-	-	-
	소계	55	14.5	124	32.7	114	30.1	19	5.0	17	4.5	50	13.2	379	100
광주	동구	6	20.0	15	50.0	6	20.0	1	3.3	2	6.7	-	-	30	100
	서구	7	17.1	27	65.9	4	9.8	1	2.4	-	-	2	4.9	41	100
	남구	9	31.0	14	48.3	4	13.8	-	-	-	-	2	6.9	29	100
	북구	16	23.9	29	43.3	16	23.9	1	1.5	3	4.5	2	3.0	67	100

지역	시군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동거		기타		계	
	광산구	9	18.0	23	46.0	11	22.0	3	6.0	3	6.0	1	2.0	50	100
	기타*	-	-	1	50.0	1	50.0	-	-	-	-	-	-	2	100
	소계	47	21.5	109	49.8	42	19.2	6	2.7	8	3.7	7	3.2	219	100
대전	동구	4	15.4	7	26.9	6	23.1	2	7.7	1	3.8	6	23.1	26	100
	중구	4	11.4	9	25.7	8	22.9	3	8.6	1	2.9	10	28.6	35	100
	서구	4	9.3	11	25.6	13	30.2	-	-	-	-	15	34.9	43	100
	유성구	3	27.3	2	18.2	4	36.4	-	-	1	9.1	1	9.1	11	100
	대덕구	4	10.3	2	5.1	3	7.7	-	-	3	7.7	27	69.2	39	100
	소계	19	12.3	31	20.1	34	22.1	5	3.2	6	3.9	59	38.3	154	100
울산	중구	9	15.5	23	39.7	18	31.0	-	-	2	3.4	6	10.3	58	100
	남구	11	30.6	11	30.6	12	33.3	-	-	1	2.8	1	2.8	36	100
	동구	3	14.3	6	28.6	7	33.3	3	14.3	1	4.8	1	4.8	21	100
	북구	5	17.9	13	46.4	7	25.0	1	3.6	1	3.6	1	3.6	28	100
	울주군	7	20.0	10	28.6	13	37.1	-	-	2	5.7	3	8.6	35	100
	소계	35	19.7	63	35.4	57	32.0	4	2.2	7	3.9	12	6.7	178	100
경기	수원시	12	12.5	36	37.5	36	37.5	4	4.2	6	6.3	2	2.1	96	100
	성남시	6	5.2	43	37.1	51	44.0	3	2.6	1	0.9	12	10.3	116	100
	의정부시	13	19.4	14	20.9	30	44.8	1	1.5	2	3.0	7	10.4	67	100
	안양시	3	7.5	14	35.0	11	27.5	1	2.5	2	5.0	9	22.5	40	100
	부천시	10	7.3	39	28.5	68	49.6	4	2.9	10	7.3	6	4.4	137	100
	광명시	5	17.9	9	32.1	10	35.7	1	3.6	1	3.6	2	7.1	28	100
	평택시	1	4.0	11	44.0	13	52.0	-	-	-	-	-	-	25	100
	동두천시	2	33.3	2	33.3	1	16.7	-	-	-	-	1	16.7	6	100
	안산시	7	10.3	23	33.8	31	45.6	3	4.4	4	5.9	-	-	68	100
	고양시	18	16.7	38	35.2	27	25.0	2	1.9	4	3.7	19	17.6	108	100
	과천시	1	11.1	3	33.3	5	55.6	-	-	-	-	-	-	9	100
	구리시	11	19.0	19	32.8	19	32.8	1	1.7	3	5.2	5	8.6	58	100
	남양주시	33	18.0	76	41.5	45	24.6	9	4.9	4	2.2	16	8.7	183	100
	오산시	-	-	9	64.3	4	28.6	-	-	1	7.1	-	-	14	100
	시흥시	6	11.1	14	25.9	25	46.3	1	1.9	3	5.6	5	9.3	54	100
	군포시	2	7.4	10	37.0	8	29.6	4	14.8	1	3.7	2	7.4	27	100
	의왕시	1	14.3	4	57.1	2	28.6	-	-	-	-	-	-	7	100
	하남시	1	6.3	3	18.8	8	50.0	-	-	1	6.3	3	18.8	16	100
	용인시	9	10.6	31	36.5	21	24.7	4	4.7	2	2.4	18	21.2	85	100
	파주시	8	16.0	13	26.0	16	32.0	1	2.0	3	6.0	9	18.0	50	100
	이천시	1	5.9	6	35.3	8	47.1	2	11.8	-	-	-	-	17	100
	안성시	2	18.2	3	27.3	5	45.5	-	-	1	9.1	-	-	11	100
	김포시	-	-	12	46.2	13	50.0	-	-	-	-	1	3.8	26	100
	화성시	5	16.7	14	46.7	8	26.7	1	3.3	-	-	2	6.7	30	100
	광주시	3	15.8	6	31.6	7	36.8	1	5.3	2	10.5	-	-	19	100
	양주시	10	27.8	5	13.9	4	11.1	1	2.8	1	2.8	15	41.7	36	100

지역	시군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동거		기타		계	
	포천시	12	20.0	21	35.0	16	26.7	1	1.7	1	1.7	9	15.0	60	100
	여주시	-	-	-	-	2	50.0	-	-	-	-	2	50.0	4	100
	연천군	1	9.1	4	36.4	4	36.4	-	-	2	18.2	-	-	11	100
	가평군	2	22.2	2	22.2	4	44.4	1	11.1	-	-	-	-	9	100
	양평군	1	7.7	1	7.7	1	7.7	-	-	-	-	10	76.9	13	100
	기타*	-	-	-	-	-	-	-	-	-	-	1	100.0	1	100
	소계	186	13.0	485	33.9	503	35.2	46	3.2	55	3.8	156	10.9	1,431	100
강원	춘천시	17	17.5	21	21.6	29	29.9	3	3.1	2	2.1	25	25.8	97	100
	원주시	16	15.5	11	10.7	17	16.5	2	1.9	4	3.9	53	51.5	103	100
	강릉시	6	16.7	11	30.6	13	36.1	1	2.8	-	-	5	13.9	36	100
	동해시	1	11.1	2	22.2	6	66.7	-	-	-	-	-	-	9	100
	태백시	1	12.5	1	12.5	6	75.0	-	-	-	-	-	-	8	100
	속초시	-	-	1	6.7	6	40.0	-	-	-	-	8	53.3	15	100
	삼척시	4	30.8	1	7.7	7	53.8	-	-	1	7.7	-	-	13	100
	홍천군	2	16.7	2	16.7	3	25.0	-	-	1	8.3	4	33.3	12	100
	횡성군	3	37.5	-	-	4	50.0	-	-	-	-	1	12.5	8	100
	영월군	1	33.3	1	33.3	1	33.3	-	-	-	-	-	-	3	100
	평창군	1	16.7	1	16.7	3	50.0	-	-	1	16.7	-	-	6	100
	정선군	-	-	1	33.3	2	66.7	-	-	-	-	-	-	3	100
	철원군	1	16.7	4	66.7	1	16.7	-	-	-	-	-	-	6	100
	화천군	-	-	2	5.4	1	2.7	-	-	-	-	34	91.9	37	100
	양구군	-	-	4	100.0	-	-	-	-	-	-	-	-	4	100
	인제군	-	-	-	-	1	100.0	-	-	-	-	-	-	1	100
	고성군	-	-	-	-	3	100.0	-	-	-	-	-	-	3	100
	양양군	2	22.2	1	11.1	3	33.3	-	-	-	-	3	33.3	9	100
	소계	55	14.7	64	17.2	106	28.4	6	1.6	9	2.4	133	35.7	373	100
충북	청주시	15	15.3	18	18.4	16	16.3	7	7.1	4	4.1	38	38.8	98	100
	충주시	11	27.5	11	27.5	16	40.0	-	-	1	2.5	1	2.5	40	100
	제천시	5	31.3	4	25.0	4	25.0	1	6.3	2	12.5	-	-	16	100
	보은군	-	-	1	100.0	-	-	-	-	-	-	-	-	1	100
	옥천군	1	14.3	2	28.6	4	57.1	-	-	-	-	-	-	7	100
	영동군	1	50.0	-	-	1	50.0	-	-	-	-	-	-	2	100
	진천군	-	-	2	28.6	3	42.9	-	-	2	28.6	-	-	7	100
	괴산군	5	71.4	1	14.3	1	14.3	-	-	-	-	-	-	7	100
	음성군	9	52.9	3	17.6	4	23.5	1	5.9	-	-	-	-	17	100
	단양군	-	-	-	-	1	100.0	-	-	-	-	-	-	1	100
	증평군	1	33.3	-	-	-	-	-	-	2	66.7	-	-	3	100
	기타*	-	-	1	100.0	-	-	-	-	-	-	-	-	1	100
	소계	48	24.0	43	21.5	50	25.0	9	4.5	11	5.5	39	19.5	200	100
충남	천안시	12	24.0	12	24.0	16	32.0	1	2.0	1	2.0	8	16.0	50	100
	공주시	4	14.8	13	48.1	7	25.9	-	-	2	7.4	1	3.7	27	100

지역	시군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동거		기타		계	
	보령시	3	15.8	5	26.3	8	42.1	-	-	3	15.8	-	-	19	100
	아산시	8	18.2	14	31.8	20	45.5	-	-	1	2.3	1	2.3	44	100
	서산시	2	4.3	20	42.6	16	34.0	4	8.5	3	6.4	2	4.3	47	100
	논산시	7	18.9	13	35.1	11	29.7	3	8.1	1	2.7	2	5.4	37	100
	계룡시	1	20.0	2	40.0	1	20.0	-	-	-	-	1	20.0	5	100
	당진시	2	10.0	4	20.0	10	50.0	-	-	2	10.0	2	10.0	20	100
	금산군	2	18.2	6	54.5	2	18.2	-	-	-	-	1	9.1	11	100
	부여군	-	-	9	47.4	8	42.1	1	5.3	1	5.3	-	-	19	100
	서천군	4	36.4	1	9.1	4	36.4	2	18.2	-	-	-	-	11	100
	청양군	-	-	-	-	1	50.0	-	-	-	-	1	50.0	2	100
	홍성군	2	18.2	3	27.3	6	54.5	-	-	-	-	-	-	11	100
	예산군	3	15.8	4	21.1	6	31.6	2	10.5	1	5.3	3	15.8	19	100
	태안군	-	-	3	37.5	1	12.5	-	-	2	25.0	2	25.0	8	100
	기타*	-	-	-	-	1	100.0	-	-	-	-	-	-	1	100
	소계	50	15.1	109	32.9	118	35.6	13	3.9	17	5.1	24	7.3	331	10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	-	13	54.2	6	25.0	2	8.3	1	4.2	2	8.3	24	100
	소계	-	-	13	54.2	6	25.0	2	8.3	1	4.2	2	8.3	24	100
전북	전주시	41	29.1	34	24.1	37	26.2	2	1.4	4	2.8	23	16.3	141	100
	군산시	8	23.5	10	29.4	12	35.3	2	5.9	1	2.9	1	2.9	34	100
	익산시	13	26.5	16	32.7	11	22.4	3	6.1	2	4.1	4	8.2	49	100
	정읍시	2	11.1	5	27.8	8	44.4	1	5.6	-	-	2	11.1	18	100
	남원시	4	23.5	9	52.9	3	17.6	-	-	-	-	1	5.9	17	100
	김제시	6	26.1	7	30.4	7	30.4	-	-	2	8.7	1	4.3	23	100
	완주군	3	25.0	4	33.3	4	33.3	-	-	1	8.3	-	-	12	100
	진안군	-	-	-	-	-	-	-	-	-	-	-	-	-	-
	무주군	1	100.0	-	-	-	-	-	-	-	-	-	-	1	100
	장수군	-	-	2	50.0	2	50.0	-	-	-	-	-	-	4	100
	임실군	2	40.0	-	-	3	60.0	-	-	-	-	-	-	5	100
	순창군	-	-	-	-	2	50.0	-	-	2	50.0	-	-	4	100
	고창군	-	-	2	66.7	1	33.3	-	-	-	-	-	-	3	100
	부안군	4	44.4	2	22.2	2	22.2	1	11.1	-	-	-	-	9	100
	소계	84	26.3	91	28.4	92	28.8	9	2.8	12	3.8	32	10.0	320	100
전남	목포시	19	26.4	34	47.2	15	20.8	2	2.8	2	2.8	-	-	72	100
	여수시	6	12.2	19	38.8	16	32.7	5	10.2	1	2.0	2	4.1	49	100
	순천시	12	27.3	17	38.6	12	27.3	2	4.5	1	2.3	-	-	44	100
	나주시	7	41.2	6	35.3	4	23.5	-	-	-	-	-	-	17	100
	광양시	-	-	5	33.3	9	60.0	1	6.7	-	-	-	-	15	100
	담양군	3	33.3	2	22.2	4	44.4	-	-	-	-	-	-	9	100
	곡성군	2	25.0	2	25.0	2	25.0	1	12.5	1	12.5	-	-	8	100
	구례군	-	-	-	-	2	100.0	-	-	-	-	-	-	2	100
	고흥군	1	12.5	1	12.5	5	62.5	1	12.5	-	-	-	-	8	100

지역	시군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동거		기타		계	
	보성군	1	20.0	2	40.0	2	40.0	-	-	-	-	-	-	5	100
	화순군	2	50.0	1	25.0	1	25.0	-	-	-	-	-	-	4	100
	장흥군	-	-	1	50.0	-	-	1	50.0	-	-	-	-	2	100
	강진군	3	25.0	7	58.3	2	16.7	-	-	-	-	-	-	12	100
	해남군	3	13.6	9	40.9	6	27.3	-	-	1	4.5	3	13.6	22	100
	영암군	3	25.0	3	25.0	3	25.0	-	-	-	-	3	25.0	12	100
	무안군	5	21.7	12	52.2	4	17.4	1	4.3	-	-	1	4.3	23	100
	함평군	4	26.7	7	46.7	2	13.3	-	-	-	-	2	13.3	15	100
	영광군	4	21.1	6	31.6	7	36.8	-	-	1	5.3	1	5.3	19	100
	장성군	3	50.0	1	16.7	1	16.7	-	-	1	16.7	-	-	6	100
	완도군	2	40.0	1	20.0	1	20.0	-	-	1	20.0	-	-	5	100
	진도군	1	25.0	-	-	3	75.0	-	-	-	-	-	-	4	100
	신안군	5	35.7	6	42.9	3	21.4	-	-	-	-	-	-	14	100
	소계	86	23.4	142	38.7	104	28.3	14	3.8	9	2.5	12	3.3	367	100
경북	포항시	39	46.4	32	38.1	9	10.7	2	2.4	1	1.2	1	1.2	84	100
	경주시	4	12.9	11	35.5	15	48.4	1	3.2	-	-	-	-	31	100
	김천시	13	31.0	14	33.3	13	31.0	-	-	-	-	2	4.8	42	100
	안동시	8	14.5	25	45.5	16	29.1	1	1.8	1	1.8	4	7.3	55	100
	구미시	18	19.6	38	41.3	22	23.9	6	6.5	3	3.3	5	5.4	92	100
	영주시	4	17.4	7	30.4	9	39.1	-	-	1	4.3	2	8.7	23	100
	영천시	14	37.8	12	32.4	5	13.5	1	2.7	5	13.5	-	-	37	100
	상주시	10	38.5	5	19.2	10	38.5	1	3.8	-	-	-	-	26	100
	문경시	8	40.0	9	45.0	2	10.0	-	-	-	-	1	5.0	20	100
	경산시	4	12.1	12	36.4	12	36.4	3	9.1	1	3.0	1	3.0	33	100
	군위군	-	-	2	100.0	-	-	-	-	-	-	-	-	2	100
	의성군	4	20.0	9	45.0	6	30.0	1	5.0	-	-	-	-	20	100
	청송군	13	76.5	1	5.9	2	11.8	-	-	1	5.9	-	-	17	100
	영양군	-	-	-	-	-	-	-	-	-	-	-	-	-	-
	영덕군	10	76.9	1	7.7	2	15.4	-	-	-	-	-	-	13	100
	청도군	10	83.3	2	16.7	-	-	-	-	-	-	-	-	12	100
	고령군	10	83.3	-	-	1	8.3	1	8.3	-	-	-	-	12	100
	성주군	3	23.1	8	61.5	2	15.4	-	-	-	-	-	-	13	100
	칠곡군	2	12.5	9	56.3	4	25.0	-	-	-	-	1	6.3	16	100
	예천군	9	56.3	2	12.5	4	25.0	1	6.3	-	-	-	-	16	100
	봉화군	1	12.5	3	37.5	3	37.5	-	-	1	12.5	-	-	8	100
	울진군	15	55.6	2	7.4	8	29.6	-	-	-	-	2	7.4	27	100
	울릉군	-	-	-	-	-	-	-	-	-	-	-	-	-	-
	소계	199	33.2	204	34.1	145	24.2	18	3.0	14	2.3	19	3.2	599	100
경남	창원시	26	20.3	53	41.4	41	32.0	6	4.7	1	0.8	1	0.8	128	100
	진주시	13	19.1	23	33.8	27	39.7	1	1.5	1	1.5	3	4.4	68	100
	통영시	3	18.8	2	12.5	6	37.5	-	-	2	12.5	3	18.8	16	100

지역	시군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동거		기타		계	
	사천시	4	26.7	4	26.7	6	40.0	-	-	1	6.7	-	-	15	100
	김해시	15	22.4	28	41.8	18	26.9	1	1.5	1	1.5	4	6.0	67	100
	밀양시	2	16.7	2	16.7	4	33.3	1	8.3	-	-	3	25.0	12	100
	거제시	5	20.0	15	60.0	5	20.0	-	-	-	-	-	-	25	100
	양산시	16	19.5	40	48.8	17	20.7	3	3.7	1	1.2	5	6.1	82	100
	의령군	-	-	-	-	2	66.7	-	-	1	33.3	-	-	3	100
	함안군	1	100.0	-	-	-	-	-	-	-	-	-	-	1	100
	창녕군	-	-	1	50.0	-	-	-	-	-	-	1	50.0	2	100
	고성군	-	-	1	50.0	1	50.0	-	-	-	-	-	-	2	100
	남해군	1	12.5	4	50.0	1	12.5	-	-	2	25.0	-	-	8	100
	하동군	2	33.3	1	16.7	1	16.7	-	-	2	33.3	-	-	6	100
	산청군	1	7.1	-	-	3	21.4	-	-	-	-	10	71.4	14	100
	함양군	1	10.0	3	30.0	2	20.0	-	-	1	10.0	3	30.0	10	100
	거창군	3	13.0	1	4.3	5	21.7	-	-	-	-	14	60.9	23	100
	합천군	5	50.0	-	-	5	50.0	-	-	-	-	-	-	10	100
	소계	98	19.9	178	36.2	144	29.3	12	2.4	13	2.6	47	9.6	492	100
제주	제주시	14	16.7	29	34.5	25	29.8	-	-	7	8.3	9	10.7	84	100
	서귀포시	10	15.6	26	40.6	19	29.7	3	4.7	3	4.7	3	4.7	64	100
	소계	24	16.2	55	37.2	44	29.7	3	2.0	10	6.8	12	8.1	148	100
합계		1,195	17.6	2,332	34.4	2,111	31.2	217	3.2	235	3.5	684	10.1	6,774	100

*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가 아닌 타부양가족의 집에 머무르거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 등이 해당됨.

9)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표 8-11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단위: 명, %)

자 택	전 세	월 세	영구임대	의료시설	의료복지시설	무 상	주거복지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기 타	계
4,309	577	532	425	92	497	131	52	63	96	6,774
63.6	8.5	7.9	6.3	1.4	7.3	1.9	0.8	0.9	1.4	100

10)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표 8-12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전체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774	1,165
	17.2

11)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

표 8-13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

(단위: 명, %)

무 학	초 졸	중 졸	고 졸	전문대졸이상	계
1,682	2,476	1,231	1,117	268	6,774
24.8	36.6	18.2	16.5	4.0	100

12)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표 8-14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단위: 명, %)

구 분	명 수	비 율
무직	5,851	86.4
단순 노무 종사자	315	4.7
농.어.축산업 종사자	188	2.8
자영업자	170	2.5
서비스.판매종사자	134	2.0
전문직	52	0.8
기술공 및 준전문가	19	0.3
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15	0.2
종교인	12	0.2
기능업 및 관련기능종사자	8	0.1
사무종사자	6	0.1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4	0.1
계	6,774	100

13) 학대피해노인 건강상태

가. 학대피해노인 질병유형

표 8-15 학대피해노인 질병유형

(단위: 명, %)

구 분	건 수	비 율
고혈압	1,372	23.4
관절염	882	15.0
당뇨병	781	13.3
디스크	256	4.4
골다공증	198	3.4

구 분	건 수	비 율
중풍,뇌혈관 질환	184	3.1
신경통	170	2.9
협심증,심근경색증	146	2.5
요통,좌골통	140	2.4
악성신생물(암)	105	1.8
골절,후유증	97	1.7
갑성선 질환	77	1.3
천식	54	0.9
만성신장질환	50	0.9
백내장	39	0.7
저혈압	32	0.5
피부병	28	0.5
소화성궤양	27	0.5
녹내장	19	0.3
빈혈	17	0.3
만성간염,간경변	11	0.2
만성기관지염	10	0.2
폐결핵, 결핵	8	0.1
만성중이염	3	0.1
기타	1,166	19.9
계	5,872*	100

* 질병은 2가지 이상의 질병이 동반되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774건)와 학대피해노인 질병유형 통계 수치(5,872건)에는 차이가 있음

나. 학대피해노인 장애 수 및 장애유형

표 8-16 학대피해노인 장애 수

(단위: 명, %)

장애 수	건 수	비 율
1개	73	11.6
2개 이상	555	88.4
계	628*	100

* 장애는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동반되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774건)와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 통계 수치(628건)에는 차이가 있음

표 8-17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

(단위: 명, %)

구 분		건 수	비 율
신체 장애	지체장애	141	22.5
	청각장애	100	15.9
	시각장애	66	10.5
	뇌병변장애	32	5.1
	신장장애	15	2.4
	언어장애	7	1.1
	심장장애	5	0.8
	호흡기장애	4	0.6
	간질장애	4	0.6
	장루요루장애	3	0.5
	안면장애	2	0.3
	소계	379	60.4
정신 장애	우울장애	178	28.3
	지적장애	32	5.1
	정신분열	30	4.8
	정동장애	9	1.4
	소계	249	39.6
계		628*	100

* 장애는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동반되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774건)와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 통계 수치(628건)에는 차이가 있음

** 학대 결과로서 장애 판정 유무는 확인이 어려우며, 장애인 등급판정을 받거나 현장조사 시 장애가 의심되는 대상자도 포함.

다.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표 8-18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 명, %)

전체학대사례	치매의심(치매가 의심됨)	치매진단(치매로 진단받음)	계
6,774	607	1,092	1,699
	9.0	16.1	25.1

라. 학대피해노인 중독 유형

표 8-19 학대피해노인 중독 유형

(단위: 명, %)

전체학대사례	알코올 사용장애	약물사용장애	도박중독	계
6,774	94	1	3	98
	1.4	0.0	0.0	1.4

14)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 정도

표 8-20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 정도

(단위: 명, %)

구 분		부분도움	완전도움	완전자립	계
일상생활 수행능력 (ADL)	옷 벗고 입기	1,153	615	5,006	6,774
		17.0	9.1	73.9	100
	세수하기	1,128	604	5,042	6,774
		16.7	8.9	74.4	100
	양치질하기	1,115	602	5,057	6,774
		16.5	8.9	74.7	100
	목욕하기	1,174	701	4,899	6,774
		17.3	10.3	72.3	100
	식사하기	1,202	577	4,995	6,774
		17.7	8.5	73.7	100
	체위변경하기	1,129	589	5,056	6,774
		16.7	8.7	74.6	100
	일어나 앉기	1,164	611	4,999	6,774
		17.2	9.0	73.8	100
	옮겨 타기	1,176	635	4,963	6,774
		17.4	9.4	73.3	100
	방밖으로 나오기	1,140	618	5,016	6,774
		16.8	9.1	74.0	100
	화장실 사용하기	1,125	633	5,016	6,774
		16.6	9.3	74.0	100
	대변조절하기	1,098	613	5,063	6,774
		16.2	9.0	74.7	100
	소변조절하기	1,100	616	5,058	6,774
		16.2	9.1	74.7	100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IADL)	몸단장하기	1,173	646	4,955	6,774
		17.3	9.5	73.1	100
	집안일 하기	1,273	783	4,718	6,774
		18.8	11.6	69.6	100
	식사준비하기	1,264	792	4,718	6,774
		18.7	11.7	69.6	100
	빨래하기	1,247	804	4,723	6,774
		18.4	11.9	69.7	100

구 분		부분도움	완전도움	완전자립	계
	근거리 외출하기	1,379	793	4,602	6,774
		20.4	11.7	67.9	100
	교통수단 이용하기	1,393	827	4,554	6,774
		20.6	12.2	67.2	100
	물건 사러가기	1,335	804	4,635	6,774
		19.7	11.9	68.4	100
	금전관리하기	1,301	740	4,733	6,774
		19.2	10.9	69.9	100
	전화 사용하기	1,224	690	4,860	6,774
		18.1	10.2	71.7	100
	약 챙겨 먹기	1,297	682	4,795	6,774
		19.1	10.1	70.8	100

2. 학대행위자 현황

1)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표 8-21 학대행위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명, %)

구 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남성	51	99	261	973	1,195	784	2,050	5,413
	0.9	1.8	4.8	18.0	22.1	14.5	37.9	100
여성	16	39	144	420	1,291	773	327	3,010
	0.5	1.3	4.8	14.0	42.9	25.7	10.9	100
계	67	138	405	1,393	2,486	1,557	2,377	8,423*
	0.8	1.6	4.8	16.5	29.5	18.5	28.2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6,774명)와 학대행위자(8,423명)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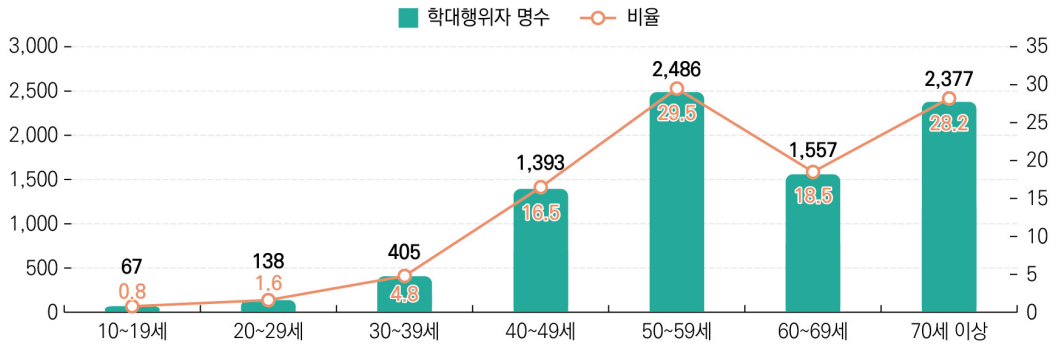

그림 8-4 학대행위자 연령분포

2) 지역 및 기관별 학대행위자 성별

표 8-22 지역 및 기관별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명, %)

시도	시설명	남 성		여 성		계	
서울	서울남부	189	78.1	53	21.9	242	100
	서울북부	174	79.8	44	20.2	218	100
	서울서부	204	81.0	48	19.0	252	100
	서울동부*	32	74.4	11	25.6	43	100
	소계	599	79.3	156	20.7	755	100
부산	부산동부	271	85.8	45	14.2	316	100
	부산서부	135	70.3	57	29.7	192	100
	소계	406	79.9	102	20.1	508	100
대구	대구남부	168	81.6	38	18.4	206	100
	대구북부	113	79.6	29	20.4	142	100
	소계	281	80.7	67	19.3	348	100

시도	시설명	남 성		여 성		계	
인천	인천	160	69.6	70	30.4	230	100
	인천서부	98	61.3	62	38.8	160	100
	소계	258	66.2	132	33.8	390	100
광주		178	80.9	42	19.1	220	100
대전		107	67.7	51	32.3	158	100
울산		140	77.8	40	22.2	180	100
경기	경기동부	210	73.2	77	26.8	287	100
	경기북부	405	71.7	160	28.3	565	100
	경기서부	252	75.4	82	24.6	334	100
	경기도	203	82.2	44	17.8	247	100
	경기북서부*	43	76.8	13	23.2	56	100
	소계	1,113	74.7	376	25.3	1,489	100
강원	강원	208	16.6	1,048	83.4	1,256	100
	강원동부	67	72.0	26	28.0	93	100
	강원남부	74	54.0	63	46.0	137	100
	소계	349	23.5	1,137	76.5	1,486	100
충북	충북	161	40.9	233	59.1	394	100
	충북북부	58	68.2	27	31.8	85	100
	소계	219	45.7	260	54.3	479	100
충남	충남	182	77.1	54	22.9	236	100
	충남남부	103	76.9	31	23.1	134	100
	소계	285	77.0	85	23.0	370	100
전북	전북	133	56.4	103	43.6	236	100
	전북서부	96	71.1	39	28.9	135	100
	소계	229	61.7	142	38.3	371	100
전남	전남동부	114	75.0	38	25.0	152	100
	전남서부	178	73.9	63	26.1	241	100
	소계	292	74.3	101	25.7	393	100
경북	경북동부	130	73.9	46	26.1	176	100
	경북북부	108	77.7	31	22.3	139	100
	경북서부	160	74.8	54	25.2	214	100
	경북남부*	66	78.6	18	21.4	84	100
	소계	464	75.7	149	24.3	613	100
경남	경남	266	78.7	72	21.3	338	100
	경남서부	118	67.8	56	32.2	174	100
	소계	384	75.0	128	25.0	512	1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57	67.1	28	32.9	85	100
	제주도서귀포시	52	78.8	14	21.2	66	100
	소계	109	72.2	42	27.8	151	100
계		5,413	64.3	3,010	35.7	8,423	100

* 2021년 신규기관

3)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표 8-23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명, %)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 위	손자녀	친척	기타 타인	동거인	이웃	친구	기타 기관	노인 복지 시설	의료인	
204	2,455	2,287	119	627	42	172	90	105	66	83	3	45	2,095	30	8,423*
2.4	29.1	27.2	1.4	7.4	0.5	2.0	1.1	1.2	0.8	1.0	0.0	0.5	24.9	0.4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6,774명)와 학대행위자(8,423명)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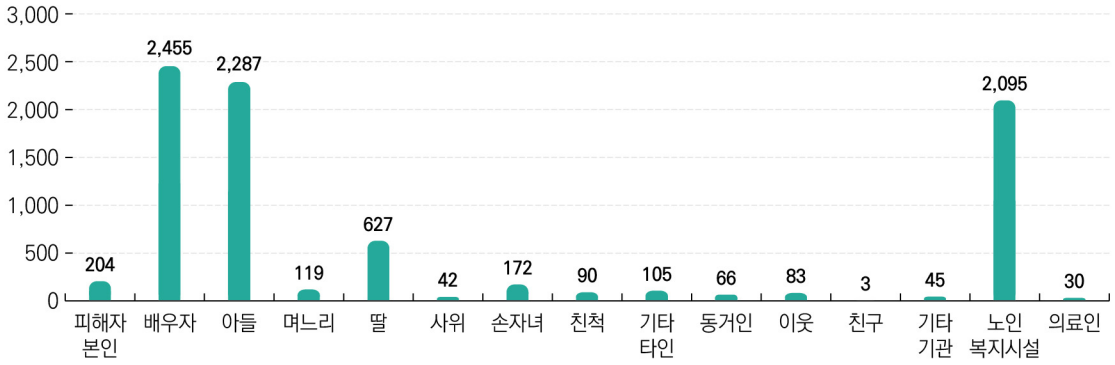

그림 8-5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표 8-24 시군구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명, %)

지역	시군구	피해자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서울	종로구	-	-	5	33.3	6	40.0	-	-	1	6.7	-	-	-	-	-	-	-	-	3	20.0	15	100
	중구	1	12.5	3	37.5	3	37.5	1	12.5	-	-	-	-	-	-	-	-	-	-	-	-	8	100
	용산구	-	-	13	46.4	10	35.7	1	3.6	4	14.3	-	-	-	-	-	-	-	-	-	-	28	100
	성동구	-	-	5	29.4	10	58.8	-	-	1	5.9	-	-	1	5.9	-	-	-	-	-	-	17	100
	광진구	-	-	7	38.9	6	33.3	1	5.6	3	16.7	-	-	-	-	-	-	-	-	1	5.6	18	100
	동대문구	-	-	20	57.1	5	14.3	-	-	7	20.0	1	2.9	1	2.9	-	-	-	-	1	2.9	35	100
	중랑구	1	3.2	18	58.1	7	22.6	-	-	1	3.2	-	-	1	3.2	-	-	2	6.5	1	3.2	31	100
	성북구	-	-	12	60.0	6	30.0	1	5.0	1	5.0	-	-	-	-	-	-	-	-	-	-	20	100
	강북구	-	-	18	50.0	13	36.1	1	2.8	1	2.8	-	-	1	2.8	-	-	1	2.8	1	2.8	36	100
	도봉구	2	6.5	14	45.2	7	22.6	-	-	4	12.9	-	-	1	3.2	-	-	2	6.5	1	3.2	31	100
	노원구	-	-	10	19.6	25	49.0	-	-	9	17.6	-	-	1	2.0	-	-	1	2.0	5	9.8	51	100
	은평구	-	-	15	41.7	13	36.1	-	-	5	13.9	-	-	-	-	-	-	-	-	3	8.3	36	100
	서대문구	1	3.7	12	44.4	8	29.6	-	-	5	18.5	-	-	-	-	-	-	-	-	1	3.7	27	100
	마포구	-	-	24	66.7	8	22.2	-	-	1	2.8	-	-	1	2.8	1	2.8	1	2.8	-	-	36	100
	양천구	-	-	9	33.3	9	33.3	2	7.4	2	7.4	1	3.7	1	3.7	-	-	2	7.4	1	3.7	27	100
	강서구	-	-	22	34.4	25	39.1	1	1.6	9	14.1	-	-	3	4.7	-	-	1	1.6	3	4.7	64	100
	구로구	-	-	19	41.3	14	30.4	1	2.2	3	6.5	1	2.2	2	4.3	2	4.3	1	2.2	3	6.5	46	100

지역	시군구	피해자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금천구	-	-	11	47.8	6	26.1	-	-	2	8.7	1	4.3	-	-	-	-	-	-	3	13.0	23	100
	영등포구	2	6.5	14	45.2	13	41.9	1	3.2	1	3.2	-	-	-	-	-	-	-	-	-	-	31	100
	동작구	-	-	11	34.4	12	37.5	-	-	7	21.9	-	-	-	-	-	-	-	-	2	6.3	32	100
	관악구	-	-	38	73.1	8	15.4	-	-	2	3.8	-	-	1	1.9	-	-	2	3.8	1	1.9	52	100
	서초구	-	-	1	8.3	7	58.3	-	-	2	16.7	1	8.3	1	8.3	-	-	-	-	-	-	12	100
	강남구	-	-	3	15.0	6	30.0	-	-	8	40.0	-	-	2	10.0	-	-	-	-	1	5.0	20	100
	송파구	-	-	13	34.2	18	47.4	-	-	1	2.6	-	-	1	2.6	-	-	-	-	5	13.2	38	100
	강동구	-	-	11	52.4	8	38.1	-	-	-	-	1	4.8	-	-	-	-	-	-	1	4.8	21	100
	소계	7	0.9	328	43.4	253	33.5	10	1.3	80	10.6	6	0.8	18	2.4	3	0.4	13	1.7	37	4.9	755	100
부산	중구	-	-	-	-	2	66.7	-	-	-	-	-	-	-	-	-	-	1	33.3	-	-	3	100
	서구	-	-	7	50.0	3	21.4	-	-	2	14.3	-	-	2	14.3	-	-	-	-	-	-	14	100
	동구	-	-	19	55.9	9	26.5	-	-	2	5.9	-	-	-	-	1	2.9	3	8.8	-	-	34	100
	영도구	-	-	29	51.8	21	37.5	-	-	3	5.4	-	-	-	-	1	1.8	2	3.6	-	-	56	100
	부산진구	1	2.0	25	50.0	13	26.0	1	2.0	7	14.0	-	-	-	-	-	-	3	6.0	-	-	50	100
	동래구	-	-	10	47.6	6	28.6	-	-	1	4.8	-	-	-	-	1	4.8	1	4.8	2	9.5	21	100
	남구	2	3.7	28	51.9	17	31.5	-	-	5	9.3	-	-	-	-	-	-	2	3.7	-	-	54	100
	북구	-	-	32	58.2	12	21.8	-	-	5	9.1	1	1.8	-	-	-	-	2	3.6	3	5.5	55	100
	해운대구	3	6.3	19	39.6	16	33.3	-	-	6	12.5	1	2.1	-	-	2	4.2	1	2.1	-	-	48	100
	사하구	-	-	19	41.3	22	47.8	-	-	4	8.7	-	-	-	-	-	-	1	2.2	-	-	46	100
	금정구	-	-	2	20.0	2	20.0	-	-	4	40.0	-	-	-	-	-	-	2	20.0	-	-	10	100
	강서구	-	-	-	-	9	90.0	-	-	1	10.0	-	-	-	-	-	-	-	-	-	-	10	100
	연제구	1	4.5	6	27.3	7	31.8	1	4.5	5	22.7	-	-	-	-	-	-	2	9.1	-	-	22	100
	수영구	-	-	5	23.8	10	47.6	-	-	5	23.8	-	-	-	-	-	-			1	4.8	21	100
	사상구	3	6.8	20	45.5	16	36.4	1	2.3	1	2.3	-	-	1	2.3	1	2.3	1	2.3	-	-	44	100
	기장군	-	-	9	45.0	6	30.0	2	10.0	3	15.0	-	-	-	-	-	-	-	-	-	-	20	100
	소계	10	2.0	230	45.3	171	33.7	5	1.0	54	10.6	2	0.4	3	0.6	6	1.2	21	4.1	6	1.2	508	100
대구	중구	2	10.5	8	42.1	3	15.8	2	10.5	2	10.5	-	-	1	5.3	1	5.3	-	-	-	-	19	100
	동구	5	9.6	25	48.1	15	28.8	1	1.9	2	3.8	-	-	2	3.8	-	-	-	-	2	3.8	52	100
	서구	3	9.7	12	38.7	10	32.3	-	-	5	16.1	-	-	-	-	-	-	-	-	1	3.2	31	100
	남구	1	3.6	12	42.9	7	25.0	-	-	4	14.3	-	-	-	-	2	7.1	2	7.1	-	-	28	100
	북구	2	5.0	15	37.5	18	45.0	-	-	4	10.0	-	-	-	-	-	-	-	-	1	2.5	40	100
	수성구	-	-	22	57.9	8	21.1	-	-	1	2.6	-	-	2	5.3	1	2.6	3	7.9	1	2.6	38	100
	달서구	1	1.0	41	39.8	32	31.1	5	4.9	12	11.7	1	1.0	3	2.9	1	1.0	3	2.9	4	3.9	103	100
	달성군	-	-	15	40.5	11	29.7	-	-	2	5.4	-	-	3	8.1	1	2.7	1	2.7	4	10.8	37	100
	소계	14	4.0	150	43.1	104	29.9	8	2.3	32	9.2	1	0.3	11	3.2	6	1.7	9	2.6	13	3.7	348	100
인천	중구	-	-	13	43.3	8	26.7	1	3.3	2	6.7	-	-	1	3.3	3	10.0	-	-	2	6.7	30	100
	동구	-	-	7	43.8	9	56.3	-	-	-	-	-	-	-	-	-	-	-	-	-	-	16	100
	미추홀구	-	-	22	30.6	20	27.8	2	2.8	7	9.7	2	2.8	2	2.8	-	-	2	2.8	15	20.8	72	100
	연수구	-	-	7	25.9	11	40.7	-	-	1	3.7	-	-	1	3.7	1	3.7	2	7.4	4	14.8	27	100
	남동구	-	-	31	36.5	25	29.4	3	3.5	2	2.4	1	1.2	4	4.7	-	-	2	2.4	17	20.0	85	100
	부평구	2	2.6	28	36.4	17	22.1	2	2.6	5	6.5	-	-	4	5.2	1	1.3	1	1.3	17	22.1	77	100
	계양구	-	-	6	37.5	4	25.0	-	-	2	12.5	-	-	-	-	-	-	-	-	4	25.0	16	100
	서구	1	2.0	13	26.5	16	32.7	-	-	8	16.3	-	-	3	6.1	1	2.0	1	2.0	6	12.2	49	100
	강화군	-	-	3	16.7	3	16.7	-	-	7	38.9	-	-	2	11.1	-	-	-	-	3	16.7	18	100

지역	시군구	피해자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옹진군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3	0.8	130	33.3	113	29.0	8	2.1	34	8.7	3	0.8	17	4.4	6	1.5	8	2.1	68	17.4	390	100
광주	동구	2	6.7	17	56.7	11	36.7	-	-	-	-	-	-	-	-	-	-	-	-	-	-	30	100
	서구	3	7.3	28	68.3	6	14.6	-	-	2	4.9	-	-	-	-	-	-	1	2.4	1	2.4	41	100
	남구	3	10.3	14	48.3	6	20.7	-	-	3	10.3	1	3.4	-	-	-	-	1	3.4	1	3.4	29	100
	북구	2	2.9	28	41.2	19	27.9	-	-	6	8.8	-	-	1	1.5	-	-	4	5.9	8	11.8	68	100
	광산구	3	6.0	22	44.0	14	28.0	-	-	3	6.0	-	-	1	2.0	1	2.0	4	8.0	2	4.0	50	100
	기타*	-	-	2	100.0	-	-	-	-	-	-	-	-	-	-	-	-	-	-	-	-	2	100
	소계	13	5.9	111	50.5	56	25.5	-	-	14	6.4	1	0.5	2	0.9	1	0.5	10	4.5	12	5.5	220	100
대전	동구	4	14.3	9	32.1	4	14.3	-	-	1	3.6	-	-	2	7.1	2	7.1	1	3.6	5	17.9	28	100
	중구	-	-	10	28.6	10	28.6	2	5.7	1	2.9	-	-	2	5.7	-	-	10	28.6	-	-	35	100
	서구	3	6.7	14	31.1	9	20.0	-	-	3	6.7	-	-	-	-	2	4.4	-	-	14	31.1	45	100
	유성구	-	-	5	45.5	2	18.2	-	-	2	18.2	-	-	-	-	-	-	-	-	2	18.2	11	100
	대덕구	1	2.6	3	7.7	3	7.7	-	-	3	7.7	-	-	-	-	-	-	1	2.6	28	71.8	39	100
	소계	8	5.1	41	25.9	28	17.7	2	1.3	10	6.3	-	-	4	2.5	4	2.5	12	7.6	49	31.0	158	100
울산	중구	3	5.2	23	39.7	20	34.5	1	1.7	5	8.6	1	1.7	-	-	1	1.7	1	1.7	3	5.2	58	100
	남구	3	8.3	14	38.9	12	33.3	-	-	4	11.1	-	-	-	-	-	-	3	8.3	-	-	36	100
	동구	-	-	7	31.8	5	22.7	2	9.1	3	13.6	-	-	2	9.1	1	4.5	1	4.5	1	4.5	22	100
	북구	2	7.1	11	39.3	7	25.0	1	3.6	5	17.9	-	-	1	3.6	-	-	-	-	1	3.6	28	100
	울주군	2	5.6	10	27.8	19	52.8	-	-	-	-	1	2.8	-	-	-	-	2	5.6	2	5.6	36	100
	소계	10	5.6	65	36.1	63	35.0	4	2.2	17	9.4	2	1.1	3	1.7	2	1.1	7	3.9	7	3.9	180	100
경기	수원시	-	-	36	37.5	45	46.9	1	1.0	7	7.3	-	-	4	4.2	-	-	-	-	3	3.1	96	100
	성남시	1	0.8	45	35.7	42	33.3	3	2.4	12	9.5	2	1.6	3	2.4	-	-	3	2.4	15	11.9	126	100
	의정부시	1	1.5	10	14.7	36	52.9	1	1.5	3	4.4	1	1.5	2	2.9	1	1.5	3	4.4	10	14.7	68	100
	안양시	2	4.5	19	43.2	9	20.5	-	-	4	9.1	-	-	1	2.3	-	-	-	-	9	20.5	44	100
	부천시	3	2.2	51	37.0	55	39.9	-	-	16	11.6	-	-	4	2.9	1	0.7	2	1.4	6	4.3	138	100
	광명시	2	6.5	10	32.3	8	25.8	-	-	8	25.8	-	-	1	3.2	-	-	1	3.2	1	3.2	31	100
	평택시	-	-	10	40.0	12	48.0	-	-	3	12.0	-	-	-	-	-	-	-	-	-	-	25	100
	동두천시	-	-	2	33.3	1	16.7	-	-	1	16.7	-	-	-	-	-	-	1	16.7	1	16.7	6	100
	안산시	-	-	28	41.2	27	39.7	-	-	9	13.2	-	-	3	4.4	-	-	1	1.5	-	-	68	100
	고양시	-	-	40	35.4	35	31.0	1	0.9	6	5.3	1	0.9	-	-	2	1.8	-	-	28	24.8	113	100
	과천시	-	-	3	33.3	4	44.4	-	-	2	22.2	-	-	-	-	-	-	-	-	-	-	9	100
	구리시	-	-	17	27.9	21	34.4	-	-	4	6.6	-	-	2	3.3	-	-	-	-	17	27.9	61	100
	남양주시	1	0.5	80	43.2	54	29.2	3	1.6	18	9.7	1	0.5	9	4.9	-	-	-	-	19	10.3	185	100
	오산시	-	-	10	71.4	4	28.6	-	-	-	-	-	-	-	-	-	-	-	-	-	-	14	100
	시흥시	1	1.8	17	30.9	25	45.5	-	-	4	7.3	1	1.8	1	1.8	-	-	2	3.6	4	7.3	55	100
	군포시	1	2.7	11	29.7	9	24.3	2	5.4	10	27.0	-	-	2	5.4	-	-	1	2.7	1	2.7	37	100
	의왕시	2	28.6	2	28.6	2	28.6	-	-	1	14.3	-	-	-	-	-	-	-	-	-	-	7	100
	하남시	-	-	3	17.6	7	41.2	-	-	2	11.8	1	5.9	-	-	-	-	-	-	4	23.5	17	100
	용인시	-	-	32	36.4	25	28.4	1	1.1	8	9.1	-	-	2	2.3	1	1.1	2	2.3	17	19.3	88	100
	파주시	-	-	16	32.0	12	24.0	1	2.0	7	14.0	1	2.0	3	6.0	1	2.0	1	2.0	8	16.0	50	100
	이천시	-	-	6	35.3	8	47.1	-	-	2	11.8	-	-	-	-	-	-	1	5.9	-	-	17	100
	안성시	-	-	5	45.5	5	45.5	-	-	-	-	-	-	1	9.1	-	-	-	-	-	-	11	100
	김포시	-	-	12	44.4	10	37.0	1	3.7	3	11.1	-	-	-	-	-	-	-	-	1	3.7	27	100

지역	시군구	피해자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화성시	1	3.0	18	54.5	6	18.2	-	-	4	12.1	-	-	1	3.0	1	3.0	-	-	2	6.1	33	100
	광주시	1	4.8	6	28.6	6	28.6	2	9.5	3	14.3	1	4.8	1	4.8	-	-	1	4.8	-	-	21	100
	양주시	1	2.6	3	7.7	7	17.9	-	-	4	10.3	-	-	2	5.1	-				22	56.4	39	100
	포천시	-	-	16	25.0	21	32.8	3	4.7	8	12.5	-	-	1	1.6	2	3.1	4	6.3	9	14.1	64	100
	여주시	1	25.0	-	-	2	50.0	-	-	-	-	-	-	-	-	-	-	-	-	1	25.0	4	100
	연천군	-	-	4	36.4	5	45.5	-	-	-	-	1	9.1	1	9.1	-	-	-	-	-	-	11	100
	가평군	-	-	3	30.0	4	40.0	-	-	1	10.0	-	-	2	20.0	-	-	-	-	-	-	10	100
	양평군	-	-	1	7.7	-	-	-	-	1	7.7	-	-	-	-	-	-	-	-	11	84.6	13	100
	기타*	-	-	-	-	-	-	-	-	-	-	-	-	-	-	-	-	-	-	1	100.0	1	100
	소계	18	1.2	516	34.7	507	34.0	19	1.3	151	10.1	10	0.7	46	3.1	9	0.6	23	1.5	190	12.8	1489	100
강원	춘천시	12	5.8	23	11.1	29	13.9	2	1.0	4	1.9	-	-	3	1.4	-	-	1	0.5	134	64.4	208	100
	원주시	4	3.7	10	9.2	22	20.2	3	2.8	11	10.1	-	-	2	1.8	2	1.8	2	1.8	53	48.6	109	100
	강릉시	3	7.5	12	30.0	9	22.5	1	2.5	3	7.5	-	-	1	2.5	-	-	2	5.0	9	22.5	40	100
	동해시	1	11.1	-	-	6	66.7	-	-	-	-	-	-	-	-	1	11.1	1	11.1	-	-	9	100
	태백시	-	-	1	12.5	6	75.0	-	-	-	-	-	-	-	-	-	-	-	-	1	12.5	8	100
	속초시	-	-	1	6.7	5	33.3	-	-	1	6.7	-	-	-	-	-	-	-	-	8	53.3	15	100
	삼척시	1	7.7	1	7.7	8	61.5	-	-	-	-	1	7.7	1	7.7	-	-	1	7.7	-	-	13	100
	홍천군	-	-	2	16.7	3	25.0	-	-	2	16.7	1	8.3	-	-	-	-	2	16.7	2	16.7	12	100
	횡성군	-	-	-	-	7	87.5	-	-	-	-	-	-	-	-	-	-	-	-	1	12.5	8	100
	영월군	-	-	1	33.3	2	66.7	-	-	-	-	-	-	-	-	-	-	-	-	-	-	3	100
	평창군	-	-	-	-	5	83.3	-	-	-	-	1	16.7	-	-	-	-	-	-	-	-	6	100
	정선군	-	-	1	33.3	2	66.7	-	-	-	-	-	-	-	-	-	-	-	-	-	-	3	100
	철원군	-	-	3	50.0	2	33.3	-	-	1	16.7	-	-	-	-	-	-	-	-	-	-	6	100
	화천군	-	-	-	-	3	0.3	1	0.1	-	-	-	-	-	-	-	-	-	-	1020	99.6	1024	100
	양구군	-	-	3	60.0	2	40.0	-	-	-	-	-	-	-	-	-	-	-	-	-	-	5	100
	인제군	-	-	-	-	1	100.0	-	-	-	-	-	-	-	-	-	-	-	-	-	-	1	100
	고성군	-	-	-	-	3	100.0	-	-	-	-	-	-	-	-	-	-	-	-	-	-	3	100
	양양군	2	15.4	-	-	2	15.4	-	-	1	7.7	-	-	-	-	-	-	1	7.7	7	53.8	13	100
	소계	23	1.5	58	3.9	117	7.9	7	0.5	23	1.5	3	0.2	7	0.5	3	0.2	10	0.7	1235	83.1	1486	100
충북	청주시	1	0.3	19	5.1	18	4.8	5	1.3	5	1.3	-	-	4	1.1	-	-	4	1.1	318	85.0	374	100
	충주시	6	15.0	13	32.5	15	37.5	-	-	2	5.0	-	-	1	2.5	-	-	3	7.5	-	-	40	100
	제천시	4	22.2	4	22.2	7	38.9	-	-	-	-	-	-	-	-	-	-	-	-	3	16.7	18	100
	보은군	-	-	1	100.0	-	-	-	-	-	-	-	-	-	-	-	-	-	-	-	-	1	100
	옥천군	-	-	1	14.3	2	28.6	-	-	3	42.9	-	-	-	-	1	14.3	-	-	-	-	7	100
	영동군	-	-	-	-	-	-	-	-	-	-	-	-	-	-	-	-	2	100.0	-	-	2	100
	진천군	-	-	-	-	3	42.9	1	14.3	2	28.6	-	-	1	14.3	-	-	-	-	-	-	7	100
	괴산군	-	-	1	14.3	2	28.6	-	-	1	14.3	-	-	-	-	-	-	-	-	3	42.9	7	100
	음성군	6	33.3	5	27.8	7	38.9	-	-	-	-	-	-	-	-	-	-	-	-	-	-	18	100
	단양군	-	-	-	-	-	-	1	100.0	-	-	-	-	-	-	-	-	-	-	-	-	1	100
	증평군	-	-	-	-	2	66.7	-	-	-	-	-	-	-	-	-	-	1	33.3	-	-	3	100
	기타*	-	-	1	100.0	-	-	-	-	-	-	-	-	-	-	-	-	-	-	-	-	1	100
	소계	17	3.5	45	9.4	56	11.7	7	1.5	13	2.7	-	-	6	1.3	1	0.2	10	2.1	324	67.6	479	100
충남	천안시	1	1.9	9	16.7	24	44.4	-	-	7	13.0	1	1.9	-	-	-	-	7	13.0	5	9.3	54	100
	공주시	1	3.7	16	59.3	4	14.8	2	7.4	1	3.7	-	-	1	3.7	1	3.7	1	3.7	-	-	27	100

지역	시군구	피해자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보령시	-	-	6	30.0	9	45.0	-	-	1	5.0	-	-	-	-	-	-	1	5.0	3	15.0	20	100
	아산시	4	8.7	14	30.4	19	41.3	-	-	3	6.5	-	-	1	2.2	-	-	2	4.3	3	6.5	46	100
	서산시	-	-	21	41.2	16	31.4	1	2.0	8	15.7	-	-	2	3.9	-	-	-	-	3	5.9	51	100
	논산시	1	2.6	16	42.1	13	34.2	-	-	2	5.3	-	-	1	2.6	1	2.6	2	5.3	2	5.3	38	100
	계룡시	-	-	2	40.0	1	20.0	-	-	1	20.0	-	-	-	-	-	-	1	20.0	-	-	5	100
	당진시	1	4.3	4	17.4	14	60.9	-	-	3	13.0	-	-	-	-	-	-	-	-	1	4.3	23	100
	금산군	-	-	8	72.7	-	-	1	9.1	-	-	-	-	-	-	1	9.1	1	9.1	-	-	11	100
	부여군	-	-	8	42.1	7	36.8	-	-	1	5.3	-	-	1	5.3	-	-	-	-	2	10.5	19	100
	서천군	-	-	3	27.3	4	36.4	1	9.1	3	27.3	-	-	-	-	-	-	-	-	-	-	11	100
	청양군	-	-	-	-	1	50.0	-	-	-	-	-	-	-	-	-	-	-	-	1	50.0	2	100
	홍성군	-	-	3	27.3	5	45.5	-	-	3	27.3	-	-	-	-	-	-	-	-	-	-	11	100
	예산군	-	-	5	26.3	9	47.4	-	-	-	-	-	-	2	10.5	2	10.5	-	-	1	5.3	19	100
	태안군	-	-	3	37.5	1	12.5	2	25.0	-	-	-	-	-	-	1	12.5	-	-	1	12.5	8	100
	기타*	-	-	-	-	1	100.0	-	-	-	-	-	-	-	-	-	-	-	-	-	-	1	100
	소계	8	2.3	118	34.1	128	37.0	7	2.0	33	9.5	1	0.3	8	2.3	6	1.7	15	4.3	22	6.4	346	100
세종	세종시	-	-	15	62.5	4	16.7	-	-	2	8.3	-	-	2	8.3	-	-	1	4.2	-	-	24	100
	소계	-	-	15	62.5	4	16.7	-	-	2	8.3	-	-	2	8.3	-	-	1	4.2	-	-	24	100
전북	전주시	7	3.8	36	19.8	41	22.5	3	1.6	11	6.0	2	1.1	2	1.1	-	-	2	1.1	78	42.9	182	100
	군산시	1	2.9	8	23.5	13	38.2	-	-	5	14.7	-	-	1	2.9	-	-	5	14.7	1	2.9	34	100
	익산시	1	2.1	22	45.8	10	20.8	-	-	6	12.5	-	-	1	2.1	-	-	6	12.5	2	4.2	48	100
	정읍시	-	-	6	33.3	7	38.9	-	-	2	11.1	-	-	1	5.6	-	-	-	-	2	11.1	18	100
	남원시	1	4.5	9	40.9	4	18.2	2	9.1	-	-	-	-	-	-	-	-	6	27.3	-	-	22	100
	김제시	-	-	8	34.8	10	43.5	-	-	2	8.7	-	-	-	-	-	-	2	8.7	1	4.3	23	100
	완주군	2	11.1	3	16.7	5	27.8	-	-	1	5.6	-	-	-	-	-	-	-	-	7	38.9	18	100
	진안군	-	-	-	-	-	-	-	-	-	-	-	-	-	-	-	-	-	-	-	-	-	-
	무주군	-	-	-	-	-	-	-	-	-	-	1	100.0	-	-	-	-	-	-	-	-	1	100
	장수군	-	-	2	50.0	2	50.0	-	-	-	-	-	-	-	-	-	-	-	-	-	-	4	100
	임실군	-	-	-	-	5	100.0	-	-	-	-	-	-	-	-	-	-	-	-	-	-	5	100
	순창군	-	-	-	-	3	75.0	-	-	1	25.0	-	-	-	-	-	-	-	-	-	-	4	100
	고창군	-	-	1	33.3	1	33.3	1	33.3	-	-	-	-	-	-	-	-	-	-	-	-	3	100
	부안군	-	-	1	11.1	4	44.4	-	-	-	-	-	-	1	11.1	2	22.2	1	11.1	-	-	9	100
	소계	12	3.2	96	25.9	105	28.3	6	1.6	28	7.5	3	0.8	6	1.6	2	0.5	22	5.9	91	24.5	371	100
전남	목포시	5	6.3	30	37.5	24	30.0	-	-	4	5.0	1	1.3	2	2.5	2	2.5	2	2.5	10	12.5	80	100
	여수시	1	2.0	17	34.7	16	32.7	3	6.1	4	8.2	-	-	3	6.1	2	4.1	3	6.1	-	-	49	100
	순천시	5	11.4	18	40.9	12	27.3	1	2.3	4	9.1	-	-	2	4.5	-	-	1	2.3	1	2.3	44	100
	나주시	-	-	7	36.8	7	36.8	2	10.5	-	-	-	-	-	-	-	-	3	15.8	-	-	19	100
	광양시	-	-	7	46.7	4	26.7	1	6.7	3	20.0	-	-	-	-	-	-	-	-	-	-	15	100
	담양군	-	-	4	44.4	4	44.4	-	-	1	11.1	-	-	-	-	-	-	-	-	-	-	9	100
	곡성군	-	-	2	25.0	2	25.0	-	-	2	25.0	-	-	2	25.0	-	-	-	-	-	-	8	100
	구례군	-	-	-	-	2	100.0	-	-	-	-	-	-	-	-	-	-	-	-	-	-	2	100
	고흥군	-	-	1	12.5	4	50.0	-	-	1	12.5	-	-	1	12.5	-	-	1	12.5	-	-	8	100
	보성군	-	-	2	40.0	3	60.0	-	-	-	-	-	-	-	-	-	-	-	-	-	-	5	100
	화순군	-	-	-	-	1	25.0	-	-	2	50.0	1	25.0	-	-	-	-	-	-	-	-	4	100
	장흥군	-	-	1	50.0	-	-	-	-	1	50.0	-	-	-	-	-	-	-	-	-	-	2	100

지역	시군구	피해자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강진군	-	-	6	40.0	4	26.7	-	-	-	-	1	6.7	-	-	-	-	-	-	4	26.7	15	100
	해남군	-	-	9	37.5	10	41.7	1	4.2	-	-	-	-	-	-	2	8.3	2	8.3	-	-	24	100
	영암군	-	-	2	11.1	6	33.3	-	-	-	-	-	-	-	-	-	-	2	11.1	8	44.4	18	100
	무안군	1	4.3	11	47.8	8	34.8	-	-	1	4.3	-	-	-	-	1	4.3	-	-	1	4.3	23	100
	함평군	-	-	5	26.3	3	15.8	2	10.5	1	5.3	-	-	-	-	-	-	1	5.3	7	36.8	19	100
	영광군	-	-	6	31.6	8	42.1	-	-	-	-	-	-	-	-	1	5.3	3	15.8	1	5.3	19	100
	장성군	-	-	1	16.7	2	33.3	-	-	-	-	-	-	-	-	-	-	3	50.0	-	-	6	100
	완도군	-	-	-	-	3	60.0	-	-	-	-	-	-	-	-	1	20.0	1	20.0	-	-	5	100
	진도군	-	-	-	-	3	75.0	-	-	1	25.0	-	-	-	-	-	-	-	-	-	-	4	100
	신안군	-	-	6	40.0	4	26.7	1	6.7	2	13.3	-	-	1	6.7	1	6.7	-	-	-	-	15	100
	소계	12	3.1	135	34.4	130	33.1	11	2.8	27	6.9	3	0.8	11	2.8	10	2.5	22	5.6	32	8.1	393	100
경북	포항시	-	-	27	32.1	32	38.1	2	2.4	10	11.9	-	-	2	2.4	3	3.6	6	7.1	2	2.4	84	100
	경주시	-	-	11	35.5	14	45.2	-	-	5	16.1	-	-	-	-	-	-	1	3.2	-	-	31	100
	김천시	4	9.1	12	27.3	17	38.6	1	2.3	3	6.8	-	-	-	-	-	-	3	6.8	4	9.1	44	100
	안동시	4	7.1	22	39.3	17	30.4	-	-	3	5.4	1	1.8	1	1.8	-	-	4	7.1	4	7.1	56	100
	구미시	3	3.2	37	38.9	28	29.5	1	1.1	9	9.5	-	-	6	6.3	1	1.1	4	4.2	6	6.3	95	100
	영주시	2	8.3	7	29.2	11	45.8	-	-	-	-	-	-	-	-	-	-	2	8.3	2	8.3	24	100
	영천시	2	5.4	11	29.7	21	56.8	-	-	3	8.1	-	-	-	-	-	-	-	-	-	-	37	100
	상주시	3	11.1	4	14.8	15	55.6	2	7.4	-	-	-	-	-	-	-	-	3	11.1	-	-	27	100
	문경시	1	5.0	8	40.0	5	25.0	-	-	2	10.0	-	-	-	-	3	15.0	-	-	1	5.0	20	100
	경산시	3	9.1	13	39.4	11	33.3	-	-	3	9.1	-	-	3	9.1	-	-	-	-	-	-	33	100
	군위군	-	-	2	100.0	-	-	-	-	-	-	-	-	-	-	-	-	-	-	-	-	2	100
	의성군	1	4.2	7	29.2	8	33.3	1	4.2	1	4.2	-	-	-	-	-	-	6	25.0	-	-	24	100
	청송군	-	-	1	5.9	4	23.5	-	-	3	17.6	-	-	-	-	4	23.5	5	29.4	-	-	17	100
	영양군	-	-	-	-	-	-	-	-	-	-	-	-	-	-	-	-	-	-	-	-	-	-
	영덕군	-	-	2	15.4	3	23.1	-	-	1	7.7	-	-	1	7.7	3	23.1	3	23.1	-	-	13	100
	청도군	1	8.3	2	16.7	5	41.7	-	-	2	16.7	-	-	-	-	1	8.3	1	8.3	-	-	12	100
	고령군	-	-	-	-	5	41.7	-	-	5	41.7	-	-	1	8.3	1	8.3	-	-	-	-	12	100
	성주군	1	7.7	8	61.5	3	23.1	-	-	-	-	-	-	-	-	-	-	1	7.7	-	-	13	100
	칠곡군	1	5.9	5	29.4	9	52.9	2	11.8	-	-	-	-	-	-	-	-	-	-	-	-	17	100
	예천군	8	50.0	2	12.5	4	25.0	1	6.3	1	6.3	-	-	-	-	-	-	-	-	-	-	16	100
	봉화군	-	-	3	33.3	3	33.3	-	-	1	11.1	1	11.1	-	-	-	-	1	11.1	-	-	9	100
	울진군	1	3.7	4	14.8	13	48.1	-	-	3	11.1	-	-	-	-	5	18.5	1	3.7	-	-	27	100
	울릉군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35	5.7	188	30.7	228	37.2	10	1.6	55	9.0	2	0.3	14	2.3	21	3.4	41	6.7	19	3.1	613	100
경남	창원시	1	0.8	56	43.8	42	32.8	2	1.6	9	7.0	-	-	4	3.1	4	3.1	4	3.1	6	4.7	128	100
	진주시	2	2.4	22	26.8	28	34.1	2	2.4	8	9.8	-	-	1	1.2	1	1.2	6	7.3	12	14.6	82	100
	통영시	-	-	-	-	8	50.0	1	6.3	2	12.5	-	-	1	6.3	-	-	2	12.5	2	12.5	16	100
	사천시	1	6.7	7	46.7	6	40.0	-	-	-	-	-	-	-	-	-	-	1	6.7	-	-	15	100
	김해시	-	-	31	44.9	24	34.8	-	-	6	8.7	-	-	1	1.4	1	1.4	5	7.2	1	1.4	69	100
	밀양시	-	-	1	8.3	5	41.7	1	8.3	-	-	-	-	2	16.7	-	-	-	-	3	25.0	12	100
	거제시	2	8.0	12	48.0	7	28.0	-	-	2	8.0	-	-	1	4.0	-	-	1	4.0	-	-	25	100
	양산시	-	-	38	46.3	27	32.9	3	3.7	5	6.1	1	1.2	1	1.2	-	-	5	6.1	2	2.4	82	100
	의령군	-	-	-	-	1	33.3	1	33.3	1	33.3	-	-	-	-	-	-	-	-	-	-	3	100

지역	시군구	피해자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함안군	-	-	-	-	-	-	-	-	1	100.0	-	-	-	-	-	-	-	-	-	-	1	100
	창녕군	-	-	1	33.3	-	-	-	-	-	-	-	-	-	-	2	66.7	-	-	-	-	3	100
	고성군	-	-	1	50.0	1	50.0	-	-	-	-	-	-	-	-	-	-	-	-	-	-	2	100
	남해군	-	-	3	37.5	3	37.5	-	-	1	12.5	-	-	-	-	-	-	1	12.5	-	-	8	100
	하동군	-	-	1	16.7	5	83.3	-	-	-	-	-	-	-	-	-	-	-	-	-	-	6	100
	산청군	1	7.1	-	-	2	14.3	1	7.1	-	-	-	-	-	-	-	-	-	-	10	71.4	14	100
	함양군	-	-	3	25.0	2	16.7	1	8.3	-	-	-	-	1	8.3	-	-	-	-	5	41.7	12	100
	거창군	-	-	2	8.3	5	20.8	-	-	1	4.2	-	-	-	-	-	-	-	-	16	66.7	24	100
	합천군	-	-	-	-	9	90.0	-	-	1	10.0	-	-	-	-	-	-	-	-	-	-	10	100
	소계	7	1.4	178	34.8	175	34.2	12	2.3	37	7.2	1	0.2	12	2.3	8	1.6	25	4.9	57	11.1	512	100
제주	제주시	4	4.7	26	30.6	25	29.4	3	3.5	13	15.3	2	2.4	-	-	2	2.4	5	5.9	5	5.9	85	100
	서귀포시	3	4.5	25	37.9	24	36.4	-	-	4	6.1	2	3.0	2	3.0	-	-	3	4.5	3	4.5	66	100
	소계	7	4.6	51	33.8	49	32.5	3	2.0	17	11.3	4	2.6	2	1.3	2	1.3	8	5.3	8	5.3	151	100
합계		204	2.4	2,455	29.1	2,287	27.2	119	1.4	627	7.4	42	0.5	172	2.0	90	1.1	257	3.1	2,170	25.8	8,423*	100

*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가 아닌 타부양가족의 집에 머무르거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 등이 해당됨.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6,774명)와 학대행위자(8,423명)는 차이가 있음

표 8-25 학대행위자 연령별 학대행위자 유형 분포

(단위: 명, %)

구분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기타 타인	동거인	이웃	친구	기타 기관 종사자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의료인	
10~19세	-	-	3	-	1	-	62	-	1	-	-	-	-	-	-	67
	-	-	0.0	-	0.0	-	0.7	-	0.0	-	-	-	-	-	-	0.8
20~29세	-	-	29	3	12	-	78	1	2	-	1	-	-	11	1	138
	-	-	0.3	0.0	0.1	-	0.9	0.0	0.0	-	0.0	-	-	0.1	0.0	1.6
30~39세	-	-	205	17	66	9	23	5	2	-	-	-	2	72	4	405
	-	-	2.4	0.2	0.8	0.1	0.3	0.1	0.0	-	-	-	0.0	0.9	0.0	4.8
40~49세	-	9	861	33	218	15	8	8	12	1	3	-	5	214	6	1,393
	-	0.1	10.2	0.4	2.6	0.2	0.1	0.1	0.1	0.0	0.0	-	0.1	2.5	0.1	16.5
50~59세	-	53	912	43	239	10	-	14	39	8	27	1	17	1,108	15	2,486
	-	0.6	10.8	0.5	2.8	0.1	-	0.2	0.5	0.1	0.3	0.0	0.2	13.2	0.2	29.5
60~69세	35	424	255	21	90	8	1	34	21	21	29	1	15	598	4	1,557
	0.4	5.0	3.0	0.2	1.1	0.1	0.0	0.4	0.2	0.2	0.3	0.0	0.2	7.1	0.0	18.5
70세이상	169	1,969	22	2	1	-	-	28	28	36	23	1	6	92	-	2,377
	2.0	23.4	0.3	0.0	0.0	-	-	0.3	0.3	0.4	0.3	0.0	0.1	1.1	-	28.2
계	204	2,455	2,287	119	627	42	172	90	105	66	83	3	45	2,095	30	8,423*
	2.4	29.1	27.2	1.4	7.4	0.5	2.0	1.1	1.2	0.8	1.0	0.0	0.5	24.9	0.4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6,774명)와 학대행위자(8,423명)는 차이가 있음

표 8-26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명, %)

구분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기타 타인	동거인	이웃	친구	기타 기관 종사자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의료인	
노인 독거	159	130	426	32	194	8	24	47	59	6	67	2	9	161	9	1,333
	11.9	9.8	32.0	2.4	14.6	0.6	1.8	3.5	4.4	0.5	5.0	0.2	0.7	12.1	0.7	100
노인 부부	15	1,997	191	11	51	11	15	10	8	22	7	-	3	17	1	2,359
	0.6	84.7	8.1	0.5	2.2	0.5	0.6	0.4	0.3	0.9	0.3	-	0.1	0.7	0.0	100
손자녀 동거	21	235	1,482	44	327	11	7	-	3	3	5	-	1	20	2	2,161
	1.0	10.9	68.6	2.0	15.1	0.5	0.3	-	0.1	0.1	0.2	-	0.0	0.9	0.1	100
자녀·손자녀 동거	-	39	48	8	20	3	101	1	1	1	2	-	-	-	-	224
	-	17.4	21.4	3.6	8.9	1.3	45.1	0.4	0.4	0.4	0.9	-	-	-	-	100
자녀 동거	2	27	117	22	28	8	23	-	3	-	1	-	-	10	-	241
	0.8	11.2	48.5	9.1	11.6	3.3	9.5	-	1.2	-	0.4	-	-	4.1	-	100
기타	7	27	23	2	7	1	2	32	31	34	1	1	32	1,887	18	2,105
	0.3	1.3	1.1	0.1	0.3	0.0	0.1	1.5	1.5	1.6	0.0	0.0	1.5	89.6	0.9	100
소계	204	2,455	2,287	119	627	42	172	90	105	66	83	3	45	2,095	30	8,423*
	2.4	29.1	27.2	1.4	7.4	0.5	2.0	1.1	1.2	0.8	1.0	0.0	0.5	24.9	0.4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6,774명)와 학대행위자(8,423명)는 차이가 있음

표 8-27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단위: 명, %)

구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계
가정내	65	125	320	1,139	1,309	913	2,249	6,120
	1.1	2.0	5.2	18.6	21.4	14.9	36.7	100
생활시설	-	11	71	190	1,065	563	88	1,988
	-	0.6	3.6	9.6	53.6	28.3	4.4	100
이용시설	-	-	3	24	52	32	3	114
	-	-	2.6	21.1	45.6	28.1	2.6	100
병원	-	1	4	13	27	19	3	67
	-	1.5	6.0	19.4	40.3	28.4	4.5	100
공공장소	1	-	6	11	16	10	11	55
	1.8	-	10.9	20.0	29.1	18.2	20.0	100
기타	1	1	1	16	17	20	23	79
	1.3	1.3	1.3	20.3	21.5	25.3	29.1	100
계	67	138	405	1,393	2,486	1,557	2,377	8,423*
	0.8	1.6	4.8	16.5	29.5	18.5	28.2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6,774명)와 학대행위자(8,423명)는 차이가 있음

표 8-28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명, %)

구분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피해자 본인	197	-	-	-	4	3	204
	3.2	-	-	-	7.3	3.8	2.4
배우자	2,436	-	-	-	4	15	2,455
	39.8	-	-	-	7.3	19.0	29.1
아들	2,249	-	-	-	13	25	2,287
	36.7	-	-	-	23.6	31.6	27.2
며느리	119	-	-	-	-	-	119
	1.9	-	-	-	-	-	1.4
딸	614	-	-	-	8	5	627
	10.0	-	-	-	14.5	6.3	7.4
사위	41	1	-	-	-	-	42
	0.7	0.1	-	-	-	-	0.5
손자녀	168	-	-	-	2	2	172
	2.7	-	-	-	3.6	2.5	2.0
친척	84	-	-	-	2	4	90
	1.4	-	-	-	3.6	5.1	1.1
기타 타인	78	11	1	2	6	7	105
	1.3	0.6	0.9	3.0	10.9	8.9	1.2
동거인	64	-	-	-	1	1	66
	1.0	-	-	-	1.8	1.3	0.8
이웃	54	1	-	-	12	16	83
	0.9	0.1	-	-	21.8	20.3	1.0
친구	2	-	-	-	1	-	3
	0.0	-	-	-	1.8	-	0.0
기타기관 종사자	7	13	3	19	2	1	45
	0.1	0.7	2.6	28.4	3.6	1.3	0.5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5	1,960	110	20	-	-	2,095
	0.1	98.6	96.5	29.9	-	-	24.9
의료인	2	2	-	26	-	-	30
	0.0	0.1	-	38.8	-	-	0.4
계	6,120	1,988	114	67	55	79	8,42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6,774명)와 학대행위자(8,423명)는 차이가 있음

4) 학대행위자 결혼유형

표 8-29 학대행위자 결혼유형

(단위: 명, %)

구분		명수	비율
배우자 있음	초혼	5,001	59.4
	재혼	289	3.4
	사실혼	190	2.3
	소계	5,480	65.1
배우자 없음	미혼	1,881	22.3
	사별	155	1.8
	이혼	804	9.5
	별거	96	1.1
	가출	7	0.1
	소계	2,943	34.9
계		8,423*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6,774명)와 학대행위자(8,423명)는 차이가 있음

5)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표 8-30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전체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423	799
	9.5

표 8-31 학대행위자 연령대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 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
10~19세	9	1.1
20~29세	13	1.6
30~39세	38	4.8
40~49세	159	19.9
50~59세	220	27.5
60~69세	128	16.0
70세 이상	232	29.0
계	799	100

6)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표 8-32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단위: 명, %)

무 학	초 졸	중 졸	고 졸	전문대졸 이상	계
495	1,029	1,092	4,075	1,732	8,423*
5.9	12.2	13.0	48.4	20.6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6,774명)와 학대행위자(8,423명)는 차이가 있음

7)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표 8-33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단위: 명, %)

구분	명수	비율
무직	4,582	54.4
서비스·판매종사자	1,499	17.8
단순 노무 종사자	698	8.3
전문직	600	7.1
사무종사자	304	3.6
자영업자	237	2.8
농·어·축산업 종사자	224	2.7
기술공 및 준전문가	127	1.5
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53	0.6
기능업 및 관련기능종사자	48	0.6
종교인	31	0.4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20	0.2
계	8,423*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6,774명)와 학대행위자(8,423명)는 차이가 있음

8) 학대행위자 건강상태

가. 학대행위자 질병유형

표 8-34 학대행위자 장애유형**

(단위: 명, %)

구 분		건 수	비 율
신체 장애	지체장애	117	11.2
	청각장애	60	5.7
	시각장애	39	3.7
	뇌병변장애	35	3.3
	간질장애	16	1.5
	언어장애	8	0.8
	호흡기장애	7	0.7
	신장장애	5	0.5
	간장애	3	0.3
	심장장애	3	0.3
	장루요루장애	2	0.2
	소계	295	28.1
정신 장애	정신분열	342	32.6
	우울장애	227	21.6
	지적장애	92	8.8
	정동장애	49	4.7
	반사회적 인격 장애	38	3.6
	자폐성장애	6	0.6
	소계	754	71.9
계		1,049*	100

* 장애는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동반되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8,423건)와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 통계 수치(1,049건)에는 차이가 있음

** 학대 결과로서 장애 판정 유무는 확인이 어려우며, 장애인 등급판정을 받거나 현장조사 시 장애가 의심되는 대상자도 포함.

나. 학대행위자 중독유형

표 8-35 학대행위자 중독유형

(단위: 명, %)

전체 학대행위자	도박중독	알코올 사용장애	약물 사용장애	계
8,423	30	1,158	36	1,224
	0.4	13.7	0.4	14.5

PART

09

노인학대 주요 사례 분석 결과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9 노인학대 주요 사례 분석 결과

1. 경제적 학대 현황

1) 지역 및 기관별 경제적 학대[24] 현황

경제적 학대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021년 전체 학대유형 건수 10,624건 중 경제적 학대는 406건(3.8%)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10.0%,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9.5%,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9.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1 지역 및 기관별 경제적 학대 현황

(단위: 건, %)

지 역	기관명	경제적 학대		전체 학대유형 건수
		건 수	비 율	
서울	서울남부	14	3.6	394
	서울북부	20	4.9	406
	서울서부	3	0.7	405
	서울동부*	3	4.1	74
	소계	40	3.1	1,279
부산	부산동부	20	3.7	536
	부산서부	13	4.0	326
	소계	33	3.8	862
대구	대구남부	11	3.3	329
	대구북부	9	3.8	238
	소계	20	3.5	567
인천	인천	12	3.5	342
	인천서부	6	2.6	229
	소계	18	3.2	571
광주		10	3.7	273
대전		22	9.5	232
울산		6	2.2	275
경기	경기동부	2	0.5	395
	경기북부	19	2.7	696
	경기서부	14	2.7	519
	경기도	11	2.9	384
	경기북서부*	1	1.2	83
	소계	47	2.3	2,077

24) 경제적 학대가 단독적으로 발생한 사례(27건)와 경제적 학대를 포함한 중복 학대 사례(379건)를 합한 수치임.

지 역	기관명	경제적 학대		전체 학대유형 건수
		건 수	비 율	
강원	강원	12	4.0	303
	강원동부	4	3.3	122
	강원남부	10	5.5	183
	소계	26	4.3	608
충북	충북	11	5.4	205
	충북북부	3	2.3	129
	소계	14	4.2	334
충남	충남	14	3.7	374
	충남남부	8	4.0	198
	소계	22	3.8	572
전북	전북	11	3.8	293
	전북서부	20	10.0	200
	소계	31	6.3	493
전남	전남동부	4	1.8	228
	전남서부	8	2.9	278
	소계	12	2.4	506
경북	경북동부	19	6.9	277
	경북북부	13	6.3	207
	경북서부	7	2.1	332
	경북남부*	5	3.8	131
	소계	44	4.6	947
경남	경남	35	6.5	540
	경남서부	10	4.4	226
	소계	45	5.9	76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5	3.5	141
	제주도서귀포시	11	9.1	121
	소계	16	6.1	262
계		406	3.8	10,624

* 2021년 신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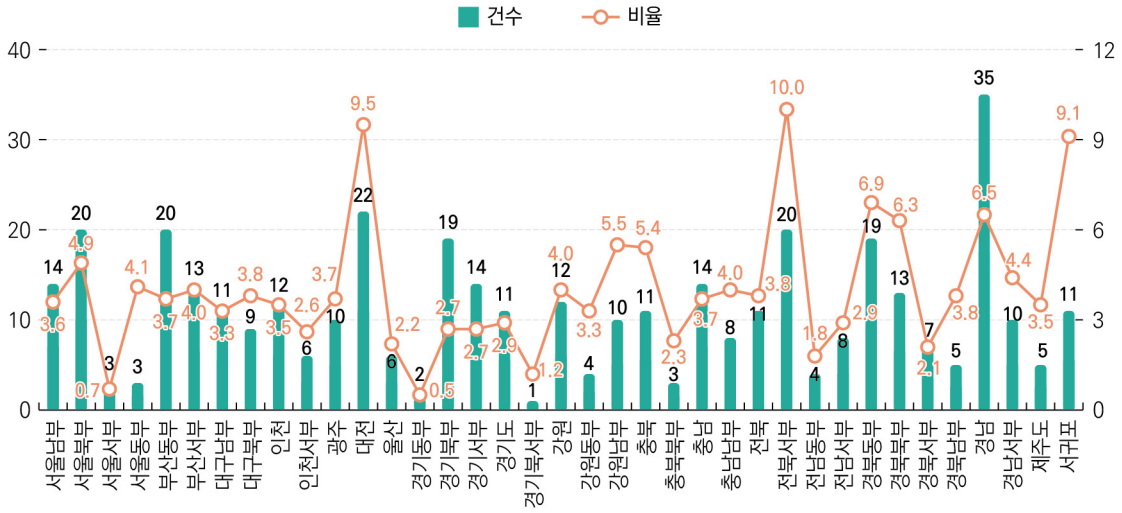

그림 9-1 지역 및 기관별 경제적 학대 현황

2)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경제적 학대를 경험한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및 연령대를 살펴보면, 남자는 110명(27.1%), 여자는 296명(72.9%)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75~79세가 33명(30.0%)으로 가장 많은 반면, 여자의 경우 75~79세, 80~84세가 각각 57명(19.3%)으로 동일한 분포를 보였다.

표 9-2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남성	18	20	33	20	14	4	-	1	110
	16.4	18.2	30.0	18.2	12.7	3.6	-	0.9	100
여성	53	53	57	57	48	23	5	-	296
	17.9	17.9	19.3	19.3	16.2	7.8	1.7	-	100
계	71	73	90	77	62	27	5	1	406
	17.5	18.0	22.2	19.0	15.3	6.7	1.2	0.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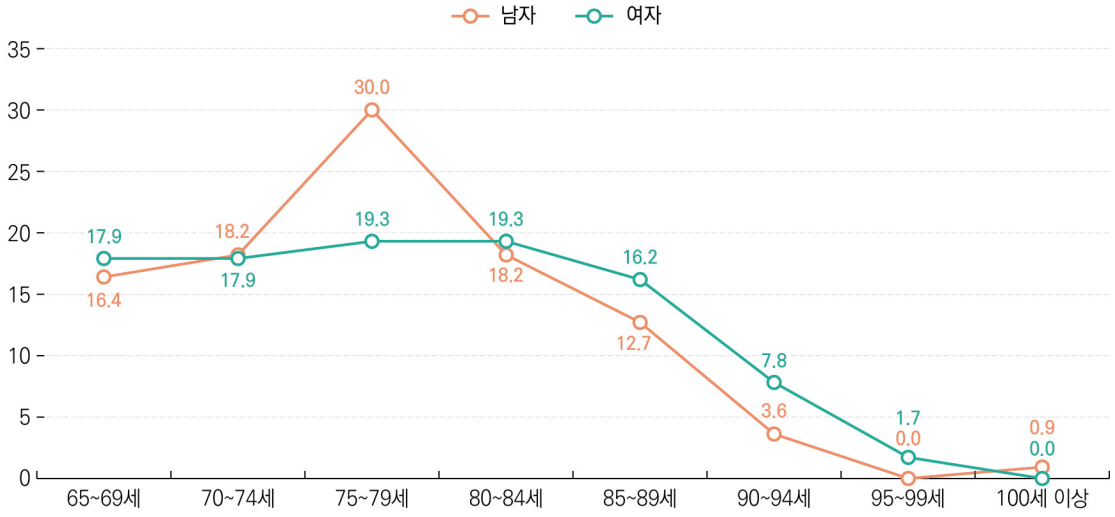

그림 9-2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3)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경제적 학대 행위자는 총 442명으로, 이 중 아들이 196명(44.3%)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딸 69명(15.6%), 기관 47명(10.6%), 배우자 44명(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유형의 행위자가 "배우자-아들-기관" 순이었다는 결과와 비교해볼 때, 경제적 학대의 경우 주로 자녀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3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명, %)

피해자 본인	친 족								타인[25]	기관[26]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	44	196	9	69	6	22	21	367	47	28	442*
-	10.0	44.3	2.0	15.6	1.4	5.0	4.8	83.0	10.6	6.3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수(406명)와 학대행위자(442명)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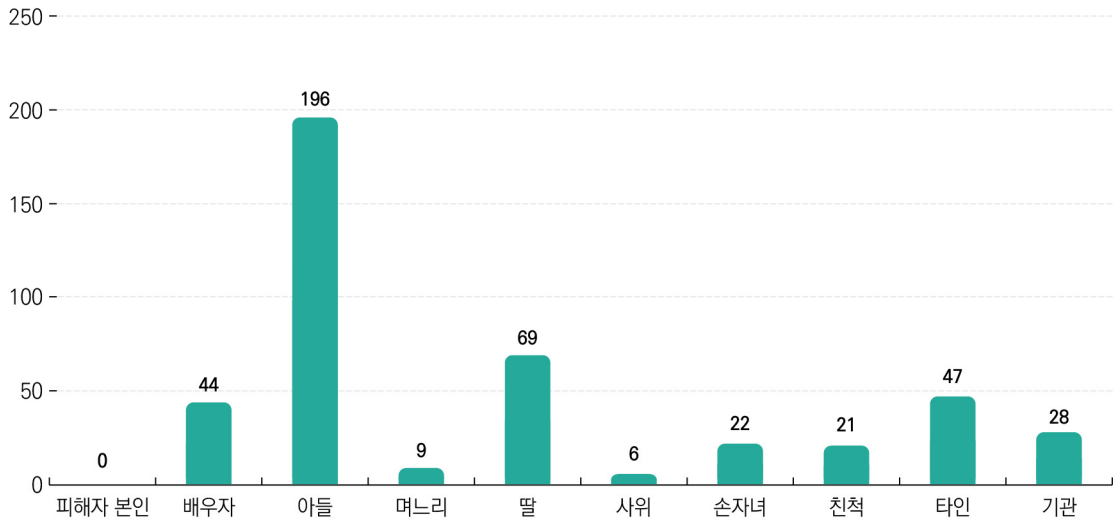

그림 9-3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25) 타인에는 동거인, 이웃, 친구 등이 해당됨.
26) 기관에는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의료인 등이 해당됨.

4)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연령대

경제적 학대 행위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가 142명(32.1%)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40대 119명(26.9%), 60대 77명(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4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연령대

(단위: 명, %)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4	16	31	119	142	77	53	442*
0.9	3.6	7.0	26.9	32.1	17.4	12.0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수(406명)와 학대행위자(442명)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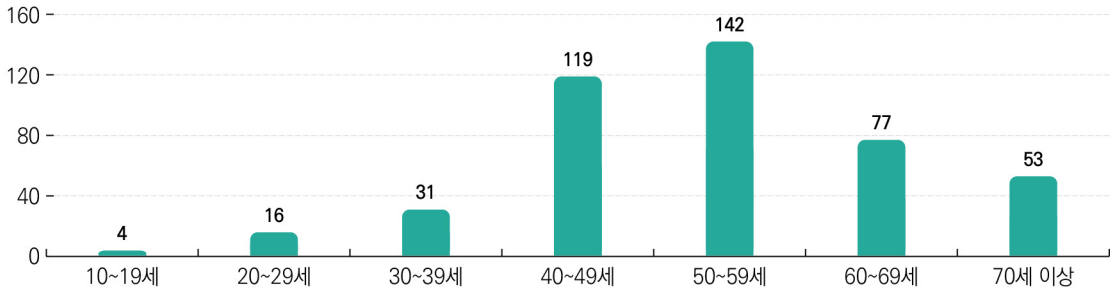

그림 9-4 경제적 학대 행위자 연령대

5)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장소

경제적 학대의 학대발생장소를 살펴보면 가정내가 376건(92.6%)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시설이 21건(5.2%)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9-5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376	21	1	1	1	6	406
92.6	5.2	0.2	0.2	0.2	1.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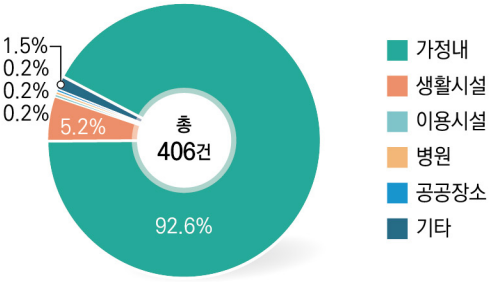

그림 9-5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장소

6)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빈도

경제적 학대 발생 빈도를 보면 1개월에 한 번 이상이 145건(35.7%)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주일에 한 번 이상이 116건(28.6%), 3개월에 한 번 이상이 43건(10.6%) 등의 순으로 경제적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학대유형의 학대발생빈도(1개월에 한 번 이상, 27.8% - 1주일에 한 번 이상, 25.1%)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9-6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일회성	6개월에 한 번이상	3개월에 한 번 이상	1개월에 한 번 이상	1주일에 한 번 이상	매일	계
37	26	43	145	116	39	406
9.1	6.4	10.6	35.7	28.6	9.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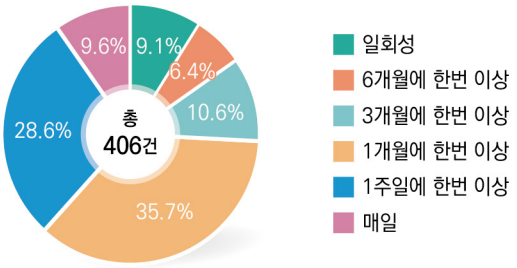

그림 9-6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빈도

7) 경제적 학대 학대지속기간

경제적 학대의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5년 이상이 150건(36.9%), 1년 이상 5년 미만이 142건(35.0%)으로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학대가 지속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9-7 경제적 학대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일회성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계
31	11	72	142	150	406
7.6	2.7	17.7	35	36.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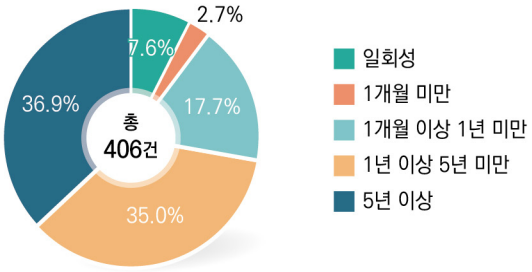

그림 9-7 경제적 학대 학대지속기간

8) 경제적 학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경제적 학대를 경험한 피해노인 406명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21명(29.8%)으로 나타났다.

표 9-8 경제적 학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경제적 학대 현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06	121
	29.8

2.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1)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학대피해노인의 치매정도는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와 병원진단 없이 상담원이 임의로 간이정신상태검사지표나 학대피해노인의 상황에 따라 치매로 의심하는 치매의심으로 분류한다.

2021년 한 해 동안 치매노인 현황을 살펴보면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로 진단받은 사례는 총 1,699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25.1%로 집계되었다.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별로 살펴보면, 각 기관에서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 중에서 치매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51.3%,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50.8%,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49.7%로 나타났다.

반면 치매노인 비율이 낮은 기관은 경북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11.9%,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13.8%,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16.1% 순으로 나타났다.

표 9-9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단위: 건, %)

지 역	기관명	치매노인학대 현황				전체 학대사례 건수
		치매의심	치매진단	총합계	비율	
서울	서울남부	29	26	55	23.4	235
	서울북부	14	23	37	17.3	214
	서울서부	21	25	46	18.8	245
	서울동부*	6	1	7	16.7	42
	소계	70	75	145	19.7	736
부산	부산동부	23	27	50	16.2	309
	부산서부	25	25	50	27.0	185
	소계	48	52	100	20.2	494
대구	대구남부	10	16	26	13.8	189
	대구북부	17	16	33	23.6	140
	소계	27	32	59	17.9	329
인천	인천	11	33	44	19.6	224
	인천서부	14	26	40	25.8	155
	소계	25	59	84	22.2	379
광주		17	31	48	21.9	219
대전		10	69	79	51.3	154
울산		23	23	46	25.8	178

지 역	기관명	치매노인학대 현황				전체 학대사례 건수
		치매의심	치매진단	총합계	비율	
경기	경기동부	22	40	62	22.9	271
	경기북부	43	95	138	25.2	547
	경기서부	28	42	70	22.3	314
	경기도	29	24	53	21.7	244
	경기북서부*	7	3	10	18.2	55
	소계	129	204	333	23.3	1,431
강원	강원	13	65	78	49.7	157
	강원동부	8	22	30	35.3	85
	강원남부	20	40	60	45.8	131
	소계	41	127	168	45.0	373
충북	충북	13	47	60	50.8	118
	충북북부	20	10	30	36.6	82
	소계	33	57	90	45.0	200
충남	충남	15	36	51	22.9	223
	충남남부	13	20	33	25.0	132
	소계	28	56	84	23.7	355
전북	전북	11	56	67	36.4	184
	전북서부	12	21	33	24.3	136
	소계	23	77	100	31.3	320
전남	전남동부	13	16	29	19.1	152
	전남서부	19	37	56	26.0	215
	소계	32	53	85	23.2	367
경북	경북동부	9	24	33	18.8	176
	경북북부	11	22	33	25.0	132
	경북서부	17	25	42	20.3	207
	경북남부*	3	7	10	11.9	84
	소계	40	78	118	19.7	599
경남	경남	29	25	54	16.1	335
	경남서부	15	43	58	36.9	157
	소계	44	68	112	22.8	492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0	21	31	36.9	84
	제주도서귀포시	7	10	17	26.6	64
	소계	17	31	48	32.4	148
계		607	1,092	1,699	25.1	6,774

* 2021년 신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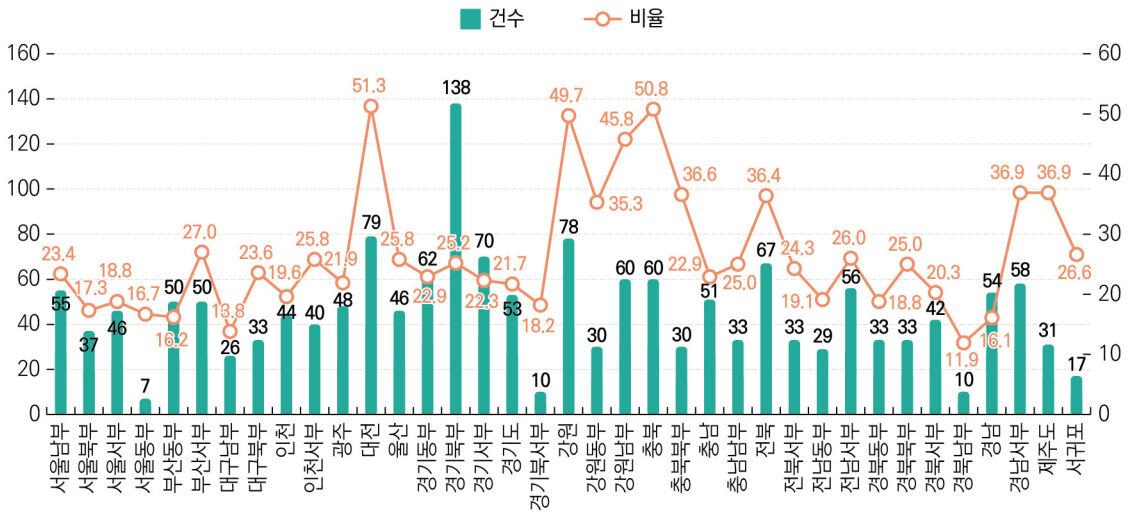

그림 9-8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2)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성별 및 연령대

2021년 전체 노인학대 6,774건 중 치매노인의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은 1,245명(73.3%), 남성은 454명(26.7%)으로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9-10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성별

(단위: 명, %)

전체학대사례	치매의심(치매가 의심됨)	치매진단(치매로 진단받음)	계
남성	174	280	454
	28.7	25.6	26.7
여성	433	812	1,245
	71.3	74.4	73.3
계	607	1,092	1,699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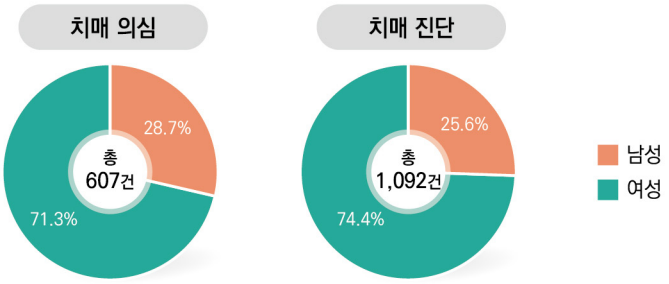

그림 9-9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성별

성별에 이어 치매노인을 연령대로 구분해 보면 80대가 826명(48.6%)로 가장 많았으며, 70대가 504명(29.7%)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9-11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연령대

(단위: 명, %)

성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66	91	104	168	107	48	21	2	607
	10.9	15.0	17.1	27.7	17.6	7.9	3.5	0.3	100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54	111	198	288	263	134	40	4	1,092
	4.9	10.2	18.1	26.4	24.1	12.3	3.7	0.4	100
계	120	202	302	456	370	182	61	6	1,699
	7.1	11.9	17.8	26.8	21.8	10.7	3.6	0.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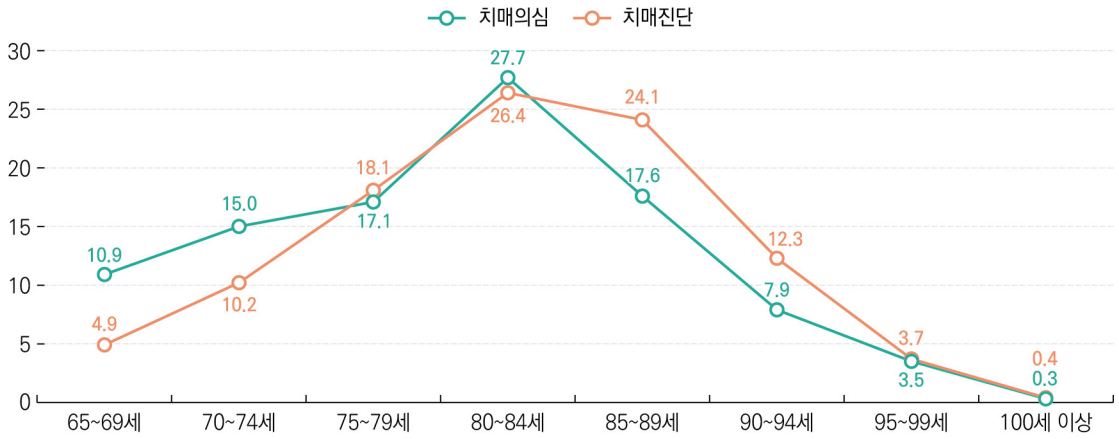

그림 9-10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연령대

3)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대상 학대행위자 유형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행위자 유형의 경우 기관이 1,998건(62.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친족이 1,017명(31.9%)으로 나타났다. 친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들이 485명(15.2%)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273명(8.5%), 딸 163명(5.1%) 순이었다.

표 9-12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과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건, 명, %)

구 분	피해자 본인	친 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74	130	229	20	68	2	12	12	473	29	82	658
	11.2	19.8	34.8	3.0	10.3	0.3	1.8	1.8	71.9	4.4	12.5	100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38	143	256	21	95	5	11	13	544	37	1,916	2,535
	1.5	5.6	10.1	0.8	3.7	0.2	0.4	0.5	21.5	1.5	75.6	100
계	112	273	485	41	163	7	23	25	1,017	66	1,998	3,193*
	3.5	8.5	15.2	1.3	5.1	0.2	0.7	0.8	31.9	2.1	62.6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수(1,699명)와 학대행위자(3,193명)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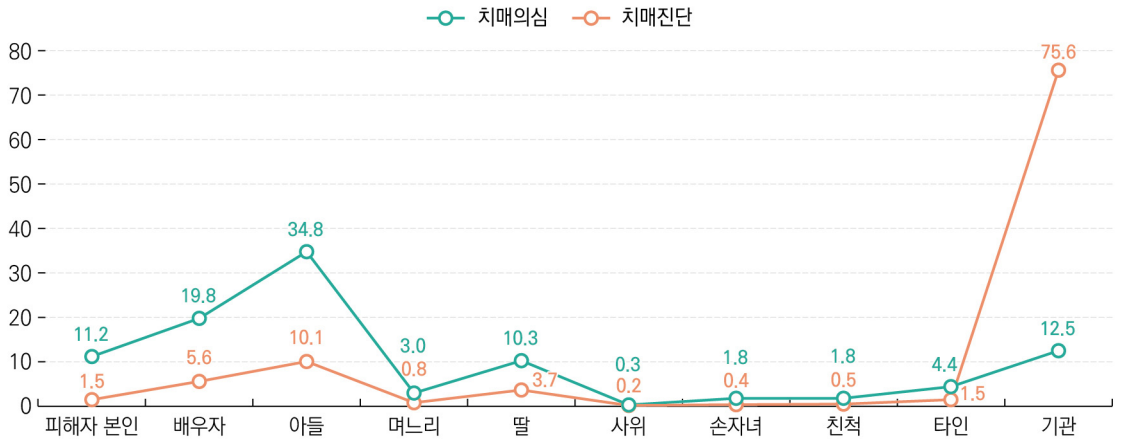

그림 9-11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과 학대행위자 유형

4)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유형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의 학대유형을 보면, 신체적 학대가 792건(32.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716건(29.6%), 방임 479건(1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학대유형에서는 정서적 학대의 비율(4,627건, 43.6%)이 높게 나타나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2020년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유형과는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020년에는 신체적 학대 659건(30.0%), 정서적 학대 605건(27.6%), 방임 519건(23.7%) 순으로 2021년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의 학대발생 유형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표 9-13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유형

(단위: 건, %)

구 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272	321	29	30	137	74	10	873
	31.2	36.8	3.3	3.4	15.7	8.5	1.1	100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520	395	147	80	342	38	20	1,542
	33.7	25.6	9.5	5.2	22.2	2.5	1.3	100
계	792	716	176	110	479	112	30	2,415*
	32.8	29.6	7.3	4.6	19.8	4.6	1.2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통계 수치(1,699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2,415건)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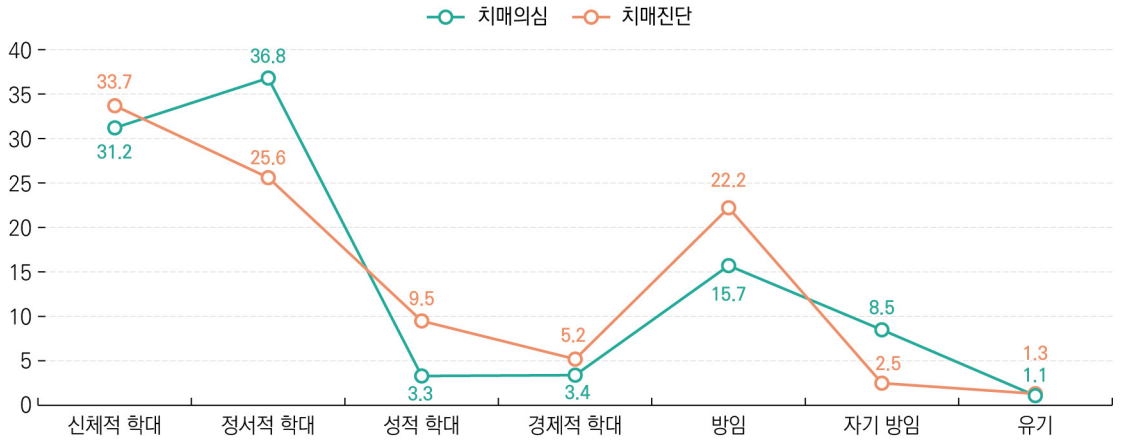

그림 9-12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유형

5)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의 학대발생장소를 보면, 가정 내가 1,080건(63.6%)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생활시설이 463건(27.3%)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정 내와 생활시설의 건수를 합하면 총 1,543건(90.8%)으로 학대발생장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치매의심과 치매진단 모두 가정 내에서 발생한 건수가 각각 518건(85.3%), 562건(51.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정에서의 학대발생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14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구 분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 원	공공장소	기 타	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518	46	6	15	10	12	607
	85.3	7.6	1.0	2.5	1.6	2.0	100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562	417	59	34	7	13	1,092
	51.5	38.2	5.4	3.1	0.6	1.2	100
계	1,080	463	65	49	17	25	1,699
	63.6	27.3	3.8	2.9	1.0	1.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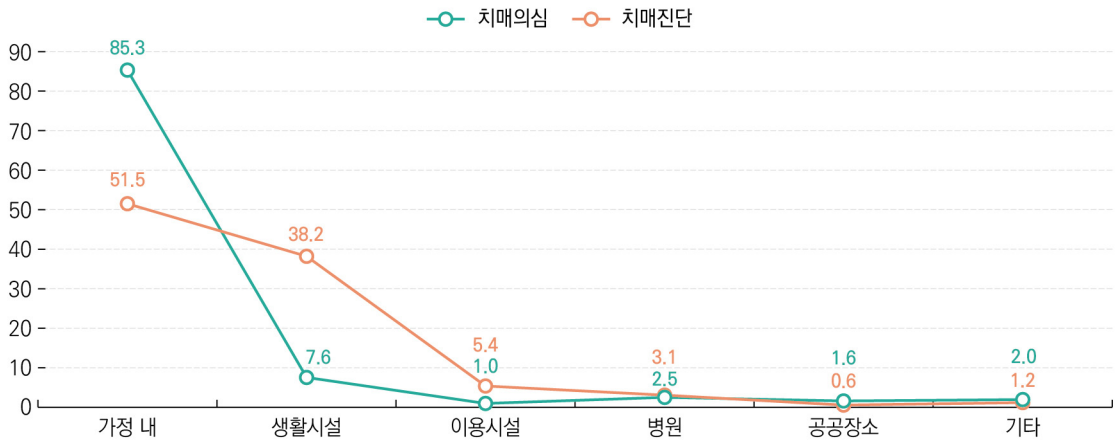

그림 9-13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6)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의 학대발생빈도를 보면, 1주일에 한 번 이상인 경우가 409건(24.1%)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매일 367건(21.6%), 일회성이 360건(21.2%)으로 뒤를 이었다.

표 9-15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구 분	일회성	6개월에 한 번 이상	3개월에 한 번 이상	1개월에 한 번 이상	1주일에 한 번 이상	매일	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107	47	46	145	146	116	607
	17.6	7.7	7.6	23.9	24.1	19.1	100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253	43	71	211	263	251	1,092
	23.2	3.9	6.5	19.3	24.1	23.0	100
계	360	90	117	356	409	367	1,699
	21.2	5.3	6.9	21.0	24.1	21.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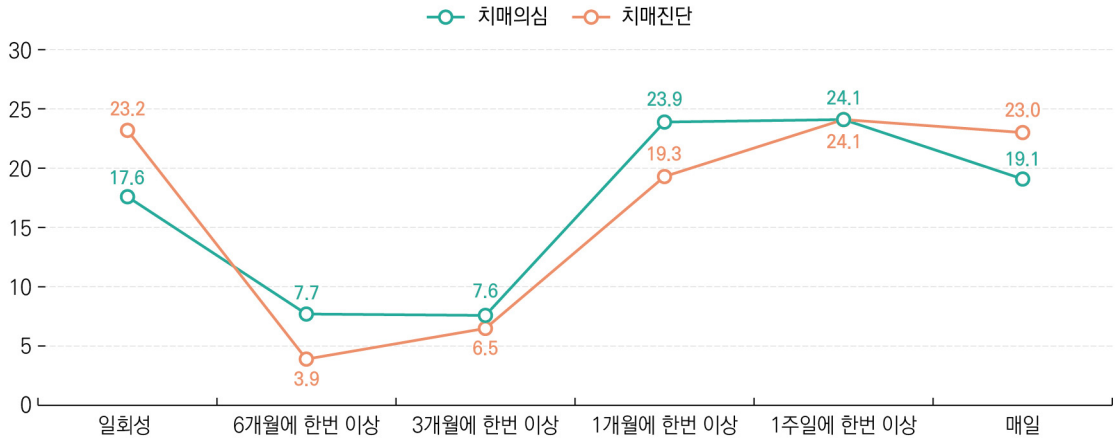

그림 9-14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7)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의 학대지속기간을 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이 475건(28.0%)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469건(27.6%), 일회성이 341건(2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16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구 분	일회성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102	25	137	188	155	607
	16.8	4.1	22.6	31.0	25.5	100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239	70	332	287	164	1,092
	21.9	6.4	30.4	26.3	15.0	100
계	341	95	469	475	319	1,699
	20.1	5.6	27.6	28.0	18.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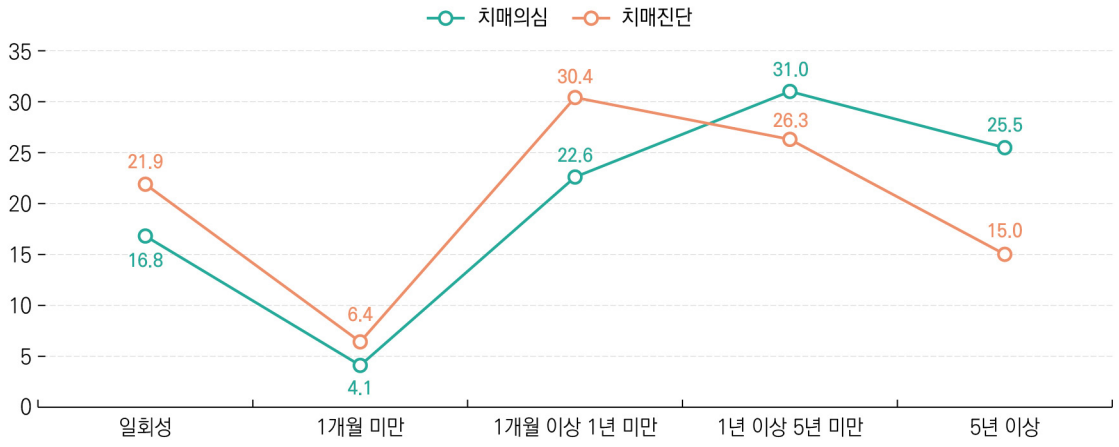

그림 9-15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8)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가구형태

학대피해를 경험한 치매노인의 가구형태는 기타인 경우가 501건(2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동거 431건(25.4%), 노인독거 410건(24.1%) 등 순이었다.

기타 항목이 가장 많은 이유는 가구 형태가 가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어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주로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표 9-17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가구형태

(단위: 건, %)

구 분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 동거	자녀·손자녀 동거	기 타	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182	123	201	18	18	65	607
	30.0	20.3	33.1	3.0	3.0	10.7	100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228	150	230	19	29	436	1,092
	20.9	13.7	21.1	1.7	2.7	39.9	100
계	410	273	431	37	47	501	1,699
	24.1	16.1	25.4	2.2	2.8	29.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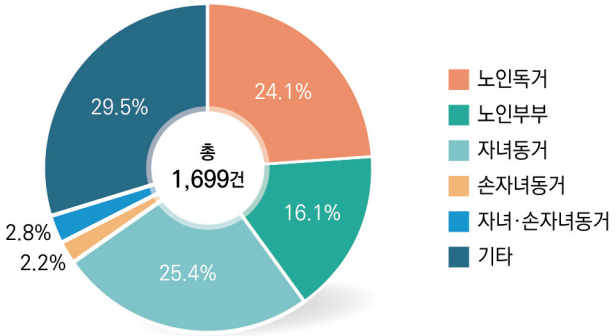

그림 9-16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가구형태

3. 시설학대 현황

1)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와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시설학대 현황을 살펴보았다.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92건(16.8%)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59건(38.3%),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59건(34.4%)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부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전남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시설학대가 1건으로 나타났다.

표 9-18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

(단위: 건, %)

지 역	기관명	전체 학대사례 건수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서울	서울남부	235	1	4	-	5	10
			0.4	1.7	-	2.1	4.3
	서울북부	214	-	5	-	2	7
			-	2.3	-	0.9	3.3
	서울서부	245	2	6	-	3	11
			0.8	2.4	-	1.2	4.5
	서울동부*	42	-	1	-	-	1
			-	2.4	-	-	2.4
	소계	736	3	16	-	10	29
			0.4	2.2	-	1.4	3.9
부산	부산동부	309	-	1	-	-	1
			-	0.3	-	-	0.3
	부산서부	185	-	1	-	1	2
			-	0.5	-	0.5	1.1
	소계	494	-	2	-	1	3
			-	0.4	-	0.2	0.6
대구	대구남부	189	-	6	-	1	7
			-	3.2	-	0.5	3.7
	대구북부	140	1	2	-	1	4
			0.7	1.4	-	0.7	2.9
	소계	329	1	8	-	2	11
			0.3	2.4	-	0.6	3.3
인천	인천	224	-	24	-	6	30
			-	10.7	-	2.7	13.4
	인천서부	155	9	17	-	2	28
			5.8	11.0	-	1.3	18.1
	소계	379	9	41	-	8	58
			2.4	10.8	-	2.1	15.3

지 역	기관명	전체 학대사례 건수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광주		219	2	4	-	-	6
			0.9	1.8	-	-	2.7
대전		154	-	29	-	30	59
			-	18.8	-	19.5	38.3
울산		178	-	5	-	-	5
			-	2.8	-	-	2.8
경기	경기동부	271	-	29	-	2	31
			-	10.7	-	0.7	11.4
	경기북부	547	3	83	-	6	92
			0.5	15.2	-	1.1	16.8
	경기서부	314	3	13	-	1	17
			1.0	4.1	-	0.3	5.4
	경기도	244	2	3	-	-	5
			0.8	1.2	-	-	2.0
	경기북서부*	55	-	6	-	-	6
			-	10.9	-	-	10.9
	소계	1,431	8	134	-	9	151
			0.6	9.4	-	0.6	10.6
강원	강원	157	1	53	-	-	54
			0.6	33.8	-	-	34.4
	강원동부	85	3	12	-	1	16
			3.5	14.1	-	1.2	18.8
	강원남부	131	4	52	-	-	56
			3.1	39.7	-	-	42.7
	소계	373	8	117	-	1	126
			2.1	31.4	-	0.3	33.8
충북	충북	118	-	37	-	-	37
			-	31.4	-	-	31.4
	충북북부	82	-	3	-	1	4
			-	3.7	-	1.2	4.9
	소계	200	-	40	-	1	41
			-	20.0	-	0.5	20.5
충남	충남	223	1	7	-	-	8
			0.4	3.1	-	-	3.6
	충남남부	132	-	4	-	-	4
			-	3.0	-	-	3.0
	소계	355	1	11	-	-	12
			0 3	3.1	-	-	3.4

지 역	기관명	전체 학대사례 건수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전북	전북	184	–	22	–	20	42
			–	12.0	–	10.9	22.8
	전북서부	136	2	5	–	–	7
			1.5	3.7	–	–	5.1
	소계	320	2	27	–	20	49
			0.6	8.4	–	6.3	15.3
전남	전남동부	152	–	1	–	–	1
			–	0.7	–	–	0.7
	전남서부	215	3	6	1	–	10
			1.4	2.8	0.5	–	4.7
	소계	367	3	7	1	–	11
			0.8	1.9	0.3	–	3.0
경북	경북동부	176	–	1	–	–	1
			–	0.6	–	–	0.6
	경북북부	132	–	4	–	1	5
			–	3.0	–	0.8	3.8
	경북서부	207	1	5	–	1	7
			0.5	2.4	–	0.5	3.4
	경북남부	84	–	–	–	–	–
			–	–	–	–	–
	소계	599	1	10	–	2	13
			0.2	1.7	–	0.3	2.2
경남	경남	335	1	5	–	2	8
			0.3	1.5	–	0.6	2.4
	경남서부*	157	–	33	–	–	33
			–	21.0	–	–	21.0
	소계	492	1	38	–	2	41
			0.2	7.7	–	0.4	8.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84	–	5	–	–	5
			–	6.0	–	–	6.0
	제주도서귀포시	64	–	3	–	–	3
			–	4.7	–	–	4.7
	소계	148	–	8	–	–	8
			–	5.4	–	–	5.4
계		6,774	39	497	1	86	623
			0.6	7.3	0.0	1.3	9.2

주. 각 시설학대 건수 비율은 기관별 학대사례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2021년 신규기관

2) 시설학대 신고자 유형

시설학대 총 623건을 신고자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신고의무자 직군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에 의한 신고가 127건(20.4%),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79건(12.7%),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가 55건(8.8%)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고의무자 직군의 시설학대 신고건수는 274건(44.0%)이었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관련기관 151건(24.2%), 친족 118건(18.9%), 타인 73건(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신고의무자의 시설학대 신고건수는 349건(56.0%)으로 나타나 신고의무자에 비해 12%p 높았다.

표 9-19 시설학대 신고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신고 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	-	-	-	1
		0.2	-	-	-	0.2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	-	-	-
		-	-	-	-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7	114	-	6	127
		1.1	18.3	-	1.0	20.4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4	-	-	4
		-	0.6	-	-	0.6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	-	-	-
		-	-	-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21	-	31	55
		0.5	3.4	-	5.0	8.8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	-	-	-	-
		-	-	-	-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2	-	-	2
		-	0.3	-	-	0.3
	119구급대의 대원	-	-	-	-	-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	-	-	-
		-	-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	-	-	-
		-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	-	-	-
		-	-	-	-	-
	응급구조사	-	-	-	-	-
		-	-	-	-	-

구 분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의료기사	-	-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5	-	1	6
		-	0.8	-	0.2	1.0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	55	-	23	79
		0.2	8.8	-	3.7	12.7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	-	-	-
		-	-	-	-	-
	소계	12	201	-	61	274
		1.9	32.3	-	9.8	44.0
비신고 의무자	학대피해노인 본인	-	4	1	1	6
		-	0.6	0.2	0.2	1.0
	학대행위자 본인	-	1	-	-	1
		-	0.2	-	-	0.2
	친족	9	93	-	16	118
		1.4	14.9	-	2.6	18.9
	타인	1	70	-	2	73
		0.2	11.2	-	0.3	11.7
	관련기관[27]	17	128	-	6	151
		2.7	20.5	-	1.0	24.2
	소계	27	296	1	25	349
		4.3	47.5	0.2	4.0	56.0
계		39	497	1	86	623
		6.3	79.8	0.2	13.8	100

27) 관련기관에는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됨.

3)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시설학대 623건 중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비율은 여성노인은 457명(73.4%), 남성노인은 166명(26.6%)으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약 2.8배 높게 나타났다.

시설학대 피해노인의 성별 및 연령대를 보면 남성의 경우 80대가 47.6%, 70대가 30.7%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도 80대가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90대 24.7%, 70대 17.5% 순으로 나타났다.

표 9-20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남성	17	23	28	41	38	13	6	-	166
	10.2	13.9	16.9	24.7	22.9	7.8	3.6	-	100
여성	14	22	58	116	129	77	36	5	457
	3.1	4.8	12.7	25.4	28.2	16.8	7.9	1.1	100
계	31	45	86	157	167	90	42	5	623
	5.0	7.2	13.8	25.2	26.8	14.4	6.7	0.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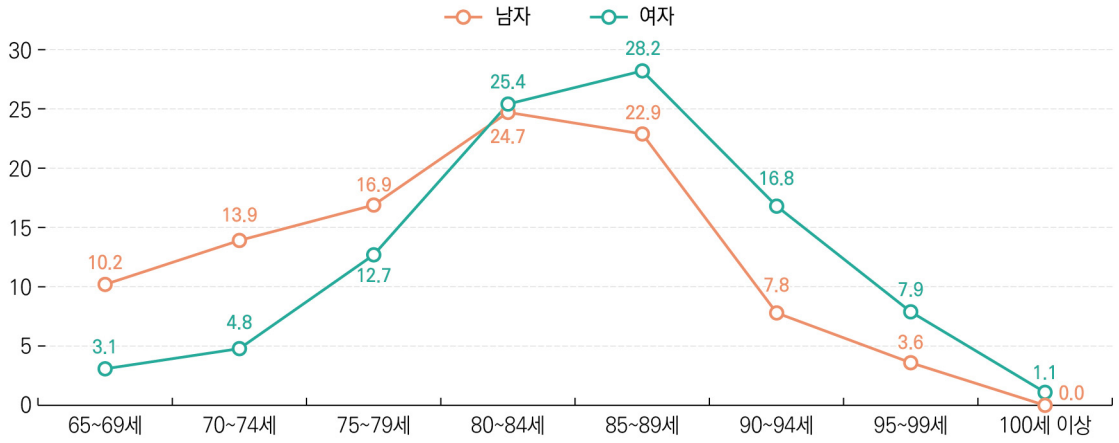

그림 9-17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4) 시설학대 학대유형

시설학대 학대유형을 보면 총 838건 중 방임이 298건(35.6%), 신체적 학대가 250건(29.8%), 성적 학대가 182건(21.7%), 정서적 학대가 86건(10.3%) 등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신체적 학대가 217건(31.8%), 방임이 211건(30.9%)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성적 학대 171건(25.0%), 정서적 학대 65건(9.5%)가 그 뒤를 이었다. 노인주거복지시설도 신체적 학대가 20건(35.1%)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16건(28.1%), 성적 학대 10건(17.5%), 정서적 학대 9건(15.8%)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표 9-21 시설학대 학대유형

(단위: 건, %)

구 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20	9	10	2	16	-	-	57
		35.1	15.8	17.5	3.5	28.1	-	-	100
	노인의료복지시설	217	65	171	19	211	-	-	683
		31.8	9.5	25.0	2.8	30.9	-	-	100
이용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	1	-	-	-	-	-	1
		-	100.0	-	-	-	-	-	100
	재가노인복지시설	13	11	1	1	71	-	-	97
		13.4	11.3	1.0	1.0	73.2		-	100
계		250	86	182	22	298	-	-	838*
		29.8	10.3	21.7	2.6	35.6	-	-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23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838건)에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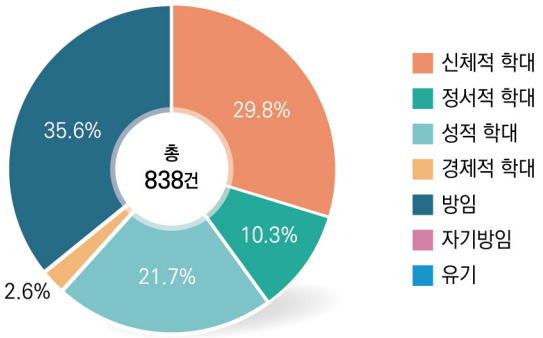

그림 9-18 시설학대 학대유형

5) 시설학대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전체 학대피해노인 6,774명의 결혼유형은 배우자 있음이 4,000건(59.0%)이며, 배우자 없음은 2,774건(41.0%)으로 나타났다.

시설학대를 중심으로 학대피해노인의 결혼유형을 살펴보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모두 배우자 없음이 각각 372건(69.4%), 74건(85.1%)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9-22 시설학대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단위: 건, %)

구 분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계
		초혼	재혼	사실혼	소계	미혼	사별	이혼	별거	가출	소계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7	-	1	18	1	19	1	-	-	21	39
		43.6	-	2.6	46.2	2.6	48.7	2.6	-	-	53.8	100
	노인의료복지시설	146	-	-	146	8	331	8	4	-	351	497
		29.4	-	-	29.4	1.6	66.6	1.6	0.8	-	70.6	100
	소계	163	-	1	164	9	350	9	4	-	372	536
		30.4	-	0.2	30.6	1.7	65.3	1.7	0.7	-	69.4	100
이용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1	-	-	1	-	-	-	-	-	-	1
		100.0	-	-	100.0	-	-	-	-	-	-	100
	재가노인복지시설	12	-	-	12	4	69	1	-	-	74	86
		14.0	-	-	14.0	4.7	80.2	1.2	-	-	86.0	100
	소계	13	-	-	13	4	69	1	-	-	74	87
		14.9	-	-	14.9	4.6	79.3	1.1	-	-	85.1	223
계		176	-	1	177	13	419	10	4	-	446	623
		28.3	-	0.2	28.4	2.1	67.3	1.6	0.6	-	71.6	100

6)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의 학대발생빈도를 보면 전체 시설학대 중 일회성인 경우가 206건(33.1%)으로 가장 많았고, 매일 186건(29.9%), 1주일에 한 번 이상이 147건(23.6%), 1개월에 한 번 이상이 55건(8.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23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구 분		일회성	6개월에 한 번 이상	3개월에 한 번 이상	1개월에 한 번 이상	1주일에 한 번 이상	매일	계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3	2	4	3	10	7	39
		33.3	5.1	10.3	7.7	25.6	17.9	100
	노인의료복지시설	145	7	15	49	129	152	497
		29.2	1.4	3.0	9.9	26	30.6	100
이용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	-	-	1	-	-	1
		-	-	-	100	-	-	100
	재가노인복지시설	48	-	1	2	8	27	86
		55.8	-	1.2	2.3	9.3	31.4	100
계		206	9	20	55	147	186	623
		33.1	1.4	3.2	8.8	23.6	29.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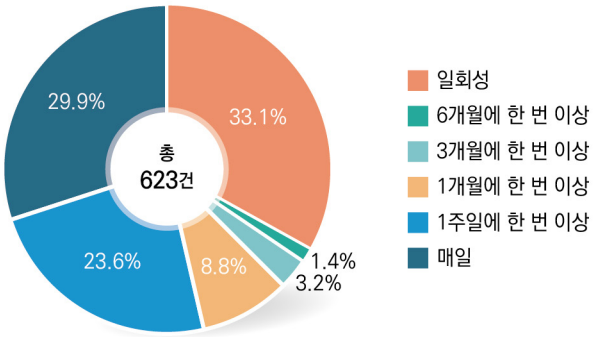

그림 9-19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7)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의 학대지속기간을 보면 전체 시설학대 중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238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일회성 194건(31.1%), 1년 이상 5년 미만 122건(19.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24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구 분		일회성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계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2	4	13	4	6	39
		30.8	10.3	33.3	10.3	15.4	100
	노인의료복지시설	137	35	219	88	18	497
		27.6	7.0	44.1	17.7	3.6	100
이용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	-	-	1	-	1
		-	-	-	100.0	-	100
	재가노인복지시설	45	6	6	29	-	86
		52.3	7.0	7.0	33.7	-	100
계		194	45	238	122	24	623
		31.1	7.2	38.2	19.6	3.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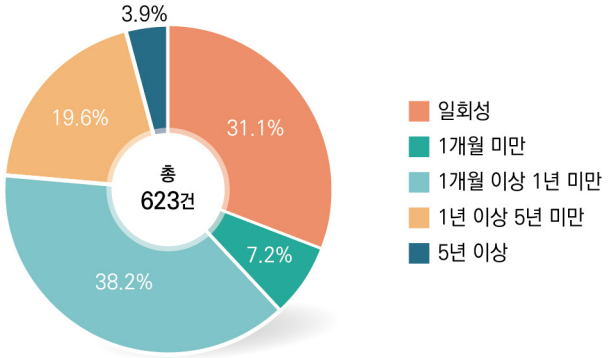

그림 9-20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다음은 시설학대의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을 보면, 발생빈도와 지속기간이 모두 일회성인 경우가 189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매일 발생한 경우가 105건으로 나타났다.

표 9-25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구 분		학대지속기간					
		일회성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계
학대발생빈도	일회성	189	8	7	2	-	206
	6개월에 한 번 이상	-	-	5	4	-	9
	3개월에 한 번 이상	2	1	8	7	2	20
	1개월에 한 번 이상	1	5	38	10	1	55
	1주일에 한 번 이상	2	23	75	41	6	147
	매일	-	8	105	58	15	186
	계	194	45	238	122	24	623

8)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시설 유형별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생활시설의 경우 학대피해노인 536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17명(21.8%)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시설의 경우 학대피해노인 87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2명(13.8%)으로 나타났다.

표 9-26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 분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39	9
			23.1
	노인의료 복지시설	497	108
			21.7
	소계	536	117
			21.8
이용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1	-
			-
	재가노인 복지시설	86	12
			14.0
	소계	87	12
			13.8
계		623	129
			20.7

9)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시설학대 623건 중 치매로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사례는 528건(84.8%)이다. 치매노인 528명을 대상으로 시설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생활시설이 463건(74.3%)으로 이용시설 65건(10.4%)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9-27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 명, %)

시설학대	구 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계
623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3	31	34
			0.5	5.0	5.5
		노인의료복지시설	43	386	429
			6.9	62.0	68.9
	이용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	-	-
			-	-	-
		재가노인복지시설	6	59	65
			1.0	9.5	10.4
	계		52	476	528
			8.3	76.4	84.8

10)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시설학대 학대행위자는 총 2,102명이며, 그 중 여성이 1,678명(79.8%), 남성이 424명(20.2%)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연령대 비율을 보면 남성은 50대가 180명(42.5%), 여성은 50대가 937명(55.8%)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9-28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남성	-	10	31	67	180	90	46	424
	-	2.4	7.3	15.8	42.5	21.2	10.8	100
여성	-	1	43	147	937	505	45	1,678
	-	0.1	2.6	8.8	55.8	30.1	2.7	100
계	-	11	74	214	1,117	595	91	2,102
	-	0.5	3.5	10.2	53.1	28.3	4.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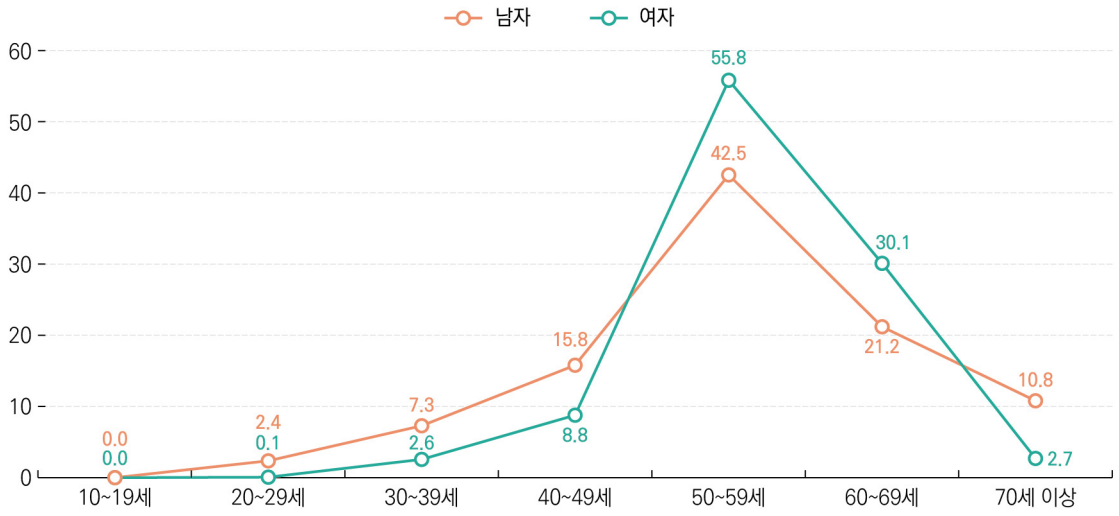

그림 9-21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4. 재학대 현황

1) 지역 및 기관별 재학대 현황

재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사례를 의미한다.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재학대 건수는 739건으로 전체 학대사례 6,774건 중 10.9%에 해당되며,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별로 재학대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재학대가 가장 많이(학대사례 대비 재학대 비율) 신고된 기관은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24.6%,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21.5%,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9%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2.2%, 경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2.3%, 서울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2.4% 순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9-29 지역 및 기관별 재학대 현황

(단위: 건, %)

지 역	기관명	재학대		전체 학대사례 건수
		건 수	비 율	
서울	서울남부	6	2.6	235
	서울북부	14	6.5	214
	서울서부	13	5.3	245
	서울동부*	1	2.4	42
	소계	34	4.6	736
부산	부산동부	37	12.0	309
	부산서부	5	2.7	185
	소계	42	8.5	494
대구	대구남부	25	13.2	189
	대구북부	22	15.7	140
	소계	47	14.3	329
인천	인천	55	24.6	224
	인천서부	11	7.1	155
	소계	66	17.4	379
광주		28	12.8	219
대전		7	4.5	154
울산		35	19.7	178
경기	경기도	51	20.9	244
	경기동부	31	11.4	271
	경기북부	67	12.2	547
	경기서부	7	2.2	314
	경기북서부*	-	-	55
	소계	156	10.9	1,431

지 역	기관명	재학대		전체 학대사례 건수
		건 수	비 율	
강원	강원	18	11.5	157
	강원동부	14	16.5	85
	강원남부	19	14.5	131
	소계	51	13.7	373
충북	충북	13	11.0	118
	충북북부	11	13.4	82
	소계	24	12.0	200
충남	충남	48	21.5	223
	충남남부	22	16.7	132
	소계	70	19.7	355
전북	전북	5	2.7	184
	전북서부	15	11.0	136
	소계	20	6.3	320
전남	전남동부	21	13.8	152
	전남서부	28	13.0	215
	소계	49	13.4	367
경북	경북동부	4	2.3	176
	경북북부	26	19.7	132
	경북서부	23	11.1	207
	경북남부*	-	-	84
	소계	53	8.8	599
경남	경남	22	6.6	335
	경남서부	15	9.6	157
	소계	37	7.5	492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4	16.7	84
	제주도서귀포시	6	9.4	64
	소계	20	13.5	148
계		739	10.9	6,774

* 2021년 신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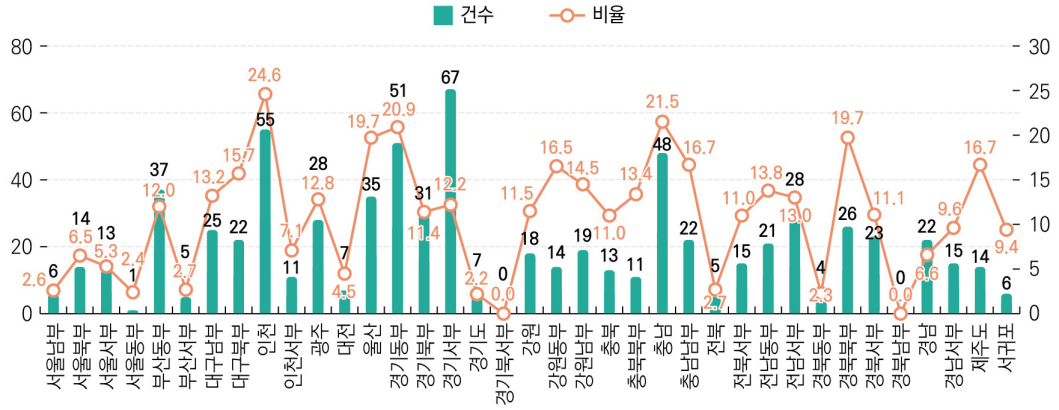

그림 9-22 기관별 재학대 접수 건수 및 비율

2) 재학대 신고자 유형

재학대 사례와 신규 사례의 신고의무자 유형을 보면 신규 사례의 경우 803건(13.3%), 재학대 사례의 경우 57건(7.7%)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타 신고의무자 직군에 비해 재학대 사례와 신규 사례 모두 신고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재학대 사례와 신규 사례의 비신고의무자 유형을 보면, 신규 사례의 경우 5,232건(86.7%), 재학대 사례의 경우 682건(92.3%)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기관의 경우 타 비신고의무자 직군에 비해 재학대 사례와 신규 사례 모두 신고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신고의무자 중 학대피해노인 본인의 신고비율이 신규 사례(4.9%) 보다 재학대 사례(9.1%)에서 높았으며, 관련기관 신규 사례 신고비율(70.1%)에 비해 재학대 사례 신고비율(77.0%)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재학대 사례의 경우 신규 사례 보다 학대피해노인 본인 또는 관련 기관에서 노인학대를 인지하여 신고하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9-30 신규-재학대 신고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신 규		재학대 신고	
신고 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1	0.3	2	0.3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9	0.1	2	0.3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231	3.8	15	2.0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0.1	-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59	1.0	11	1.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06	5.1	20	2.7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9	0.1	1	0.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42	0.7	3	0.4
	119구급대의 대원	1	0.0	-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1	0.0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5	0.1	2	0.3
	응급구조사	-	-	-	-
	의료기사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24	0.4	1	0.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8	0.1	-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83	1.4	-	-
	소계	803	13.3	57	7.7
비신고 의무자	학대피해노인 본인	294	4.9	67	9.1
	학대행위자 본인	7	0.1	1	0.1
	친족	507	8.4	42	5.7
	타인	194	3.2	3	0.4
	관련기관[28]	4,230	70.1	569	77.0
	소계	5,232	86.7	682	92.3
계		6,035	100	739	100

28) 관련기관에는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됨.

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재학대 사례의 학대피해노인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노인이 142명(19.2%), 여성 노인이 597명(80.8%)으로 여성 노인의 재학대 사례가 남성 노인에 비해 약 4.2배 많았다. 전체 학대피해 노인의 성별 비율(남성 노인 24.1%, 여성 노인 75.9%)과 비교했을 때도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의 재학대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재학대 피해노인 중 70대가 366명(49.5%), 80대가 213명(28.8%), 60대가 129명(17.5%)으로 70대의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에 따른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80대 이상의 경우 남성 노인이 48명(33.8%), 여성 노인이 165명 (27.6%)로 나타나 남성 재학대 피해노인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9-3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성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남성	24	31	31	31	17	8	-	-	142
	16.9	21.8	21.8	21.8	12.0	5.6	-	-	100
여성	105	153	151	110	55	18	5	-	597
	17.6	25.6	25.3	18.4	9.2	3.0	0.8	-	100
계	129	184	182	141	72	26	5	-	739
	17.5	24.9	24.6	19.1	9.7	3.5	0.7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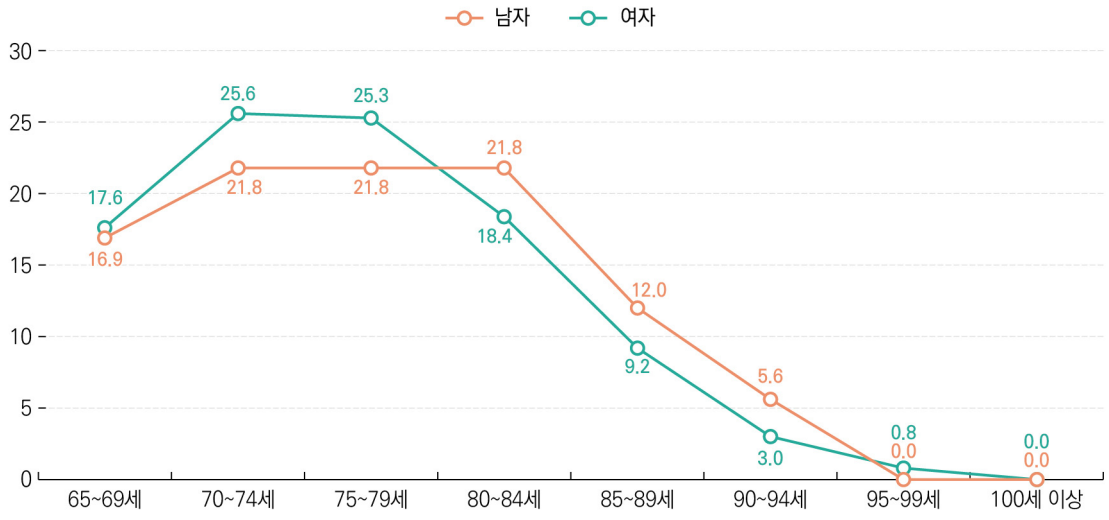

그림 9-2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4) 재학대 사례판정

재학대에 대한 사례판정 유형을 보면 비응급 사례 497건(67.3%), 잠재적 사례 212건(28.7%), 응급 사례 30건(4.1%)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례에 대한 사례판정 유형 또한 비응급 사례 3,948건(65.4%), 잠재적 사례 1,975건(32.7%), 응급 사례 112건(1.9%)의 순으로 재학대 사례판정과 동일하였다.

재학대 사례와 신규 사례의 사례판정 유형을 비교해보면 재학대 사례의 경우 신규 사례에 비해 잠재적 사례 비율은 낮았으나, 응급 사례와 비응급 사례의 비율은 재학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32 신규-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사례판정

(단위: 건, %)

구 분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신규	112	3,948	1,975	6,035
	1.9	65.4	32.7	100
재학대	30	497	212	739
	4.1	67.3	28.7	100
계	142	4,445	2,187	6,774
	2.1	65.6	32.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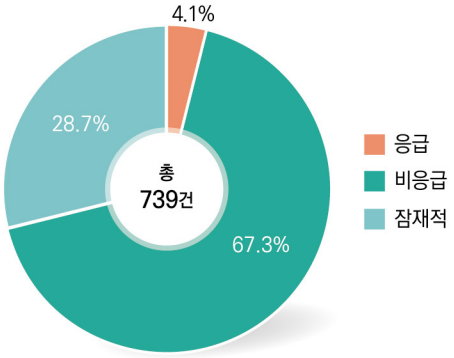

그림 9-24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사례판정 비율

5) 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학대피해노인의 학대행위자 유형을 신규 사례와 재학대 사례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신규 사례의 경우 배우자 2,177건(28.4%), 기관 2,168건(28.3%),, 아들 1,944건(25.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학대 사례는 아들 343건(45.6%), 배우자 278건(37.0%), 딸 55건(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33 신규 – 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피해자 본인	친 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신규	186	2,177	1,944	110	572	42	147	87	238	2,168	7,671
	2.4	28.4	25.3	1.4	7.5	0.5	1.9	1.1	3.1	28.3	100
재학대	18	278	343	9	55	–	25	3	19	2	752*
	2.4	37.0	45.6	1.2	7.3	–	3.3	0.4	2.5	0.3	100
계	204	2,455	2,287	119	627	42	172	90	257	2,170	8,423*
	2.4	29.1	27.2	1.4	7.4	0.5	2.0	1.1	3.1	25.8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수(739명)와 학대행위자(752명)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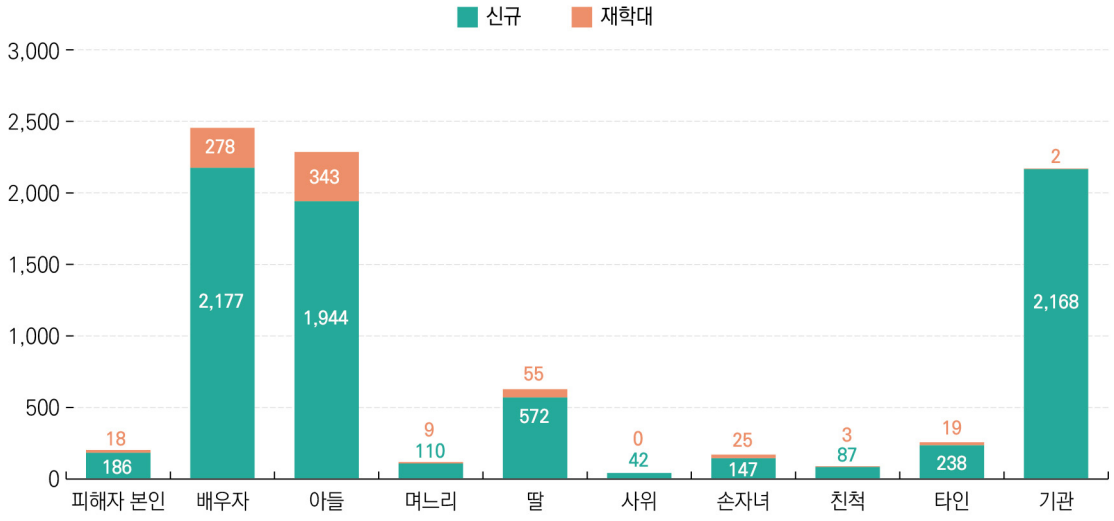

그림 9-25 신규-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6)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재학대 사례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1,144건 중 정서적 학대가 556건(48.6%)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신체적 학대가 499건(43.6%), 방임 32건(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학대의 학대유형의 경우 정서적 학대가 4,627건(43.6%) 신체적 학대가 4,390건 (41.3%)이라는 점에서 재학대 사례의 경우 또한 비교적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더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34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단위: 건,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방임	유 기	계
499	556	9	28	32	18	2	1,144*
43.6	48.6	0.8	2.4	2.8	1.6	0.2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39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144건)에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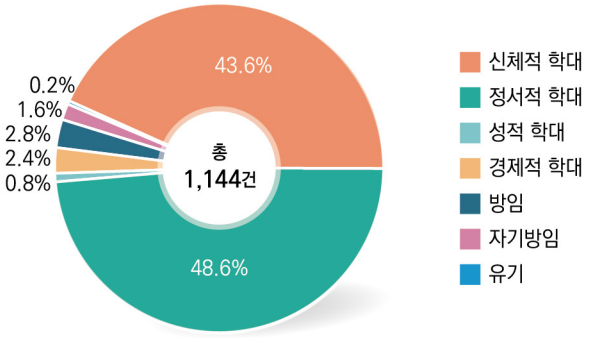

그림 9-26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7) 재학대 학대발생장소

재학대 사례 총 739건 중 가정 내 학대가 716건(96.9%)으로, 재학대로 신고된 사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례의 가정 내 학대 비율이 86.9%인 것에 비하여 재학대 사례의 가정 내 학대 비율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9-35 신규-재학대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구 분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기관	기타	계
신규	5,246	535	86	62	46	60	6,035
	86.9	8.9	1.4	1.0	0.8	1.0	100
재학대	716	1	1	-	8	13	739
	96.9	0.1	0.1	-	1.1	1.8	100
계	5,962	536	87	62	54	73	6,774
	88.0	7.9	1.3	0.9	0.8	1.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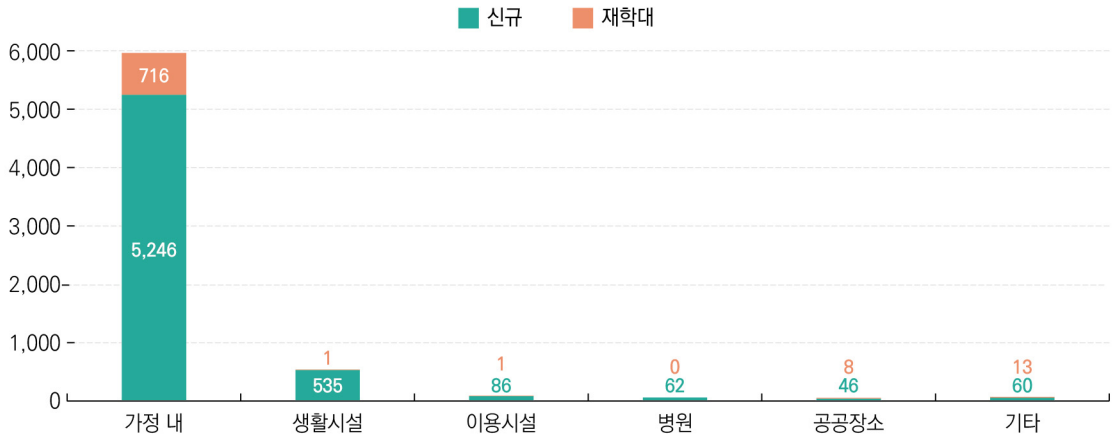

그림 9-27 신규-재학대 학대발생장소

재학대의 발생장소별로 학대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재학대 행위자 752명 중 가정 내 학대의 경우 아들이 338명(46.4%)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배우자가 274명(37.6%)으로 나타나 두 번째로 높았다. 즉 가정 내 학대로 인한 재학대의 경우 주로 아들과 배우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36 재학대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피해자 본인	친 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가정내	15	274	338	9	54	-	24	1	700	13	1	729
	2.1	37.6	46.4	1.2	7.4	-	3.3	0.1	96.0	1.8	0.1	100
생활 시설	-	-	-	-	-	-	-	-	-	-	1	1
	-	-	-	-	-	-	-	-	-	-	100	100
이용 시설	-	-	-	-	-	-	-	-	-	1	-	1
	-	-	-	-	-	-	-	-	-	100	-	100
병원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 장소	1	1	1	-	1	-	1	1	5	2	-	8
	12.5	12.5	12.5	-	12.5	-	12.5	12.5	62.5	25.0	-	100
기타	2	3	4	-	-	-	-	1	8	3	-	13
	15.4	23.1	30.8	-	-	-	-	7.7	61.5	23.1	-	100
계	18	278	343	9	55	-	25	3	713	19	2	752*
	2.4	37.0	45.6	1.2	7.3	-	3.3	0.4	94.8	2.5	0.3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수(739명)와 학대행위자(752명)는 차이가 있음

8) 재학대 학대발생빈도

재학대 사례의 학대발생빈도는 1개월에 한 번 이상이 238건(32.2%)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주일에 한 번 이상 191건(25.8%), 3개월에 한 번 이상 105건(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신규 사례와 비교해보면 일회성의 경우 신규 사례에 비해 11%p 낮은 반면, 1개월에 한 번 이상의 비율은 4.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37 신규-재학대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구 분	일회성	6개월에 한 번 이상	3개월에 한 번 이상	1개월에 한 번 이상	1주일에 한 번 이상	매일	계
신규	1,112	448	645	1,645	1,510	675	6,035
	18.4	7.4	10.7	27.3	25	11.2	100
재학대	55	95	105	238	191	55	739
	7.4	12.9	14.2	32.2	25.8	7.4	100
계	1,167	543	750	1,883	1,701	730	6,774
	17.2	8	11.1	27.8	25.1	10.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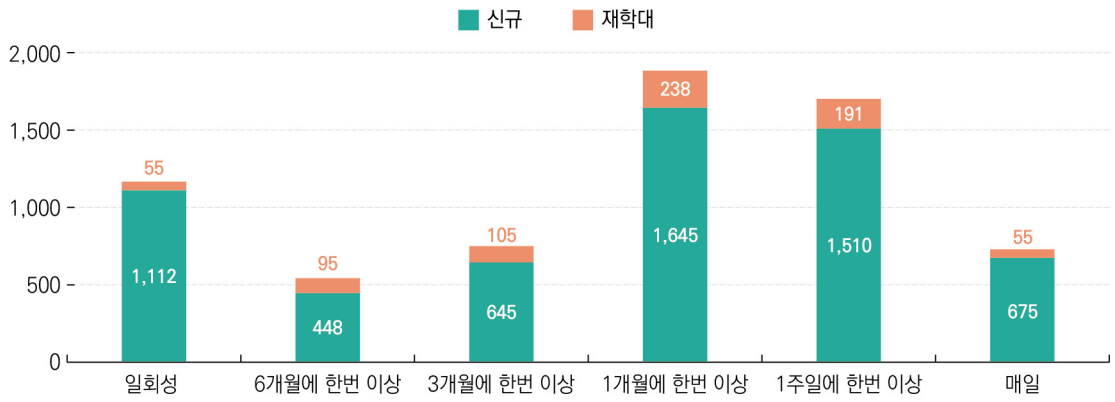

그림 9-28 재학대 학대발생빈도

9) 재학대 학대지속기간

재학대로 신고된 학대피해노인의 학대지속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 및 5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학대가 지속된 비율은 신규 사례가 3,694건(61.2%), 재학대 사례가 613건(82.9%)으로, 재학대 사례가 신규 사례보다 장기간 지속된 학대 비율이 높았다.

표 9-38 신규 – 재학대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구 분	일회성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계
신규	1,056	205	1,080	1,732	1,962	6,035
	17.5	3.4	17.9	28.7	32.5	100
재학대	52	11	63	293	320	739
	7	1.5	8.5	39.6	43.3	100
계	1,108	216	1,143	2,025	2,282	6,774
	16.4	3.2	16.9	29.9	33.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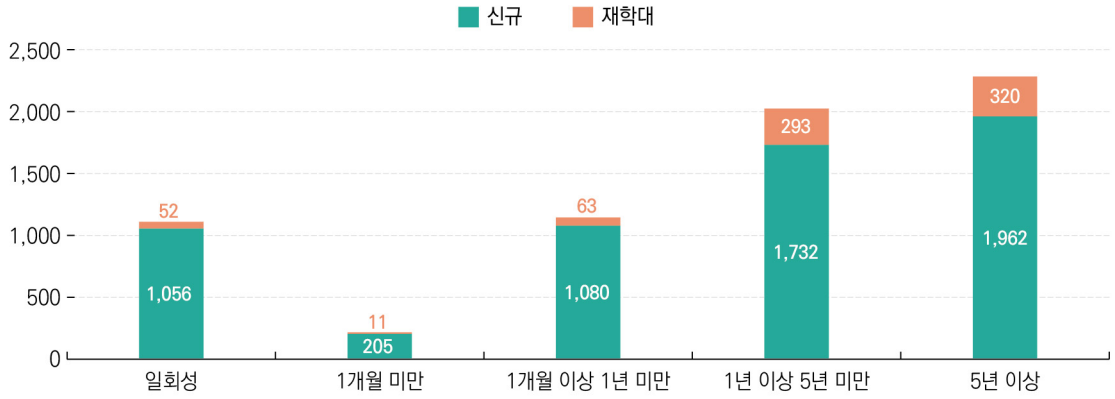

그림 9-29 신규 – 재학대 학대지속기간

10)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재학대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재학대 피해노인 739명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63명(22.1%)이다. 2021년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1,165명, 17.2%)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표 9-39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39	163
	22.1

1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재학대 사례의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를 보면 자녀동거가구가 319건(43.2%)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노인부부가구 255건(34.5%), 노인독거가구 91건(12.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례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의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로 2,077건(34.4%)이었으며, 다음으로 자녀동거가구가 1,792건(29.7%), 노인독거가구가 1,104건(18.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재학대 사례와 신규 사례를 비교해보면, 재학대 사례의 경우 신규 사례에 비해 노인독거가구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40 신규 –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건, %)

구 분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 동거	자녀·손자녀 동거	기 타	계
신규	1,104	2,077	1,792	190	203	669	6,035
	18.3	34.4	29.7	3.1	3.4	11.1	100
재학대	91	255	319	27	32	15	739
	12.3	34.5	43.2	3.7	4.3	2.0	100
계	1,195	2,332	2,111	217	235	684	6,774
	17.6	34.4	31.2	3.2	3.5	10.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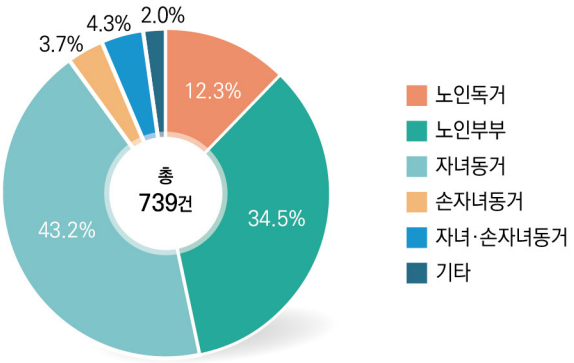

그림 9-30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재학대 사례의 학대 유형 건수는 1,144건으로 가구 형태별로 학대유형의 차이가 나타난다. 노인독거의 경우 "정서적 학대-신체적 학대-자기방임", 노인부부의 경우 "정서적 학대=신체적 학대-성적 학대=방임", 손자녀동거의 경우 "정서적 학대-신체적 학대-경제적 학대=유기", 자녀·손자녀의 경우 "정서적 학대-신체적 학대-경제적 학대", 자녀동거의 경우 "정서적 학대-신체적 학대-경제적 학대", 기타의 경우 "정서적 학대-신체적 학대-방임"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4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 유형 건수

(단위: 건, %)

구 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 방임	유 기	계
노인독거	41	46	-	5	14	15	-	121
	33.9	38.0	-	4.1	11.6	12.4	-	100
노인부부	193	193	5	3	3	1	-	398
	48.5	48.5	1.3	0.8	0.8	0.3	-	100
손자녀동거	18	25	-	1	-	-	1	45
	40.0	55.6	-	2.2	-	-	2.2	100
자녀·손자녀 동거	24	27	-	1	-	-	-	52
	46.2	51.9	-	1.9	-	-	-	100
자녀동거	215	256	3	17	10	1	1	503
	42.7	50.9	0.6	3.4	2.0	0.2	0.2	100
기타	8	9	1	1	5	1	-	25
	32.0	36.0	4.0	4.0	20.0	4.0	-	100
계	499	556	9	28	32	18	2	1,144*
	43.6	48.6	0.8	2.4	2.8	1.6	0.2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39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144건)에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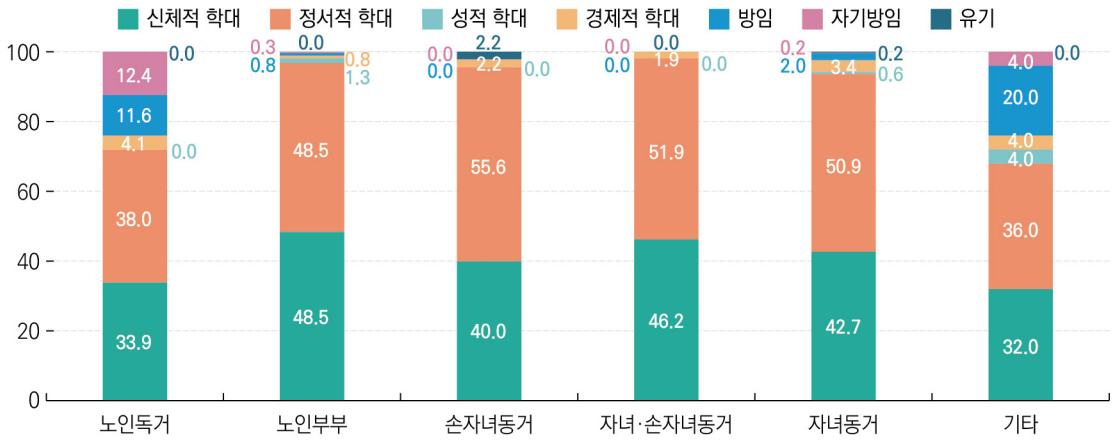

그림 9-3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 유형

12)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재학대 사례 학대피해노인의 739명 중 치매가 의심되는 치매의심노인이 65명(8.8%),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진단노인이 79명(10.7%)으로, 치매가 의심되거나 진단받은 피해노인은 총 144명(19.5%)으로 나타났다.

표 9-42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 명, %)

재학대 사례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계
739	65	79	144
	8.8	10.7	19.5

1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동거여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752명 중 학대피해노인과 동거하는 비율은 611명(81.3%)이었으며, 동거하지 않는 비율은 141명(18.8%)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행위자가 학대피해노인과 동거하는 비율은 4,820명(71.2%)임을 미루어 볼 때, 재학대 사례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학대피해노인과 동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재학대 사례 중 학대행위자와 동거하는 경우 아들과 동거하는 비율이 274명(44.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배우자가 259명(42.4%)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아들과의 동거 비율(28.1%)과 비교해보면 재학대 사례에서 아들과의 동거비율(44.8%)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9-4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동거여부

(단위: 명, %)

구분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동거	9	259	274	4	36	-	21	1	595	7	-	611
	1.5	42.4	44.8	0.7	5.9	-	3.4	0.2	97.4	1.1	-	100
비동거	9	19	69	5	19	-	4	2	118	12	2	141
	6.4	13.5	48.9	3.5	13.5	-	2.8	1.4	83.7	8.5	1.4	100
계	18	278	343	9	55	-	25	3	713	19	2	752
	2.4	37.0	45.6	1.2	7.3	-	3.3	0.4	94.8	2.5	0.3	100

14)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재학대의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를 살펴보면 총 752명 중 남성이 638명(84.8%), 여성이 114명(15.2%)으로 나타나 재학대 사례의 주된 학대행위자는 남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대행위자는 70세 이상이 251명(33.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9-44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10~19세 미만	20~29세 미만	30~39세 미만	40~49세 미만	50~59세 미만	60~69세 미만	70세 이상	계
남성	3	16	19	146	153	77	224	638
	0.5	2.5	3.0	22.9	24.0	12.1	35.1	100
여성	3	4	8	26	29	17	27	114
	2.6	3.5	7.0	22.8	25.4	14.9	23.7	100
계	6	20	27	172	182	94	251	752
	0.8	2.7	3.6	22.9	24.2	12.5	33.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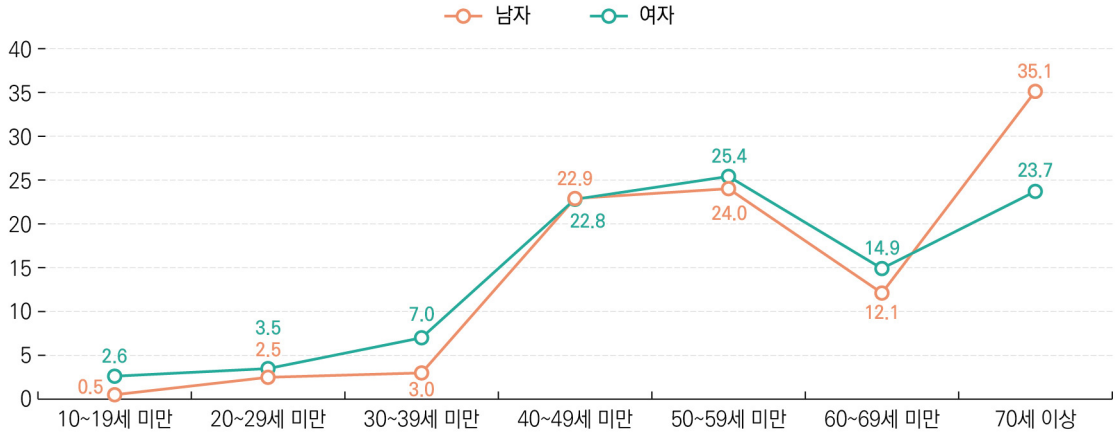

그림 9-32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5) 재학대 학대행위자 중독 유형

재학대 행위자 752명의 사례 중 중독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례는 250건으로, 전체 재학대 사례의 33.2%를 차지하였다. 이 중 알코올 사용 장애가 235명(31.3%), 도박중독이 8명(1.1%), 약물사용장애가 7명(0.9%)으로 중독유형의 대부분은 알코올사용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45 재학대 학대행위자 중독 유형

(단위: 명, %)

재학대 행위자	도박중독	알코올사용장애	약물사용장애	계
752	8	235	7	250
	1.1	31.3	0.9	33.2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ART

10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10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

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실적

1) 보호노인 현황

표 10-1 보호노인 현황

(단위: 명, %)

구 분	남 성	여 성	계
입소자	55	413	468
	11.8	88.2	100
이용자	84	423	507
	16.6	83.4	100
계	139	836	975
	14.3	85.7	100

표 10-2 보호노인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입소자*	남성	4	13	12	18	8	-	-	-	55
		7.3	23.6	21.8	32.7	14.5	-	-	-	100
	여성	62	124	90	84	37	8	8	-	413
		15.0	30.0	21.8	20.3	9.0	1.9	1.9	-	100
	계	66	137	102	102	45	8	8	-	468
		14.1	29.3	21.8	21.8	9.6	1.7	1.7	-	100
이용자**	남성	26	17	10	27	3	1	-	-	84
		31.0	20.2	11.9	32.1	3.6	1.2	-	-	100
	여성	93	104	107	76	30	9	4	-	423
		22.0	24.6	25.3	18.0	7.1	2.1	0.9	-	100
	계	119	121	117	103	33	10	4	-	507
		23.5	23.9	23.1	20.3	6.5	2.0	0.8	-	100

* 입소자: 보호노인의 연령대에 65세 미만의 노인이 있는 이유는 2017년 말에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이 2018년도까지 쉼터에 입소한 경우(2017년의 경우 학대피해노인의 기준이 60세 이상).

** 이용자: 기존 학대피해노인 대상으로 사후관리 측면에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여 이용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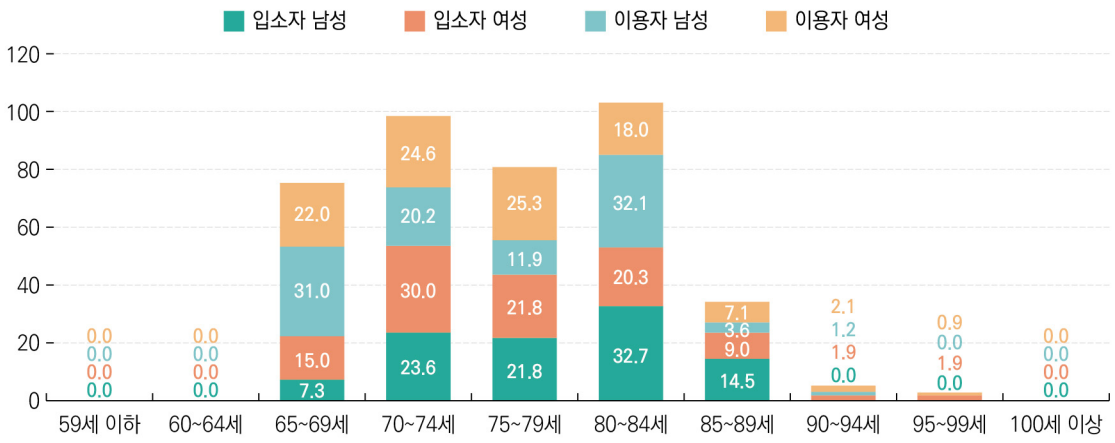

그림 10-1 보호노인 성별 및 연령대

2) 보호노인 결혼 유형

표 10-3 보호노인 결혼 유형

(단위: 명, %)

구 분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파악 안됨	계
	초혼	재혼	사실혼	기타	소계	미혼	사별	이혼	별거	가출	기타	소계		
입소자	228	27	13	-	268	9	164	22	5	-	-	200	-	468
	48.7	5.8	2.8	-	57.3	1.9	35	4.7	1.1	-	-	42.7	-	100
이용자	212	31	17	-	260	12	174	48	12	1	-	247	-	507
	41.8	6.1	3.4	-	51.3	2.4	34.3	9.5	2.4	0.2	-	48.7	-	100
계	440	58	30	-	528	21	338	70	17	1	-	447	-	975
	45.1	5.9	3.1	-	54.2	2.2	34.7	7.2	1.7	0.1	-	45.8	-	100

3)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표 10-4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배우자	아 들	며느리	딸	사 위	손자녀	기타 친인척	기타 동거인	파악 안됨	계
입소자	229	151	17	45	5	42	7	7	2	505
	45.3	29.9	3.4	8.9	1	8.3	1.4	1.4	0.4	100
이용자	213	136	9	49	4	44	5	2	2	464
	45.9	29.3	1.9	10.6	0.9	9.5	1.1	0.4	0.4	100
계	442	287	26	94	9	86	12	9	4	969
	45.6	29.6	2.7	9.7	0.9	8.9	1.2	0.9	0.4	100

4) 보호노인 가구형태

표 10-5 보호노인 가구형태

(단위: 명, %)

구 분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자녀·손자녀 동거	손자녀동거	기 타	계
입소자	64	188	158	19	21	18	468
	13.7	40.2	33.8	4.1	4.5	3.8	100
이용자	134	179	139	17	22	16	507
	26.4	35.3	27.4	3.4	4.3	3.2	100
계	198	367	297	36	43	34	975
	20.3	37.6	30.5	3.7	4.4	3.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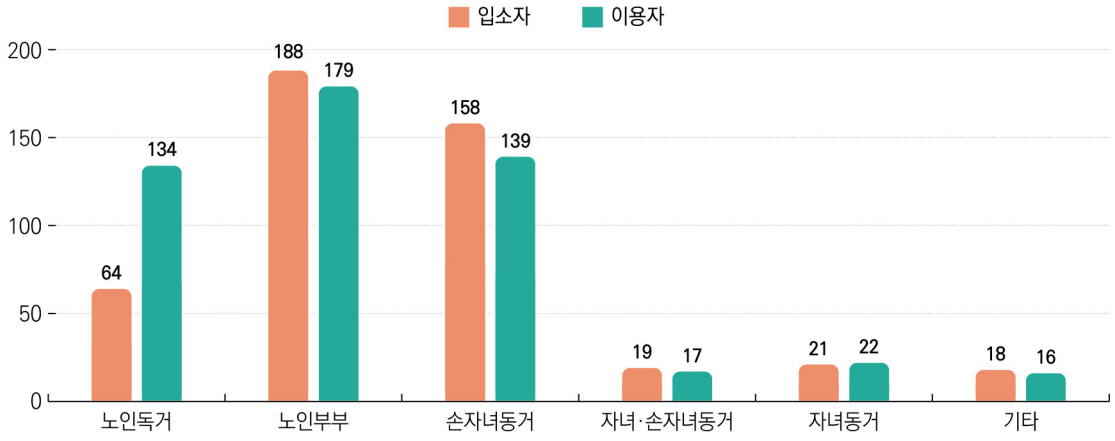

그림 10-2 보호노인 가구형태

5) 보호노인 주거형태

표 10-6 보호노인 주거형태

(단위: 명, %)

구 분	자 가	전 세	월 세	영구임대 아파트	무상	의료 시설	기타	시설	파악 안됨	계
입소자	321	36	46	37	17	-	8	3	-	468
	68.6	7.7	9.8	7.9	3.6	-	1.7	0.6	-	100
이용자	303	57	73	45	17	-	11	1	-	507
	59.8	11.2	14.4	8.9	3.4	-	2.2	0.2	-	100
계	624	93	53	82	34	-	19	4	-	975
	64	9.5	5.4	8.4	3.5	-	1.9	0.4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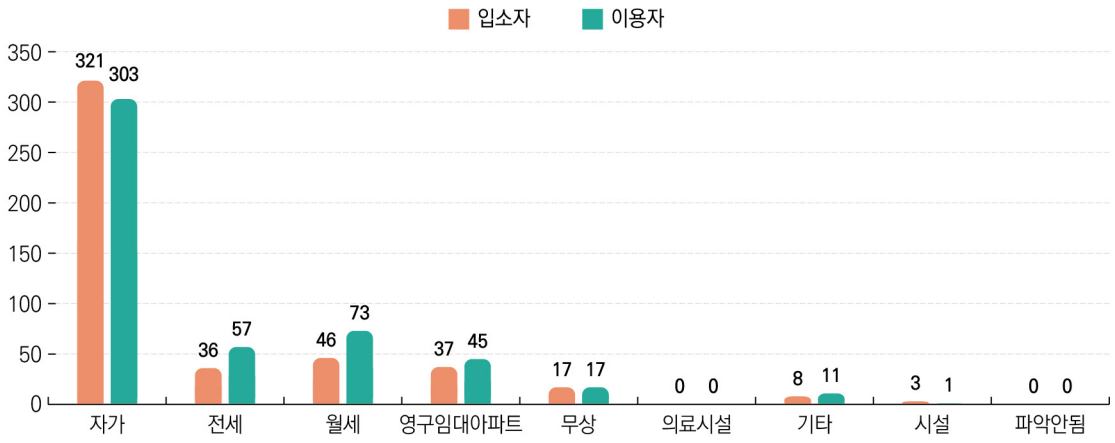

그림 10-3 보호노인 주거형태

6) 보호노인 학대 유형

표 10-7 보호노인 학대 유형

(단위: 건, %)

구 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 방임	유 기	계
입소자	354	391	13	43	20	16	13	850
	41.6	46	1.5	5.1	2.4	1.9	1.5	100
이용자	327	437	5	35	29	15	1	849
	38.5	51.5	0.6	4.1	3.4	1.8	0.1	100
계	681	828	18	78	49	31	14	1,699
	40.1	48.7	1.1	4.6	2.9	1.8	0.8	100

* 중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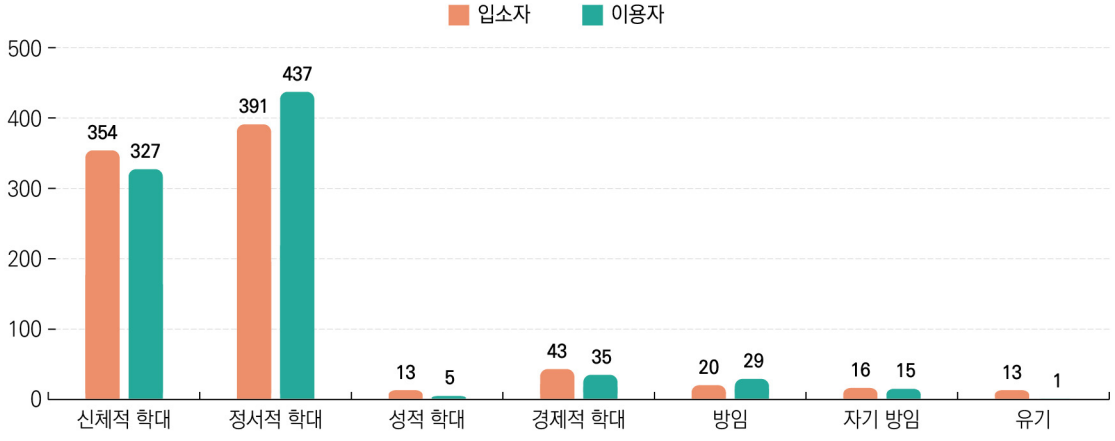

그림 10-4 보호노인 학대 유형

7) 보호노인 치매여부

표 10-8 보호노인 치매여부

(단위: 명, %)

구 분	보호노인 수	치매 진단 및 의증		
		치매진단	치매의심	소계
입소자	468	57	50	107
		12.2	10.7	22.9
이용자	507	26	44	70
		5.1	8.7	13.8
계	975	83	94	177
		8.5	9.6	18.2

8) 보호노인의 우울증 검사

표 10-9 보호노인 우울증 검사결과

(단위: 명, %)

구 분	증 가	감 소	계
입소자	2	412	414
	0.5	99.5	100
이용자	1	465	466
	0.2	99.8	100
계	3	877	880
	0.3	99.7	100

* 학대피해노인의 치매, 의사소통의 어려움, 거부, 병원이송, 급작스런 퇴소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우울증 검사를 실시한 수치임.

9) 퇴소 후 거주 현황

표 10-10 퇴소 후 거주 현황

(단위: 명, %)

구 분	원가정 복귀	입소 전 거주지 복귀 (원가정복귀제외)	타부양자 가정	시설입소 (쉼터, 공동생활 가정, 요양원 등)	의료기관	별도공간 마련	기 타	소계
입소자	308	3	32	37	18	38	32	468
	65.8	0.6	6.8	7.9	3.8	8.1	6.8	100
이용자	391	-	-	-	-	4	112	507
	77.1	-	-	-	-	0.8	22.1	100
계	699	3	32	37	18	42	144	975
	71.7	0.3	3.3	3.8	1.8	4.3	14.8	100

10)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입소자)

표 10-11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입소자)

(단위: 명, %)

내 용			인 원	
			인원	비율
식사제공	조식		16,720	15.0
	중식		16,285	14.6
	석식		16,638	14.9
	소계		49,643	44.5
법률서비스 연계	법률상담연결		31	0.0
	법률소송지원		-	-
	소계		31	0.0
의료서비스 연계	연계	이송	130	0.1
		의료기관 서비스제공	339	0.3
	지원	이송 및 동행	995	0.9
		의료비 지급	382	0.3
	기타		3,015	2.7
	소계		4,861	4.4
상담서비스	쉼터 사회복지사 상담		4,998	4.5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1,970	1.8
	전문가(강사)상담		618	0.6
	가족상담		187	0.2
	기타		3,144	2.8
	소계		10,917	9.8
프로그램	건강증진		28,851	25.9
	문화여가		5,057	4.5
	사회기능회복		4,104	3.7
	심리치료		5,625	5.0
	기타		2,487	2.2
	소계		46,124	41.3
계			111,576	100

11)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

표 10-12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

(단위: 명, %)

내 용			인 원	
			인원	비율
식사제공	조식		66	1.6
	중식		1,110	26.8
	석식		78	1.9
	소계		1,254	30.2
법률서비스 연계	법률상담연결		-	-
	법률소송지원		-	-
	소계		-	-
의료서비스 연계	연계	이송	-	-
		의료기관 서비스제공	1	0.0
	지원	이송 및 동행	1	0.0
		의료비 지급	2	0.0
	기타		50	1.2
	소계		54	1.3
상담서비스	쉼터 사회복지사 상담		65	1.6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912	22
	전문가(강사)상담		98	2.4
	가족상담		48	1.2
	기타		812	19.6
	소계		1,935	46.7
프로그램	건강증진		323	7.8
	문화여가		125	3.0
	사회기능회복		17	0.4
	심리치료		210	5.1
	기타		229	5.5
	소계		904	21.8
계			4,147	100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ART

11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11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1.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업무량

표 11-1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단위: 명, 건, 회)

구 분	전체 상담원 업무량	상담원 1인당 업무량
상담원 수	296	-
신고접수 건수	19,391	65.5
상담횟수	200,513	677.4
현장조사 횟수	6,696	22.6
방문상담 횟수	37,889	128.0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245,952	830.9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56,388	190.5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ART

12

부 록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12 부 록

1.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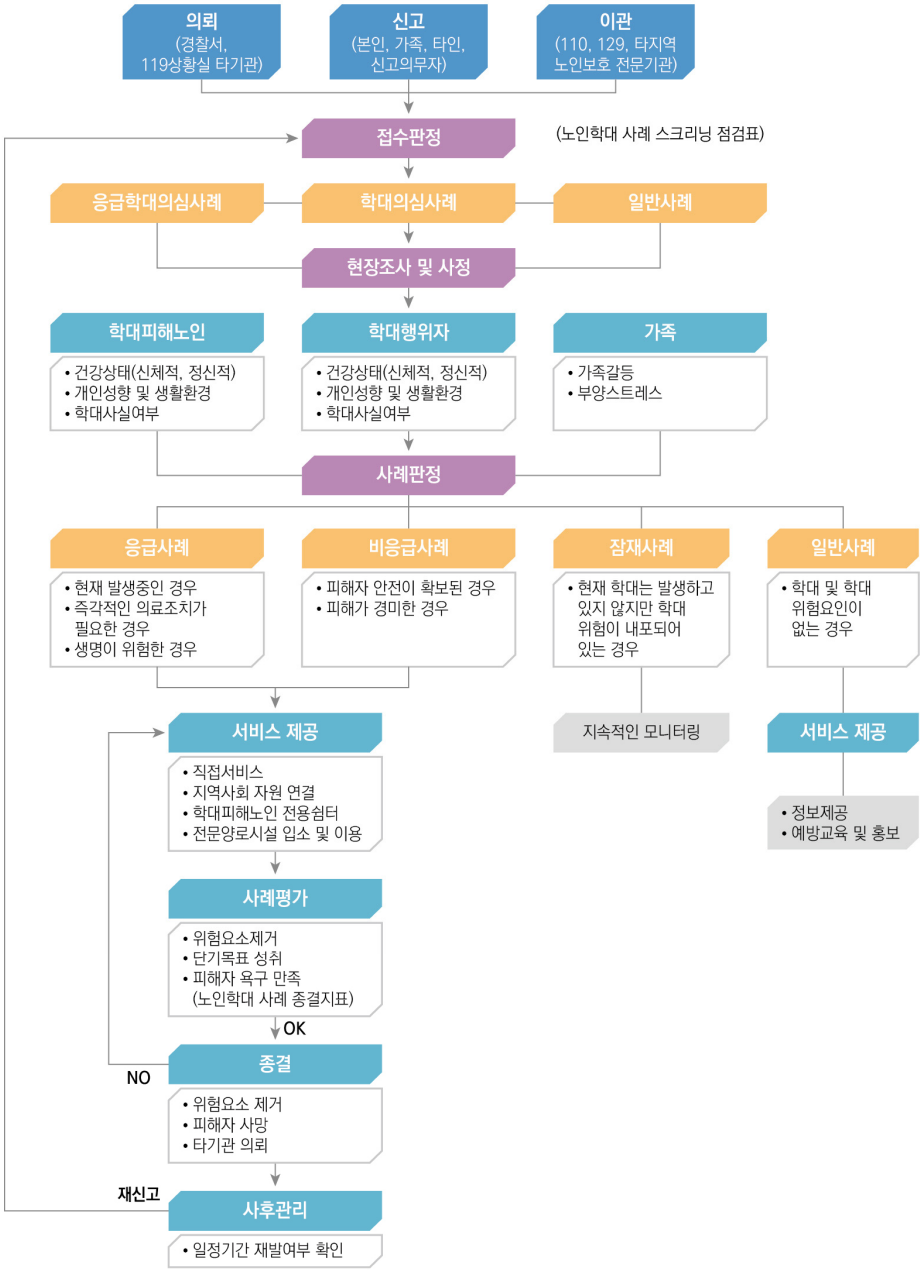

2.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022. 6. 현재)

구 분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중 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4층	02)3667-1389	www.noinboho.or.kr
서울특별시남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02)3472-1389	www.seoul1389.or.kr
서울특별시북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	02)921-1389	www.sn1389.or.kr
서울특별시서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10길 30-1, 5층	02)3157-6389	www.sw1389.or.kr
서울특별시동부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703, 301호(천호동, 삼화빌딩)	02)470-1389	www.se1389.or.kr
부산광역시동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8 연합뉴스빌딩 5층	051)468-8850	www.bs1389.or.kr
부산광역시서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8번길 46 제이에스빌 5층	051)867-9119	www,1389.bulgukto.or.kr
대구광역시남부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28, 3층	053)472-1389	www.dg1389.or.kr
대구광역시북부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84	053)357-1389	www.dgn1389.or.kr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시사회복지관 204호	032)426-8792~3	www.ic1389.or.kr
인천광역시서부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65번안길 12, 2층	032-569-0533	www.innoin1389.or.kr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길 7 빛고을노인건강타운체육관 1층	062)655-4155~7	www.gjw.or.kr/kj1389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70번길 103	042)472-1389	www.dj1389.or.kr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로 121, 3층	052)265-1389	www.us1389.or.kr
경기동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1 포인트타운 505호	031)736-1389	www.gg1389.or.kr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04 예찬빌딩 5층	031)821-1461	www.gg1389.or.kr
경기서부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501 양촌빌딩 4층	032)683-1389	www.gg1389.or.kr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1번길 1, 노인회관 4층	031)268-1389	www.gg1389.or.kr
경기북서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59 그랑프리프라자 406호	031)978-1389	www.gg1389.or.kr

구 분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번지 201호	033)253-1389	www.1389.or.kr
강원동부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954, 3층	033)655-1389	www.gd1389.or.kr
강원남부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170 새한빌딩 2층	033-744-1389	www.gn1389.co.kr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17, 3층	043)259-8120~2	www.cb1389.or.kr
충청북도북부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76	043)846-1380~2	www.cbb1389.or.kr
충청남도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206번길 42	041)534-1389	www.cn1389.or.kr
충청남도남부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9, 2층	041)734-1389	www.cnn1389.or.kr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57-23	063)273-1389	www.jb1389.or.kr
전북서부	전북 김제시 하동1길 79 김제시노후설계종합지원센터 1층	063)542-1389	www.jbw1389.or.kr
전라남도동부	전남 순천시 저전길 84	061)753-1389	www.jn1389.or.kr
전라남도서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5길 전라남도노인회관 4층	061)281-2391	www.j1389.or.kr
경북동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기쁨의복지관 B102	054)248-1389	www.noin1389.or.kr
경북북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1	054)655-1389	www.gbnw1389.or.kr
경북서부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대로 981-8	054)436-1390	www.gbwn1389.or.kr
경북남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18, 3층	053)716-1389	snoin1389.or.kr/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4길 15 금강노인복지관C동 1층	055)222-1389	www.gn1389.or.kr
경상남도서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1098, 2층	055)754-1389	www.gjw.or.kr/kj13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7길 3	064)757-3400	www.jejunoin.org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60, 2층	064)763-1999	http://sgpnoin.org/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인 쇄 일 : 2022년 6월
발 행 일 : 2022년 6월
발 행 인 : 보건복지부 장관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02) 3667-1389
인 쇄 : 경성문화사 02) 786-2999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나비새김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